발간등록번호 11-1620000-000269-01

2010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 아동복지시설 아동인권상황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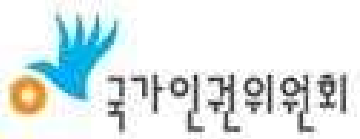

# 아동복지시설 아동인권 실태조사

2010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인권 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0. 9.


| | |
|---|---|
| 연구수행기관 |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
| 연구책임자 | 이 은 주(동국대학교) |
| 연구원 | 박 명 숙(상지대학교) |
| | 김 형 욱(아동권리협약 종합연구소) |
| 연구보조원 | 송 사 리(가톨릭대학교 박사과정) |
| | 박 수 영(동국대학교 석사) |

이 보고서는 연구용역수행기관의 결과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목 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1
제2절 연구 문제 ····· 3
제2절 연구 방법 ····· 3

제2장 이론적 배경 ····· 6
제1절 시설보호아동의 개념 및 현황 ····· 6
제2절 시설보호아동의 특징 ····· 8
제3절 시설보호아동의 문제점 ····· 11
1. 시설보호아동의 문제행동 ····· 11
1) 시설보호아동의 내재화 문제 ····· 13
2) 시설보호아동의 외현화 문제 ····· 14
2. 시설보호아동의 학교부적응 문제 ····· 15
3. 시설보호아동의 사회적 능력 문제 ····· 17
제4절 아동과 인권 ····· 18
제5절 아동복지시설의 아동인권 ····· 20

제3장 아동인권에 관한 법과 정책 ····· 27
제1절 외국의 시설아동의 인권보장에 관한 관련법과 정책 ····· 28
1. 미국 ····· 28
2. 영국 ····· 31
3. 스웨덴 ····· 35
4. 일본 ····· 38
5. 기타 국가 ····· 40
제2절 우리나라 시설아동의 인권보장에 관한 관련법과 정책 ····· 43
1. 우리나라 시설아동에 관한 국내 관련법 ····· 43
2. 시설아동 인권보장을 위한 주요 정책 및 사업 ····· 46
1) 시설아동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 ····· 46

2) 시설아동을 위한 주요 사업 ····· 47
제4장 아동복지시설 아동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결과 ····· 52
제1절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절차 ····· 52
제2절 측정도구 ····· 55
1. 아동복지시설의 아동인권 ····· 55
2.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의 인권 의식 ····· 57
3. 아동복지시설의 물리적 환경 ····· 58
제3절 자료 분석 방법 ····· 59
제4절 실태조사 분석 결과 ····· 60
1. 아동양육시설 아동의 인권 실태 ····· 60
1) 아동양육시설 아동의 일반적인 특성 ····· 60
2) 아동양육시설 아동의 생존권 실태 ····· 62
3) 아동양육시설 아동의 보호권 실태 ····· 68
4) 아동양육시설 아동의 발달권 실태 ····· 77
5) 아동양육시설 아동의 참여권 및 시설 만족도 실태 ····· 83
6) 아동양육시설 아동의 인권 의식 ····· 95
7) 아동양육시설 아동의 자아존중감 ····· 101
2.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의 인권 실태 ····· 102
1) 아동보호시설 아동의 일반적인 특성 ····· 102
2) 아동보호시설 아동의 생존권 실태 ····· 103
3) 아동보호시설 아동의 보호권 실태 ····· 106
4) 아동보호시설 아동의 발달권 실태 ····· 109
5) 아동보호시설 아동의 참여권 및 시설 만족도 실태 ····· 111
6) 아동보호시설 아동의 인권 의식 ····· 114
7) 아동보호시설 아동의 자아존중감 ····· 116
3.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 의식 실태 ····· 118
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일반적인 특성 ····· 118
2)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무관련 특성 및 인권 ····· 120
3) 아동 생존권에 대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 의식 ····· 123
4) 아동 보호권에 대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 의식 ····· 129

5) 아동 발달권에 대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 의식 ····· 133
6) 아동 참여권에 대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 의식 ····· 137
7)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 의식 및 아동인권상황에 대한 만족도 ··· 139
8)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 의식 및 의무 의식 정도 ····· 142
9) 아동복지시설 아동과 종사자의 인권 의식 비교 ····· 149
4.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일반적인 특성 따른 인권 실태 ····· 153
1)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성별에 따른 인권 실태 ····· 153
2)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학년에 따른 인권 실태 ····· 158
3)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지역에 따른 인권 실태 ····· 163
4)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 169
5)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기타 인권관련 경험 ····· 170
5. 아동복지시설 물리적 환경 실태 ····· 178
1) 아동복지시설 기본 구조 및 설비 ····· 178
2) 아동복지시설 생활 장비 및 물품 ····· 181
3) 아동복지시설 안전 및 위생 관리 ····· 182
4) 아동복지시설 프로그램 및 진정함 ····· 182

제5장 논의 및 결과 ····· 185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및 논의 ····· 185
1. 아동양육시설 ····· 185
2. 아동보호치료시설 ····· 186
3.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 188
4. 물리적 환경 ····· 191
제2절 결론 및 제언 ····· 192
1. 시설아동 관련법 개정 ····· 193
1) 헌법 및 법률 개정을 통한 인권 보장 ····· 193
2) 아동보호와 관련된 독립적인 법안의 마련 ····· 193
3) 시설아동의 소규모화를 위한 법적 규정 강화 ····· 194
2. 시설아동 관련 정책 개선 ····· 194
1) 위기상황 및 고위험군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운영위원회 운영의 의무화 194

2) 아동인권 조사 및 모니터링 제도 설치 ····· 195
3) 시설아동을 위한 표준화된 서비스 및 프로그램 개발 ····· 196
4) 아동복지시설 처우 개선 ····· 196
3.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아동복지시설 개선 ····· 197
1) 생존권 : 자유로운 식생활 및 시간외 식사 가능한 보조식당(메뉴) 확보 197
2) 보호권 : 사생활 보호 강화 및 폭력/체벌 금지 ····· 198
3) 발달권 : 학업지원과 프로그램 의무화 및 교육권 보장 ····· 199
4) 참여권 : 의사결정 참여 및 자유로운 종교 활동 보장 ····· 200
5) 권리 의식 : 아동인권 교육 정례화 ····· 200
6) 물리적 환경 ····· 201
7) 시설의 공정한 인사관리 시스템을 통한 우수한 전문인력 확보 ····· 202

참고문헌 ····· 203

부록 ····· 207

# <표 목차>

<표 2-1> 아동복지시설 입소보호아동 현황 ····· 7
<표 2-2> 요보호아동 발생 유형 ····· 7
<표 2-3>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권리 ····· 20
<표 2-4> 아동복지시설 인권평가지표 ····· 24
<표 3-1> 우리나라의 시설아동 인권 관련법과 주요 내용 ····· 45
<표 4-1> 지역별 시설아동 및 종사자 수 ····· 52
<표 4-2> 설문 조사 및 심층면접 조사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 54
<표 4-3>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인권 의식 설문 구성 ····· 56
<표 4-4>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 의식 설문 구성 ····· 58
<표 4-5> 아동복지시설 물리적 환경의 설문 구성 ····· 59
<표 4-6> 아동양육시설 아동의 일반적 특성 ····· 61
<표 4-7> 아동양육시설 아동의 식생활 ····· 62
<표 4-8> 아동양육시설 아동의 의류 선택 및 개인용품 사용 ····· 64
<표 4-9> 아동양육시설 아동의 주거 및 의료적 지원 ····· 65
<표 4-10> 아동양육시설 아동의 사생활 보호 ····· 69
<표 4-11> 아동양육시설 아동의 폭력 및 체벌 ····· 70
<표 4-12> 아동양육시설 아동의 성학대 및 상담 ····· 74
<표 4-13> 아동양육시설 아동의 학대 및 노동 ····· 75
<표 4-14> 아동양육시설 아동의 매스컴 보도 및 차별 경험 ····· 77
<표 4-15> 아동양육시설 아동의 학업지원 및 문화·휴식 ····· 78
<표 4-16> 아동양육시설 아동의 외출과 가족 방문 및 접촉 ····· 82
<표 4-17> 아동양육시설 아동의 용돈 관리 ····· 83
<표 4-18> 아동양육시설 아동의 의사결정 및 기회제공 시 참여 여부 ····· 83
<표 4-19> 아동양육시설 아동의 문화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 ····· 84
<표 4-20> 아동양육시설 아동의 건의사항 표현 및 지역사회 교류 ····· 88
<표 4-21> 아동양육시설 아동의 본인 일의 의사결정 및 종교 선택 ····· 91
<표 4-22> 아동양육시설 아동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시설 만족도 ····· 95
<표 4-23> 아동양육시설 아동의 인권 인지 및 교육제공 여부 ····· 96

<표 4-24> 아동양육시설 아동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인권 ····· 97
<표 4-25> 인권 침해 시 아동양육시설 아동의 대처 유형 ····· 100
<표 4-26> 아동양육시설 아동의 자아존중감 ····· 102
<표 4-27>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의 일반적 특성 ····· 103
<표 4-28>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의 식생활 ····· 104
<표 4-29>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의 의류 선택 및 개인용품 사용 ····· 104
<표 4-30>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의 주거 및 의료적 지원 ····· 105
<표 4-31>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의 사생활 보호 ····· 106
<표 4-32>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의 또래 폭력 및 체벌 ····· 107
<표 4-33>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의 성학대 및 상담 여부 ····· 107
<표 4-34>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의 따돌림 및 노동 ····· 108
<표 4-35>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의 매스컴 보도, 고민 상담 및 차별 경험 ····· 109
<표 4-36>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의 학업지원, 문화 및 휴식 ····· 110
<표 4-37>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의 가족 방문 및 접촉 ····· 111
<표 4-38>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의 의사결정 참여 및 기회제공 시 참여 여부 111
<표 4-39>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의 건의사항 표현 및 지역사회 교류 ····· 112
<표 4-40>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의 본인 일의 의사결정 및 종교의 선택 ····· 113
<표 4-41>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시설 만족도 ····· 113
<표 4-42>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의 인권 인지 및 교육 제공 여부 ····· 114
<표 4-43>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인권 ····· 115
<표 4-44> 인권 침해 시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의 대처 유형 ····· 116
<표 4-45>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의 자아존중감 ····· 117
<표 4-46>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일반적인 특성 ····· 118
<표 4-47>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무 경력 ····· 119
<표 4-48>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학력 및 전공 분야 ····· 120
<표 4-49>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 교육 및 아동권리협약 인지정도 ····· 121
<표 4-50>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교육 필요성 및 인권교육 기간 ····· 122
<표 4-5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 ····· 123
<표 4-52> 아동 생존권에 대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 의식 ····· 124
<표 4-53> 아동 생존권에 대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 의식 ····· 126

<표 4-54> 아동 생존권에 대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 의식 ····· 127
<표 4-55> 아동 보호권에 대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 의식 ····· 130
<표 4-56> 아동 보호권에 대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 의식 ····· 131
<표 4-57> 아동 보호권에 대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 의식 ····· 132
<표 4-58> 아동 발달권에 대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 의식 ····· 133
<표 4-59> 아동 발달권에 대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 의식 ····· 137
<표 4-60> 아동 참여권에 대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 의식 ····· 138
<표 4-61> 아동 참여권에 대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 의식 ····· 139
<표 4-62>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아동에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권리 ····· 140
<표 4-63>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아동복지시설 인권상황에 대한 만족도 ····· 141
<표 4-64>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 의식 및 직무 의식 정도 ····· 143
<표 4-65> 의견을 말할 기회여부에 대한 아동과 종사자의 인권의식 차이 ····· 150
<표 4-66> 종교 선택 여부에 대한 아동과 종사자의 인권의식 차이 ····· 151
<표 4-67> 아동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인권에 대한 아동과 종사자의 인권의식 차이 ····· 152
<표 4-68>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성별에 따른 의복선택 여부의 차이 ····· 153
<표 4-69>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성별에 따른 자유로운 개인 용품 사용 여부의 차이 ····· 154
<표 4-70>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성별에 따른 편지나 소포 검사 여부의 차이 ·· 155
<표 4-71>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성별에 따른 방공개 여부의 차이 ····· 155
<표 4-72>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성별에 따른 건의사항 표현 여부의 차이 ····· 156
<표 4-73>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성별에 따른 자신의 일 결정 시 참여 여부의 차이 ····· 157
<표 4-74>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성별에 따른 아동인권 의식의 차이 ····· 157
<표 4-75>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학년에 따른 의복선택 여부의 차이 ····· 158
<표 4-76>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학년에 따른 자유로운 개인 용품 사용 여부의 차이 ····· 159
<표 4-77>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학년에 따른 편지나 소포 검사 여부의 차이 ·· 159
<표 4-78>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학년에 따른 방 공개 여부의 차이 ····· 160
<표 4-79>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학년에 따른 TV 시청 및 인터넷 사용 여부의

차이 ····· 161
<표 4-80>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학년에 따른 건의사항 표현 여부의 차이 ····· 161
<표 4-81>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학년에 따른 종교 선택 여부의 차이 ····· 162
<표 4-82>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학년에 따른 아동인권 의식의 차이 ····· 163
<표 4-83>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지역에 따른 의복선택 여부의 차이 ····· 163
<표 4-84>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학년에 따른 자유로운 개인 용품 사용 여부의 차이 ····· 164
<표 4-85>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학년에 따른 편지나 소포 검사 여부의 차이 ·· 165
<표 4-86>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학년에 따른 방 공개 여부의 차이 ····· 166
<표 4-87>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학년에 따른 TV 시청 및 인터넷 사용 여부의 차이 ····· 166
<표 4-88>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성별에 따른 건의사항 표현 여부의 차이 ····· 167
<표 4-89>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성별에 따른 자신의 일 결정 시 참여 여부의 차이 ····· 168
<표 4-90>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성별에 따른 아동인권 의식의 차이 ····· 168
<표 4-91>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 170
<표 4-92> 아동복지시설 기존 구조 및 설비 ····· 180
<표 4-93> 아동복지시설 생활 장비 및 물품 ····· 181
<표 4-94> 아동복지시설 안전 및 위생 관리 ····· 182
<표 4-95> 아동복지시설 프로그램 및 진정함 ····· 183

## <그림 목차>

[그림 3-1] 요보호아동 발생시 업무 흐름도 ····· 48

# 【요 약】

## Ⅰ. 서 론

###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아동생활시설 중 양육시설에서의 아동의 인권문제는 시설보호의 특성상 일반가정의 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갖고 있음. 시설보호 아동의 양육환경 자체가 대규모 집단 생활보호이며, 집단생활을 하는 시설에서는 제한적인 공간과 획일적인 명령 체계 내에서 행동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의 요구보다 효율적인 집단 활동이 우선시 될 수밖에 없음. 즉, 다수를 위한 규칙과 획일적인 일과로 인한 개별적인 선택의 기회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또한 아동과 함께 하는 보육사들의 과중한 업무 때문에 아동에 대한 애정적·자율적·수용적인 양육태도 보다는 권위적, 통제적인 양육태도를 보임으로써 개별성에 기초한 아동인권 침해 문제가 쉽게 야기될 수 있음. 또한 교육을 받는 학교 현장은 물론 보호받고 안정된 생활을 누려야 할 시설에서조차 성폭행, 구타, 협박, 친권포기 강요, 보조금 횡령 등 시설아동의 인권이 유린되는 일들이 적잖게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복지시설의 아동인권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현재 우리나라 시설아동의 아동인권 수준을 파악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이를 위해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인권실태를 조사하고, 우리나라 아동인권에 관한 법과 정책을 이론적으로 고찰 및 국내외 아동인권에 관한 정책적 보호가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함.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인권상황 개선방향에 함의를 제공하고, 실제 아동복지시설의 아동인권 수준이 향상되도록 다양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2. 연구방법

■ 설문조사의 표본추출은 지역별, 연령대별, 성별 비례적 할당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아동의 인권과 관련된 국내외 각종 선행연

구들에 대한 검토 및 계량화된 기존의 측정도구 검토 등 포괄적인 자료검토를 바탕으로 아동인권의 실태파악을 위한 설문문항이 구성되었음. 또한 본 조사의 전단계로서 예비조사 실시 및 실무자의 자문을 통해서 설문문항을 수정 보완하였음.

■ 조사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아동과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음. 심층면접을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아동양육시설과 아동보호치료시설의 리스트를 활용하여 유선으로 시설종사자 및 아동의 심층면접 참여가 가능한지 확인하였고, 면접대상인 시설종사자와 아동은 시설에 의해 선정되었음. 심층면접은 반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면접 문항에는 아동의 4대 권리(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를 기본구성으로 하여 학교관련 인권경험, 시설의 삶의 경험과 미래의 삶 등의 내용이 추가·보완되어 구성되었음.

3. 이론적 배경

1) 시설보호아동의 개념 및 현황

■ 시설보호아동이란 아동양육시설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는 만 18세 이상의 아동을 의미함. 즉, 부모가 아동에 대한 역할을 수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경우 일시적으로 혹은 장기적으로 집단보호 하는 보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을 가리킴.

■ 시설 보호 아동의 수는 1980년을 기점으로 1990년대 중반까지 감소하였으나 1997년 IMF 이후 다시 그 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2009년 현재 아동복지시설은 총 280개소로, 17,586명의 아동이 보호되고 있으며, 그 중 양육시설은 전국 239개소, 16,239명, 자립지원시설은 12개소, 262명, 보호치료시설은 11개소에 514명의 아동을 보호하고 있음.

2) 시설보호아동의 특성

■ 시설보호아동은 정상적인 가정의 보호 안에 있지 못하다는 상대적 박탈감과 일반가정의 아동보다 심리,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킬만한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과

같은 문화적 실조환경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결단력이 약할 뿐만 아니라, 심리·사회적으로 상당히 소외되거나 위축될 가능성이 큼.

3) 시설보호아동의 문제점

■ 시설보호 아동의 경우, 사회적, 경제적 이유로 인해 부모와 헤어져 생활해야 하고, 부모와의 분리과정에서 깊은 심리적 상처를 입기 때문에 행동문제에 있어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시설보호 아동은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가출경험, 장기결석, 흡연경험, 자살충동의 경험이 유의미하게 많이 나타나 가정, 학교, 개인생활에서의 부적응 행동이 관찰되었고, 열등감, 경쟁심 약화, 무책임, 책임회피, 공격성, 의타심, 성취동기부족 등의 특성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었음.

■ 시설보호 아동은 여러 가지 내재화 문제를 나타냄. 시설보호 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 높은 우울성향과 낮은 학교적응을 보이고, 정서적 안정감이 떨어지며, 무감각함. 또한 시설보호아동이 불안정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불안하며, 만성적인 공허함과 부적절한 분노 그리고 전반적인 피해의식을 가지게 된다고 하였음. 또한 시설보호아동들은 일반아동에 비해 주의집중문제와 정서적 불안정, 사회적 미성숙, 위축행동 전반에 걸쳐 부적응을 보인다고 보고됨. 이러한 시설보호아동의 성격적 특성들은 환경적 영향에 의하여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시설환경에서 가정적 기능을 대행해 줄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함.

■ 시설보호 아동은 여러 가지 외현화 문제를 나타냄. 시설보호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 가출경험이 11배, 장기결석과 흡연 3배 높으며, 충동적 행동 등의 부적응 행동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 외에도 시설보호 아동은 열등감, 경쟁심 약화, 무책임, 책임회피, 의타심, 성취동기부족 등의 특성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었음. 한편, 일반 청소년에 비해 시설 청소년은 언어적 공격, 대인공격, 대물공격행동, 분노표출에서 일반 청소년보다 시설 청소년의 공격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가정불화나 해체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시설에 입소하거나 성인들로부터 거부와

정서적 박탈을 경험한 아동들이 많기 때문에 공격적이고 과격한 행동을 표출하는 등의 문제 성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와 같은 시설아동의 외현적인 문제는 퇴소이후 경제관념이 희박해지고 충분한 정서적인 욕구발표의 기회상실로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성장하게 될 위험을 가지고 있음.

■ 시설보호아동은 학교사회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학교부적응의 문제를 나타냄. 시설에서 자라나는 아동들은 일반아동에 비해 자신의 학업을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고 학원 및 과외학습 등의 학교보충 교육이 결여되어 언어발달 및 학업성적이 부진하며, 아동 개인의 주의산만, 정서적 불안정 등으로 인해 학습동기가 부족하거나 학습습관이 잘못 형성됨으로 낮은 학업성취율, 학습거부 등의 부적응 현상이 나타남. 또한 시설보호아동들은 학교에 가기 싫어 지각을 하거나 결석을 하며, 비행행동으로는 군것질, 장난감 등을 사고 싶지만 용돈의 제한성으로 인해 도벽현상을 일으키고, 폭력, 집단행동, 학교물건이나 학용품 등을 파괴하는 등의 학교거부성향 또는 비행현상을 보임.

4) 아동과 인권

■ 아동의 권리는 아동을 소유물, 또는 보호의 객체로만 바라보는 전통적인 가치관과 충돌하면서 권리실현에 있어서 당해 아동과 아동을 보호하는 측의 갈등과 오해는 아동권리 실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음. 아동을 무능하고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부정적인 의식은 권위적 간섭주의로 이어져, 그 결과 아동은 자신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 어떠한 결정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되었음. 따라서 아동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아동에 대한 사회적 의식의 전환이 전제되어야 함.

■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아동의 삶이 차별받지 않고(제2조), 생명・생존 및 발달에 필요한 적절한 환경을 제공받고(제6조), 아동에 대한 모든 행위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할 것(제3조), 이를 위해 아동의 의견을 정당히 존중되고 참여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제12조)을 권리보장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협약에서 제시되어 있는 권리내용은 반드시 위의 네 가지 원칙이 적용되는 가운데 이행되어야 하며 특히, 협약의 핵심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으로 모든 권

리의 보장에 있어서는 아동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어야 함.

5) 아동복지시설의 아동인권

■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민간단체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 1차 민간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아동복지시설에서는 성폭행, 구타, 협박, 친권포기 강요, 보조금 횡령 등 시설 아동의 인권이 유린되는 일들이 적잖게 발생하고 있음. 2차 민간보고서에 의하면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시설에 입소한 아동의 경우는 국가의 관리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감독이 미치지 않는 미인가 시설에 수용되는 경우도 있음을 보고하면서, 아동에 대한 대안적 보호조치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할 것과 시설위주의 보호를 탈피할 것, 공공 전담인력을 확충하는 등 복지서비스를 개선할 것 등을 권고하였음.

4. 아동인권에 관한 법과 정책

1) 외국의 시설아동 인권보장을 위한 관련법과 정책

(1) 미국

■ 미국은 요보호아동을 위해 1997년에 '입양 및 가족안전법'(Adoption and Safe Families Act of 1997)을 제정함. 아동이 일단 정부의 보호체계에 들어오게 되면 위탁가정이나 시설보호 기간을 가능한 한 단축시키고, 원래의 가정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서비스를 받거나, 부모의 친권을 박탈하는 경우에 즉각적으로 입양가정을 찾아 입양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신체적, 정서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격리하여 안정적이고 영구적인 성장·발달 환경을 시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및 방임법원강화법(Strengthening Abuse and Neglect Courts Act of 2000)이 마련되었으며, 같은 해 '아동건강법'(Children's Health Act of 2000)을 제정하여 시설에서 보호되고 있는 아동들에게 위기관리훈련, 행동장애치료 등을 제공하도록 함.

■ 2000년에 제정된 아동건강법(Children's Health Act of 2000)은 시설에서 보호되고 있는 아동들에게 위기관리훈련, 행동장애치료 등을 제공하도록 강조하고 있으며, 가정위탁자립법(the Foster Care Independence Act, 1999)을 통해 영구적인 가정환경을 찾지 못하고 위탁가정이나 시설에서 보호되는 아동들(18세-21세 대상)에게 다양한 교육기회와 자립관련 훈련을 제공하고 있음.

(2) 영국의 시설아동인권에 관한 관련법과 정책

■ 영국은 1948년에 아동법을 제정하면서 아동의 복지, 교육, 보호를 포괄적으로 증진하고자 하였고, 1975년 아동법의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의 위험이 있는 경우 지방정부가 아동을 원가정으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는 등 친부모의 권한을 약화시킴. 이후에도 꾸준한 아동법의 개정을 통해 아동의 인권실현을 실현하고자 함. 현재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의 인권은 1989년의 아동법(The Children Act 1989)과 1998년의 인권법(The Human Rights Act 1998), 2000년에 제정된 보호기준법(The Care Standards Act 2000) 등에 적용을 받음.

■ 최근 영국의 아동가정복지정책은 2004년 개정된 아동법을 근거로 하며, 동법에 의거하여 지자체의 아동가정복지서비스가 일원화되었음. 아동법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하여 2004년 12월 '아동보호·케어 10개년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각종 개혁을 추진함.

(3) 스웨덴의 시설아동인권에 관한 관련법과 정책

■ 스웨덴은 아동보호와 관련하여 '사회서비스법'과 '청소년보호법'을 통해 아동이 성장·발달하는데 필요한 최적의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며, 인권침해 예방과 보호는 '아동옴부즈맨 사무소 설치법'에 의거하여 실시되고 있음.

■ 스웨덴에서의 위탁가정지원은 시설보호를 대처하는 수단으로서 부모로부터 격리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은 위탁가정에 배치됨. 이와 같은 대리보호 서비스가 요구되는 경우는 '사회서비스법' 또는 '아동보호법' 특별조항에 의해 배치됨.

(4) 일본의 시설아동 인권에 관한 관련법과 정책

■ 일본의 '아동복지법'은 아동보호에 대한 포괄적인 법률적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시설보호와 위탁보호 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법적 근거가 됨. '아동학대방지법'은 아동학대 예방과 효과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2000년에 제정되었음.

■ 시설아동의 체벌과 관련해서는, 아동복지시설최저기준에 의해 징계권 남용금지가 규정되어 있고, 2008년 아동복지법 개정 시에,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학대 방지가 명문화되었으며, 지역아동복지심의회가 시설 내 학대에 대한 신고를 접수 받도록 하는 등 학대예방에 관한 체제를 개선하였음. 또한 '사회복지법'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사업의 경영자가 시설운영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체평가는 물론 외부평가(제3자 평가)에 의한 복지시설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2) 우리나라 시설아동의 인권보장에 관한 관련법과 정책

(1) 우리나라 시설아동인권에 관한 국내 관련법

■ '아동복지법'에 나타난 시설아동인권에 관련된 내용은 시설아동의 정의(2조), 차별금지(3조), 아동복지지도원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7조), 아동복지시설의 안전기준 마련 및 교육(9조), 입소 및 퇴소 조치(10조), 아동복지시설의 설치(14조), 시설장의 보호아동의 권리보장 의무(18조), 장관, 지자체의 시설 감독 및 시설에 대한 조치(21조), 아동학대 신고 의무(26조), 사회복지전담공원 및 아동복지지도원의 시설에 대한 조사·지도 및 감독(30조) 등으로 살펴볼 수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에 나타난 시설아동인권에 관련된 내용은 아동복지시설 운영위원회 설치(36조),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43조),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사 실시(51조) 등이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은 아동인권보호를 위한 진정함 설치 의무(7조),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신상이 불분명한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6조),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시설 방염대상 물품사용(20조)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2) 시설아동 인권보장을 위한 주요 정책 및 사업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이 가능한 한 가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양육 정책의 확대는 2000년 이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였음.

■ 이를 위해 현재 가정위탁보호 및 그룹홈과 같은 대안양육이 확대되고 있으며, 위탁가정을 대상으로 양육보조금, 아동상해보험료, 전세자금 등의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와 함께 아동복지시설 기능의 다양화 및 종합화, 소규모화 등이 추진되고 있음.

5. 아동복지시설 아동인권 실태조사 및 결과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절차

■ 설문조사 연구대상의 표본추출은 지역별로 시설 아동 수를 고려하여 지역으로 층화하여 추출 한 뒤, 각 층에서 아동양육시설 및 보호치료시설을 무작위 표집 한 후, 아동 및 종사자 수를 최종표집 하였음. 전국의 아동복지 시설 중 아동양육시설 20곳, 보호치료시설 3곳 총 23곳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1,129부(아동 1,005부, 종사자 124부)를 설문하였고, 무응답이거나 불성실한 답변을 한 설문지 8부를 제외한 1122부(아동 1001부, 종사자 121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음.

■ 또한, 심층면접대상자 표집방법은 비확률표집방법 중 유의적 표집방법을 사용하여 서울특별시의 아동양육시설 2곳, 아동보호치료시설 1곳, 경기도, 강원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아동양육시설 각 1곳, 전라남도에 위치한 아

동보호치료시설 1곳으로 아동 10명, 종사자 5명을 조사하였음.

■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2010년 6월 9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진행되었고, 심층면접은 2010년 7월 20일부터 2010년 8월 6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은 모두 연구자가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이루어졌음.

2) 측정도구

■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아동양육시설 및 아동보호치료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인권실태와 인권의식을 파악하기 위한 '아동용 설문지'와 아동양육시설 및 아동보호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시설종사자가 의식하는 아동의 인권실태 및 시설종사자의 인권의식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시설종사자용 설문지', 그리고 아동양육시설과 아동보호치료시설의 물리적인 환경과 아동에게 제공되는 학습, 인권, 위생, 안전 등과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의 제공여부를 체크하기 위한 '물리적 환경'체크리스트로 나누어 구성되었음.

3) 자료분석 방법

■ 자료의 처리방법으로는 SPSS 18.0을 활용하였으며, 연구 대상의 일반적인 특성 및 인권에 관한 실태와 아동복지시설의 물리적 환경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아동인권실태 및 인권의식수준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차분석(Crosstabu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음. 또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과 시설종사자의 의견을 심층면접결과를 통해 제시하였음. 본 연구에서는 녹취된 원자료들을 활용하여 개방코딩(open coding), 축코딩(axial coding), 선택코딩(selective coding)의 단계를 실시하였음.

4) 실태조사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문제에 따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음.

(1) 아동양육시설

■ 양육시설 아동의 생존권과 관련한 주요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의식주생활과 관련하여 ,「정해진 시간이 지나도 밥을 준비 해 주신다」(52.2%), 「내 취향에 맞는 옷을 고르거나 선택할 수 있다」(76.1%), 「생활하기에 적절한 온도로 조절할 수 있다」(69.1%) 등의 항목에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며 비교적 만족하고 있었음.

■ 양육시설 아동의 보호권과 관련한 주요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아동의 사생활과 관련하여 편지와 소포의 경우, 검사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높았으나, 외부인들에 방을 공개하는 것은 아동의 의견을 묻거나 혹은 묻지 않고 보여주는 비율이 69.4%에 달하여 아동의 사생활침해가 우려되는 결과를 나타냄. 양육시설 아동의 43.0%가 또래폭력을 경험하였고, 37.9%의 아동이 선생님으로부터 체벌을 경험하였음.

■ 양육시설 아동의 발달권과 관련한 주요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아동의 교육권과 관련하여 '정해진 학습시간에 선생님들로부터 학습지도를 적절히 받고 있다.'는 응답이 55.8%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냄. 외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응답은 23.4%의 낮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심층면접에서도 외출의 자유가 조금 더 확보되기를 원하는 아동의 의견이 나타남.

■ 양육시설 아동의 참여권과 관련한 주요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의사 결정 시 아동의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은 77.6%로 높았으나, 의사결정기회가 제공될 경우 참여하겠다는 아동은 41.4%에 머물렀음. 또한 정해주는 외부활동에만 참여 할 수 있다는 응답이 41.9%로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어 문화 활동 및 지역사회로의 제한적 참여를 확인할 수 있음. 한편, 의무적으로 종교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비율이 47.1%로 가장 높았고, 강요하지 않지만 참여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는다는 응답도 8.3%로 나타나 자유로운 종교선택의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아동양육시설 아동의 인권 의식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음. 아동인권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거나 전혀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51.4%로 높게 나타나 아동들의 낮은 인권의식을 확인할 수 있음. 아동인권 관련 정보 또는 교육을 제공받은 경험이 있는 아동은 62.5%, 경험이 없는 아동은 37.5%로 나타남. 아동양육시설 아동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권리 중 1순위는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놀 권리」(39.5%), 2·3순위는 「친구들과 자유롭게 모임을 갖고 활동할 권리」(20.4%, 17.5%)로 나타남.

(2) 아동보호치료시설

■ 보호치료시설 아동의 생존권과 관련한 주요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식생활과 관련하여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먹을 수 없다」(75.0%)는 응답과 의생활과 관련하여 「내가 원하는 옷을 전혀 고르거나 입을 수 없다」(41.2%) 또는 「선생님과 의견이 다른 경우 선생님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39.9%)의 응답, 그리고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정해진 온도가 있기 때문에 조절할 수 없다」(64.2%)는 항목의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 양육시설에 비하여 아동의 생존권의 보장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남.

■ 보호치료시설 아동의 보호권과 관련한 주요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먼저 「우리의 의견을 묻지 않고 선생님이 마음대로 편지와 소포를 검사 하신다」(58.8%)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방 공개 여부 역시 「내 의견을 묻지도 않고 마음대로 보여주신다」(54.1%)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아동의 사생활이 침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또래 폭력을 경험한 아동은 27.0%, 선생님으로부터의 체벌을 경험한 아동은 23.6%로 나타남. 성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8.8%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이 중 상담을 받지 않았다는 아동이 92.3%로 나타나 시설에서 성학대 발생 시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보호치료시설 아동의 발달권과 관련한 주요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TV나 인터넷 사용은 「특별한 날 또는 정해진 시간에만 이용 할 수 있다」(47.3%), 또는 「이용할 수 없다」(4.1%)비율이 높게 나타나 아동의 인터넷 매체로의 낮은 접근성을 나타내고 있음. 특히, 가족이나 친척 등의 방문과 관련하여 「정해진 날짜만 연락 및 방문이 가능하다」(41.9%)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는 것과 「연락 및 방문을 할 수 없다」의 비율도 9.5%로 나타난 것은 주목할 만한 결과임. 보호치료시설에서의

아동의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행하는 종교행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74.3%), 「강요하지는 않지만,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종교 활동에 참여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다」(10.8%) 등의 높은 응답결과는 자유로운 종교활동이 보장되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임.

■ 보호치료시설 아동의 권리 의식에 관련한 주요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아동인권(권리)에 대하여 「들어 본적은 있지만 잘 알지 못 한다」(51.4%), 「전혀 알지 못한다」(11.5%) 등의 응답을 보이며 낮은 인권의식수준을 나타내었음.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권리 중 1순위는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놀 권리」(56.8%), 2순위는 「내 의견이 존중받을 권리」(20.9%), 3순위는 「사생활이 침해받지 않은 인권」(24.3%) 한편, 아동 인권 침해 시 대처 행동 유형은 「그냥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참는다」(54.1%)가 가장 높았으며,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선생님께 말씀을 드린다」는 응답은 31.8%에 머물렀음.

(3)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 아동복지 시설종사자의 직무관련 특성 및 인권과 관련한 주요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무관련 특성 및 인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동 권리 교육은 「있다」(86.8%)가 「없다」(13.2%) 보다 높게 나타났고, 아동권리협약 인지수준은 「제목과 내용에 대해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다」(61.2%)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 인권교육의 필요성으로는 「꼭 필요하다」는 응답이 43.0%에 머물렀고, 아동인권과 관련하여 전문가 조력의 필요성 역시 「꼭 필요하다」는 응답이 29.8%에 그쳤음.

■ 아동 생존권에 대한 아동복지 시설종사자의 권리의식과 관련한 주요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의생활과 관련하여 「정해진 시간이 지나도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다」라는 응답이 88.4%로 나타나 앞서, 같은 질문에 양육시설의 아동은 52.2%, 치료시설의 아동은 21.6%만이 「정해진 시간이 지나도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다」고 응답하였던 결과와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의류 선택에서는 「아동 취향에 맞는 옷을 고르거나 입을 수 있다」(71.9%)고 응답하였으며, 방 온도 조절

여부는 「아동이 생활하기에 적절한 온도로 조절 할 수 있다」(58.7%)가 「기관에 정해진 온도가 있기 때문에 조절 할 수 없다」(41.3%)의 순으로 나타남.

■ 아동 보호권에 대한 아동복지 시설종사자의 권리의식과 관련한 주요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편지와 소포 검사는 「사생활보호를 위해 검사하지 않는다」(62.8%)가 가장 높았으며, 방 공개 여부는 「아동의 의견을 물어보고, 원하지 않으면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62.8%)가 가장 높은 반면, 「아동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마음대로 보여 주신다」(15.7%)는 낮은 응답률을 나타냄. 이는 같은 질문에 대하여 양육시설의 아동은 41.7%, 치료시설의 아동은 54.1% 가 「나의 의견을 물어보지만, 결정은 선생님 또는 원장님이 하신다」라는 응답을 나타낸 결과와 차이를 보이는 것임. 체벌과 관련하여 「아동에게 체벌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규정이 있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직원을 징계한다」(58.2%)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성추행 및 성폭력발생 시에는 「상부기관에 바로 알리고, 법・행정적 조치를 취한다」(64.5%)는 응답이 가장 높았음.

■ 아동 발달권에 대한 아동복지 시설종사자의 권리의식과 관련한 주요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학업지원은 「정해진 학습시간에 선생님으로부터 학습지도를 적절히 받고 있다」(76.9%)가 가장 높았으며, TV나 인터넷 사용은 「원하는 경우 적절한 수준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78.5%)가 가장 높게 나타남. 아동의 외출은 「규칙만 지킨다면 외출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47.9%)가 가장 높았으며, 「미리 허락을 받아야 한다」(36.4%), 「외출의 횟수와 시간은 정해져 있다」(3.3%) 순으로 나타남.

■ 아동 참여권에 대한 아동복지 시설종사자의 권리의식과 관련한 주요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의사 결정 시 아동의 참여 여부는 「예」(99.2%)가 「아니오」(.8%) 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났고, 지역사회 교류는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다」(95.0%)가 가장 높았으며, 본인과 관련된 의사 결정은 「참석해서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이러한 의견은 결정에 반영된다」(76.9%)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음. 한편, 종교 활동은 「강요하지는 않지만,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종교 활동에 참여하도록 권유 함」(61.2%)이 가장 높게 나타나 같은 질문에 양육시설의 아동의 41.7%, 치료시설의 아동의 74.1%가 「현재 살고 있는 종교행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던 결과와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 및 의무 의식정도에 관련한 주요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의무 의식을 평균을 살펴보면「종사자들은 아동들을 절대 체벌해서 안 되며 아동과 일대일로 문제를 처리하지 않아야 한다」(3.72)가 가장 높았으며,「아동을 돌보는 시설 종사자는 자주 바뀌지 말아야 한다」(3.71), 「시설 종사자는 시설 내 왕따, 저항, 갈등 등을 잘 다룰 수 있도록 충분히 훈련을 받아야 한다」(3.67),「시설종사자는 아동의 불만사항을 즉각적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3.66),「아동은 자유롭게 연락할 수 있는 누군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3.36) 순으로 나타남.

(4)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아동인권 실태

■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성별에 따라, 의복선택, 자유로운 개인용품 사용, 편지나 소포 검사, 방 공개, 건의사항의 표현, 자신의 일 결정 시 참여, 아동권리 의식 부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학년에 따라, 의복 선택, 자유로운 개인용품 사용, 편지나 소포 검사, 방 공개, TV 시청 및 인터넷 사용, 건의사항 표현, 종교 선택, 아동권리에 대한 의식의 부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지역에 따라, 자유로운 의복 선택, 자유로운 개인용품 사용, 편지나 소포 검사, 방 공개, TV시청 및 인터넷 사용, 건의사항의 표현, 자신의 일 결정 시 참여, 아동권리 의식 부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5) 아동복지시설 물리적 환경

■ 아동복지시설의 기존 구조 및 설비들은 대체로 청결하고 위생적이며 잘 갖춰져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음식의 유효기간을 잘 지키는 등 음식보존 상태가 양호하며, 식단메뉴 중 인스턴트식품의 비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특이 체질 아

동의 식단 메뉴 관리(60.9%)가 대부분의 시설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시설 내 양호실이 없는 경우가 34.8%에 달하며, 회의실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기관은 약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이밖에 아동의 휴식공간 또한 없는 경우가 39.1%로 높게 나타남.

■ 아동복지시설의 생활 장비 및 물품과 관련한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음. 아동들은 침구를 개인별로 사용하고 있으며, 청결한 상태(78.3%, 91.3%)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개인사물함 구비(87.0%) 및 목욕용품 구비(78.3)도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인용 책상 구비(52.2%) 및 컴퓨터나 학용용품 등 공동용품 구비(56.5%)는 부족한 것으로 확인됨.

■ 아동복지시설의 시설 안전 및 위생 관리에 관한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음. 위생교육(85.2%), 정기적인 소독(87.0%)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상시 외부 연락 장치(52.2%)의 마련, 창문 안전대 설치 (56.5%), 안전관리 매뉴얼(83.9%) 및 화재예방기구 및 화재발생을 대비한 대처요령(65.2%) 등 관련시설장비의 배치나 예방교육부분 모두 미비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시설 내 화재예방기구는 기본사항으로 모든 기관이 배치하고 있었으나, 안전관리 매뉴얼과 화재예방기구 사용방법,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에 대한 안내문이 없는 경우가 많았음.

■ 아동복지시설의 프로그램 및 진정함에 관한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음. 퇴소 준비 프로그램은 대부분의 시설(85.2%)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아동이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경우 검정고시준비와 같은 학업보충프로그램이 없는 경우가 56.5%로 높게 나타남. 한편, 56.5%의 시설이 국가인권위 진정함을 배치하고 있었고, 배치여부가 불투명하거나 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시설은 43.4%로 나타남.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함의 의미와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시설은 52.2%로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아동복지시설 아동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였음. 첫째, 시설아동 관련법 개정과 관련하여 헌법 및 법률 개정을 통한 통합 인권 보장 및 아동보호와 관련된 독립적인 법안

마련. 둘째, 시설아동 관련 정책 개선과 관련하여 아동인권실현을 위한 정책조정 기구설치, 아동인권 조사 및 모니터링 제도 설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시설 소재의 지역별 아동인권 및 서비스 수준 차이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셋째,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아동복지시설 개선과 관련하여 자유로운 식생활 및 주거환경 개선, 사생활 보호 강화 및 폭력/체벌 금지, 학업지원과 정보이용 향상, 외출 및 가족면담 보장, 의사결정 참여 및 자유로운 종교 활동 보장, 아동인권교육 정례화, 개별아동의 욕구 충족, 아동안전 강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 설치 의무화.

# 제 1 장 서 론

## 제 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아동양육시설은 가장 대표적인 시설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시설로 아동복지시설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Kadushin과 Martin(1988)에 따르면, 아동양육시설(child-caring institution)은 친부모의 집에 머무를 수 없는 아동들을 위한 대안양육시설로서 가정위탁처럼 일시적 보호를 제공하지만 조금 더 집단적인 환경에서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 아동양육시설은 아동이 자신과 혈연관계가 없는 성인집단의 보호 하에 자신과 혈연관계가 없는 다른 아동들과 함께 24시간 생활하며 거주하는 시설이다. 과거에 '고아원'으로 불리던 아동양육시설은 가장 대표적인 사회복지시설로 인식되어져 왔다(이재연 외, 2008).

미국에서는 1909년 아동에 관한 백악관회의 이후 대규모 시설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가정의 환경과 가까운 가정위탁보호가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후 1930년~1950년대에 미국의 많은 아동보호시설들이 요보호아동에 대한 양육보호시설에서 정서장애 아동을 위한 치료시설로 전환해 갔다. 그리고 1970~1980년대부터는 아동복지 서비스의 중심은 아동양육시설보다는 입양서비스, 가정위탁보호 서비스, 아동학대와 방임예방 분야 등으로 옮겨지기 시작하였다(Pecora et al., 2000). 2005년 미국 아동복지통계를 보면, 전체 요보호아동 중 약 10% 정도가 시설(양육시설, 치료시설 등 시설에서의 보호를 전부 포함)보호를 받는으며, 70%의 아동이 가정위탁 보호를 받는다(Children's Bureau, 2006).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복지부(2009)에 따르면 2008년 기준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이 16,707명, 보호치료시설 477명으로 보호필요아동의 다수가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설아동들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오랜 기간 생활하면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우선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서 가장 빈번하게 거론되는 어려움은 시설에서 오랜 기간 생활하면서 겪는 소위 '시설병'을 들 수 있다. 즉, 시설아동은 오랜 기간 통제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고 약한 정서적 관계를 경험함으로써 발달의 여러 측면

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양점도 외, 2001). 그리고 시설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낮고(Kadushin & Martin, 1988), 시설 내에서 제한된 물리적·사회적 경험을 함으로써 심리, 사회발달이나 사회적응 면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자기노출을 꺼리고 방어적이며 폐쇄적인 심리적 특성 혹은 불안, 우울, 사회적 위축의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강복정 외 1999; 국립보건원, 2002). 또한 원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써 정체성의 혼란을 겪기도 하며, 버림받았다는 고립감, 또래와 다르다는데서 오는 갈등도 겪을 수 있다(정선욱, 2002).

체벌과 어른들의 훈육이 사회적 통념으로 자리 잡은 우리나라는 아직 아동은 인권을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이유로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할 인권을 가지고 있지만 예외적인 대상으로 취급되며(김세진, 2003), 아동의 인권이 아동 스스로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아닌 성인들을 통해 대행되어지고, 성인들의 입장에서 아동의 인권문제가 논의 되어져 왔다. 아동인권의 침해 뿐 아니라 인간으로서 성인과 동등하게 존중되어져야 할 아동들이 성인 혹은 또래 집단으로부터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받는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아동복지시설에서의 아동의 인권문제는 시설보호의 특성상 일반가정의 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갖고 있다. 이들은 생활상으로는 고아와 다름없으며 시설보호 이전의 가족갈등, 가족해체 경험으로 입소 전부터 정서적인 외상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시설보호 아동의 양육환경 자체가 대규모 집단생활보호이다. 집단생활을 하는 시설에서는 제한적인 공간과 획일적인 명령 체계 내에서 행동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의 요구보다 효율적인 집단 활동이 우선시 될 수밖에 없다. 즉, 다수를 위한 규칙과 획일적인 일과로 인한 개별적인 선택의 기회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아동과 함께 하는 보육사들의 과중한 업무 때문에 아동에 대한 애정적·자율적·수용적인 양육태도 보다는 권위적·통제적인 양육태도를 보임으로써 개별성에 기초한 아동인권 침해 문제가 쉽게 야기될 수 있다.

시설에서 양육되는 아동들은 시설에 오기 전부터 불안정한 가정의 환경으로 인해 상처와 피해를 입게 되고, 시설로 보내지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의견이 전적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교육을 받는 학교 현장에서 뿐 아니라 보호받고 안정된 생활을 누려야 할 시설에서조차 성폭행, 구타, 협박, 친권포기 강요, 보조금 횡령 등 시설아동의 인권이 유린되는 일들이 적잖게 발생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05). 또한 시설아동은 자신의 인권을 옹호해줄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거나, 설사

부모나 연고자가 있더라도 아동의 권익을 옹호해주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로 인해 아동복지시설에 살고 있는 아동은 생존권과 발달권의 확보, 의사표명권리,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권리구제절차의 교육과 고지, 시설 내 정보공개 등에서 불이익을 받기 쉬운 상황에 있다(이용교 외, 2006).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복지시설의 아동인권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현재 우리나라 시설아동의 아동인권 수준을 파악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리나라 아동인권에 관한 법과 정책을 이론적으로 고찰 및 국·내외 아동인권에 관한 정책적 보호가 어떠한지 살펴보고,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아동인권상황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아동복지시설 아동인권상황 개선방향에 함의를 제공하고, 실제 아동복지시설 아동인권 수준이 향상되도록 다양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제 2절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연구문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아동복지시설의 아동인권실태 및 인권의식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2.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아동인권의식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3. 아동복지시설의 물리적 환경실태는 어떠한가?

## 제 3절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아동복지시설 중 아동양육시설을 중심으로 이들 양육시설의 운영실태

및 아동인권 상황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두 개의 연구영역으로 나누어진다. 연구영역 I은 아동양육시설의 운영 실태에 관한 연구이며, 연구영역 II는 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연구이다.

구체적인 연구내용 및 방법과 관련하여, 먼저 연구영역 I에 해당하는 아동양육시설의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서 해당시설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사전에 연구의 목적 및 의의를 해당기관에 설명하였고 협조를 통하여 아동양육시설의 실태를 파악하는 관련변인들로 구성된 구조화된 조사표(물리적 환경 체크리스트)를 이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설의 환경과 관련하여 ① 기존시설 구조 및 설비 ② 생활 장비 및 물품 ③ 시설안전 및 위생관리 등의 체크문항과 정규교육을 받지 않는 아동들을 위한 교육제공여부 ④ 기타관련 문항으로 시설 내 국가인권위의 진정함 배치 및 이용방법과 교육여부로 구성하였다.

연구영역 II는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과 시설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아동의 인권실태를 살펴보았다. 연구를 위해 현재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이들 아동 및 아동의 보호자에게 연구에 대한 설명 및 연구 참여 동의를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 사용된 설문문항은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연령, 학년, 장애유무, 건강상태, 학업성적, 종교, 친구관계, 동아리 활동, 자아존중감 등), 가족특성(부모 및  형제자매관련 요인), 환경적 특성(학교, 양육시설, 지역사회, 문화적 요인 등), 아동의 인권(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및 인권 의식 등으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설문조사를 위해 가능한 한 표본의 추출은 지역과 연령대, 성별에 있어서 전국적인 모집단의 성격이 표본에 고루 반영되도록 지역별, 연령대별, 성별 비례적 할당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게 될 설문지는 아동의 인권과 관련된 국내외 각종 선행연구들에 대한 검토 및 계량화된 기존의 측정도구 검토 등 포괄적인 자료검토를 바탕으로 아동인권의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문항을 구성하였다. 설문지 구성 이후 본조사의 전단계로서 예비조사 실시 및 실무자의 자문을 통해서 이 설문문항을 수정 보완하였다. 본 조사를 위해 전문조사원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조사 시 유의 사항에 대한 지침을 교육 및 훈련을 통하여 조사원의 차이에서 발생될 체계적 오류를 방지하였다.

또한, 조사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아동과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을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아동양육시설과 아동보호치료시설의 리스트를 활용하여 전화로 시설종사자 및 아동의 심층면접 참여가 가능한지 확인하였고, 면접대상인 시설종사자와 아동은 시설에 의해 선정되었다. 심층면접은 반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면접 문항에는 아동의 4대 인권(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를 기본구성으로 하여 학교관련 인권경험, 시설의 삶의 경험과 미래의 삶 등의 내용이 추가·보완되어 구성되었다.

연구의 전 단계에 걸쳐서 아동복지전문가 및 양육시설 관련 실무자로 구성된 Focus group을 실시하였다. Focus group에서는 연구의 기획에서부터 자료의 수집, 분석 및 보고에 이르는 연구과정의 다양한 쟁점 공유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연구 전 과정에 반영됨으로써 효과적인 연구를 실시하였다.

# 제 2 장 이론적 배경

## 제 1절 시설보호아동의 개념 및 현황

시설보호란 가정에서 욕구가 제대로 충족되지 못하는 아동을 위해서 집단보호와 치료를 마련해주는 대리보호이다. 집단생활 프로그램이나 각 아동의 욕구에 따르는 특수 서비스 등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Kadushin은 시설보호사업(institutional care)을 '아동의 부모가 그 자녀를 양육할 의사나 충분한 능력이 없을 때 타인이 부모역할을 대리하여 일정한 시설에서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집단 보호함으로써 아동을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아동복지서비스의 일종' 이라 정의하였다(Kadushin, 1980).

시설보호아동이란 아동복지시설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는 만 18세 이상의 아동을 의미한다(보건복지부, 2008). 즉, 부모가 아동에 대한 역할을 수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경우 일시적으로 혹은 장기적으로 집단보호 하는 보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을 가리킨다(한근희, 2007). 시설 보호 아동의 수는 1980년을 기점으로 1990년대 중반까지 감소하였으나 1997년 IMF 이후 다시 그 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시설보호는 아동복지법에서 기능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9개의 아동복지시설[1] 로 구분하고 있으며, 시설보호현황은 <표 2-1>과 같다(김진희, 2004). 2009년 현재 아동복지시설은 총 280개소이며, 아동은 17, 586명이 보호되고 있다. 양육시설은 전국적으로 239개소, 16,239명, 자립지원시설로 12개소, 262명의 아동을 보호하고 있다. 보호치료시설은 11개소에 514명의 아동을 보호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아동양육시설에서 대부분 보호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아동복지법 제 16조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은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의 9개 시설로 구분된다.

<표 2-1> 아동복지시설 입소보호아동 현황

2009. 12. 31 현재 (단위 : 개소, 명)

| | 계 | 양육시설 | 직업훈련 | 보호치료 | 자립지원 | 일시보호 | 종합시설 |
|---|---|---|---|---|---|---|---|
| 시설 | 280 | 239 | 2 | 11 | 12 | 13 | 3 |
| 인원 | 17,586 | 16,239 | 65 | 514 | 262 | 368 | 138 |

출처 : 보건복지부통계연보(2010).

또한 요보호아동 발생유형현황을 살펴보면, <표 2-2>와 같다(변용찬・이상헌, 1998; 한미현 외, 2007). 요보호아동 발생 유형 중 기아는 2004년 481명이었으나, 2008년 202명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빈곤, 실직, 학대 등 부모의 양육 포기로 인해 발생되는 요보호 아동은 2004년 4,265명이었으나, 2008년에는 5,876명으로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이처럼 과거에는 시설에서 보호되는 아동의 경우 주로 부모의 사망이나 미혼모의 자녀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부모의 별거, 이혼 등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양육 포기가 늘어나면서 시설에 입소하는 아동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아동양육시설 및 아동보호치료시설의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정의는 아동양육시설과 아동보호치료시설로 개념 정의되며, '아동복지시설아동'이라 함은 아동양육시설과 아동보호치료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을 의미한다.

<표 2-2> 요보호아동 발생 유형

| 구분 | 발생 유형 | | | | | 계 |
|---|---|---|---|---|---|---|
| | 기아 | 미혼모 아동 | 미아 | 비행 가출 부랑아 | 빈곤 실직 학대 등 | |
| 2004 | 481 | 4,004 | 62 | 581 | 4,265 | 9,393 |
| 2005 | 429 | 2,638 | 63 | 1,413 | 4,877 | 9,420 |
| 2006 | 230 | 3,022 | 55 | 802 | 4,925 | 9,034 |
| 2007 | 305 | 2,417 | 37 | 748 | 5,354 | 8,861 |
| 2008 | 202 | 2,349 | 151 | 706 | 5,876 | 9,284 |

자료 : 보건복지부통계연보(2009)

## 제 2 절 시설보호아동의 특성

시설은 서로 다른 아동, 양육자, 직원들의 다양성 속에 서로를 맞춰 가며 집단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가정과는 다른 분위기와 생활방식에서 생활하게 되고, 이로 인해 자신의 성격을 상실하거나 개인적 발달, 정서적 신체적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등 사회·정서적으로 다양한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한다.

시설의 공동체생활에서는 규율과 명령체계가 중시되어 상대적으로 개인적인 욕구나 사생활은 경시되기 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시설보호아동은 개별화의 어려움, 개인적인 관심을 저하시키는 비인격적인 분위기, 사생활보호나 아동자신만의 공간 부족, 소속감결여 및 많은 수의 아동이나 성인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그리고 다수를 위한 규칙과 획일적인 일과로 인한 개별적인 선택기회의 감소 등의 문제를 겪게 됨에 따라, 아동의 개인차가 세심하게 고려되기 어렵다.

시설보호아동이 갖는 가족배경의 이질성과 시설보호 경험으로 인한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일반가정의 아동과 명확히 구분되는 것은 관계의 단절 및 분리이다(Leathers, 2000). 시설보호아동은 정상적인 가정의 보호 안에 있지 못하다는 상대적 박탈감 또는 일반가정의 아동보다 심리·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킬만한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과 같은 문화적 실조환경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결단력이 약할 뿐만 아니라, 심리·사회적으로 상당히 소외되거나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시설에서의 제한된 경제생활로 인해 물질적 욕구가 강할 수도 있다(석주영, 2004). 특히, 시설보호아동의 물질에 대한 과도한 욕구는 자주 문제시 되어왔는데, 과거 물자가 부족하던 시절과는 달리 충분히 지급 받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유하거나 빌려주는 것을 싫어하는 등 물건에 대한 소유욕이 강한 편이다.

시설아동에 대한 성격상의 특징에 대해서 어느 시설관계자는

"이들은 자기만 알고, 이해심이 부족하며, 기회만 있으면 책임을 회피하고, 진실한 감사의 정이 없으며, 시설에서 공급해주는 물건에 대한 애착심과 절약심이 없다. 또한, 공부에 대한 열의, 자신의 장래에 대한 포부와 도전이 없으며 타인에 대하여 배타적이고, 자기들을 돌보는 직원에 대하여도 신뢰감을 갖고 있지 않다. 또한 신중성, 사려감이 부족하며 조그만 애로에도 좌절하고 꾸중을 소화할 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였다(고영란, 2009). 시설보호아동의 이와 같은 특성은 애정결핍과 같은 심리적 차원의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학업과 관련하여, 시설보호아동은 의존적이며 학업열의, 사고력 및 신중성이 다소 부족하고, 아동을 일일이 개인적으로 감독을 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불리한 일에는 뒤로 숨고 빠지려는 회피성 등에 노출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방과 후에 아동 개인에게 맡겨진 숙제, 취미활동 등이 아동 홀로 감당하기에는 심리적, 물질적 환경(요인)이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허상환, 2003).

시설아동은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며, 인간관계를 맺는데 제한을 갖기도 한다. 시설보호아동은 부모와 헤어져 시설에서 살아야하며 종사자가 부모와 같은 세심한 대리역할을 하기에는 분담된 아동이 많으므로 관계정도가 제한적이며 아동은 정서의 불안을 체험하게 된다. 장기적인 집단생활과 규율화 등 시설의 특수한 구조적 환경 속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개방적이고 따뜻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데 문제가 있으며, 자신의 특성이나 창의력을 개발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파괴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와 행동을 나타낸다. 더불어 시설에서의 또래 집단들과의 공동생활로 인해 사고의 단순, 주의산만, 게으름, 창의력 부족 등을 나타낼 수 있다(박동열, 2008). 즉, 일반가정의 아동들은 영아기 때 단일 양육자와 주로 상호작용하다가 성장하면서 점진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확장시켜 나가게 되지만, 시설보호아동은 생의 초기에 부모와 같은 주양육자와의 친밀한 관계 맺기에 실패하거나 갑작스럽게 집단생활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부모의 양육을 받다가 시설에 입소하게 된 아동의 경우, 연령이 어리거나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함으로 인해 자신이 시설보호를 받게 된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아동은 시설보호를 받게 된 것을 하나의 처벌로 인식할 수 도 있어 죄책감을 느끼게 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현재 시설보호를 받고 있지만 부모의 방문이 일정하거나 자주 있을 경우, 아동은 심리적으로 보다 안정된 생활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의 방문이 줄어드는 경우, 아동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부모가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기로 하여 시설에서 퇴소했다가 부모의 또 다른 사정으로 다시 입소하게 되는 경우, 아동은 엄청난 박탈감이나 실망감으로 인해 많은 상처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시설에서의 다양한 상황들 때문에 시설보호아동은 자아개념, 현실감, 환경에 대한 왜곡된 해석 등에 영향을 받게 되고, 만성우울, 대인관계에서의 무능력, 혼란스럽고 불안정하며 미성숙한 자아정체감을 경험하게 되기도 한다(Costin & Rapp,1984; 노현미, 2009; 재인용).

시설아동과 일반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인지발달, 생활경험과 아동의 자아불일치

와의 관계 연구결과, 발달수준과는 무관하게 시설아동이 시설에 수용되지 않는 아동보다 더 큰 자아불일치를 보였고, 자아존중감, 성취동기, 자아상 등이 낮게 나타났다(Zigler, 1973; 박동열, 2008; 재인용).

우리나라에서도 시설아동의 정서적 결함에 대해 보고된 바가 있는데, 남자아동의 경우 정신쇠약, 정신분열증 및 경조증 척도에서 시설아동이 일반아동보다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여자아동의 경우 정신병, 정신분열증에서 시설아동이 일반아동들보다 높게 나타났다(박은선, 2000). 또한 아동들의 시설입소 원인 중 가정불화나 해체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시설에 입소하거나 성인들로부터 거부와 정서적 박탈을 경험한 아동들이 많기 때문에 성인에 대하여 공격적이고 난폭한 태도를 지니는 경우가 많다(신인숙, 1989).

살펴본 바와 같이 시설보호아동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을 알 수 있는데 Goldfarb(1945)는 시설아동들에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행동의 특징으로 1) 과잉활동과 산만 2) 애정과 관심의 끊임없는 요구 3) 피상적 관계 4) 실패나 비난에 대한 정상적인 불안이 없음, 5) 사회적 퇴행을 꼽았다.

그러나 시설생활이 아동에게 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긍정적인 특징으로는 단체생활이 건전한 경쟁심을 조성하여 일반 아동에 비해 협조적이고, 일반가정의 아동보다 활동성이 더 높으며, 규칙적인 개인습관을 형성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송규남, 2009). 오히려 원가족과의 단절 경험이 안정되고 긍정적인 시설생활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으며, 생활지도사와의 적절한 애착관계 형성을 통해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고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정선욱, 2002).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소수의 생활지도원이 많은 아동들을 양육해야 하는 시설의 현실에서 아동들에 대해 개별적인 관심을 갖거나 개인의 욕구를 해결해 주어 긍정적인 애착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 제 3 절 시설보호아동의 문제점

### 1. 시설보호아동의 문제행동

문제행동은 반사회적 행동과 비사회적 행동으로 구분 할 수 있다. 반사회적 행동은 법률, 규율, 도덕적 규범 등 질서를 파괴하여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체의 행동을 지칭하며, 비사회적 행동은 남과 어울리지 않고 공상하거나 불안해하며, 자폐증, 등교거부 등을 나타내는 행동을 말한다(신의정, 1995). 또한 아동의 행동이 사회규범으로부터 이탈되어 아동주위의 성인들에 의해 그 행동의 발생빈도나 정도가 너무 높거나 혹은 낮다고 판단될 경우 그 아동은 문제행동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이현정, 1997).

시설보호 아동의 경우, 사회적, 경제적 이유로 인해 부모와 헤어져 생활해야하고, 부모와의 분리과정에서 깊은 심리적 상처를 입기 때문에 행동문제에 있어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허상환, 2003; 박진희, 2000). 특히, 아동기의 문제행동은 이후 청소년기 및 성인기의 적응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으로 밝혀지고 있어 시설보호아동의 문제행동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고 하겠다(김진희, 2004).

한인영(1997)은 문제행동들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7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① 대인관계에서 폭력, 비사교적 행동, 교사 또는 성인의 권위에 대항하는 등의 행동상의 문제를 보이는 학생
② 부모의 학대나 방임 등의 아동양육에 문제를 보이는 학생
③ 장기결석, 등교거부, 잦은 지각, 무단조퇴, 수업불참, 복장불량 등의 학교규칙을 위반하는 학생
④ 우울, 소외, 공포, 불안, 자살기도 등의 심리, 정서적 문제를 보이는 학생
⑤ 결손가정, 이혼, 재혼, 빈곤, 입양, 소년소녀가장 등의 가정 환경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학생
⑥ 지적능력은 있으나 학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학습부진을 보이는 학생
⑦ 폭력, 가출, 본드흡입, 불량써클가입, 임신 등의 비행행위나 범죄행위를 하는 학생

외국문헌의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시설보호아동들에게서 여러 가지 문제행동이 더 높게 관찰되며 이는 성인이 된 이후의 삶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John Bowlby는 유년기에 5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을 시설에서 보낸 아동과 같은 기간을 가정(80%는 바람직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란 집단을 비교해본 결과, 가정에서 자란 사람의 사회부적응율은 18%로 시설에서 자란 사람의 부적응율 34.5%의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며(고영란, 2009; 재인용), 미국의 경우 위탁보호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연구에서 대다수가 공공부조에 편입되었고, 조기결혼, 불안정한 결혼생활과 불안정한 직업생활 등으로 인해 사회주변부로 편입하게 된다고 한다(Barth, 1986; 김진희, 2004; 재인용). 특히, 원가족 해체로 인한 시설보호의 경험이 노숙자에게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Shinn, et, al., 1990).

또한 독일의 장기 시설집단보호에서 자라는 9세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사회적, 행동적, 학교적응을 면접, 관찰, 설문조사 등을 통해 살펴본 연구에 의하면, 수업시간의 경우 집단보호 아동들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 부주의하고 수업활동에 덜 참여하고 보다 수동적이며 비생산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경향을 보였다. 놀이를 관찰한 결과에서도, 집단보호 아동들이 비시설 아동과는 상호작용을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설남아와 여아 모두 또래들과 화목, 신뢰하는 관계를 덜 보이고 교사들로부터 주목을 더 많이 받으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Vorria, et al., 1998).

한편, 국내에서 시설보호 아동의 행동문제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많지 않으나, 시설보호 아동은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가출경험, 장기결석, 흡연경험, 자살충동의 경험이 유의미하게 많아 가정, 학교, 개인생활에서의 부적응 행동이 관찰되었고(신소희, 1984; 이순형 외, 2002), 열등감, 경쟁심 약화, 무책임, 책임회피, 공격성, 의타심, 성취동기부족 등의 특성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신현덕, 1986).

서울 SOS 어린이마을에서도 관리대상자를 몇 명 정하느냐에 따라 비율이 높아질 수 있겠지만 126명 아동 중 치료를 받거나 관리대상자수는 품행장애에서 36명인 28%에 가까운 수치를 보였다(허상환, 2003).

또한, 노혜련 등(1997)이 서울, 인천, 경기지역에 소재한 육아시설과 소규모 비인가 시설에서 생활하는 12-17세 아동과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시설아동의 심리적 상태를 측정한 결과, 시설아동은 소극적이고 위축된 행동 등의 내재화된 문제보다

공격성과 비행 등으로 나타나는 외현화된 문제행동을 더 많이 모이며 미성숙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문적 정신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행동문제를 보이는 아동도 시설아동 4명 가운데 1명꼴로 나타나 시설아동의 행동문제의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반아동, 청소년들 가운데 전문적인 치료를 요하는 경우는 2%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시설아동, 청소년이 지닌 문제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박동열, 2008).

시설보호아동은 부모와 가족이라는 환경으로부터 거부와 상실을 경험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부득이한 상황에서 타의에 의해 입소하게 되므로 보호환경에 대한 적응이 미숙하고 일반아동에 비해 다양한 신체적, 심리적 문제 및 사회적 부적응을 초래한다(노혜련, 1997). 이러한 시설보호 아동이 나타내는 문제행동특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크게 내재화 행동과 외현화 행동에 관한 것으로 나누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 시설보호아동의 내재화문제

시설보호 아동의 내재화 행동에 관한 관련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설보호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관련하여 시설보호 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 높은 우울성향과 낮은 학교적응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된다. 주정일(1972)은 시설보호아동이 일반아동보다 정서적 안정감이 떨어지며, 무감각하다고 하였다. 고옥경(2004)은 시설보호아동이 불안정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만성적인 공허함과 부적절한 분노와 전반적인 피해의식을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 시설보호아동들은 일반 아동에 비해 주의집중문제와 정서적 불안정, 사회적 미성숙, 위축행동 전반에 걸쳐 부적응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유광수, 2000).

일반적으로 시설아동의 내재화 문제는 문헌에서 자주 지적되어왔다. 시설아동의 내재화된 반응으로 공통적으로 거론되는 것은 우울, 불안 등을 들 수 있다. 시설아동의 경우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서 내재화된 문제 분노, 우울, 불안 등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유미숙, 1980). 또한 안정성, 사려성, 사회성, 객관성, 적응성, 명랑성이 부족한 반면, 충동성, 지배성이 우월하며 심기증, 편집증, 정신쇠약, 정신분열 등의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홍수연, 2006).

장병림(1982)의 연구에 따르면, 시설보호아동들은 친밀한 접촉을 두려워하고 정서

적으로 공허한 생활을 좋아하는 것 같은 심리현상을 나타내며,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초조하며 생활이 어수선하며, 주의가 산만한 행동이 많고, 성인에 대하여 공격적이고 난폭한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권위를 원망하고 사회규범에 대해 반항적이며 비행이 많고, 특히 신경증적 경향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김기환(1996)은 시설아동들의 공통적인 심리, 정서적 특성으로 분리로 인한 분노와 불안의 감정, 대상상실로 인한 슬픔, 긍정적 정체감의 결핍, 자아존중감의 부족, 위기감을 정상이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한다.

고동좌(1992)는 이러한 시설보호아동의 성격적 특성들이 환경적 영향에 의하여 크게 좌우된다고 보고, 시설환경에 가정적 기능을 대행해 줄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2) 시설보호아동의 외현화 문제

시설보호아동과 일반가정 아동들의 성격특성과 생활적응 수준을 비교한 연구에서 시설보호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가출경험이 11배, 장기결석과 흡연 3배 높으며, 충동적 행동 등의 부적응 행동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시설보호 아동은 열등감, 경쟁심 약화, 무책임, 책임회피, 의타심, 성취동기부족 등의 특성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신소희, 1984). 또한 일반 청소년에 비해 시설청소년은 언어적 공격, 대인공격, 대물공격행동, 분노표출에서 일반 청소년보다 시설청소년의 공격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유안진 외, 2002), 정해수(1999)와 양숙미(1994)는 시설청소년이 행동적 측면에서 공격적 특성, 소극적 특성(성취동기부족), 물품낭비, 지나친 짜증 등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노혜련(1997)은 시설보호아동이 소극적이고 위축된 행동 등의 내재화된 문제행동보다 공격성과 비행행동 등으로 나타나는 외현화된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미성숙경향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시설보호아동의 공격성 문제는 모성적 양육의 상실에서 기인한다고 해석하고, 모성적 양육의 상실을 경험한 아동들의 자아와 초자아가 제대로 발달하지 않는다는 점과 그들의 행동이 충동적이고 통제가 안 되며 즉흥적이어서 장기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어렵다는 주장들이 있다. 아동들의 시설입소 원인 중 가정불화나 해체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시설에 입소하거나 성인들로부터 거부와 정서적 박탈을 경험한 아동들이 많기 때문에 공격적이고 과격한 행동을 표출하는 등의 문제 성향을 나타

낸다는 것이다(오영현, 2009).

일반적으로 시설아동에게 자주 지적된 가정의 붕괴로 인해 시설에 온 아동은 부모로부터 공격행동을 학습하여 공격행동 및 비행을 할 가능성이 높다. 초기 아동기에 비롯된 공격성은 일단 습득되면 바꾸기 어려운데, 특히 아동의 공격성은 아동기 이후 청소년기, 성인기까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공격성의 욕구좌절이론에 따르면 공격적인 이들은 다양한 욕구충족이 요구될 때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욕구좌절이 생기면 공격적인 행동으로 표현하며 결국 비행행동에 이르게 된다. 실제로 신체학대를 많이 경험한 시설 아동일수록 공격성과 과잉행동이 높고 신체체벌을 많이 당할수록 비행경험이 더 많다는 연구결과들을 살펴볼 수 있다(박재복, 2008). 이와 같은 시설보호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해 한정원(1990)은 시설보호아동은 욕구가 좌절될 때 일반아동에 비해 욕구좌절의 원인을 외부환경 탓으로 돌리고 타인에게 문제해결을 기대하는 경향에 의해, 공격적인 특성을 갖는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시설아동의 외현적인 문제는 퇴소이후 경제관념이 희박해지고 충분한 정서적인 욕구발표의 기회상실로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성장하게 될 위험을 가지고 있다(이명홍, 1970).

## 2. 시설보호아동의 학교부적응문제

시설보호아동의 학교부적응이란, 아동이 학교사회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행동들로 학습이 부진하고 자신감이 부족하여 아동에게 주어지는 학급활동에 적절히 참여하지 못하거나, 자기정체성에 대한 혼란으로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 자아개념을 성립하여 소외, 불안정, 우울증, 좌절감, 열등감, 공격성, 퇴행 등의 문제를 보이며, 학교사회의 질서, 가치, 규범과 조화를 이루지 못해, 교우나 교사와의 대인관계가 부조화를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시설보호아동 역시 학교는 아동의 인지적 발달에 관여하는 중요한 체계일 뿐만 아니라 성격이나 자아개념의 형성 측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학업성취정도에 따라서 아동의 자부심이 좌우되기도 하고, 친구와 친밀감을 경험하느냐, 친구들로부터 소외감을 경험하느냐의 여부는 아동의 자아형성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허상환, 2003). 시설아동의 경우 시설에서 부모 없이 생활한다는 이유로 친구들로부터 따돌림과 학교폭력을 당하기 쉽고, 정서가 불안하여 학습능력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부모의 사망, 학대, 이혼, 가출, 빈곤으로 인하여 부모와 떨어져서 생활하게 된 아동의 경우, 부모에 대한 배신감, 상처 등을 경험하게 된다. 아동들은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은 잠재적으로 갖고 있어 정서장애뿐만 아니라 행동장애로 이어지며 부모가 있는 학교급우들과의 상대비교에 따른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기 쉽다.

왜냐하면 그들은 집단생활의 획일적인 체계 내에서 행동해야 하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만 식사할 수 있고, 하기 싫은 것도 해야 하는 등, 개인의 욕구보다 효율적인 집단 활동이 우선시되기도 한다. 또 그들의 의견이 쉽게 무시되고 사생활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불안으로 인한 과격한 행동이나 언어가 나타나게 되고, 학교로 돌아갔을 때 사회성 감소와 반항적 행동의 표출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 이로 인하여 학업부진과 학교급우들과의 관계불화를 초래하게 되어 친밀한 교우관계의 형성이 어렵게 된다(박순영, 2009).

시설보호아동의 학교부적응 행동특성을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부진현상을 들 수 있다. Bowlby(1965)는 시설아동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시설에서 자라나는 아동들은 언어발달 및 학업성적이 부진하다고 하였으며 실제로 시설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 자신의 학업을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고 학원 및 과외학습 등의 학교보충 교육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였다. 또한 학습에 필요한 참고서, 학용품, 준비물 등의 미비로 인한 학습 의욕이 저하되며 시설 내에서 학습 환경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과 아동 개인의 주의산만, 정서적 불안정 등으로 인해, 학습동기가 부족하거나 학습습관이 잘못 형성됨으로 낮은 학업성취율, 학습거부 등의 부적응 현상이 나타난다.

둘째, 정서적·사회적 부적응 현상을 들 수 있다. 시설에서 보호되는 영유아 및 아동들은 모성결핍과 직업들의 잦은 이직으로 인해 정서적 장애를 겪으며 소극적이며 수동적인 행동이 되기 쉽다. Bowlby(1965)는 모성상실로 인해 갖게 되는 아동들의 특징 중 정상적인 정서적 반응이 부족하여 사람에 대한 관심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였으며 친밀감이 결여되어 있어 자신을 도와주려는 사람에게 오히려 불쾌감을 준다고 하였다. 즉, 시설아동은 충분한 정서적인 욕구발로의 상실로 인해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성장하게 되는 경향성을 갖게 될 수 있다.

이처럼 정서적인 결함은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대인관계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므로 친구들을 대할 때,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언행을 하거나, 열등의식을 느끼거나, 친구들의 낙인으로 인하여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따돌림을 받게 된

다. 그리고 자신이 고민한 문제를 솔직하게 털어놓고 대화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무엇보다도 자신이 친구들과는 다른 환경에서 생활하며 자신을 보호하고 양육시키는 부모와 가정이 없다는 비교의식을 갖게 됨으로 타인을 배척하게 되고 주위의 편견 등으로 인해 스스로 소외당하게 된다.

또한, 이들 시설보호아동은 성인들의 거부와 정서적 박탈을 경험함으로 성인들에게 또한 학교에서는 교사들에게 공격적이고 난폭하며 반항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다.

셋째, 학교거부성향 또는 비행현상을 보인다. 시설보호아동들은 학교에 가기 싫어 지각을 하거나 결석을 하며, 비행행동으로는 군것질, 장난감 등을 사고 싶지만 용돈의 제한성으로 인해 도벽현상을 일으키고, 폭력, 집단행동, 학교물건이나 학용품을 파괴하는 등의 부적응현상을 나타낸다.

살펴본바와 같이 특수한 환경에서 성장하여 각종 적응상의 어려움에 노출될 수 있는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학교적응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지원이 요구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3. 시설보호아동의 사회적 능력문제

오랜 기간 동안 결핍된 시설에서 양육된 아동은 시설에서 거주한 아동들은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이나 타인과의 정서적 유대감을 갖기가 어렵고, 일반 가정아동에 비해 지적활동, 정서적 안정감, 사회적 적응 면이 뒤떨어진다(이기준, 1975; 연진영, 1987). 또한 이혼 등의 가정해체로 인해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입은 아동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파괴적이라는 특징을 지닐 수 있으며 사람에 대해 신뢰감이 없기도 한데 이는 지속적인 관계보다는 거쳐 가는 관계를 경험하기 때문이다. 또한 상사와 동료들과 자주 불화를 초래하고, 경제적 관념이 부족하며, 공동생활의 적응력이 부족하여 직장을 자주 옮기는 등 가정 출신의 아동들에 비하여 근면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이연형, 1996).

## 제 4절 아동과 인권

모든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갈 인권이 있다. 즉 인권은 인류사회의 당면과제이며, 보편적 가치로서 존중받고 실현되어야 한다. 이는 성별, 나이, 종교, 의견,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인종, 피부색, 가족상황 등 어떠한 이유로도 경시되거나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존엄한 가치이며 인권이다. 이는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아동이나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도 보편적으로 적용된다.

인권은 이와 같은 보편성과 함께, 상호의존적이며, 불가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특히 여기에서는 인권 일부의 구현으로는 보장될 수 없고, 전체가 조화롭게 실현될 때만 완전히 보장된다고 하는 인권의 불가분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권은 고정불변의 개념이 아니다. 인권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하였으며, 경제・사회・문화의 발전 속에서 발전해 왔다.

이와 같은 인권의 개념이 아동이라는 개별 대상으로 구체화될 때 아동인권이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따라서 아동의 인권은 아동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존재(인격체)로서 생존과 발달에 필요한 환경을 제공받고, 인간다운 삶을 침해 받았을 때는 적절한 보호를 받으며, 자신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현대적 인권발전상에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아동의 인권을 성인의 인권과 마찬가지로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인정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는다(이용교 외, 2010). 아동은 아동의 현재 지위나 아동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등으로 인해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다(안동현, 1997). 또한 아동의 인권은 아동을 소유물, 또는 보호의 객체로만 바라보는 전통적인 가치관과 충돌하면서 인권실현에 있어서 당해 아동과 아동을 보호하는 측의 갈등과 오해는 아동인권 실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아동을 무능하고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부정적인 인식은 권위적 간섭주의로 이어져, 그 결과 아동은 자신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 어떠한 결정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김정래, 1999). 특히 아동의 인권에 대한 오해는 아동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인권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아동에게 인권을 인정하면 제멋대로 행동할 것이다', '어른들의 인권도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데 아동의 인권만 보장될 수 없다.',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인권을 줄 수 없다' 등의 이유로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에 주저하고 있다(김형욱, 2009). 따라서 아

동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전제되어야 한다.

아동의 인권은 정신적·신체적·물질적 측면에서 보호받는 인권과 함께 자신과 관련한 사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권으로 나눠진다(안경환, 2007). 또한 아동의 인권은 아동이 아동기라는 발달단계에 있기 때문에 보장받아야 하는 수동적 인권과 아동이 인간이기 때문에 보장받아야 하는 능동적 인권으로도 나눠진다(이혜원, 2006).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채택되기 이전의 아동의 인권은 생명을 유지하고(생존), 발달하고 보호받아야만 하는 존재로서, 아동의 인권도 성인사회에서 부여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협약의 채택은 아동을 인권의 객체가 아닌, 인권행사의 주체로서 자신과 관련한 삶에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고 참여하는 것도 정당한 인권으로서 인정하고 있다. 또한 협약은 아동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를 이끌었다. 아동을 어른이나 부모에게 예속된 존재가 아니라 독립된 인격을 가진 '인권의 주체'로 본 것이다(이재연 외, 2009).

협약은 아동이 인간답게 생존하고, 발달하고, 적절한 보호를 받으며, 자신과 관련한 일에 대하여 정당하게 의견이 존중받고 참여할 수 있는 인권을 국제법규범으로 명문화하였다. 따라서 협약은 이전의 세계인권선언, 아동인권선언 등과는 차별된다. 선언은 이행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은 약속에 불과하지만, 협약은 국제법규범으로 비준한 당사국에 규정된 인권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김형욱, 2010). 협약을 비준한 국가는 자국의 전통과 문화, 관습으로 인한 아동인권 침해 상황을 즉시 개선하여야 하며, 필요한 입법적, 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아동을 포함한 아동관련 종사자 등 모든 국민이 협약을 알고,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홍보 및 교육활동도 포함된다.

협약은 모든 아동의 삶이 차별받지 않고(제2조), 생명·생존 및 발달에 필요한 적절한 환경을 제공받고(제6조), 아동에 대한 모든 행위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할 것과(제3조), 이를 위해 아동의 의견을 정당히 존중되고 참여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제12조)을 인권보장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협약에서 제시되어 있는 인권내용은 반드시 위의 네 가지 원칙이 적용되는 가운데 이행되어야 한다. 특히 협약의 핵심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으로, 모든 인권의 보장에 있어서는 아동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이재연, 2007).

유니세프는 협약에서 제시된 아동인권의 내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이해

시키기 위해 권리내용을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로 구분하고 있으나, 개별 인권에 대한 영역별 분류는 연구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중요한 것은 개별 인권수준이 향상되었다고 해서 아동의 인권이 실현된 것은 아니다. 아동의 현재 삶과 관련하여 모든 인권이 조화롭게 보장되어 나아갈 때 아동의 인권은 더욱 신장될 것이다.

<표2-3>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권리

| 영역 | 인권 내용 |
|---|---|
| 생존권 | 생명・생존・발달의 확보(6), 이름・국적취득(7), 건강・의료에의 권리(24),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에 대한 정기적 심사(25), 사회보장에의 권리(26), 생활수준에의 권리(27) |
| 발달권 | 부모를 알 권리(7), 자아정체성의 확보(8), 부모로부터 분리금지 및 분리를 위한 절차(9), 가족재회를 위한 출입국의 자유(10), 국외불법 이송방지(11), 부모의 일차적 양육책임과 국가의 지원(18), 대안양육(20), 양자입양(21), 교육에의 권리(28), 교육의 목적(29), 휴식・여가・놀이 및 문화적 예술적 생활에의 참여(31) |
| 보호권 | 학대・방임・착취로부터의 보호(19), 난민아동의 보호와 원조(22), 장애아동의 권리(23), 소수자・원주민 아동의 권리(30), 경제적 착취・유해노동으로부터의 보호(32), 마약・향정신약으로부터의 보호(33), 성적착취・학대로부터의 보호(34), 유괴・매매・매춘의 방지(35), 기타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의 보호(36), 자유를 빼앗긴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37), 무력분쟁에 의한 아동의 보호(38), 희생된 아동의 심신회복 및 복귀(39), 소년사법에 관한 인권(40) |
| 참여권 | 의견표명권(12), 표현 및 정보의 자유(13), 사상・양심・종교의 자유(14), 결사・집회의 자유(15), 사생활・침해 금지(16), 정보접근권(17조) |

* ( )는 협약의 조항을 나타낸 것임.

## 제 5절 아동복지시설의 아동인권

아동의 인권은 그들이 처한 상황과 관계없이 존중받고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모든 아동은 그들이 처한 상황, 연령이나 성별,

종교 등 어떠한 조건과도 관계없이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모든 인권을 조화롭게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아동이라는 이유로 시민적 인권과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아동복지시설에서의 아동이 인권적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은 협약 비준 후, 아동과 관련한 제도나 정책이 협약의 규정에 근거해서 개선되어 나가고 있는지 검토하는 작업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민간단체가 유엔아동인권위원회에 제출한 1차 민간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아동복지시설에서는 성폭행, 구타, 협박, 친권포기 강요, 보조금 횡령 등 시설 아동의 인권이 유린되는 일들이 적잖게 발생하고 있다. 2차 민간보고서에 의하면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시설에 입소한 아동의 경우는 국가의 관리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감독이 미치지 않는 미인가 시설에 수용되는 경우도 있음을 보고하면서, 아동에 대한 대안적 보호조치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할 것과 시설위주의 보호를 탈피할 것, 공공 전담인력을 확충하는 등 복지서비스를 개선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또한 한국의 입소시설은 인권의 사각지대라 불리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하고 운영하는 시설이 거의 없고, 대개가 사회복지법인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지원이 이들 법인에게 집중되는 반면에 이들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시설 안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를 예방, 감시하지 못하는 것이다(김은숙 외, 2004; 이용교, 2005).

아동복지시설에서의 아동인권 보장은 협약 당사국에 부여된 의무이행 사항이지만, 협약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설치된 아동인권위원회(제43조)는 2003년 우리 정부에게 '대안양육 체계의 개발이 여전히 제한적이며, 사적양육기관이 정부의 규제나 정기적인 감사를 받고 있지 않음'을 우려하면서, '모든 공적·사적 시설에 입소한 아동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를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다(위원회 2차권고, 40, 41).

아동권리협약은 일시적 또는 항구적으로 가족환경을 박탈당하거나 가족환경에 있는 것이 스스로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허용될 수 없는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부여받을 인권이 있으며,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러한 아동을 위한 대체적 보호를 확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20조). 동조는 가족환경을 박탈당한 아동이 국가에 의해 대안양육을 통한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것을 강

조하고 있으며, 대안양육으로는 수양부모제도, 입양제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보호가 포함된다(喜多明人外, 2009;138). 국가는 위와 같이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관리, 보호 또는 치료의 목적으로 양육지정 조치된 아동이, 제공되는 치료 및 양육지정과 관련된 여타 모든 사정을 정기적으로 심사하여한다(제25조). 시설보호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고, 국가는 시설에서 아동이 가정적 환경에서 인권을 보장받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해야 한다.

아동복지시설의 양육에 있어 아동보호, 특히 입소시설의 시설아동에 대한 인권을 여타 일반 아동의 인권 처우와는 다른 시설보호 측면에서의 인권내용을 아동권리협약의 인권 내용에 비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노자와 마사꼬(1995)의 연구에 의하면,

첫째, 아동을 인권의 주체로 인식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성인과 아동의 관계에 있어서, 또한 성인이 제공하는 보호내용에 있어서 최종적인 자기결정권을 가지는 인간이라는 것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종사자들이 인정해야 한다.

둘째, 아동 자신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고, 아동도 자신에 관한 결정에는 참가할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아동의 의견을 듣고 존중해야 한다. 이것은 특히 시설입소의 결정 및 보호내용의 설정, 시설보호변경의 과정에서 중요하다. 왜 시설에 입소되어야 하는가, 왜 이 시설이어야 하는가, 얼마정도 시설에 머물러야 하는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등에 대하여 아동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그 의견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시설 안에서 아동만의 자주적인 집회와 조직화를 인정해야 하며, 자유로운 의사표명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양육보호의 내용과 시설의 상태에 대하여 다양한 요구와 비판이 아동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동보호가 진정 아동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고, 아동 측으로부터의 시설평가를 중시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넷째, 아동의 사생활이 충분히 지켜지는 것이 필요하다. 시설에 입소하기 전까지 지니고 있던 소유물, 귀중한 물건의 보관, 애완동물의 인정 등 개인 사물함의 설치 및 개인방과 점유공간의 보장이 필요하며, 아울러 이를 위한 환경정비도 필요하다.

다섯째, 시설아동은 정기적으로 보호내용의 재검토를 받을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것은 제 3기관에 의한 검토일 필요가 있다.

여섯째, 보호아동이 보호내용 등에서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아동자신이 호소할 수 있는 제 3기관이 설치되어야 한다. 그 기관에 대한 정보가 입소 시 충분히 아동에

게 알려져서 불이익을 받는 상황에서 제 3기관에 연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곱째, 입소시설은 가정환경을 빼앗긴 아동의 심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그 치료를 위한 보호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규칙적이고 여유 있는 생활, 애정이 깃든 충분한 양의 식사, 청결한 침구와 안심하고 푹 잘 수 있는 환경, 개인적 소지품 및 개인 책상의 확보가능한 공간의 보장, 그리고 동일한 환경에 있는 적절한 크기의 아동집단의 존재, 아동의 부모-자녀관계의 회복에의 노력을 포함하여, 아동의 기분과 생활을 지원하고 배려하는 지도원, 보모의 존재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건을 바탕으로 아동 최선의 이익을 추구하는 처우를 마련하고, 아동이 생활주체임을 인정하며, 아동이 안정된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시설 보호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아동복지시설의 아동의 인권과 관련한 목록은 아동인권지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아동인권학회의 한국의 아동지표(200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인권지표(2001, 2006),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아동인권지표(2003)가 개발되었으나 이들 지표는 국가수준의 아동인권 현황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의 아동의 인권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최근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 평가 사업은 시설에서 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한 지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아동의 인권과 관련한 물리적 환경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지표가 개발되어 있다(보건복지부, 2010).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안과 관련해서는, 학대, 구타, 성추행 등 인권침해 사항을 아동・후원자・자원봉사자 등이 직접 시설장이나 직원에게 호소할 공식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의 여부, 시설에서는 이러한 경로를 적극 활용하도록 알리고 있는지의 여부이다.

아동인권정보제공과 관련해서는 아동과 가족・연고자에게 자신의 인권에 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고 있는지의 여부, 아동과 가족・연고자들이 자신의 인권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의 여부이다.

비밀보장과 관련해서는 개별 아동의 정보나 기록은 직접적인 담당자만이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아동의 개인적 정보나 기록을 분리하여 관리・보관하고 있는지의 여부, '열람제한'과 '개인기록보관'에 대한 내용이 시설의 운영규정 또는 종사자의 복무규정 등에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이다.

체벌과 관련해서는 아동에 대한 체벌이 허용되고 있지 않는지의 여부, 시설 직원

으로부터 아동체벌금지를 위한 서약서를 받고 있는지의 여부, 아동 체벌 시 체벌정도에 따른 체벌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는지의 여부이다.

위와 같은 아동복지시설에서의 아동인권 상황을 인권적인 관점에서 보다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시설인권평가지표'가 개발되었다. 동 지표는 아동복지시설이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아동인권보장체계로 영역을 구분하였다. 아동의 생존권에는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 보건, 안전, 보호권에는 아동입소시의 준비, 시설에서 아동보호, 체벌과 문제행동, 특별한 아동에 대한 보호, 부모와의 관계 증진, 귀가 퇴소와 사후지도, 발달권에는 교육받을 인권, 풍부한 인간관계, 문화적 인권, 참여권에는 의사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인권, 금전에 대한 통제권, 시설운영에 참여할 인권, 지역사회와의 관계, 아동인권보장체계는 아동인권옹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인권옹호 지침과 불만처리, 인권교육, 직원의 인권상황, 투명한 시설운영으로 지표를 설정하였다.

<표 2-4> 아동복지시설 인권평가지표

| 관심영역 | | 인권평가지표 |
|---|---|---|
| 생존권 | 식생활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 영양사나 조리사 근무, 발달단계에 맞는 식단, 식사방식, 식사시간 후 식사방식, 간식 방식, 외식의 기회, 식당에서 직원의 위생복 착용, 식당의 주요설비 |
| | 의생활 | 옷 구입방식, 옷장과 사물함 |
| | 주거환경 | 입소시설의 선택, 의사와 무관한 전원, 숙사의 형태와 구조, 숙소의 선택권, 아동의 책상, 기상시간의 유연성, 취침시간의 유연성 |
| | 보건 |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안정실, 정기적인 건강검진, 개인별 건강관리카드, 아동의 보건교육과 성교육, 직원의 보건교육과 성교육 |
| | 안전 | 화재대비시설, 시설물 안전관리 종합계획, 아동의 교통안전교육, 약물오남용교육, 재난대비교육과 훈련,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한 노력 |
| 보호권 | 아동입소시의 준비 | 입소 전 관계기관과의 협조, 입소 전 시설에서 준비, 입소초기의 전문적 대처 |
| | 시설에서 아동보호 | 영유아의 욕구파악, 시설생활 만족도 조사와 욕구조사, 학교에 직원방문, 생일잔치, 개별적 양육계획, 생활지도원의 근무조건, 생활지도원의 숙소 |
| | 체벌과 문제행동 | 직원의 체벌에 대한 처리, 아동간의 신체적 폭력에 대한 처리, 아동간의 성폭력 방지대책, 직원의 아동성폭력 방지대책, 시설병증후군 방지대책 |

| | | |
|---|---|---|
| | 특별한 아동 보호 | 피학대아동에 대한 보호, 소수집단 아동에 대한 보호, 왕따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비행아동에 대한 전문가 조력 |
| | 부모와의 관계증진 | 부모와의 관계형성과 가정 복귀, 시설아동의 부모 모임<br>유사 부모-자녀관계의 경험 |
| | 귀가, 퇴소와 사후지도 | 아동의 귀가준비, 퇴소 후 자립에 대한 준비, 퇴소 후 사후지도, 사회적 편견을 줄이기 위한 활동, 퇴소 후 사후지도를 위한 정부대책 |
| 발달권 | 교육받을 인권 | 종합적인 교육계획, 학습장애와 행동장애아 지도, 과외학습지도, 동아리활동과 특별활동, 학교 진학 시에 본인 의사 존중<br>대학 진학 시 지원, 사회교육의 경험지원 |
| | 풍부한 인간관계 | 교우관계나 대인관계 지도<br>아동과 직원 간 관계 개선 노력 |
| | 문화적 인권 | 방과후 텔레비전 시청, 주말이나 방학 시 여가생활, 발달단계에 맞는 문화접촉, 인터넷을 통한 정보접근 |
| 참여권 | 개인생활 의사결정 | 머리모양의 선택, 종교생활의 선택<br>외출의 자유, 후원자와의 교류 |
| | 사생활의 인권 | 통신상의 사생활 보장, 전화사용 자유<br>홍보물 사진사용 시 사전 동의, 방문객으로부터 사생활 보호 |
| | 용동관리와 아르바이트 | 저축이나 후원금의 관리, 아르바이트의 선택<br>개인용품의 구입, 기초화장품의 구입과 사용 |
| | 시설운영에의 참여 | 생활수칙의 제정방법, 행사 참석에서 아동의 의사반영, 홈페이지나 카페에 의견게시, 자치회의 조직, 운영위원회의 아동참여 |
| | 지역사회와 관계형성 | 자원봉사자와 단체의 활동<br>지역사회와 교류활동 |
| 아동 인권 보장 체계 | 인권옹호 제도적 장치 | 이사회나 운영위원회에 인권전문가 유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방법 안내, 진정함의 설치와 운영 |
| | 인권옹호지침과 고충처리 | 인권보호와 신장을 위한 지침, 인권 침해 시 구체적인 처리 규정, 고충처리 과정, 인권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br>생활복지사의 근무 |
| | 인권교육 | 아동에 대한 아동권리협약의 교육, 직원에 대한 아동권리협약의 교육, 아동과 부모에게 인권을 문서로 제시, 직원 채용 시 인권에 대한 인식확인 |
| | 시설의 투명성 등 | 회계와 운영 정보공개, 사회복지사인 직원의 유무, 외부로부터 전문적인 슈퍼비전의 유무, 아동인권신장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 아동인권신장을 위한 국가의 대책, 인권평가지표에 대한 구체적 의견 |

아동복지시설 인권평가지표를 통해서 볼 때, 아동복지시설 아동은 생존권, 보호받을 인권, 발달권은 상당히 보장되고 있지만, 아동의 참여권은 다소 낮은 수준이고, 아동복지시설의 아동인권보장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아동복지시설 간에도 아동의 인권수준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대체로 국가의 지원을 많이 받은 아동양육시설은 모든 인권에서 양호한 수준이었지만, 대규모 아동을 양육한 관계로 소규모 시설에 비교하여 개별화된 처우를 하지 못했다. 아동양육시설은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게 의식주 등 기초생활을 잘 보장해주지만, 사생활의 보장, 개인의 욕구에 따른 서비스 등은 미흡했다. 반면에 소규모 아동복지시설의 아동은 사생활을 좀 더 보장받고 개별적인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국가의 재정지원이 낮은 탓인지 공공 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했다. 일시보호시설의 아동은 대체로 아동양육시설과 유사한 수준이었고, 아동보호치료시설의 아동은 아동양육시설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이용교 외, 2005).

아동복지시설 지표는 시설의 특성에 따라 구체적인 운영지침으로 개발될 수 있으며, 시설운영자와 종사자,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에서의 아동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이 제시되어 있다. 인권평가지표는 다양한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의 인권을 구체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아동인권상황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시설특성에 따른 평가지표 개발과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 제3장 아동인권에 관한 법과 정책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고 있는 많은 국가(193개국)는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자국 내의 법률을 협약과 일치시켜 나가는 등 다양한 입법조치를 취하고 이를 근거로 한 여러 정책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4조는 당사국에 대하여 '협약에서 인정된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나아가 당사국의 이행의무가 입법조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협력의 테두리 내에서…' 실시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아동인권보장을 위한 국내법과 정책 및 제도가 협약의 정신과 규정에 맞게 정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아동의 시설보호와 관련해 살펴보면, 유엔아동권리협약 제4조의 이행의무에 근거하여, 협약 제20조 '가정환경을 박탈당한 아동'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보호에 있어서는 국내법에 따라 아동을 위한 대체적 보호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는 위탁양육, 입양, 필요에 따라 양육기관에 의한 보호를 포함한다. 아동양육은 계속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아동의 인종적, 종교적, 문화적 및 언어적 배경에 대하여 정당한 고려가 베풀어져야 한다. 또한 아동이 가정환경이 아닌 시설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처해 있다하더라도 모든 아동은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권을 향유하고 행사할 수 있다.

아동권리협약 제20조는 아동이 가족 등의 문제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하게 되었을 경우에 국가로부터 직접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을 인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때의 보호란, 가정적인 환경이 제공되는 대안양육에 의해 아동이 보호되고, 보호에 필요한 적절한 지원이 시설아동에게 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현재의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서비스 체계 내에서 가정적 환경제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함을 강조한다.

시설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한 입법조치, 정책 및 제도는 협약이행 의무를 바탕으로 시설아동의 가정적 환경에서의 양육보장,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일상생활과 관련한 처우개선, 아동의 인권상황 개선의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독일, 오스트리아, 핀란드 등의 유럽국가와 브라질, 파라과이, 에콰도르 등의 남미국가, 그

리고 네팔, 몽고 등 일부 아시아 국가들이 헌법개정을 통해 아동의 인권에 관한 규정을 포함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브라질, 체코 등의 국가는 포괄적인 입법조치[2]를 통해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고 실천해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아동시설에 대한 감독강화는 물론, 아동이 인권침해 상황에 스스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확보 등이 필요하다.

본 장에서는 주요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시설보호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한 관련법 및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 제1절 외국의 시설아동의 인권보장에 관한 관련법과 정책

### 1. 미국

미국은 적절한 보호와 양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을 보호가 필요한 아동으로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학대나 방임, 착취와 폭력 등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 입양가정이 필요한 아동, 소년범죄를 저질러 보호가 필요한 아동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중에서도 아동보호체계의 주요 대상은 학대와 방임으로 인한 보호아동이며, 이 때 학대와 방임은 "사망, 심각한 신체적 정서적 피해, 성적 학대와 착취, 심각한 피해여부가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부모 혹은 보호자의 행위나 또는 이를 막지 못하는 행위에 가져오는 행위(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 section 111)"로 정의된다(박세경 외, 2005).

우리나라의 경우, 시설에 입소하게 되는 아동은 대체로 어렸을 때 부모에 의해 버려져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와 가정해체(예, 부모의 이혼이나 경제적 파탄 등)로 인한 입소가 허다하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아동복시시설에 아동이 맡겨지는 원인은 상당히 다양하다. 아동학대 및 방임으로 인해 아동복지체계(child welfare system)에 맡겨지는 사례가 대부분이며 부모의 양육능력부족으로 인한 경우는 10.4%정도이다.

2) 브라질은 1990년 '아동 및 청소년법'을 제정하였다. 모두 267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 동 법률은 생명·건강에의 인권(7조~14조), 자유·존중·존엄에의 인권(15조~18조), 가족적·지역적 생활에의 인권(19조~52조), 교육·문화·스포츠·여가에의 인권(19조~52조), 직업훈련 및 노동과 관련하여 보호받을 인권(60조~69조)를 기본적 인권으로서 구체적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법률이행을 위한 기구설치, 인권침해에 대한 보호체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 체코는 1998년에 '아동의 사회적·법적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아동복지체계의 보호아래 들어오면 아동은 입양가정(adaption)이나 위탁가정(foster care), 혹은 친인척 집에 머물면서 아동복지국의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경우(kinship foster care)가 있다. 사례에 따라서는 아동의 심리적·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치료보호시설이나 그룹홈에 거주하는 경우도 있고, 쉼터에 거주하는 청소년, 교화시설에 수감되어 있는 청소년 등 다양한 곳에 배치되어 있는 청소년들이 있다. 이들 아동복지체계 내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청소년들은 학대 및 방임, 유기, 착취를 당한 경험이 많아 원가정과의 재결합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청소년들이 대부분이다(노충래, 2001). 미국의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법률은 부모가 자신이 선택한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할 자유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UN 국가보고서, 2005). 또한 아동에게 있어서 최선의 양육 장소는 가정이며 부모가 그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부모가 적절한 보호와 양육을 제공하지 못하여 아동의 권익이 위협받을 때 국가가 아동을 보호할 권위와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미국은 아동보호체계에 권위주의적 접근이 아니라 자유주의적 접근을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아동에 대한 일차적 책임과 양육에 대한 인권은 사회가 아니라 부모(가족)가 가지고 있으며, 사회는 오직 부모가 이러한 책임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개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박세경 외, 2005). 따라서 연방법이나 주법에서든 미국의 모든 아동보호 서비스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안전성과 영구성이다. 즉, 아동이 양육되는 환경은 그것이 친부모가 있는 가정환경이든, 그 외의 다른 양육환경이든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고, 보호기간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향후 미래를 예측한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것이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아동의 인권과 복지가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박세경 외, 2005).

미국의 아동보호체계는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며 지속적으로 아동보호 관련법을 제·개정하면서 예방 및 사후대처 체계를 제도화시켜왔다. 미국 내 아동보호 관련법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1980년 입양지원 및 아동복지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미국의 연방정부는 아동이 보호의 차원에서 원가정을 떠나 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 맡겨지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州)정부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을 주(州)정부로 하여금 아동을 원래가정이나 친척집에서 보호받게 하기 보다는 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하도록 유도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가정 밖에서의 보호(out-of-home service)기간을 장기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지

적되고 비판받게 됨에 따라 연방정부는 입양지원 및 아동복지법을 통해 아동이 원래 가정이 아닌 다른 곳에서 보호받는 것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특히, 아동이 원가정이 아닌 다른 곳에서 보호받는 것을 방지하는 것과 관련되었던 사회복장법의 제4장-B(Title IV-B)부분은 1992년 원가정보존법(Family Preservation Act: FPA)으로 확대 개정되었다. 그러나 가정보존이라는 법의 목표에도 불구하고 보호아동들은 원가정으로 복귀되지 못하고, 입양되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위탁보호에 장기간 머무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미국은 입양지원 및 아동복지법과 원가정보존법의 효과에 대한 회의와 파생된 문제점들에 비판이 거세지자 이들 요보호아동을 위해 1997년에 '입양 및 가족안전법'(Adoption and Safe Families Act of 1997)을 제정하였다. 아동이 일단 정부의 보호체계에 들어오게 되면 위탁가정이나 시설보호 기간을 가능한 한 단축시키고, 원래의 가정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서비스를 받거나, 부모의 친권을 박탈하는 경우에 즉각적으로 입양가정을 찾아 입양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동시적 사례계획(concurrent planning)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원가정 보존을 위한 조치와 입양을 위한 조치를 동시에 계획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이는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즉각적으로 입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가정위탁에서 보호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입양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다.

아동학대 및 방임법원강화법(Strengthening Abuse and Neglect Courts Act of 2000)은 신체적, 정서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격리하여 안정적이고 영구적인 성장·발달환경을 시급하게 제공하기 위한 행정적 효율성과 법정에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로 2000년에 마련되었다. 같은 해 제정된 '아동건강법'(Children's Health Act of 2000)은 시설에서 보호되고 있는 아동들에게 위기관리훈련, 행동장애치료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시설에서도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집중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실험적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다.

미국의 시설보호는 쉼터(emergency shelter), 그룹홈, 치료시설(residential treatment center) 등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쉼터는 아동이 가족으로부터 긴급하게 피신해야 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보호되는 장소이며, 그룹홈은 아파트 등의 장소에서 소수의 아동들이 생활지도사나 사회복지사와 함께 생활하며 보호받는

유형이다. 치료시설은 아동이 정서적, 심리적, 신체적, 행동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배치된다.

시설보호는 마지막으로 선택되는 대안으로 아동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 가정위탁으로 보호되기 어렵거나, 가정위탁에 여러 번 배치되어 위탁이 장기화되거나, 심리치료나 약물중독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임신을 하여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경우 등 일반 가정위탁으로 배치될 수 없는 아동들이 배치된다. 따라서 전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중 가정위탁이 53%, 친족에 의한 보호가 41%, 시설보호가 4%, 기타의 방법으로 3%가 보호된다(萩原康生外、2008). 미국의 경우 시설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의 50%는 학대나 유기로 인해 조치되었고, 11%는 소년범죄 때문에 조치되었으며, 21%는 부모의 사정으로 인해 조치되었고, 2%는 장애 때문에, 나머지는 기타 이유로 인해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에 제정된 아동건강법(Children's Helth Act of 2000)은 시설에서 보호되고 있는 아동들에게 위기관리훈련, 행동장애치료 등을 제공하도록 강조하고 있으며, 시설에서도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집중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다. 또한 가정위탁자립법(the Foster Care Independence Act, 1999)을 통해 영구적인 가정환경을 찾지 못하고 위탁가정이나 시설에서 보호되는 아동들(18세-21세 대상)에게 대학교육이나 직업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독립된 생활에 필요한 주거나 재정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훈련을 제공하며, 의료지원도 21세까지 수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2. 영국

영국은 1948년에 아동법을 제정하면서 아동의 복지, 교육, 보호를 포괄적으로 증진하고자 하였다. 1975년 개정된 아동법은 원래의 가정에서 아동학대의 위험이 있는 경우 지방정부가 조속히 아동을 원가정으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는 등 친부모의 권한을 약화시켰으며, 친부모와의 연계를 중시한 관례에서 탈피하여 지방정부가 친부모의 권한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에도 아동법은 꾸준히 개정되어 왔으며, 개정 목적은 아동의 인권실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의 인권은 1989년의 아동법(The Children Act 1989)과 1998년의 인권법(The Human Rights Act 1998), 2000년에 제정된 보호기준

법(The Care Standards Act 2000) 등에 적용을 받는다.

1989년 아동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아동보호와 양육에 관한 법이 분산되어 있었으나, 법 시행으로 아동의 보호,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가정에 대한 지원 등을 포함한 관련법이 한 곳으로 모아지게 되었다. 아동법은 보호를 필요한 아동을 장애아를 포함한 사회경제적 박탈에 관련되는 아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가정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학대 또는 방치된 아동은 지방정부에 의해 위탁가정이나 시설에서 보호받게 된다. 지역사회시설인 아동보육원에 배치되는 아동의 보호기간은 비교적 길며, 보육원에서는 일체의 체벌이 허용되지 않으며, 개별아동이 가정과 정기적으로 접촉하고 신체검사를 받는 등 각종 보호관련 기록이 문서화되어 있다(박세경 외, 2005).

최근의 영국의 아동가정복지정책은 2004년 개정된 아동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동법에 의거하여 지자체의 아동가정복지서비스는 일원화되었다. 아동법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하여 2004년 12월에는 '아동보호·케어 10개년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각종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아동법의 기본원칙은 모든 아동에게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기회를 제공하고 존중하는데 있다. 동법에 의거하여 아동은 자신과 관련한 모든 종류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재판 또는 재판정 밖에서 양육권을 어느 부모에게 주느냐를 결정할 때, 지방정부가 보호대상 아동을 지정할 때도 아동의 의사는 중요하게 고려된다. 지방정부는 아동에게 어떠한 보호조치가 내려질지, 어디로 배치될 지 등을 말해야 한다(청개원, 2004).

영국정부는 2002년에 수양 및 입양에 관한 절차 등을 담은 '수양·입양 표준화법'을 제정하였다. 영국은 50,000명 정도의 보호대상 아동 중 시설수용아동은 6,000명 정도이고, 나머지는 국가가 마련한 가정위탁기준(National Foster Care Standard)에 따라 가정위탁보호가 실시되고 있다. 아동이 위탁되면 양육권 및 법적 부모 친권을 지방정부가 보유하게 되며, 아동의 사고, 사망, 질병, 교육 등에 대한 문제는 지방정부의 책임이며,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감시하고 협력하면서 지방정부와 위탁아동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이용교 외, 2005).

영국은 양친이 아동을 적절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정부가 책임을 지고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지방정부가 위탁아동에 대한 양육권을 갖고 사망 등과 같은 사건발생 시에는 시나 구청장이 책임진다. 또한 아동의

일상생활지침을 지방정부가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보호의 일차적인 책임은 지방정부의 사회사업과에 있다. 지방정부는 1992년부터 아동복지사업계획안을 마련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과 가족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아동복지 정책의 일관성과 포괄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박세경 외, 2005). 이러한 아동은 통상 '보호·케어가 필요한 아동'(looked after children)으로 불리고 있다. 2004년 말 기준으로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에는 68,000명의 아동이 지방정부의 보호 하에 있으며, 그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1994년에는 55,200명). 하지만 대부분은 시설보호가 아닌 수양부모 또는 가정위탁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지방정부의 감시 하에 부모가 보호하는 경우, 시설보호, 양자입양, 기숙사형 학교 등을 통해 보호가 이루어진다. 현재 시설의 종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이나 기관이 운영하는 사립보호시설과 지방정부 산하에 있는 공공보호시설, 그리고 비영리기관이 운영하는 민간시설로 나뉘는데, 특별한 문제를 다루는 전문보호시설은 대부분 사립보호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사립보호시설들은 지방정부 산하에 있는 시설이나 비영리 민간보호시설에서 수용하기 힘든 아동 및 청소년들, 예를 들면 심각한 문제행동이 있거나, 약물문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아동 및 청소년들을 수용하는 전문화된 센터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보건복지부·한국아동복지연합회, 2005). 이러한 시설에 대한 심사와 평가는 지속적으로 실시・강화하면서 시설보호를 더욱더 축소하려는 정책을 실하고 있다. 즉 영국의 아동복지정책의 기본은 가정 내의 보호와 복지서비스 제공, 탈시설화를 추구하고 있다.

영국의 아동거주시설은 국립보호기준위원회(The National Care Standards Committee)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성격을 띠면서도 독립된 기관으로써 보호기준법(The Care Standards Act)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소한의 기준'들과 규정들이 시설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적어도 3개월에 한번 감사를 한다. 아동이 거주하는 시설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아동이 거주하는 시설 유형>**

① 공공보호시설 (Community homes)

- 지방정부 직영 공공시설 (Maintained community homes): 지방정부 직영 시설로써, 모든 예산을 100% 보조하고, 유지하며, 지방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
- 지방정부에 의해 관리되는 공공시설 (Controlled community homes): 민간기관에 의해 제공되긴 하지만 지방정부에 의해 많은 부분을 관리 받는 시설.
- 지방정부가 보조적 역할을 하는 공공시설 (Assisted community homes): 민간기관에 의해 제공되며, 지방정부로부터는 약간의 도움과 예산을 지원받는 시설

② 민간시설 (Voluntary children's homes)

공공보호시스템이 아닌, 자선기관과 같은 비영리기관인 민간기관에 의해서 운영되는 시설로써, 모든 민간보호시설은 보건국 (Department of Health)에 등록해야 하며, 사회서비스 감사국 (Social Services Inspectorate: SSI) 받게 된다.

③ 사립시설 (Private registered children's homes)

개인이나 회사, 또는 영리기관에 의해 운영되는 시설로써, 사회서비스국에 등록한 시설

④ 이중 등록 학교 (Dual registered schools)

적어도 3명이상의 아동에게 1년에 295일 이상의 기간 동안 숙소를 제공하는 기숙학교로 교육법에 의해 사립학교로 교육국에 등록하고, 아동법에 의해 지방정부에도 등록해야 하는 학교

⑤ 등록된 시설보호기관 (Registered residential care homes)

아동을 수용하는 보호시설로써 시설법 (Residential Homes Act 1984)에 의해 등록하며 보건관련 욕구를 가진 아동을 위해 적절함. 이러한 시설은 병원이나 국립보건서비스를 제외한 것임.

⑥ 미등록 기관 (Small unregistrable homes)

4명 이하의 아동을 수용하는 작은 규모의 시설을 의미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이나 기관에 의해 운영됨. 과거에 이러한 시설은 감독받거나 등록하지 않아도 운영 가능했다. 그러나 보건국이 발행한 '사회서비스의 현대화(Modernising Social Services)'란 보고서에서 모든 아동보호시설은 보호하는 아동 수에 관계없이 감독/감사의 대상이 된다고 밝힘.

아동보호시설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과 아동복지지설 시행세칙은 보호시설의 설립 및 규모에 대해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기숙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시설과 거주시설을 분리해야 하며, 아동은 자신이 혼자 쓰는 방을 가질 인권이 있다. 두 명이 함께 쓰는 방을 배치하려면 아동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층침대는 13세 이상의 아동에게는 지급될 수 없으며, 각각의 아동에게 부여된 최소한의 공간은 침대/침구, 쉴 수 있는 공간, 개별소지품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조명, 히터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5명의 아동 당 1개의 목욕이나 샤워시설을 구비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종사자는 아동발달에 대한 이해, 기본적인 또는 전문 아동보호기술, 팀으로 일하는 방법, 시설의 목적에 맞는 기술 습득, 아동을 통제하는 긍정적인 수단, 다양한 아동양육기술, 아동보호, 성적문제 다루기, 다양한 인종/문화/종교에 대한 교육, 아동과 의사소통하는 법, 소방교육, 응급처치기술, 식품위생, 보건 및 안전교육, 아동법과 인권법 같은 관련법에 대한 이해, 위기사정 기술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해 교육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시설에 입사한 후 6주 이내에 시설에 대한 기초교육을 받아야 하고 6개월 이내에 위의 내용과 같은 기본 교육을 마쳐야 한다(보건복지부·한국아동복지연합회, 2005).

### 3. 스웨덴

오늘날 스웨덴의 사회복지는 1981년에 제정된 '사회사업법'에 의거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아동보호와 관련해서는 '사회서비스법'과 '청소년보호법'을 통해 아동이 성장·발달하는데 필요한 최적의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권침해 예방과 보호는 '아동옴부즈맨 사무소 설치법'에 의거하여 실시되고 있다.

‘사회서비스법’은 아동의 삶과 위치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들을 채택할 때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아동을 시설에 배치시킬 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과 관련하여 사회서비스의 권한 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조치들에 해당한다. 따라서 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과 관련된 의견을 표현할 인권을 갖는다. 아동의 의사는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최저연령이라는 것은 없다. 동법 제5조 1항~3항은 아동의 보호받을 인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모든 아동보호서비스는 아동과 그 가족의 협력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은 아동폭력과 관련한 소송에 있어 국선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을 인권을 부여하고 있다. 모든 법적 문제와 관련한 법률 자문은 변호사에 의해 제공이 되며, 아동이 법률자문을 얻을 경우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이는 아동의 인권이 침해당했을 경우, 그 인권의 회복에 있어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동법에서는 불가피한 상황인 경우에는 후견인이나 보호자의 동의가 없이도 아동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보호서비스가 제공되며, 이는 아동이 15세 이상인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 그리고 아동의 연령이 15세 이상인 경우, 보호자의 동의 없이 본인 스스로의 동의하에 보호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박세경 외, 2005).

자택 외의 장소에서 아동의 보호조치를 실시할 경우에는 ‘사회서비스법’에 의거하여 부모의 동의(아동이 15세 이상일 경우는 본인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사회복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가 없더라도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보호조치는 환경요인(부모에 의한 방임, 정신적 및 신체적 학대 등)과 행동요인(아동의 폭력적인 행동, 약물 등에 의존. 비사회적인 태도 등)으로 구분된다. 이와 관련하여 시설보호국가위원회(The National Board of Institutional Care-SIS)는 가장 열악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조직으로 49개의 LMV[3]홈과 스웨덴 내의 특별 허가된 홈에서 사회에 부적응한 성인과 아동을 돌을 돌본다. 시설의 대부분은 청년들과 실질적인 약물중독자들은 본인의 동의 없이 이곳에 수용되는데, 이는 그들 스스로가 자신을 해하거나 삶을 포기하려는 위험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영아의 시설보호에 있어 입소기준을 분석한

3)알콜 · 마취성 약물 중독자를 위한 보호소이다. 어떤 보호소는 잠재적으로 폭력적이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거나 이민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들을 돌보는 데 전문성을 갖추고 있음.

연구(Gunilla Larsson and Gunilla Ekenstein, 2003)에 따르면 1970년부터 1990년까지 십대미혼모의 자녀이거나, 입양의 경우, 부적절한 주거환경, 모의 병원입원이 원인이 된 시설입소아동의 수는 현저하게 감소한 반면, 모의 알코올 및 약물중독, 정신적 장애와 같은 이유로 시설에 입소한 아동의 수는 상당히 증가하였다. 즉, 모의 건강문제나 불안정한 사회적 지위로 인한 자발적 아동입소건수는 모의 중독과 정신적 불안정으로 인한 비자발적인 입소로 대체되고 있는 것이다. 보호 및 케어 서비스와 관련하여 자택 외의 보호가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아동과 그 가족은 '사회서비스법'에 의거하여 자택에서 보호·케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스웨덴은 '아동옴부즈맨 사무소 설치법'을 1993년에 제정하고, 2002년에 개정하였다. 동법에 의거하여 시설아동을 포함한 자국 내 모든 아동의 인권상황은 옴부즈맨에 의해 점검되고 보호받는다. 옴부즈맨에 의한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감시활동과 그 결과는 인권실현을 위한 입법조치, 정책 및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된다.

스웨덴의 아동인권정책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기반을 두고 이행과정 또한 지속적이며 장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 아동복지제도는 가족이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 의료보험, 주택수당, 보육서비스, 출산휴가 및 아동양육을 위한 유급휴가제도 등을 제공함으로써 사전에 문제발생을 예방하는 보편주의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청개원, 2004). 따라서 관련 대책은 가정에서의 보호와 양육을 보완한다는 관점에서 부모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 아동을 위한 대책은 먼저 부모나 후견인 그리고 15세 이상일 경우에는 아동과의 합의를 원칙으로 하고, 부모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부모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하고 있다. 그리하여 지역사회에서는 시설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보호서비스가 개발되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아동이 부적절한 가정환경, 자신의 행동 또는 장애를 이유로 자신의 가정에서 계속해서 양육될 수 없는 경우 최우선적으로 다른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가정 밖에서 보호되고 있는 아동들 중 4분의 3이 위탁가정에 배치되어 있다. 대리보호 서비스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사회서비스법' 또는 '아동보호법' 특별조항에 의해 배치된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지자체 사회복지위원회는 아동을 위탁가정(사회복지위원회를 대신하여 아동의 대리보호와 양육을 책임지는 개인적인 가정) 또는 보호와 거주를 위한 가정(사회서비스 관할 하에 있는 시설

또는 전문적으로 운영되는 가정으로서 개인들에게 주거를 제공하는 동시에 보호, 치료, 간호 또는 지도감독을 하는 곳)에 배치한다.

스웨덴에서의 위탁가정지원은 시설보호를 대처하는 수단으로서 부모로부터 격리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은 위탁가정에 배치된다. 위탁가정 제도는 매우 엄격히 운영되고 있다. 즉, 위탁부모의 보호 하에 있는 아동에 대한 보호가 법적으로 강력하게 규제된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입원 치료 후 회복기에 자녀를 조부모와 같이 사는 것을 희망한다 할지라도 조부모는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고, 매년 보호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순응하지 않으면 기소당할 수도 있다(박세경 외, 2005).

## 4. 일본

일본의 시설보호아동의 인권보호와 관련해서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방지법'이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보호에 대한 포괄적인 법률적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시설보호와 위탁보호 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법적 근거가 된다. 아동학대방지법은 아동학대 예방과 효과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2000년에 제정되었다.

일본정부는 지역소규모아동양육시설의 설치를 인정하는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하여 가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8년 개정 아동복지법에 의거하여 소규모거주형아동양육사업(family home)을 법제화하였다(아동복지법 제6조 2항의 8). 또한 아동에 대한 가정적 환경제공을 위하여 양자입양을 전제로 한 수양부모와 양육수양 부모를 별도로 구분하여 양육수양부모에 대해서는 일정의 연수를 받도록 하는 등(아동복지법 제6조 3항) 수양부모제도를 개선하였고, 수양부모에 대한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 이양하였다.

시설아동의 체벌과 관련해서는, 아동복지시설최저기준에 의해 징계권 남용금지가 규정되어 있다(동 기준 제9조 3)[4]. 2008년 아동복지법 개정 시에,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학대 방지가 명문화되었다(법 제33조 10항). 시설 내 학대방지를 위한 법적기준이 마련되었으나 체벌 일반을 금지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시설장 및 종사자 등

4) 아동복지시설최저기준 제9조 3항에서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입소중인 아동에 대하여 징계 또는 징계와 관련하여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인격을 모욕하는 등의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은 아동에 대한 학대, 기타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법 제33조 11항). 또한 지역아동복지심의회가 시설 내 학대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도록 하는 등 학대예방에 관한 체제를 개선하였다(법 33조 15항).

일본 역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학대를 받은 아동 등 특별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가정환경을 대체할 수단으로서 가능한 한 가정적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양부모제도라고 하는 가정위탁을 실시하여 아동의 건전한 양육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소규모아동양육시설(정원 6인)을 설치하여 가정적 환경에서 양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시설입소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동에 대한 시설입소 조치를 취할 시에는 아동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 있으며, 아동의 의견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아동복지심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사업의 경영자가 시설운영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체평가는 물론 외부평가(제3자 평가)에 의한 복지시설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 운영적정화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용자의 고충처리 및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5].

아동복지시설 운영은 아동복지시설최저기준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정부차원에서는 현 시설을 개보수할 시에는 개인실 또는 2인실 등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시설입소 아동 및 보호자의 고충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당해 시설에 고충처리창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2008년 아동복지법 개정에서의 시설 내 학대예방을 위해 '아동인권 노트' 및 팜플렛 등을 이용해 인식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현재 일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설의 소규모화를 통한 아동양육은 종사자와 아동과의 밀접한 관계 형성을 가능하게 하고, 쌍방의 신뢰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밀접한 관계가 오히려 종사자와 아동과의 긴장관계를 쉽게 형성할 수 있고, 양육과정이 인권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을 간과해

5) 외부평가의 기본은 ①복지서비스의 내용을 향상하도록 유도하는 것, ②평가결과가 이용자가 알기 쉽게 하며, ③보호서비스의 내용이 최저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행정감사와 중복되는 항목 및 운영관리에 관한 항목은 간소화하고 있다. 즉 복지서비스의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에 대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며, 사회복지시설의 최저기준과 같이 시설을 운영해가면서 최소한 갖추어야 하는 기준과 동일한 수준이 아니라 보다 나은 서비스 수준으로 유도하기 위함이다(박세경 외, 2005).

서는 안 된다. 또한 시설 내 학대방지와 고충처리 시스템이 마련되기는 하였으나, 실제 아동이 안심하고 피해를 호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喜多明人外、2009).

일본의 경우에는 지자체 차원의 아동인권보장에 관한 정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부 지자체는 조례를 제정하여, 아동인권옴부즈퍼슨을 설치하여 시설아동을 포함한 지역의 모든 아동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상담 및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2010년 6월, 유엔아동인권위원회는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정책 및 제도에 대해 우려와 권고사항을 채택하였다[6]. 위원회는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양육 정책이 미흡하고, 가족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의 수가 늘고 있으며, '소집단가정형양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시설보호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안양육을 실시하고 있는 곳에서 광범위하게 아동학대가 발생되고 있는 점을 우려하였다. 하지만, 아동의 시설생활과 관련한 고충처리 시스템이 마련되고 있음에 유의하고, 양육수양부모가 의무적으로 연수를 받고 증액된 양육수당을 지급받고 있음을 환영한다. 따라서 위원회는 일본정부에 대해 아동양육과 관련하여 위탁가정, 소집단 그룹홈과 같은 가정적 환경을 제공할 것과 대안양육을 실시하고 있는 곳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감시하고, 모든 양육기관이 적절한 최저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며, 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를 조사하고 책임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학대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치료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 5. 기타 국가

앞서, 주요 국가들의 시설아동과 관련한 법과 정책을 살펴보았다. 이외에 뉴질랜드, 이탈리아 등을 중심으로 한 기타 국가들의 시설아동인권 관련법과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뉴질랜드는 1989년에 '아동·청소년 및 가족법'을 제정하고, 동법 제13조에 아동보호・케어의 일차적 책임은 가족, 친족 및 아동과 관계되는 소·대가족에 있으며, 정

6) 제3회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정부보고서와 관련한 유엔아동인권위원회의 일본정부에 대한 최종권고에서 일부 발췌. CRC/C/JPN/CO/3.

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과 이와 관련한 정부의 개입은 최소한이 되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에 근거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보호시설이 아닌 수양부모나 가정위탁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했을 경우, 기본적으로 가능한 한 가족 또는 아동과 관계가 있는 친척 및 대가족 하에서 아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아동을 가정이나 사회에서 격리·보호하는 것 보다는 아동에게 가정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정책의 기본전제가 되고 있다. 이것은 1989년의 '아동·청소년 및 가족법' 제정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따라서 현재 시설형 아동보호기관은 거의 없으며, 수양부모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실제로 친자분리를 실시한 경우의 양육형태는 촉법소년이 입소되어 있는 폐쇄적인 시설을 제외하고, 거의가 수양부모의 보호를 받고 있다. 더욱이 수양부모라 할지라도 이는 최후의 선택사항으로 위탁을 할 경우에도 아동의 문화적 또는 종교적 배경을 고려한 수양부모 또는 심리적인 연관이 있는 수양부모에 위탁하여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거주형 아동복지시설이 2006년 말에 전면 폐쇄되었다. 이와 관련한 전국단위의 이행 현황과 관련한 공식자료는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많은 시설이 지방정부의 도움으로 지역에서 수양부모나 위탁가정을 찾고 있으며, 기존 종사자의 가정을 중심으로 가족형, 그룹형 형태로 대처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존속 중인 곳도 있으나, 복수의 직원 및 성직자가 개인적으로 가족형 위탁양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거의 대부분의 아동은 외국국적이다[7].

이외의 일부 국가는 헌법 통해 자국 내 모든 아동의 권리실현을 모색하고 있으며, 최고 법규범인 헌법 개정을 통해 아동의 권리에 관한 규정을 포함시키거나 검토 중에 있다.

핀란드는 1995년 헌법 개정 시 아동을 개인으로서 또한 대등한 존재로서 취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포함시키는 헌법 개정을 단행하였고, 아이슬란드도 1995년에 헌법 개정을 통해 '보호 및 케어'의 권리를 규정하고, 협약 제3조 2항을 헌법에 반영하였다. 불가리아는 1991년 개정헌법에서 아동과 가족에 대한 특별한 보호에 관한 규정을 만들었으며, 리투아니아는 1992년 개정헌법에 가족의 보호와 지원

7) 이와 관련하여 이탈리아의 가족정책담당 장관은 다민족화로 나아가는 이탈리아의 현 상황을 고려하여 아동복지의 중요과제로서 국제적인 위탁양육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하였다. 2006년 12월 12일자, *il Sole 24 Ore*. 참조(世界社会福祉年鑑2006、재인용).

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헌법에 포함시켰다. 이밖에 우크라이나, 독일, 오스트리아 등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헌법에 아동의 권리를 포함시킬 계획을 밝히기도 하였다.

브라질은 1988년, 당시 초안 단계에 있었던 협약의 취지를 헌법에 포함시켜, 헌법 제227조에 '아동은 절대적인 우위성을 갖으며, 생활, 건강, 식물, 교육, 여가, 직업교육, 문화, 존엄, 존경, 자유 및 가족과 사회에서 공동생활을 보장한다. 또한 모든 형태의 무시, 차별, 착취, 폭력, 잔혹 및 억압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은 가족, 사회 및 국가의 의무이다.'라고 규정하였다.

파라과이는 1992년 개정헌법 53조에 '가족, 사회 및 국가는 아동에 대하여 전면적 또한 조화로운 발달 및 권리의 전면적인 향유를 보장하는 의무를 가지며, 또한 방임, 영양부족, 폭력, 학대, 매매 및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더 나아가 84조에서는 국가예산의 20% 이상이 교육예산으로 배분되어야 함을 규정하였다.

또한, 아시아의 국가들 중에도 헌법 개정을 통해 아동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네팔과 몽고가 각각 1990년과 1991년에 아동권리에 관한 규정을 헌법에 포함시킨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위와 같이 외국의 시설아동인권에 관련된 법과 정책을 살펴보면, 입양이나 위탁가정과 같이 아동의 '가정내 보호'라는 기본원칙을 강조하고 있으며, 시설에서 보호되는 아동은 치료적 케어가 필요한 최소한의 아동을 주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시설보호 아동을 위해 아동보호시설을 위한 법적기준과 아동복지시설 시행세칙 등 아동보호시설의 설립 및 규모에 대해서 명확한 법적규정을 하고 있으며, 헌법 개정 등을 통한 적극적인 방법으로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기관을 명시하고, 이들 기관을 통해 아동복지시설에서의 아동인권 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제2절 우리나라 시설아동의 인권보장에 관한 관련법과 정책

### 1. 우리나라 시설아동인권에 관한 국내 관련 법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정부는 아동과 관련한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서 아동의 인권을 신장시키고,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책 및 제도 추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관련 예산확보와 전달체계, 인프라 구축 등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2000년 이후의 지속적인 아동복지법 개정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의 복지와 인권실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즉, 아동인권에 관한 기본이념의 명시, 아동의 안전보장 등 아동복지의 보편적 성격을 강화하고, 다양화・전문화된 보호서비스의 제공 등을 포괄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아동을 능동적 인권의 주체 보다는 보호의 수동적 대상자로 인식하고 있으며, 아동의 의견존중·참여권 신장이 미흡하다. 또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괄목할 만한 법 개정 작업이 이루어졌지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가 미흡하여 신고율도 낮은 상황이다(이혜원, 2006). 이와 더불어 시설보호아동의 가정적 환경에서의 생활권, 교육권 보장 등 역시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국내법 중에서 시설보호 아동과 시설아동인권에 관련법에 대해 살펴보면,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등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먼저 '아동복지법'에 나타난 시설아동인권에 관련된 내용은 시설아동의 정의(2조), 차별금지(3조), 아동복지지도원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7조), 아동복지시설의 안전기준 마련 및 교육(9조), 입소 및 퇴소 조치(10조), 아동복지시설의 설치(14조), 시설장의 보호아동의 인권보장 의무(18조), 장관, 지자체의 시설 감독 및 시설에 대한 조치(21조), 아동학대 신고 의무(26조), 사회복지전담공원 및 아동복지지도원의 시설에 대한 조사・지도 및 감독(30조) 등이 있다.

'아동복지법 3조'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아동의 복지가 인권보장의 관점에서 어떠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며,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가정적 환경제공과 이들과 관련한 사안에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지차체의 아동복지지도원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적

절한 보호조치와 아동복지시설 또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조사·지도 및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7조). '아동복지 법 9조'에서는 시설아동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해서 국가는 아동복지시설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재난 대비 안전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시설아동의 인권향상을 위한 인권(인권)교육의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호조치를 실시할 시에는 당해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10조).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아동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친권자가 있는 경우 보호아동의 가정복귀를 위하여 적절한 상담과 지도를 병행해야 한다(18조). 한편, 시설의 종사자 및 장은 아동학대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하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받아야 한다(26조).

'사회복지사업법'에 나타난 시설아동인권에 관련된 내용은 아동복지시설 운영위원회 설치(36조),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43조),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사 실시(51조) 등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은 아동인권보호를 위한 진정함 설치 의무(7조),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신상이 불분명하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6조),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시설 방염대상 물품 사용(20조)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 '시설아동인권 관련법'을 정리하면 <표 3-1>과 같다.

<표 3-1> 우리나라의 시설아동 인권 관련법과 주요 내용

| 법률명 | 조항 | 주요 내용 |
|---|---|---|
| 아동복지법 | 제2조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정의 |
| | 제3조 | ·모든 형태의 차별금지, 안정된 가정환경,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
| | 제7조 | ·아동복지지도원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및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조사·지도 |
| | 제9조 | ·보호아동에 대한 교육 |
| | 제10조 | ·입소 및 퇴소 등의 조치<br>·보호조치 시 아동의 아동존중, 보호자의 의견청취 |
| | 제14조 |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
| | 제18조 | ·시설장의 보호아동의 인권보장 의무 |
| | 제21조 | ·장관, 지자체장의 시설에 대한 조사·지도 및 감독, 시설에 대한 조치 |
| | 제26조 | ·아동학대 신고의무 |
| | 제30조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복지지도원의 시설에 대한 조사·지도 및 감독 의무 |
| 사회복지사업법 | 제36조 | ·아동복지시설 운영위원회 설치, 아동의 참여 |
| | 제43조 |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
| | 제51조 |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사 실시 |
|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 제7조 | ·아동인권보호를 위한 진정함 설치 의무 |
|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6조 | ·신상이 불분명한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
|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 제20조 | ·시설 방염대상 물품 사용 |

시설보호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한 국내법은 아동복지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아동복지법 상에 시설아동의 인권보장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시설아동에 대한 가정적 환경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과 부득이한 경우 시설보호를 실시할

경우에는 가정적이고 인권친화적인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책임과 관련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명확한 규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아동복지시설의 운영기준, 설치기준 등을 협약의 이념과 유엔아동인권위원회의 권고, 특히 가정적 환경제공이라는 아동인권의 측면에서 제반기준을 재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모든 아동복지시설에는 아동이 일상생활 속의 인권침해에 관한 사안을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함을 통해 알릴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아동에 대한 상담과 보호는 시설선생님이나 친구 등에게 대부분 의존하고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선생님이 없다면 참고 지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시설아동이 자신의 고민거리나 인권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지역행정기관 내에 독립적인 보호와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2. 시설아동 인권보장을 위한 주요 정책 및 사업

### 1) 시설아동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정부정책의 기본 방향은 아동이 가정적 환경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관련 법 정비 및 대안양육 체계 확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이 가능한 한 가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양육 정책의 확대는 2000년 이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가정위탁보호 및 그룹홈과 같은 대안양육이 확대되고 있으며, 위탁가정을 대상으로 양육보조금, 아동상해보험료, 전세자금 등의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정책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가정복귀, 가정적 환경 제공을 우선 순위에 두고, 기존 아동양육시설의 성격에 아동상담, 보호 및 치료, 일시보호, 가정위탁, 입양, 급식, 프로그램 제공 등을 추가하는 아동복지시설 기능의 다양화가 추진되고 있다. 특히, 아동복지시설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보호아동 보호·양육기능에서 지역사회 아동을 위한 종합서비스 시설로 운영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시설 내에서 소숙사제도 등 소규모 가정단위의 보호방식으로 전환하여 가정적 분위기에서의 성장을 유도하고 있으며, 시

설 내 성범죄 및 학대 예방 등 아동인권 보호조치가 강구되고 있다.

2) 시설아동을 위한 주요 사업

요보호 아동은 입양, 대리양육, 가정위탁 등 가정보호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며,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아동의 경우에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시설 보호를 실시하고 있다. 요보호아동 발생 시 업무 흐름도를 살펴보면 [그림 3-1]와 같다.

[그림 3-1] 보호아동 발생 시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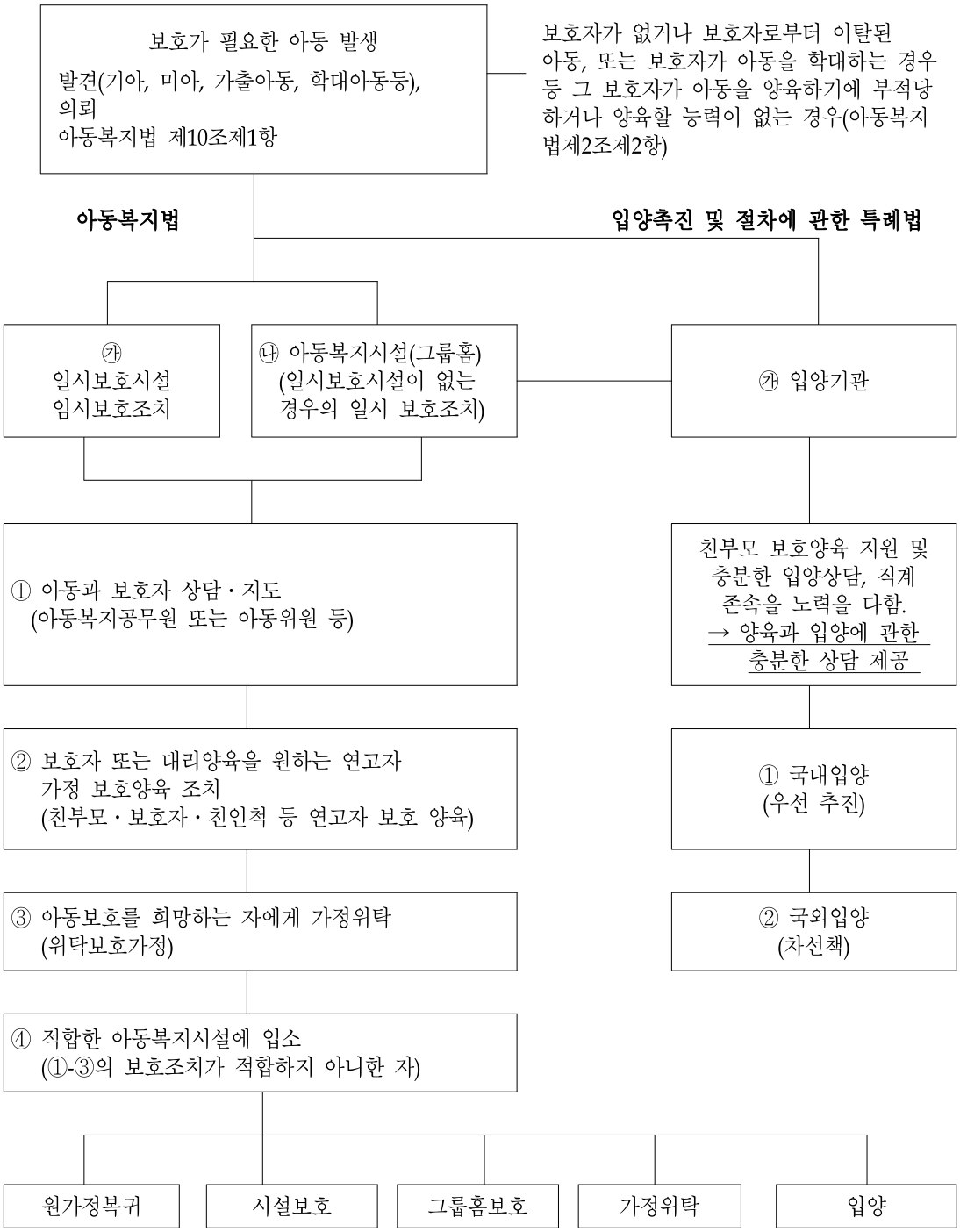


출처 : 2010년 아동・청소년 지원 사업(보건복지부).

(1) 시설기능보강 사업

시설기능보강 사업은 시설 신축, 증·개축, 시설개보수, 장비보강 사업으로 구분된다. 국고보조금 내시 및 지방비 부담조서에 따른 시설기능보강사업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 국가재정법,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수행한다.

(2) 시설 퇴소아동 자립지원 사업

시설 퇴소아동 자립지원 사업은 아동복지시설 및 시설 퇴소아동의 취업, 주거, 진학지원 및 의료, 생활상담 등 전문적인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시설 내 청소년들의 자립준비 계획을 비롯해 퇴소아동의 초기 안정적인 사회적응과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양성하기 위함이다.

사업대상은 퇴소아동(만 18세 이상)중 5년 이내 퇴소자, 연장아동(만 18세 이상으로 시설보호기간이 연장된 아동), 아동복지시설 15세 이상 보호아동이 해당 된다. 이를 위해 중앙자립지원센터를 비롯한 전국 15개 시·도 자립지원센터를 설치되고, 전문상담원이 배치되도록 하고 있다.

시설에서의 자립지원서비스는 시설 내에서 생활하면서 일상생활기술 훈련 등 지원, 진로탐색 등 적성검사, 개인별, 영역별 지원계획에 따른 심리·상담, 학습, 직업·취업 등 대상자별 사례회의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시·도 자립지원센터에서는 진로상담, 취업상담, 진학상담, 주거상담 등에 대한 서비스, 퇴소아동 전세자금 지원 등이 이루어진다.

(3)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은 가정위탁제도를 통한 보호뿐만이 아니라 그룹홈을 통해서도 보호받을 수 있다. 이것은 기존의 시설보호에서 탈피한 지역사회 중심의 가정위탁보호 서비스라 할 수 있다. 2004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그룹홈을 아동복지시설 종류에 추가하는 등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룹홈은 단기보호, 장기보호, 치료보호 등으로 구분된다. 단기보호는 경제적위기,

부부갈등, 별거, 수감, 아동학대 등으로 보호자 또는 친·인척이 함께 거주할 수 없는 아동, 장기보호는 기존의 소년소녀가정 또는 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및 장기보호가 필요한 아동, 치료보호는 시설보호 부적응 아동, 정서적 문제로 시설보호가 적합하지 않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그룹홈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은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지원되고, 퇴소아동에게는 자립정착금이 지원된다.

(4) 가정위탁보호

가정위탁사업은 아동이 가정 내·외의 다양한 요인, 즉 부모의 사망, 실직, 질병, 학대 등으로 친가정에서 양육될 수 없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건전한 가정에 위탁하여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보호·양육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003년에는 전국 17개소의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설치되었고, 2004년에는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가 설치되어 가정위탁 사업의 홍보 및 전문성이 강화되었다. 2005년 7월에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및 절차, 직원의 자격기준, 설치기준, 업무 등에 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8].

위탁가정에는 양육보조금이 지급되며, 또한 위탁아동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로 지정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2006년부터는 위탁아동의 후유장애, 입원·통원 의료비 등을 1년간 10만원 이내로 지급하는 상해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리양육과 친인척 위탁가정이 임차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일 경우에는 일반주택 전세자금과 공공임대보증금을 지원하고 있다.

(5) 입양

입양은 아동이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에게 건강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정서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입양가정에는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입양수수료 지원, 입양아동

8) 우리나라의 가정위탁 보호는 아동복지법 제2조(정의), 제10조(보호조치), 제28조의 2(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28조의 3(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제31조(비용)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 3항, 제5조 3항, 제7조,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등 관련조항,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를 법적근거로 하고 있다.

양육수당 지원, 입양아동 의료급여 지원이 된다. 또한, 입양기관 운영기관, 입양가족 단체에 대해 지원하고 있으며, 중앙입양정보원 및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아동복지법 개정 이후  아동상담, 보호 및 치료, 가정위탁 등 아동복지시설의 다양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시설 내 성범죄 및 학대 예방 등 아동인권보호조치가 강구되었다. 그러나,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0조의 가정환경을 빼앗긴 아동의 가정적 환경에서의 보호와 아동복지법 제3조의 가정적 환경제공의 인권보장을 이행한다는 측면에서 시설보호에서 대안양육 체재로의 확대실시와 더불어 현재 시설보호 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시설입소·퇴소과정, 일상생활과 시설운영에서의 아동의 의견존중 및 정책결정에의 참여, 체벌 및 폭력 금지, 교육권 확보, 시설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의 인권적 재검토, 상담체계 개선 등 포괄적 정책점검이 필요하다.

# 제 4 장 아동복지시설 아동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결과

## 제 1절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절차

설문조사 연구대상의 표본추출은 지역별로 시설 아동 수를 고려하여 지역으로 층화하여 추출 한 뒤, 각 층에서 아동양육시설 및 보호치료시설을 무작위 표집 한 후, 아동 및 종사자 수를 최종표집 하였다. 표본추출을 위하여 살펴본 지역별 시설아동 및 종사자 수는 <표 4-1>과 같다. 양육시설의 경우, 전체 242개 기관에 16,706명의 아동이 생활하고 있으며 시설종사자는 4,679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상권이 가장 많은 79개의 시설을 운영하여 5,330명의 아동과 1,424명의 시설종사자가 생활하고 있고, 수도권이 경상권에 비해 시설 수는 77개소로 다소 적었으나 생활하고 있는 아동과 시설종사자는 각각 5,910명과 1,759명으로 경상권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권은 49개의 양육시설에 3,028명의 아동이 생활하고 877명의 시설종사자가 근무하고 있고, 충청권은 37개소에 2,100명의 아동과 619명의 시설종사자가 생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보호치료시설은 전체 10개소에 477명의 아동이 생활하고, 149명의 시설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다. 시설의 수는 수도권과 경상권이 각각 3곳으로 생활하고 있는 아동은 각각 123명, 106명이고, 시설종사자수는 40명, 37명으로 나타났다. 충청권과 전라권은 각각 2곳의 보호치료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의 수는 166명, 82명, 시설종사자의 수는 40명, 32명으로 나타났다.

<표 4-1> 지역별 시설아동 및 종사자 수

| 지역 | 아동양육시설 | | | 보호치료시설 | | |
|---|---|---|---|---|---|---|
| | 시설 수 | 아동 수 | 종사자 수 | 시설 수 | 아동 수 | 종사자 수 |
| 수도권 | 77 | 5,910 | 1,759 | 3 | 123 | 40 |
| 충청권 | 37 | 2,100 | 619 | 2 | 166 | 40 |
| 전라권 | 49 | 3,028 | 877 | 2 | 82 | 32 |
| 경상권 | 79 | 5,330 | 1,424 | 3 | 106 | 37 |
| 전 체 | 242 | 16,706 | 4,679 | 10 | 477 | 149 |

자료 : 보건복지부(2009).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과 시설종사자로 설정하였고, 이를 위해 위의 <표 4-1>에서 설명한 아동복지 시설 중 아동양육시설 20곳, 보호치료시설 3곳 총 23곳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설문조사기간은 2010년 6월 9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진행되었고, 연구자의 직접방문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아동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응답을 구하기 위하여 종사자와 아동을 분리하여 조사하였고,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종사자의 아동으로의 접근을 차단하였으며, 연구조사의 비밀보장 및 시설에 대한 피해가 전무함을 설명하였다. 나아가 이번 조사의 결과가 시설아동의 복지 및 편의시설 향상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솔직한 답변을 부탁하였다. 심층면접 기간은 2010년 7월 20일부터 2010년 8월 6일까지 진행 되었으며, 심층면접 역시 연구자가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이루어졌다. 총 23개 시설에서 1,129부(아동 1,005부, 종사자 124부)를 설문하였고, 무응답이거나 불성실한 답변을 한 설문지 8부를 제외한 1122부(아동 1001부, 종사자 121부)가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또한, 일괄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얻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는 '아동인권관련 경험' 및 '아동인권에 대한 주관적 의견' 등의 정보는 아동양육시설과 아동보호치료시설에 거주하는 아동과 아동양육시설과 아동보호치료시설에 종사하는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심층면접을 통하여 보완하였다.

심층면접대상자 표집방법은 비확률표집방법 중 유의적 표집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설문조사를 실시한 아동양육시설과 아동보호치료시설의 리스트를 활용하여 전화로 시설종사자 및 아동의 심층면접 참여가 가능한지 확인하였고, 면접대상인 시설종사자와 아동은 시설에 의해 선정되었다. 선정된 심층면접대상자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아동양육시설 2곳, 아동보호치료시설 1곳, 경기도, 강원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아동양육시설 각 1곳, 전라남도에 위치한 아동보호치료시설 1곳으로 아동 10명, 종사자 5명을 조사하였으며 <표 4-2>와 같다.

시설종사자와 시설아동이 느끼는 시설에서의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경험과 인권의식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자와 참여자 간에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심층면접을 반구조화 된(semi-structured) 면접질문지를 기초로 하여 면접을 진행하면서 질문을 덧붙여 나가는 형식을 취하였다. 아동이 어려워하는 질문문항의 경우 면접자에 의해 융통성 있게 수정되어 사용되었다. 면접시간은 아동의 경우 50

분에서 70분이 소요되었고, 시설종사자의 경우 60분에서 90분이 소요되었다.

<표 4-2>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조사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 지 역 | 설문조사 조사대상자 | | 심층면접 조사대상자 | |
|---|---|---|---|---|
| | 시설형태 | 조사대상자 수 | 시설형태 | 조사대상자 수 |
| 서울특별시 | 아동양육시설 | 아동: 167명<br>시설종사자: 16명 | 아동양육시설 | 아동: 3명<br>시설종사자: 1명 |
| | 아동보호치료시설 | 아동: 50명<br>시설종사자: 4명 | 아동보호치료시설 | 아동: 1명<br>시설종사자: 1명 |
| 부산광역시 | 아동양육시설 | 아동: 100명<br>시설종사자: 6명 | 아동양육시설 | 아동: 1명 |
| 경기도 | 아동양육시설 | 아동: 102명<br>시설종사자: 10명 | 아동양육시설 | 아동: 1명<br>시설종사자: 1명 |
| 강원도 | 아동양육시설 | 아동: 25명<br>시설종사자: 5명 | 아동양육시설 | 아동: 1명<br>시설종사자: 1명 |
| 전라북도 | 아동양육시설 | 아동: 35명<br>시설종사자: 6명 | 아동양육시설 | 아동: 1명 |
| 전라남도 | 아동양육시설 | 아동: 90명<br>시설종사자: 11명 | 아동보호치료시설 | 아동: 1명<br>시설종사자: 1명 |
| | 아동보호치료시설 | 아동: 18명<br>시설종사자: 6명 | | |
| 경상북도 | 아동양육시설 | 아동: 54명<br>시설종사자: 6명 | 아동양육시설 | 아동: 1명 |
| 경상남도 | 아동양육시설 | 아동: 51명<br>시설종사자: 9명 | - | - |
| 충청북도 | 아동양육시설 | 아동: 40명<br>시설종사자: 5명 | - | - |
| 충청남도 | 아동양육시설 | 아동: 45명<br>시설종사자: 5명 | - | - |
| 대전 | 아동양육시설 | 아동: 29명<br>시설종사자: 5명 | - | - |
| | 아동보호치료시설 | 아동: 80명<br>시설종사자: 4명 | | |
| 인천 | 아동양육시설 | 아동: 39명<br>시설종사자: 5명 | - | - |
| 광주 | 아동양육시설 | 아동: 26명<br>시설종사자: 8명 | - | - |
| 대구 | 아동양육시설 | 아동: 50명<br>시설종사자: 10명 | - | - |

## 제 2절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아동양육시설 및 아동보호치료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인권실태와 인권의식을 파악하기 위한 **'아동용 설문지'**와 아동양육시설 및 아동보호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시설종사자가 인식하는 아동의 인권실태 및 시설종사자의 인권의식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시설종사자용 설문지'**, 그리고 아동양육시설과 아동보호치료시설의 물리적인 환경과 아동에게 제공되는 학습, 인권, 위생, 안전 등과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의 제공여부를 체크하기 위한 **'물리적 환경'**체크리스트로 나누어 구성되었다. 또한 시설아동의 자아존중감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신에 대해 느끼는 감정 및 가치 등을 4점 척도로 측정하는 Rogenberg(1979)의 **'자아존중감**(Self-Esteem Scale)'척도를 사용하였다.

### 1. 아동복지시설아동의 아동인권

조사의 방법은 설문에 의한 조사로써 현장실사를 통한 방문조사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먼저, 아동복지시설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는 '아동양육시설'과 '아동치료보호시설'용으로 나누어 구성되었고, 시설아동 및 아동인권에 관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아동복지전문가 및 양육시설 관련 실무자로 구성된 Focus group의 검토를 통한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쳐 연구진에 의해 수정·보완되었다. 수정·보완된 설문의 문항의 이해도, 적절성, 신뢰도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조사원 3명이 양육시설을 방문하여 임의로 추출된 양육시설의 아동 2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결과, 아동들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어려워하는 용어 및 문구 등의 수정이 이루어졌다. 설문문항은 아동복지시설아동의 생활실태를 파악하는 문항과 아동의 인권의식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아동양육시설과 아동치료보호시설의 설문문항의 기본구성은 같으나, 아동양육시설에 비해 아동의 행동에 제한이 있는 아동치료보호시설의 경우 해당되지 않는 문항은 삭제되었다. 설문문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4-3>과 같으며, 크게 일곱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아동의 인구학적인 변수의 내용으로 성별, 나이, 학년, 입소연도 등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아동의 생존권에 관한 내용으로 식생활, 보건·의료 환경 등으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셋째, 아동의 보호권에 관한 내용으로 체벌, 왕따, 폭력 등 비인권적 환경에 대한 점검, 상담 및 보호체계 시스템의 구축과 접근성 등으로 구성하였다.

넷째, 아동의 발달권에 관한 내용으로 자아정체성 확보와 교육, 휴식・여가・문화적 활동 등으로 구성하였다.

다섯째, 아동의 참여권에 관한 내용으로 아동의 의사표현의 인권, 종교의 선택 등으로 구성하였다.

여섯째, 시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만족도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일곱째, 아동의 인권 의식에 관한 내용으로 아동인권 및 침해 시 대처방법 등으로 구성하였다.

여덟째,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관한 내용으로 성품, 긍정적인 태도, 만족도 등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시설아동의 심리적인 부분을 알아보기 위하여 조사하였다.

<표 4-3>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인권 의식 설문 구성

| 분야 | 문항 내용 | 문항 수 |
|---|---|---|
| 인구사회학적 변수 | 성별, 나이, 학년, 입소 연도 | 4(4) |
| 생존권 | 식생활, 의류, 개인 용품 사용, 방온도 조절, 보건・의료 환경 | 6(6) |
| 보호권[9] | 사생활보호, 방 공개 여부, 또래 폭력, 체벌, 체벌유형, 성학대 및 상담 여부, 왕따, 언어적 폭력, 노동 유무 및 유형, 매스컴 보도, 외부의 도움, 차별 등 | 14(14) |
| 발달권 | 학습 지원, 휴식, 외출, 외부와 연락, 용돈 관리 | 5(3) |
| 참여권 | 아동의 의사표현 및 기회 제공 시 참여 여부, 외부활동 참여, 건의 사항 표현, 지역사회 교류, 본인 의사 결정, 종교의 선택 | 7(6) |
| 시설전체 만족도 | 시설 전반적인 상황의 만족도 | 1(1) |
| 아동의 인권 의식 | 아동인권 인지, 아동인권관련 정보 또는 교육 제공 여부, 아동이 인지한 필요한 인권 유형, 침해 시 대처 행동 요령 | 2(2) |
| 자아존중감 | 가치 있는 사람, 성품, 실패한 사람, 일을 해 낼 수 있음, 자랑할 것이 없음, 긍정적인 태도, 만족도, 존경, 쓸모없는 사람, 좋지 않은 사람 | 10(10) |
| 총 문항 수 | | 49(40) |

* ( )는 보호치료 시설 문항 수

9) 보호권과 관련하여 아동학대 및 방임의 문항은 보호권의 세부 문항의 또래 폭력, 체벌(체벌유형), 성학대, 왕

## 2.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사용한 설문지의 구성항목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에 관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작성하였고, 아동복지전문가 및 양육시설 관련 실무자로 구성된 Focus group의 검토를 통한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쳐 연구진에 의해 수정·보완되었다.

설문문항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일반적 사항 및 직무관련사항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인식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아동인권실태, 그리고 아동인권에 대한 의식수준을 파악하는 관련변인들로 구성하였으며, 설문문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4-4>와 같이 크게 일곱 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종사자의 인구학적인 변수의 내용으로 성별, 연령, 근무기간, 학력 등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종사자의 직무관련 및 인권에 관한 내용으로 직원 차별, 아동 및 직장상사의 폭력 등으로 구성하였다.

셋째, 아동의 생존권에 관한 내용으로 일상생활 환경, 보건·의료 환경 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넷째, 아동의 보호권에 관한 내용으로 체벌, 왕따, 폭력 등 비인권적 환경에 대한 점검, 상담 및 보호체계 시스템의 구축과 접근성 등으로 구성하였다.

다섯째, 아동의 발달권에 관한 내용으로 자아정체성 확보와 교육, 휴식·여가·문화적 활동 등으로 구성하였다.

여섯째, 아동의 참여권에 관한 내용으로 아동의 의사표현의 인권, 종교의 선택 등으로 구성하였다.

일곱째, 아동의 인권 의식에 관한 내용으로 아동인권 인지, 인권 상황 만족도 등으로 구성하였다.

여덟째, 종사자의 의무에 관한 내용으로 갈등 관리, 대변자 등으로 구성하였다.

---

따, 언어적 폭력 등의 경험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아동이 아동복지시설 입소 전 가정이나 학교 등의 환경에서 겪은 아동학대 및 방임의 경험은 조사결과에 반영되지 않았음.

<표 4-4>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 의식 설문 구성

| 분야 | 문항 내용 | 문항 수 |
|---|---|---|
| 인구사회학적 변수 | 성별, 나이, 현 직장 및 전체 사회복지 분야 근무 경력, 최종 학력, 전공 분야, 자격증 소지 여부 | 6(6) |
| 종사자의 인권 | 인권 교육 여부, 아동권리협약 인지 여부, 인권교육의 필요성, 인권교육 시기, 전문가 조력 필요성, 직원 차별, 아동 및 종사자의 폭력 | 10(10) |
| 생존권 | 식생활, 의류, 개인 용품 사용, 방 온도 조절, 보건·의료 환경 | 6(6) |
| 보호권 | 사생활보호, 방 공개 여부, 체벌, 성학대, 아동 간 폭력 시 대처 요령, 매스컴 보도 | 6(6) |
| 발달권 | 학습 지원, 휴식, 외출, 외부와 연락, 용돈 관리 | 5(3) |
| 참여권 | 아동의 의사표현, 외부활동 참여, 건의 사항 표현, 지역사회 교류, 본인 의사 결정, 종교의 선택 | 5(4) |
| 아동의 인권 의식 | 아동에게 필요한 인권 유형, 침해 시 대처 행동 요령 | 2(2) |
| 종사자의 의무 | 갈등 관리, 대변자, 상담자, 아동 체벌 금지, 시설 종사자 이직 | 6(6) |
| 총 문항 수 | | 46(43) |

* ( )는 보호치료 시설 문항 수

## 3. 아동복지시설의 물리적 환경

설문의 구성 항목은 아동복지시설 물리적 환경에 관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설문문항은 아동복지시설의 물리적 환경을 파악하는 관련변인들로 구성하였으며, 아래 <표 4-5>와 같이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아동복지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식당, 상담실, 양호실 등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생활 장비 및 물품에 관한 내용으로 침구, 책상, 사물함 등으로 구성하였다.

셋째, 시설 안전 및 위생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안전관리, 비상재해, 위생관리 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넷째, 기타 관한 내용으로 프로그램, 인권위원회 진정함 등으로 구성하였다.

<표 4-5> 아동복지시설 물리적 환경의 설문 구성

| 분야 | 문항 내용 | 문항 수 |
|---|---|---|
| 기존 시설 구조 및 실비 | 시설 전반 청결, 식단 메뉴의 인스턴트 비율, 특이체질 아동의 메뉴 관리, 음식의 유효 기간, 냉장고 및 정수기 구비, 집기 청결 및 소독, 화장실 남녀 구분 및 청결, 위생, 목욕시설, 상담실, 양호실, 도서실, 회의실, 휴식 공간, 놀이터 및 놀이기구 안전, 실외 공간 | 16 |
| 생활 장비 및 물품 | 개인 침구사용 및 청결, 개인 책상, 개인 사물함, 공동물품, 목욕용품 | 6 |
| 시설 안전 및 위생관리 | 안전관리 및 안전매뉴얼, 비상 연락 장치 및 화재 발생 대처 요령, 위생관리 매뉴얼 및 실내외 소독 | 6 |
| 기 타 | 학업 보충 및 퇴소 프로그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 설치 및 교육 | 4 |
| 총 문항 수 | | 32 |

## 제 3절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아동양육시설 아동 및 종사자용, 보호치료시설 아동 및 종사자용, 아동복지시설 물리적 환경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자료의 처리방법으로는 SPSS 18.0을 활용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첫째, 본 연구의 목적인 아동복지시설의 아동인권실태와 아동인권에 대한 의식수준, 아동복지시설의 물리적 환경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시 '아동양육시설'과 '아동보호치료시설' 시설의 형태를 나누어 결과를 제시하였다. 조사대상 역시 '아동'과 '시설종사자'의 설문결과를 나누어 비교 제시하였다.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아동인권실태 및 인권의식수준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차분석(Crosstabu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교차분석은 '아동의 성별에 따른 집단 간 차이', '아동의 학년에 따른 집단 간 차이', '아동복지시설이 위치한 지역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교차분석 시 모집단의 비율에 따라, '아동보호치료시설'의 표집아동 수가 '아동양육시설'에 비하여 적고, '아동보호치료시설'의 특

성상 남아(93.9%)와 여아(6.1%)의 성비가 큰 차이를 나타내는 제한을 가지고 있어 '아동양육시설'과 '아동보호치료시설'을 함께 통계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일반적인 아동의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t-test와 ANOVA분석을 실시하였다. t-test는 '아동의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 '아동의 지역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ANOVA분석에서는 '아동복지시설이 위치한 지역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t-test와 ANOVA 분석 역시 모집단의 비율에 따라, '아동보호치료시설'의 표집아동 수가 '아동양육시설'에 비하여 적고, 아동의 성비를 고려하여 '아동양육시설'과 '아동보호치료시설'을 함께 통계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의 결과제시에 덧붙여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과 시설종사자의 의견을 심층면접결과를 통해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질적 연구에서의 분석은 자료를 요약하고, 코딩하고, 주제를 찾고, 덩어리로 묶는 작업이며, 이는 '자료정리(data reduction)', '근거자료제시(data display)', '결론도출/검증(conclusion drawing/vertification)'의 세 과정으로 나누어진다(Huberman & Miles).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접을 통해 녹음된 자료를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이를 원자료로 활용하였다. 연구자는 원자료들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원문에 의해 지지되는 정보의 두드러진 범주를 만들어 내고, 지속적 비교분석(constant coparative analysis)을 적용하여 수집된 의미단위들을 범주들로 묶는 개방코딩(open coding)의 단계를 거쳤으며, 범주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축코딩(axial coding)과 범주들을 연결하는 이야기를 구성하는 선택코딩(selective coding)을 실시하였다.

## 제 4절 실태조사 분석 결과

### 1. 아동양육시설 아동의 인권 실태

#### 1) 아동양육시설 아동의 일반적인 특성

아동양육시설 아동의 일반적인 특성을 <표 4-6>에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자(45.6%) 보다 여자(54.4%)가 조금 더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울(19.6%), 부산(11.7%)이

가장 많았으며 경기(12.0%), 부산(11.7%), 전남(10.6%), 경북(6.3%), 경남(6.0%)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의 아동 수를 고려 한 표집의 결과로 설명될 수 있다.

평균연령은 14세이며, 12세(18.1%)가 가장 많았고, 13세(14.9%), 15세(11.7%), 11세(11.5%) 14·16세(10.1%)순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초등학교 5학년(17.1%)이 가장 많았으며, 초등학교 4학년(16.9%), 초등학교 6학년(14.8%), 중학교 2학년(11.7%), 중학교 3학년(10.6%), 중학교 1학년(14.8%)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초·중·고등학생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초등학생(44.8%), 중학생(32.4%), 고등학생(22.8%)로 초등학생이 가장 많았다.

입소연도의 평균은 7년 이상 9년 미만이며, 9년 이상(25.3%), 7년 이상 9년 미만(15.6%), 3년 이상 5년 미만(13.5%), 5년 이상 7년 미만(9.8%) 순으로 나타났다.

<표 4-6> 아동양육시설 아동의 일반적인 특성

| 변수 | 구분 | 빈도(명) | 퍼센트(%) | 변수 | 구분 | 빈도(명) | 퍼센트(%) |
|---|---|---|---|---|---|---|---|
| 성별 | 남 | 389 | 45.6 | 지역 | 서울 | 167 | 19.6 |
| | 여 | 464 | 54.4 | | 부산 | 100 | 11.7 |
| 나이 | 10 | 4 | .5 | | 대구 | 50 | 5.9 |
| | 11 | 98 | 11.5 | | 인천 | 39 | 4.6 |
| | 12 | 154 | 18.1 | | 광주 | 26 | 3.0 |
| | 13 | 127 | 14.9 | | 대전 | 29 | 3.4 |
| | 14 | 86 | 10.1 | | 경기 | 102 | 12.0 |
| | 15 | 100 | 11.7 | | 강원 | 25 | 2.9 |
| | 16 | 86 | 10.1 | | 충북 | 40 | 4.7 |
| | 17 | 78 | 9.1 | | 충남 | 45 | 5.3 |
| | 18 | 62 | 7.3 | | 전북 | 35 | 4.1 |
| | 19 | 58 | 6.8 | | 전남 | 90 | 10.6 |
| 학년 | 초4 | 110 | 16.9 | | 경북 | 54 | 6.3 |
| | 초5 | 146 | 17.1 | | 경남 | 51 | 6.0 |
| | 초6 | 126 | 14.8 | 입소연도 | 1년미만 | 85 | 4.1 |
| | 중1 | 86 | 10.1 | | 1년이상 3년미만 | 61 | 7.2 |
| | 중2 | 100 | 11.7 | | 3년이상 5년미만 | 115 | 13.5 |
| | 중3 | 90 | 10.6 | | 5년이상 7년미만 | 84 | 9.8 |
| | 고1 | 76 | 8.9 | | 7년이상 9년미만 | 133 | 15.6 |
| | 고2 | 62 | 7.3 | | 9년이상 | 216 | 25.3 |
| | 고3 | 57 | 6.7 | | | | |

주 : 각 항목별 무응답 제외

2) 아동양육시설 아동의 생존권 실태

아동양육시설 아동의 생존권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식사 생활은 「정해진 시간이 지나도 밥을 준비 해 주신다」(52.2%)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밥을 먹을 수 없다」(24.2%),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내가 밥을 차려 먹는다」(18.5%) 순으로 나타났다<표 4-7>.

<표 4-7> 아동양육시설 아동의 식생활

| 구 분 | 빈도(명) | 퍼센트(%) |
|---|---|---|
| 전체 | 853 | 100.0 |
| 식생활 | | |
| 정해진 시간이 지나도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다. | 445 | 52.2 |
|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내가 직접 차려 먹는다. | 158 | 18.5 |
|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밥을 먹을 수 없다. | 206 | 24.2 |
| 아무 때나 내가 밥을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다. | 44 | 5.2 |

심층면접 결과에 따르면, 아동들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식사와 간식 등의 먹을거리에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음식의 양과 질에 대하여는 괜찮은 편이라고 응답을 하였다. 이는 예전에 비해 아동들의 생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의식주의 제공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주머니들이요. 밥을 되게 잘해 주세요. 간식은 너무 많이 먹으니까요. 어떨 때는 살 빼고 싶고 그런데..(웃음)’**

한편, 아동들이 먹을거리의 양과 질에는 대체로 만족하고 있었으나, 음식의 맛이나 아동의 식성과 같은 구체적인 부분에서 개별아동의 욕구가 간헐적으로 파악되어졌다. 이는 앞으로 기본적인 먹을거리제공차원에서 나아가 음식에 대한 아동들의 기호와 맛에 대한 만족도 및 평가 등에 대한 의견이 주기적인 설문조사 또는 의견수렴과정을 통하여 식단에 반영될 수 있는 절차의 정례화가 필요시 된다고 할 수

있으며 실제 한 아동이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아동들의 욕구를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김치는 원래 좋아했었는데 여기 좀 숙성이 되고 발효되니깐 시큼하니깐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거 같아요.'

'음식 질이 안 좋은 것은 아니고.. 음식이 좀 맛이 없어요. 좀 짜거나 마늘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이제는 학생들이 이제 설문조사 통해 가지고 자기가 먹고 싶은 것도 먹고 그렇잖아요.'

의류 선택에서는 「내 취향에 맞는 옷을 고르거나 선택할 수 있다」(76.1%), 「선생님과 의견이 다른 경우 선생님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21.8%), 「내가 원하는 옷을 전혀 고르거나 입을 수 없다」(2.1%)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용품 사용과 관련된 항목에서는 「선생님께서 필요한 물건을 구입 또는 가져다 주신다」(60.8%), 「필요할 때마다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다」(28.4%), 「내가 알아서 구입해야 한다」(10.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4-8>.

심층면접 결과 역시, 「내 취향에 맞는 옷을 고르거나 선택할 수 있다」가 76.1%의 높은 응답비율을 나타낸 바와 같이, 대부분의 아동들은 의복선택에 불편함이 없고, 옷을 구입하는 방법은 종사자와 함께 외출하여 구입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기호에 맞게 구입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다만, 개인용품의 경우, 「선생님께서 필요한 물건을 구입 또는 가져다 주신다」는 응답이 높은 것과 관련하여 물건이나 의복 등을 직접구입 하지 않고, 종사자를 통해 구입을 하는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불편함을 이야기하였다.

'학교에서 속바지 입고 런닝 입을 때요. 주문을 해요. 말하면 이모들한테 그때 쯤 말하면 바로바로 주는 게 아니라 시간이 걸려요. 필요할 때, 그때 바로 못주고 그것을 주문해서 사무실에서 사가지고 오시니까... 절차가 너무 길어서 그런지 그런 건 좀 불편해요.'

<표 4-8> 아동양육시설 아동의 의류 선택 및 개인용품 사용

| 구 분 | 빈도(명) | 퍼센트(%) |
|---|---|---|
| 전체 | 853 | 100.0 |
| 의류 | | |
| 내 취향에 맞는 옷을 고르거나 입을 수 있다. | 649 | 76.1 |
| 선생님과 의견이 다른 경우 선생님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 189 | 21.8 |
| 내가 원하는 옷을 전혀 고르거나 입을 수 없다. | 18 | 2.1 |
| 개인용품 | | |
| 필요할 때 마다 자유롭게 구입하거나 사용 할 수 있다. | 242 | 28.4 |
| 선생님께서 필요한 것을 사다(또는 가져다) 주신다. | 519 | 60.8 |
| 내가 알아서 구입해야 한다. | 92 | 10.8 |

방 온도 조절은 「생활하기에 적절한 온도로 조절할 수 있다」(69.1%)가 「정해진 온도가 있기 때문에 조절할 수 없다」(30.9%) 보다 높게 나타났다. 병원 이용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42.2%), 「선생님과 함께 이용하는 편이다」(38.2%), 「선생님은 이야기 하라고 하지만, 잘 이야기 하지 않는 편이다」(15.8%), 「심하게 아프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다」(3.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기적인 치료 및 검사는 「병(장애)이 없다」(70.6%), 「예」(21.7%) 보다 높게 나타났다<표 4-9>.

<표 4-9> 아동양육시설 아동의 주거 및 의료적 지원

| 구 분 | 빈도(명) | 퍼센트(%) |
|---|---|---|
| 전체 | 853 | 100.0 |
| 주거 | | |
| 생활하기에 적절한 온도로 조절 할 수 있다. | 589 | 69.1 |
| 정해진 온도가 있기 때문에 조절 할 수 없다. | 264 | 30.9 |
| 의료 | | |
|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360 | 42.2 |
| 선생님은 아프면 이야기 하라고 하지만, 잘 말하지 않는다. | 135 | 15.8 |
| 심하게 아프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다. | 32 | 3.8 |
| 선생님과 함께 이용하는 편이다. | 326 | 38.2 |
| 정기적인 치료 및 검사 | | |
| 예 | 185 | 21.7 |
| 아니오 | 66 | 7.7 |
| 병이 없다 | 602 | 70.6 |

심층면접에 나타난 주거환경에 관한 아동의 주요의견들을 살펴보면, 생활관에서 지내면서 불편한 점에 대하여 시설마다 다양한 불편사항들을 이야기하였다. 여러 명이 사용하는 방의 크기가 좁다는 문제점은 시설에 방문하여 물리적인 환경을 체크할 당시, 시설에 따라 다르지만 적게는 3명에서 많게는 6~7명이 생활하고 있다는 관찰결과와 일치하는 부분이다. 때문에 앞으로 아동에게 1인당 알맞은 생활공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아. 식당 같은 데는 시설이 좋은 거 같은데 방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좁은 거 같아요.’**

한편, 아동들을 위한 냉방시설의 확충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여름에는 좀 더운 것 같아요. 저희 집은 에어컨을 안 쓰고 선풍기를 쓰는데요. 저는 선풍기를 개인적으로 안 좋아해요. 선풍기 바람을 쐬면 머리가 아프더라구요. 잘 때도 땀 막 흘리면서... 밑에 선풍기가 방 하나씩 있어요. 저희 방은 작은 방이어서 선풍**

기 바람이 다 돌아가는데 큰방은 선풍기 바람이 다 안돌아 가서 밑에 거실에서 선풍기 들고 가서 자기가 틀어 놓고 자요.'

이밖에 건물의 노후화에 따른 아동의 시설이용 불편과 관리 소홀에 의한 위생상의 문제가 확인되었다.

'위층에 사는 사람들은 비가 쏟아지면, 습기가 생기잖아요, 그럼 곰팡이가 많이 피어요. 곰팡이 피니깐 더럽고 할 때도 있지만 생활하는데 불편한 거는 없어요.'

'씻을 때도 여기가 산 속에 있으니깐 물을 끌어 올리는데 많이 물을 끓어 올리다보면, 얘들이 샤워하다 보면 물이 잘 안 나와요. 샤워 할 때도 불편하고..'

'건물이 오래 되서 배수 시설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물이 막히는 경우가 많아요.'

앞서 설문조사의 결과를 살펴본 바, 시설아동이 인지하는 거주환경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위에서 다뤄진 항목이외에 심층면접을 통해 나타난 시설아동들의 거주환경에 대한 욕구는 다음과 같았다.

*가. 개별적인 공간을 확보하고 싶은 욕구*

여러 명이 함께 방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동들은 사생활이 보장되는 개인적이고 독립적인 방 또는 공간을 확보하고 싶다는 욕구를 드러냈다. 특히, 사춘기를 겪는 발달단계에 있는 아동의 경우에는 혼자 있거나,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저는 저만의 공간.. 제가 (악기)연습하고 싶으면 연습하고,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고, 저만의 세계에 가만있고 싶으면 가만있고, 저는 저만의 공간이 있었으면 딱 좋을 거 같아요.'

'내 개인 방이 있고 그런 거? 어.. 내 개인 방이 있고..'

‘친구 집에 갔었는데 보고 막 그러니까 집도 좋은 거 같지만 되게 부러운 게 뭐냐하면, 그런 환경 안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는 것)... 그 친구 방에 책이 막 이렇게 있고, 자기 혼자서 할 수 있는 자율적인 공간이 되어 있고... 부러웠어요. (중략) 여기는 같이 생활하고 공동생활이다 보니까 여기랑 비교해서 그런 친구들(일반가정아동)은 좀 더 사적인 자기만의 활동이 있고, 그런 게 부러웠어요.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고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지만, 여기 사는 친구가 있는데 맨날 혼자요, 놀이터 그런데 돌아다니던데요? 걔가 좀 사춘기라서 고민이 되게 많거든요. (혼자 있을 공간이) 필요하기는 하지요.’

시설종사자 또한 아동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특히, 아동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개인공간을 확보하여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개인공간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내 물건, 내 구역에 더욱 집착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이야기하였다.

‘아이들이 충분히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게 조금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고요.’

‘아이들의 개인공간이 부족한 편이잖아요. 한 방에 6명씩 사니깐.. 그러니깐 아이들이 이제 저희는 뭐 친 형제끼리도 그렇게 아옹다옹 싸우는데 이 아이들은 6~7명씩 모여 있으니깐 성격이 예민한 상태에 있을 땐 쉬고 싶고 하는데 또 부딪혀야 하니깐 아마 아이들 입장에서 그게 좀 힘든 부분이 많았을 것 같아요.’

‘저는 늘 생각했던 것은 자기공간이 있기는 하지만 그 공간이 땅이 갈라지고 그런 것은 아니니까(구역이 나눠져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서 은근히 자기영역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자기공간이 확보되는 것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웬만하면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되어도 자기공간이 분리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아동이 개인적인 공간을 가지고 싶어 하는 이유로 다른 아동의 행동과 움직임에 방해를 받지 않고 조용히 공부를 하고 싶다는 의견이 자주

언급되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시설)이 마련되기를 바라는 경우도 확인되었다. 도서관이나 학습실을 확보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주거 및 시설과 관련되기도 하지만 나아가 아동들의 안정적인 학습권과 발달권과도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에 시설이 아동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물리적인 공간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개인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단체공간에서 지내니까요. 개인공부 하고 싶을 때는 개인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단체 생활 하니까요. 아무래도 공부 할 때나 막 단체생활 하니까, 개인시간이 없는데 개인생활을 할 때 그 특히 공부한다던가 이런 거 할 때 단체니까 자기시간 가질 때 다른 애들은 놀 수 도 있잖아요. 그럴 때 다른 애들 공부하거나 그럴 때 같이 있으니까요.’**

**‘맨 날 도서관 다녀요. 도서관 다니는 건 좋은데요, 월요일에는 도서관 쉰단말이예요. 월요일에 도서관 쉬어서 마땅히 할 때가 없어요. 집은 시끄럽거든요. 집에 혼자 있는데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게 있다면 책상 몇 개 놓고, 책 몇 개 꽂아 놓고 그런 거...’**

*나. 부대시설의 확보*

도시의 번화가에 위치한 시설의 경우에는 아동이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돈으로 간식거리를 사는 것에 불편을 느끼지 못하였으나, 비교적 시골에 위치하면서 상점과의 거리 또한 멀고, 외진 곳에 위치한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경우에는 간단한 물품이나 간식거리를 구입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매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나가려면 멀잖아요.’**

3) 아동양육시설 아동의 보호권 실태

아동양육시설 아동의 보호권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생활보호와 관

련된 항목으로 편지나 소포 검사와 방 공개 여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편지와 소포 검사는 「사생활보호를 위해 검사하지 않는다」(63.0%)가 가장 높았으며, 「우리의 의견을 묻고 선생님이 검사하신다」(28.7%), 「우리의 의견을 묻지 않고 선생님이 검사 하신다」(8.3%) 순으로 나타났다. 방 공개 여부는 「내 의견을 물어보나, 결정은 선생님 또는 원장님이 하신다」(41.7%)가 가장 높았으며, 「내 의견을 물어보고, 원하지 않으면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30.6%), 「내 의견을 묻지도 않고 마음대로 보여주신다」(27.7%) 순으로 나타났다<표 4-10>.

<표 4-10> 아동양육시설 아동의 사생활보호

| 구 분 | 빈도(명) | 퍼센트(%) |
|---|---|---|
| 전체 | 853 | 100 |
| 사생활보호(편지나 소포 검사) | | |
| 우리의 의견을 묻지 않고 선생님이 마음대로 검사 하신다. | 71 | 8.3 |
| 우리의 의견을 묻고 선생님이 검사를 한다. | 245 | 28.7 |
| 사생활 보호를 위해 검사하지 않는다. | 537 | 63.0 |
| 사생활보호(방 공개) | | |
| 내 의견을 물어보고, 원하지 않으면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 | 261 | 30.6 |
| 내 의견을 물어보나, 결정은 선생님(또는 원장님)이 하신다. | 356 | 41.7 |
| 내 의견을 묻지도 않고 마음대로 보여주신다. | 236 | 27.7 |

또래 폭력과 선생님의 체벌 여부는 「아니오」(57.0%, 62.1%)가 「예」(43.0%, 37.9%)보다 높게 나타났다. 체벌 유형을 살펴본 결과 「회초리로 손바닥이나 종아리를 맞았다」(47.1%)가 가장 높았으며, 「손으로 얼굴이나 머리를 맞았다」(27.9%), 「발로 차거나, 빗자루, 몽둥이로 맞았다」(24.8%) 순으로 나타났다<표 4-11>.

<표 4-11> 아동양육시설 아동의 폭력 및 체벌

| 구 분 | 빈도(명) | 퍼센트(%) |
|---|---|---|
| 전체 | 853 | 100 |
| 또래 폭력 | | |
| 예 | 367 | 43.0 |
| 아니오 | 486 | 57.0 |
| 체벌 | | |
| 예 | 323 | 37.9 |
| 아니오 | 530 | 62.1 |
| 체벌 유형 | | |
| 회초리로 손바닥이나 종아리를 맞았다. | 152 | 47.1 |
| 손으로 얼굴이나 머리를 맞았다. | 90 | 27.9 |
| 발로 차거나, 빗자루, 몽둥이로 맞았다. | 80 | 24.8 |
| 기타 | 1 | .3 |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아동간의 또래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아동이 57%로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경험한 아동의 비율 역시 43%로 결코 낮지 않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심층면접의 결과는 이러한 또래폭력의 경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아동이 생활하는 시설 역시,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또래(집단)문화가 존재하는 하나의 작은 사회를 이루게 된다. 때문에 그 안에서 연령 및 학년, 혹은 권력관계에 따라 위계적인 서열이 발생할 수 있다. 자칫 이러한 위계서열은 아동사이의 갈등을 초래하기도 하고, 가볍게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심부름을 시키는 것부터 심한 경우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는 등 아동이 심리정서 및 신체적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인권을 침해받게 된다. 인터뷰결과, 폭력을 행하고 싶은 감정을 느끼거나 과거에 실제로 폭력을 경험하였거나 혹은 현재에도 아동 간 폭력행위가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단은 형들이 동생들한테 살짝 심부름을 시켜요. 솔직히 말하면.. 심부름을 시키면 가끔씩 (동생들이)반항을 해요, 대들어요, 그러면 솔직히 짜증나요. 그러면 한 번씩 참아요, 그럼 한 번 더 시키거든요. 나가면서 화를 내요.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이**

그럼 진짜 달려가서 한 대 패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가금씩은 저희들이 막 혼내요 그러다 안 되면 때리죠, 폭력을 쓰다가 더 말을 안 들으면... 선생님들이 있으면 폭력을 쓰면 선생님께 혼나니깐 말 할 때도 있고, 말 안 들으면 때리죠. 심하게는 안 때리고 머리 몇 번 쥐어박거나 꿀밤 때리거나 아니면 그냥 눕혀 놓고, 살짝 때리기도 해요.'

'때린 적은 있어요. 근데 제가 조금 다혈질이라서요. 그런 게 좀 심해요. 그런데 요즘은 안 그러려고 그러고 있어요.'

아동간의 갈등 및 폭력과 관련하여 눈여겨 볼 점은 아동들이 시설 내 위계서열이나 권력에 의해 생기는 아동들 사이의 부당한 대우와 폭력 등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자신의 인권이 무시되고 침해받는 문제로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내가 잘못해서 맞았다.' '대들거나 깝치지 않으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어 아동들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인권'에 대한 개념이 명확히 성립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동사이에 일어나는 갈등과 폭력상황을 개념 그대로 '폭력'으로 받아들이거나 '인권침해'라고 인지하는 부분에 있어 민감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연구자가 아동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느꼈던 시설종사자로부터 언어 및 신체적 체벌을 당하는 것을 명확한 '인권침해'라고 인지하는 민감성과 반응성 정도에 비교해 현저히 미약한 것이다. 즉, 아동들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갈등과 폭력의 형태들이 자연스러운 생활 속의 현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아동들에게 제공되는 인권교육, 학교폭력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강조되어질 필요성이 제기된다.

'제가 잘못해서... 그래도 심하게 맞지는 않았어요.'

'제가 언니들한테 안 깝치면 혼날 일이 없어요. 몇 년 전 까지는 언니들한테 엄청 혼났어요. 진짜 엄청 많이 혼났어요. 지금은 되게 괜찮단 말이예요. 제일 높은 언니가 집에서 짱이란 말이예요. 그 언니한테 대들면 안 되요. 혼나다가 엄청 옛날에는 내가 여기 처음 들어왔을 때는 맞기도 했어요.'

**‘지금은 대들면 혼나죠. 대들면 당연히 혼나죠. 지금은 별거 아닌 일에 가끔씩 그런 일도 있는데 옛날에 비하면 엄청 좋아졌어요. 옛날 생각하면 돌아가기도 싫어요. 그냥 말도 못하고 그런거죠. 지금은 내가 안 깝치면 맞을 일 없으니까...’**

위에 제시된 <표 4-11>을 보면, 설문조사에서의 아동의 체벌 경험은 37.9%로 나타났고, 체벌의 유형은 회초리로 손바닥이나 종아리 맞음, 손으로 얼굴이나 머리 맞음, 발로 차거나 빗자루, 몽둥이로 맞음 등의 순으로 경험을 응답하였다. 심층면접을 통해 이와 같은 교사들로부터의 체벌의 경험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체벌의 경험들을 종합하여 볼 때, 시설의 종사자가 사용하고 있는 체벌의 방식과 형태를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가. 대화 및 의사소통을 통한 해결*

먼저, 아동이 잘못을 한 경우, 아동과의 대화를 통하여 문제를 풀어나가는 ‘의사소통형’의 시설종사자의 유형을 살펴볼 수 있다.

**‘저희가 잘못했으면, 저희가 많이 잘못했을 때 많이 잘못 했을 때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지도 해 주시고, 가끔씩 (시설선생님과)싸울 때도 있어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제가 잘못 한 게 생각이 나기도 하고, 보면 저희가 잘못한 게 많고, 선생님들은 (잘못한 부분이)별로 없어요.’**

*나. 역할주기식 체벌형태*

아동이 잘못하여 체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을 때, 정해진 시간만큼 집안일을 돕는 역할을 주는 형태의 체벌이 시설종사자들로 하여금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었다.

**‘벌을 받죠. 화장실 청소를 한다던지 그런 것도 있구요. 밑에 식당에서 설거지 하는 거 도와주기 그런 거...’**

**‘선생님들은 너무 심하게 하면 담당선생님한테 넘겨요. 근데 담당선생님이 그 애를**

불러요. 불러서 개인상담 실에 가서 얘기를 해요. 왜 그랬냐 하고 얘기 듣고 오면 끝나구요. 해결이 되는데, 담당선생님도 조취를 내릴 수 없으면 우리 최고 어르신 선생님이 담당 선생님한테 가서 벌칙을 주방 3일 도와라 그러면 시간이 정해져있어요. 3일 하면 끝나요.'

*다. 신체적 체벌형태*

일부 시설에서 아동에게 직접적인 신체적 체벌이 행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체벌의 유형은 선착순으로 운동장 등을 돌아오는 것, 엎드려 뻗쳐 등의 '얼차려'를 받는 경우, 꿀밤, 회초리나 파리채로 손바닥을 맞거나 엉덩이를 맞는 것, 뺨을 때리는 경우 등 다양한 신체적 체벌이 가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신체적 체벌은 중·고등학생과 같이 비교적 연령이 높은 아동보다 나이가 어린 초등학생에게 더 많이 가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자아동보다 남자아동에게 더 많이 가해지는 것을 아동의 응답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응답한 아동 중 일부는 '말은 안 듣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맞아야 한다.'거나 '이유가 있으면 맞는다.'는 응답을 하여 신체적 체벌에 대하여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등 낮은 인권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모이면 떠들거나 주의 집중 안 할 때 흔날 때 많죠. 집 주위를 이렇게 한 바퀴 돌리거나 선착순 이렇게 한 바퀴 돌리거든요.. (중간생략) ...엎드려 뻗어 하거나..

'정말 (시설종사자가)화가 엄청 많이 나면, 손바닥이나 다리..(3-4대 정도라고 이야기함) 막대기로..' '만약의 경우에 애들이 진짜 많이 크게 잘못해서, 청소만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경우에는 엉덩이..'

'중·고등 학생은요, 고등학생은 경우에는요, 여기서는 고학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해야 할 시기고 머리가 좀 컸다~ 그래서 그때는 말로 하던가 해서 그렇게 많이 혼내시지 않고.. 때린다고 하면 거의 초등학생...'

'진짜로 열 받을 때만 때려요. 꿀밤 때릴 때도 있구요, 열 받을 때에는 싸대기 때릴 때도 있구요... 여자애들은 잘 안 때리는 데 오빠들은 많이... 가끔, 별로 실수 안 한

거 같은데 혼자 열 받아서.. 오빠들이 맞은 적은요, 한번은 이런 경우였어요, 그냥 막 허락 안 해주니깐 그냥 나갔다가...'

'그 뭐지? 파리채? 그런 걸로 손바닥.'

'그냥 학교 선생님들이 그러 듯이요. 얘기를 할 때도 있고요. 심하면 좀 맞죠. 그냥 똑같이 엉덩이 맞죠.'

'말을 엄청 안 듣는 애들이 있어요. 진짜 엄청 안 들어요. 그래서 걔는 삼촌한테 좀 혼나요. 어쩌다가 가끔씩 맞아요. 진짜 그 아이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아이예요. 말을 안 들으니까 맞겠죠. 이유가 있으면 맞는데 이유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성학대 여부는 「아니오」(96.6%)가 「예」(3.4%) 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나 성학대의 경험은 매우 낮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성 학대를 당한 아동을 대상으로 상담 여부를 알아본 결과 「예」(65.5%)가 「아니오」(34.5%) 보다 높게 나타나 성 학대를 당한 아동의 경우 상담을 받는 아이의 비율이 높았으나 상담을 받지 않았다는 아동의 비율도 34.5%로 나타났다<표 4-12>.

<표 4-12> 아동양육시설 아동의 성학대 및 상담

| 구 분 | 빈도(명) | 퍼센트(%) |
|---|---|---|
| 전체 | 853 | 100 |
| 성학대 | | |
| 예 | 29 | 3.4 |
| 아니오 | 824 | 96.6 |
| 상담 | | |
| 예 | 19 | 65.5 |
| 아니오 | 10 | 34.5 |

집단 따돌림 및 언어적 학대 여부를 살펴본 결과, 경험하지 않았다는 「아니오」(89.9%, 88.3%)의 응답이 「예」(10.1%, 11.7%) 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집단따돌

림과 언어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 역시 10%를 넘는 비율을 보였다는 결과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시설 내 노동 여부에서는 「예」(72.5%)가 「아니오」(27.5%)보다 높게 나타났다. 시설 내 노동 유형을 살펴보면 「자기방 청소」(50.6%)로 가장 높았으며 「자기방 외 공간 청소」(28.7%), 「식사 준비 보조」(9.8%), 「정원 등 실외 공간」(5.8%) 순으로 나타났다<표 4-13>.

<표 4-13> 아동양육시설 아동의 학대 및 노동

| 구 분 | 빈도(명) | 퍼센트(%) |
|---|---|---|
| 전체 | 853 | 100 |
| 집단 따돌림 경험여부 | | |
| 예 | 86 | 10.1 |
| 아니오 | 767 | 89.9 |
| 언어적 학대 경험여부 | | |
| 예 | 100 | 11.7 |
| 아니오 | 753 | 88.3 |
| 시설 내 노동 유무 | | |
| 예 | 618 | 72.5 |
| 아니오 | 235 | 27.5 |
| 시설 내 노동 유형* | | |
| 자기방 청소 | 459 | 50.6 |
| 자기방 외 공간 청소 | 261 | 28.7 |
| 정원 등 실외 공간 | 53 | 5.8 |
| 식사 준비 보조 | 89 | 9.8 |
| 농사일(채소심기, 텃밭관리) | 38 | 4.2 |
| 기타 | 8 | 9 |

*는 중복 체크 문항

설문조사결과, 자기방 청소를 비롯하여 시설 곳곳의 청소, 식사준비보조, 농사일 등의 역할이 아동들에게 부과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심층면접을 통해서도 아동의 의사와 상관없이 집안일, 청소와 같은 노동역할이 주어지는 시설이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아동들은 자신이 힘이 없기 때문에, 또는 말을 하기 무서워서 일을 하기 싫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응답하였다. 비록, 시설종사자가 아동에게 과도한 노동을 할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더라도 아동 스스로가 과도한 노동량이라고 생각하거나 자신이 맡은 일이 적절한 양과 합당한 이유에 따른 것이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때문에 시설 및 시설종사자는 청소 및 집안 일 등 역할을 부여할 때, 아동과의 충분한 대화는 물론 합의가 선행되어져야 할 것 이다.

**'오빠들 가끔 밭일 시킬 때... 오빠들은 시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식당에 도와주고 있거든요? 설거지. 그거는 했다가 이모들이 말이 많아서 다시 안 했는데, 방학 때 다시 하다가 정기적으로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좀 짜증나기도 한데, 안 하면 ○○선생님이 부르니깐 저희는 힘이 없잖아요?**

**'내가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어른들이 시키니까 하는 거죠. 그냥 하라고 하니깐 거절을 못하니깐 하는 거죠. 저는 무서워서 (안 하고 싶다는)말을 못 하겠어요. 근데(선생님한테) 말해도, 저번에 말해서 안 했는데, 방학이 오고, 겨울방학 때만 하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매스컴 보도는 「아니오」(86.3%)가 「예」(10.1%)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고민 상담 여부는 「예」(55.2%)가 「아니오」(44.8%) 보다 높게 나타났다. 차별을 받은 경험에서는 「아니오」(85.0%)가 「예」(15.0%)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4-14>.

<표 4-14> 아동양육시설 아동의 매스컴 보도 및 차별 경험

| 구 분 | 빈도(명) | 퍼센트(%) |
|---|---|---|
| 전체 | 853 | 100 |
| 매스컴 보도 | | |
| 예 | 117 | 13.7 |
| 아니오 | 736 | 86.3 |
| 고민 상담 여부 | | |
| 예 | 471 | 55.2 |
| 아니오 | 382 | 44.8 |
| 차별 경험여부 | | |
| 예 | 128 | 15.0 |
| 아니오 | 725 | 85.0 |

4) 아동양육시설 아동의 발달권 실태

아동양육시설 아동의 발달권 실태에 대해 살펴 본 결과 다음과 같다. 학업지원은 「정해진 학습시간에 선생님으로부터 학습지도를 적절히 받고 있다」(55.8%)가 가장 높았으며, 「정해진 시간 내에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22.0%), 「보습 및 학원 등을 다닌다」(11.3%), 「학습할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8.9%) 순으로 나타났다. TV나 인터넷 사용은 「원하는 경우 적절한 수준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55.6)가 가장 높았으며, 「특별한 날 또는 정해진 시간에만 이용 할 수 있다」(41.6%), 「이용할 수 없다」(2.8%) 순으로 나타났다<표 4-15>.

<표 4-15> 아동양육시설 아동의 학업지원 및 문화·휴식

| 구 분 | 빈도(명) | 퍼센트(%) |
|---|---|---|
| 전체 | 853 | 100.0 |
| 학업지원 | | |
| 정해진 학습시간에 선생님들로부터 학습지도를 적절히 받고 있다. | 476 | 55.8 |
| 정해진 학습시간 내에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 188 | 22.0 |
| 학습할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 76 | 8.9 |
| 학습할 시간이 전혀 없다. | 17 | 2.0 |
| 보습학원 및 학원 등을 다닌다. | 96 | 11.3 |
| TV 시청 및 인터넷 사용 여부 | | |
| 원하는 경우 적절한 수준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474 | 55.6 |
| 특별한 날 또는 정해진 시간에만 이용할 수 있다. | 355 | 41.6 |
| 이용할 수 없다. | 24 | 2.8 |

설문조사결과, 아동의 교육권과 관련하여 '정해진 학습시간에 선생님들로부터 학습지도를 적절히 받고 있다.'는 응답이 55.8%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심층면접 결과 역시 이러한 응답률과 같은 맥락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공부와 관련한 학습권의 보장뿐만 아니라 예체능을 전공으로 진로탐색을 하고 있는 아동을 위한 학원, 레슨, 자격증취득 그리고, 건강이나 취미생활에 관련한 강습 등의 교육기회가 아동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가. 학습관련 교육*

**학원비가 많이 비싼데요. 돈을 마련해야하는데요. 그래서 조금 늦게 가는 애들도 있고요. 근데 원하면 거의 다 보내줘요.'**

**'지원은 학원 보내주고요. 수능 보는 애들은 학원을 보내주고요. (중략) 원서 낸 다음에 입시 준비할 때 우리가 필요한 복사해주세요. 서류 같은 거 낼 때 사무실이나 가서 프린터기 사용할 수 있고... 원서 낼 때 원서비 내야 되잖아요. 그때 원서비 주고**

그래요.’

’ 어떤 과외 선생님 공짜로 가르쳐 주세요. 영어하고, 수학, 수학은 가끔 가르쳐 주고, 주로 영어를 가르쳐 주세요.’

*나. 예체능 등의 진로탐색 및 자격증 관련 교육*

‘네 (뮤지컬 레슨)받고 있어요. 그거는 집에서 다른 아이들도 신경을 써줘야 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경제적 문제가 좀 어려웠는데.. 근데 전 너무 하고 싶은 마음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다가 운이 좋게도 학교 선생님이 꿈 장학금이 생겼는데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열심히 글을 써서 뽑혀서 장학금을 받고 있어요.’

‘제가 요리학원 다니고 싶다고 하면 시설에서요. 찾아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연결해 주죠. 그런데 가서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학원비를 좀 싸게 깎죠.’

*다. 건강 및 취미관련 교육*

‘여기 지금 악기도 배우는 것도요, 돈 주고 배우는 것도 있고, 아니면 자원 포함해서(후원 및 자원봉사를 의미) 잘 해 주세요. 여기 지금 태권도 배우는 얘들도요 집에서 돈 주시고...’

‘여기서 운전면허증 같은 거 지원 해 줘요. 운전면허증 학원 먼저 다녀요. 민증 따면요.’

이와 같이 아동의 교육권이 잘 보장되고 있는 시설도 있지만 아동의 학습권이 시설에 따라 다소 다르게 보장되고 있다는 부분, 즉 교육권의 제한과 침해 역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심층면접을 통해 확인되었다. 먼저 시설에서 아동의 적극성이 부족하여 교육권을 보장해 주지 못하거나 충분히 교육권으로의 접근이 가능하고,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여 시설 또는 시설의 중간관리자에 의해 교육권이 제한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저번에 말 했듯이 어떤 오빠가 학원 그거 때문에 상처를 받았거든요.'

(아동의 이야기에 따른 내용요약: 후원을 받아 학원에 다니려고 하였으나, 시설 측에서 아동의 귀가시간이 늦어진다고 하여 학원을 못 다니게 하였고, 그 다음날 학교도 못 가게 하여 아동이 지각을 하였음. 대화를 하던 중에 고아자식은 배울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함)

'애들이 말하면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애들이 각기 잘 하는 건 다르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게 장점이잖아요. 여기서 장점이 묻힐 수도 있잖아요. 다른 애들은 만약에 미술을 잘한다고 하면 엄마가 너는 공부를 못해도 미술을 잘하지 이러면서 미술학원 보내 주고 그러는데 여기는 예체능 쪽은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체능은 진짜 불리해요. 저도 미술을 정말 좋아해서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해서 하고 싶었는데 예고는 아예 생각을 안했죠. 예고는 학비가 비싸잖아요. 여기서 학비까지 지원해 줄 수는 없잖아요. 저만... 그런 건 좀 그런 것 같고 학원도 예체능 쪽 학원은 좀 비싸잖아요.'

심층면접에서 몇몇의 시설아동들은 교육권 확보와 관련하여 시설을 통한 지원은 한계가 있다고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정부차원의 지원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단순하게 교육비지원의 양과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주기를 희망하는 의견에서부터, 중소도시(비수도권)라는 지리적 위치가 교육권을 제공받는 것에 있어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방의 시설들에 더욱 신경을 써 주어야 하며, 지원은 한시적이거나 깊이 없이 비전문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비교적 디테일한 의견을 표현하여, 시설의 아동이 교육받을 인권을 자신들이 누려야 하는 하나의 인권으로써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립금 같은 것도 많이 줬으면 좋겠고 학원비도 고등학교 이상만 지원하는데 중학교 애들도 지원 해 줬으면 좋겠고 그냥 많이 지원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저희 집 문제가 아니라 나라문제.. 이거는 정부에서...(중략) 여기는 지방이니까 서울은 그렇다고 쳐요. 근데 이렇게 지방 쪽 까지 신경을 안 써 주시는 것 같아요. 이건 나라 문제예요. 나라에서 이런 아이들을 잘 해줘야 되요. 애들의 특성을 살려서... 우리가 배우기는 해요. 가끔씩 가다가 취미로 간단한 거... 간단한 거 배워서 뭐해요. 잘 배워야죠. (중략) 나라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중략)공부는 분명히

못해요. 근데 미술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난 미술을 잘 하니까 미술 쪽으로 나가지 그런 꿈을 갖고 있었는데 지원을 안 해 주니까 꿈이 막혔어요. 그럼 난 당장 뭐하고 살아요.'

한편, 설문조사결과에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아동의 교육권은 시설의 여건, 시설종사자 및 지역사회의 태도 뿐만 아니라, 시설의 지리적 위치와 같은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것을 시설종사자의 목소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도시의 경우에는 학습지도와 관련한 인적자원이 풍부한 반면, 중소도시의 경우, 학습지도 자원봉사자를 구하는 것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지금 저희 학습봉사자가 70~80명 정도 되세요. 주간에 오시는 선생님, 야간에 오시는 선생님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게 부족하다고 데이터가 나오면 이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봉사자선생님을 개인적으로 붙여주기도 하고 2~3명씩 그룹으로 붙여주기도 하고...'

'서울은 널린 게 과외선생님이고 학교에도 매일 오더라고요. 저희는 과외선생님 구하는 게 너무 힘들고 공부를 하려면 저희가 가르쳐야 하는데 중학생 수학 하나 가르치려면 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다른 것은 다 손 놓고 해야 하니까 그걸 하다가 못하겠더라고요. (중략) 지금은 다행히도 실습 선생님들 그리고 평일에는 안 되지만 주말에 과외선생님이 오셔서 수학이랑 영어 해주시고... '

'우선은 (지원이)힘들지 않을까하는 저는 스스로 생각이 들고요. 힘든 이유는 우선은 금액, 돈, 예산도 없고요. 그 학생을 다뤄줄 수 있는 전문 강사도 없을뿐더러, 아이들에게 맞는 진로를 탐색해주는 그런 것도 조금씩은 부족해서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외출은 「미리 선생님께 허락을 받아야 한다」(61.7%)가 가장 높았으며, 「규칙만 지킨다면 외출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23.4%), 「외출의 횟수와 시간은 정해져 있다」(7.5%), 「학교에서 돌아온 이후에는 외출을 할 수 없다」(7.4%)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이나 친척 등 방문 및 접촉은 「선생님께 말씀 드리고 미리 허락을 받으면 자유로운 연락 및 방문이 가능하다」(56.4%)가 가장 높았으며, 「언제든지 자유로운 연락 및 방문이 가능하다」(25.6%), 「정해진 날짜만 연락 및 방문이 가능하다」(9.6%), 「연락

및 방문을 할 수 없다」(8.2%) 순으로 나타났다<표 4-16>.

<표 4-16> 아동양육시설 아동의 외출과 가족 방문 및 접촉

| 구 분 | 빈도(명) | 퍼센트(%) |
|---|---|---|
| 전체 | 853 | 100.0 |
| 외출 | | |
| 규칙(귀가시간 등)만 지킨다면 외출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 200 | 23.4 |
| 외출은 미리 선생님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526 | 61.7 |
| 외출의 횟수와 시간은 정해져 있다. | 64 | 7.5 |
| 학교에서 돌아온 이후에는 외출을 할 수 없다. | 63 | 7.4 |
| 가족·친척 등 방문 및 접촉 | | |
| 언제든지 자유로운 연락 및 방문이 가능하다 | 220 | 25.8 |
|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허락을 받으면 언제든지 자유로운 연락 및 방문이 가능 하다. | 481 | 56.4 |
| 정해진 날짜만 연락 및 방문이 가능하다. | 82 | 9.6 |
| 연락 및 방문을 할 수 없다. | 70 | 8.2 |

<표 4-16>을 살펴보면, 외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응답이 23.4%로 나타났다. 심층면접에서도 외출의 자유가 조금 더 확보되기를 원하는 아동의 의견이 나타났다.

**‘자유를 주었으면 좋겠어요. 외출을 자유롭게 하고... 제 시간 안에 오는 거는 쉽죠.. 초등학교 때에는 친구네 집에 가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허락을 안 해 줘요. 지금 현재는 자유롭지는 못한 거 같아요. 시간이 정해 져 있거든요, 기상 시간, 공부 시간, 점심 먹는 시간, 놀 수 있는 시간. 그런 거.. 조금 불편하구요.’**

용돈 관리는 「선생님께서 용돈을 관리하고, 필요할 때 말씀드리면 주신다」(55.2%)가 가장 높았으며, 「내가 용돈을 관리하며, 용돈 기입장을 통해 선생님의 지도를 받는다」(25.6%), 「내가 용돈을 관리하나, 선생님의 지도를 받은 적이 없다」(18.3%) 순으로 나타났다<표 4-17>.

<표 4-17> 아동양육시설 아동의 용돈 관리

| 구 분 | 빈도(명) | 퍼센트(%) |
|---|---|---|
| 전체 | 853 | 100.0 |
| 용돈 | | |
| 내가 용돈을 관리하며, 용돈 기입장을 통해 선생님의 지도를 받는다. | 218 | 25.6 |
| 내가 용돈을 관리하나, 선생님의 지도를 받은 적이 없다. | 156 | 18.3 |
| 선생님께서 용돈을 관리하시고, 필요할 때 말씀드리면 주신다. | 471 | 55.2 |
| 용돈을 받지 않는다. | 8 | .9 |

5) 아동양육시설 아동의 참여권 및 시설만족도 실태

아동양육시설 아동의 참여권 및 시설만족도 실태에 대해 살펴 본 결과 다음과 같다. 의사 결정 시 참여 여부는 「예」(77.6%)가 「아니오」(22.4%)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의사 결정 기회가 제공 될 시 참여 여부는 「그저 그렇다」(41.9%)가 가장 높았고, 「그렇다」(41.4%), 「전혀 그렇지 않다」(16.8%) 순으로 나타났다<표 4-18>.

<표 4-18> 아동양육시설 아동의 의사결정 및 기회 제공 시 참여 여부

| 구 분 | 빈도(명) | 퍼센트(%) |
|---|---|---|
| 전체 | 853 | 100.0 |
| 의사결정의 참여 | | |
| 예 | 662 | 77.6 |
| 아니오 | 191 | 22.4 |
| 의사결정 기회제공 시 참여 | | |
| 그렇다. | 79 | 41.4 |
| 그저 그렇다 | 80 | 41.9 |
| 전혀 그렇지 않다. | 32 | 16.8 |

문화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는 「자유롭게 참여 할 수 있다」(49.8%)가 가장 높았

고, 「정해주는 외부 활동에만 참여 할 수 있다」(41.9%), 「참여 할 수 없다」(8.3%) 순으로 나타났다<표 4-19>.

<표 4-19> 아동양육시설 아동의 문화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

| 구 분 | 빈도(명) | 퍼센트(%) |
|---|---|---|
| 전체 | 853 | 100.0 |
| 문화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 | | |
| 자유롭게 참여 할 수 있다. | 425 | 49.8 |
| 정해주는 외부활동에만 참여할 수 있다. | 357 | 41.9 |
| 참여할 수 없다. | 71 | 8.3 |

위의 <표 4-19>에서는 문화활동 및 지역사회로의 자유로운 참여와 제한적인 참여가 비슷한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과의 심층면접에서는 시설아동의 문화 및 여가활동, 지역사회 등의 외부활동 등의 실태를 자세히 알 수 있다.

심층면접에 따르면, 시설에서 아동들이 참여하고 있는 여가 및 문화생활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여러 기업 및 단체들의 후원과 지원을 바탕으로 하거나 연계활동의 일원으로 이벤트성, 일회성의 행사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문화프로그램들에 많은 아동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의 문화생활은 기존에 많이 실시하였던 영화관람이나 놀이공원 나들이의 패턴에서 벗어나 뮤지컬과 공연관람, 댄스(비보이), 밴드 및 다양한 악기연주, 미술, 요리 등의 취미생활, 그리고 유럽으로의 여행 등 아동에게 다양한 문화활동이 제공되는 긍정적인 측면을 살펴볼 수 있다.

**‘처음에는 오카리나 배웠고, 오카리나 선생님이 이번에 크게 한다고 밴드를 만들었는데요. 저도 밴드 속해 있고, 메인 기타를 하고 있어요. 트럼펫도 한지 별로 안 되었지만 트럼펫 배우고 있어요.’**

**‘여기는 되게 좋은 많이 가는 거 같아요. 뮤지컬도 많이 보러 가고, 공연도 많이 보러 가고, 작년 9월 달인가? 그 때 유럽도 해외도 다녀왔어요.’**

**‘댄스를 하거든요. 배우러 가는데 홍대 이런데 댄스 학원이 있거든요? 거기 가는 애**

들도 있어요.'

아동의 의견과 맞물려 시설종사자 역시 아동에게 여가 및 문화생활을 누릴 인권이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영화, 연극, 음악, 미술 이런 걸 저학년 고학년 따로 나누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거기(관련센터의미) 가서 활동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영화관람이나 연극 같은 것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저희가 힙합을 하고 있거든요. 힙합을 상도 많이 타고 그래서요. 의상비든지 강사비 그런 여러 가지를 지원해 주고요...'

'야구장, 영화, 뮤지컬, 문화행사, 콘서트를 자주가요. 그리고 저희와 협연되어 있는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는 2~3개월마다 음악회를 하거나 비보이 공연을 해주거나 하지요. 저희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아이들이나 항상 새로운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매달 이벤트를 해요.'

또한 아동들은 캠프체험과 문화생활의 경험을 시설에서의 가장 좋은 기억, 행복한 기억으로 꼽고 있어 여가와 문화생활을 할 인권이 아동들의 행복할 인권과 밀접히 연관된다는 것이 확인되어 하나의 인권으로서의 중요성이 배가된다.

'여름에 놀러 가는 거! 바닷가! 작년에는 고학년은 바닷가 가고 어린애들은 오션월드 가고 하는 거~.'

'캠프 갈 때요, 2박 3일이나, 1박 2일 막 캠프 가고, 스키장도 가고, 바닷가도 가고, 그때가 가장 재미있었어요.'

이와 같이, 문화생활의 기회가 다양하게 제공되는 시설이 있는 반면, 정기적인 문화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시설이 있었는데, 이러한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은 문화생활의 기회가 더 많이 제공되기를 바라는 욕구를 표현하였다. 이렇듯, 문화로의 접근이 폭 넓고, 자원이 풍부한 시설이 있는 반면, 여가 및 문화관련 자원이 부족한 시설이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여러 가지 요인들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문화시설 및 기관이 다소 부족한 지방의 경우, 한정된 자원의 활용 및 자원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한편으로는 시설종사자들의 자원연계 기술부족 또는 종사자의 의지와 관련될 수 있다. 때문에 이러한 기관 간 문화권의 차이(gap)를 줄이기 위하여 효과적으로 자원에 접근하는 방법 등의 교육/정보프로그램을 시설종사자에게 제공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적인 거...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거... 한 달에 한 번씩 영화를 본다던가, 한 달에 한 번씩 자기 좋아하는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문화생활을 하거나 취미를 길러서 문화생활을 하는 문화인이 되어야죠.'**

앞서 아동들의 발달단계에 알맞은 다양한 발달권의 보장의 중요성을 아동의 목소리로서 설명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아동이 시설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일반가정아동에 비하여 행사에 참여하는 횟수가 많은 것과 단체행동이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이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한 채 일괄적으로 참석하여야 하는 부분에 있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받을 인권과 문화생활을 누려야 하는 인권 등의 발달권이 중요하고 또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아동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즉 아동이 활동에 참여하기 싫은 상황이어서 아동에게 부담으로 느껴질 때에는 참여하지 않을 인권, 선택의 인권도 보장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학교 갈 때 좀 살짝 피곤할 때 있으면 방학되면 좀 쉬고 싶었는데 살짝 행사가 많았던거? 이런 게 불편한 거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디 나가는 거 안 좋아 하는데 방학 때 마다 가니까 다른 아이들은 엄청 좋아 하는데 저는 별루 안 좋아해요. 다른 애들은 좋아 하는데 저는 성격이 방학에는 그냥 집에서 TV보고 있고 싶은데 맨 날 어디 왔다 갔다 하니까.. 가끔씩 가는 것은 좋은 데요. 저는 친구들 보다 자주 다니잖아요. 그런게 좀 저는 싫어요. 단체니까 꼭 가야죠. 빠질 수도 없고...'**

**'이번에 교회 수련회는 중고등부면 중고등학생은 다 참석 하고, 학교 아니 인문계 얘들은 학교를 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학교에 말을 해서 수련회 참석해야 한다고 하고 참석하고, 교회수련회는 꼭 참석해야 하고요.'**

'저번에 왔는데 과학교실이 와요 초등학교 애들이랑 가는 거예요. 중학교 애들이 가면 초등학교 애들이 모자른데요. 그래서 중학교 애들 가래요. 근데 우리가 무슨 초등학교 없으면 채워주는 사람도 아니고 가라마라 이러니까 짜증나죠. 하고 싶은 애들이 들어가서 하는 건 상관없는데 초등학교 애들이 어디 나가고 인원수 모자를 때 인원수 채우려고 중학교 생들 가라고 할 때는 진짜 짜증나요.'

시설종사자도 아동이 행사에 참여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파악하고 있었으나, 그러한 아동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스케쥴이나 참석아동의 조율 등의 시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아이들이 크면 행사에 가기 싫어하거든요. (중략) 중학생만 되면 안가고 싶죠. 어쩌다 보면 "다 가자" 이렇게 하는 데 힘든 데 억지로 가고, 형들이니까 짐도 들어야 하지, 꼬맹이들 주위에 많으니까 제가 보기엔 싫을 것 같아요.'

이와 같은 결과는 중소도시(비수도권)에 위치한 시설종사자의 의견으로도 확인되어진다. 아동에게 보장되어야 할 여러 가지 인권들도 마찬가지이지만 문화생활은 시설 내에서 제공받는 것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시설이 교통이 불편한 곳에 위치할 경우, 문화권으로의 접근기회 역시 적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이들이 놀러 가고 싶어 하는 게 되게 많아요. 또 청소년들이다 보니깐 놀이공원 같은데 가고 싶어 하는데 그것도 시설 운영비 때문에도 좀 자주 못가는 부분이 있어서 아이들이 문화적인 혜택 같은 것도 많이 못 받고, 특히 또 여기 시골이다 보니깐 한 번 나가려면 버스 한 대 경비부터 만만치가 않아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이들이 누려야 할 수 있는 일 것들을 못 누리지 않나 그런 부분이 생각이 듭니다.'

건의 사항 표현 방법으로는 「선생님이나 원장님께 말씀 드린다」(63.0%)가 가장 높았으며, 「건의사항을 말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말하지 않는다」(23.3%), 「홈페이지나 건의함에 쓸 수 있다」(13.7%)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교류는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다」(77.0%)가 가장 높았으며,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는 내용과 할 수 없는 내용에 대한 지침이 있다」(17.7%), 「외부에 말할 수 없도록 되어 있

다」(4.8%) 순으로 나타났다<표 4-20>.

<표 4-20> 아동양육시설 아동의 건의사항 표현 및 지역사회 교류

| 구 분 | 빈도(명) | 퍼센트(%) |
|---|---|---|
| 전체 | 853 | 100 |
| 건의 사항 표현 | | |
| 선생님이나 원장님께 직접 말씀드린다. | 537 | 63.0 |
| 홈페이지나 건의함에 의견을 쓸 수 있다. | 117 | 13.7 |
| 건의사항을 말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서 말하지 않는다 | 199 | 23.3 |
| 지역사회 교류 | | |
|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다. | 657 | 77.0 |
|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는 내용과 이야기 할 수 없는 내용에 대한 지침이 있다. | 151 | 17.7 |
| 외부에 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 41 | 4.8 |
| 기타 | 4 | .5 |

설문조사에서는 시설종사자에게 직접적으로 건의사항을 이야기하는 아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심층면접에서는 많은 시설에서 건의사항이나 의견제시가 자치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치회를 구성하여 건의사항을 다루고, 아동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시설에 전달하는 기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의사항의 경우, 비교적 많은 아동들이 자신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인지하고 있었으며, 아동들이 합리적이지 못한 건의사항을 제시한다는 자기비판도 하고 있다.

**‘방에서 회의를 해요. 한 달에 한번 회의를 하는데, 그때 마다 건의 사항 있거나 그런 거 있으면 말을 해요.’**

**‘건의사항은 말해서 바꿔달라고 하면, 일단은 들어보시고, 생각해 보고 이러면요. 어쩌다 바꿔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보면 얘들이 이상한 이야기를 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잘 들어 주실 때도 있구요.’**

'회의를 해요. 회의 전에 미리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지위 높은 애들(회의에 참석하는 아동들)한테 말을 하면 "회의시간에 말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애들이 뭐가 안 좋다고 하면 선생님한테 연결하고 대변인 같은 거, 지위 높은 애들이 그런 식으로 많이 해요.'

아동들이 주축이 되는 자치회를 통해 건의사항 및 의견전달이 이전에 비해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건의사항이 개선되고 의견이 관철되는 과정의 경험을 통해 자치회의 효과성과 필요성을 아동 스스로 인지하며, 자신들의 의견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며, 자치회가 가지는 객관성(대표성)의 의미를 생각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아동들에게 민주적인 의견수렴의 과정을 경험하게 하여 학교 및 사회생활에서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금 또 가족회의 매번 하는 게 있어요. 이걸 통해서 의견을 나누고, 의견을 결정을 해서 (통금)시간을 늘리기도 하고, 그렇기는 하는 데 처음에는 그런 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책임자가 보잖아요. 건의하는 걸요. 우리의견을 좀 더 들어 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너무 어려운, 너무 그런 건 그렇지만 그래도 전체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모들 중에서 좀 높은 대표가 있는데 그분이 (회의)주최를 하셔요. 조가 나누어져 있고, 그 집(각각의 방, 각각의 조를 의미)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의논을 하면, 그 조마다 의논을 한 다음에 건의 할 것 있으면 건의하고, 쓰고... '

'아! 화장실 목욕탕에 수건 걸어 놓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불편하다고 달아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달아 주셨어요.'

'자치회의 같은 거 하거든요. 자기가 못 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각 생활실에서 토의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토의를 하고 애들이 '야 우리 뭐 필요 한 것 같아' 이렇게 하면 각 반에 생활실에서 자취회하는 한명이 있어요. 대표가 한 달에 한 번씩 자치회를 하는데요. 대표가 건의를 하면 사무실로 가요. 그러면 사무실에서 그걸 보고 해

줘요. 나중에 보면 바뀌져 있어요. ‘

‘회의하고 난 얘기 서기가 다 적으면 이제 그걸 타이핑 쳐 가지고 의견 나온 걸 사무실에 내면 프린트를 해서 각 방마다 다 돌려요. 자치회에서 그럼 자치회에서 나온 애기를 보고 집에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활실 애들이랑 거기서 또 무슨 애기 나오면 회의를 하면 그런 거에 대해서 또 학생관실에서 회의를 하고 만약 건의 사항 나오면 그걸 반영해서 다음 달에 짤 때 그걸 내고.’

그러나, 자치회가 구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효과적으로 제 구실을 하지 못하는 시설도 있다. 자치회가 없을 때에는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부재하여 의견 전달이 어렵다고 생각하였으며, 자치회가 생기고 나서도 의견수렴의 과정과 건의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결과들, 즉 이전과 다르지 않은 상황들은 아동들에게 좌절을 느끼게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주먹구구식으로 자치회의 형식만 갖춰놓는 것이 아니라 자치회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준비들이 선행되어야 자치회의 유명무실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치회 같은 걸해요. 그때는 우리의 의견이 좀 들어가요. 적어서 가거든요. 회의를 자주는 못하지만 어쩌다가 할 때도 말이 막혀요. “ 조용해 ” 하면 조용해야죠. 다물라 하면 다물어야죠 ‘조용히 해’ 그러면, “아~” 그러면서 조용히 해요. 거기서 말 더하면 혼나요.’

‘○○선생님한테 말해도 소용이 없고 말해 봤자 들어 주지도 않는 다고 포기도 하고 그런 식이였어요. 애들이 그런 말을 못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못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못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말을 안 들어 주니까 그것 때문에 자치회가 나온 거예요. 자치회가 생기면서 잘되어야 하는데 잘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자치회 임원이 아니거든요. 자치회가 잘 돌아 가는지 모르겠어요. 생각하기에는 자치회가 잘 안돌아가는 것 같아요. 있으나 마나 한건 아닌데요.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해야 하는데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어요.’

본인과 관련된 의사 결정은「참석해서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이러한 의견은 결정에 반영된다」(72.8%)가 가장 높았으며,「참석할 수 있지만, 의견을 말하거나 반영되지 않는다」(21.3%), 「참석 할 수 없다」(5.9%)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 활동은「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행하는 종교행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47.1%)가 가장 높

았으며, 「자유롭게 종교 활동을 선택할 수 있다」(36.2%), 「강요하지는 않지만,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종교 활동에 참여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다」(8.3%) 순으로 나타났다<표 4-21>.

<표 4-21> 아동양육시설 아동의 본인 일의 의사결정 및 종교 선택

| 구 분 | 빈도(명) | 퍼센트(%) |
|---|---|---|
| 전체 | 853 | 100.0 |
| 본인일의 의사결정 | | |
| 참석해서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이러한 의견을 결정에 반영된다. | 621 | 72.8 |
| 참석을 할 수 있지만, 의견을 말하거나 반영되지는 않는다. | 182 | 21.3 |
| 참석 할 수 없다. | 50 | 5.9 |
| 종교의 선택 | | |
| 자유롭게 종교 활동을 선택할 수 있다. | 309 | 36.2 |
| 강요하지는 않지만,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종교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면 신경이 쓰이거나 불이익이 있다. | 142 | 16.6 |
|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행하는 종교행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 402 | 47.1 |

설문조사에서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21.3%로 나타난 바와 같이, 심층면접 분석결과에 따르면, 응답아동은 시설종사자에게 고민 또는 부탁을 전하거나 의견을 전달하여도 의견이 반영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는 아동의 경험을 통하여 굳어진 생각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패턴이 계속될 경우, 아동과 시설종사자의 의사소통의 통로가 닫혀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예상된다.

**'슬쩍 딱 보고 (아무도)없을 때 이모한테 슬쩍가서 이야기하고...(중략) 근데 이모가 기억력이 안좋아요. 나이가 있으셔서 그런지 그냥 이야기 하고 까먹어요. 금방. 그래서 이야기 하고 말아요.'**

'(의견을 말하거나 규칙을 바꾸는 거) 그거는 좀... 그래도 뭐 해도 바뀌는 건 없거든요. 해 본 적은 있어요. 방 이제, 공부하고, 그러고 싶다고 했는데, 그게 안 됐죠. 실행이 안 됐죠.'

한편,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혹은 시설 내에서 서열이 낮기 때문에 자신은 의견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응답이 있었다. 아동은 의견을 잘못이야기 할 경우 언니들에게 혼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아동은 말할 인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극단적으로 표현하였다.

'우선 결정을 할 때 보면 언니들  우선주의라 할까? 무슨 의사(의견이)가 있을 때 좀 언니들 위주로 언니들 의견이 많이 들어간다고 할까? 청소당당을 정해요. 우리는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뭔 말을 잘못했다가 혼날까봐 말을 잘 못하겠고 그냥 너 이거 해 그러면 하는 거죠.'

'여기는 말할 인권을 박탈당하고 있어요. 나이가 어린 게 죄예요. 나이가 어리면 안 돼요. 힘이 없어요. 내가 나이를 막 먹을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어요.'

이와 같은 의사표현의 어려움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연스럽게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은 주도적인 자기표현의 교육과 연습을 통해서 학습되어 질 수 있으며, 이러한 교육은 아동뿐만 아니라 시설종사자에게도 필요한 것이며 무엇보다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옛날에는 우리도 자기 주관적인 의견을 못 말했을 때에 자기 혼자서 속상해서 그랬는데요. 지금은 외부 강사가 와서 감정코치 트레이닝 받고,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배우고 우리도 당당하게 자신감 같은 프로그램을 배우면서 자기의견을 똑바로 말하고, 성폭행 성폭력 그런 프로그램을 받으면서 애들이 싫고 좋고를 분명히 말하고...'

아동과 시설종사자가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것 또는 아동이 제시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나아가 아동의 의견을 무시하고 시설종사자의 뜻에 따라

상황이 결정지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는 시설종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혹은 시설종사자의 입장에서 가장 갈등이 없는 해결방법을 선택하기 위하여 아동의 의견을 무시하는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방을)주기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누가 말 안 듣는다 싶으면 방을 바꾸는 데요. 그것 때문에 피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와 같이 방 쓰는 언니가 되게 조용해요. 뭐 그냥 누가 말 안 들으면 방을 바꿀 때요. 우리가 지목이 되서 우리랑 맨날 방을 바꾼단 말이예요. 청소 다해놓으면 바꾸라고 하니까 저번에도 일주일 전에 청소 다 했는데 누가 이모 말을 안 들어서요. 우리랑 방을 바꾸래요. 다른 방도 많은데 그것 때문에 좀 그랬어요. 청소 다했는데 우리보고 방 바꾸라 해서요. 우리가 제일 그냥 이모가 말하면 빨리 받아 드려요. 남들 보다는 빨리 받아들이니까 이모가 오히려 방을 자주 옮기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청소 다 해놓고 베란다 쓸어 놓고 다 닦아 놓고...'

한편, 설문조사 결과,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보장한다는 응답은 36.2%에 불구하였고, 종교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거나, 의무적으로 종교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비율이 63.7%로 높게 나타났다. 아동과의 심층면접 결과에서도 비슷한 목소리로 나타났다.

'초등학생들은 거의 가고 중학생부터는 안가고 싶다고 하면요 안가도 돼요.' → 아동

'네. 교회를 다니면 교회 보내 주고 그래요' →아동

'인권에 걸린다고 5년 전부터 ○○님이 강요하면 인권위에 걸리니까 자율적으로... 솔직하게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매년 초에 직원연수 그런 걸 하는 데 그때 강요는 하지 말고 그 대신 하는 시간은 하자.' → 시설종사자

'대부분 기독교로 권장해요.' → 아동

'금요일 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요, 기도회 하면 무조건 참석해요. 다 참석한지는 얼마 안 됐지만 참석해요.'

‘일요일이 끼어 있으면 (외박을)못 해 줘요. 무조건.., 교회를 무조건 가야 해요. 그 교회 참석 안하면 안 되고...’

‘일단은 금요예배가 전부터 해오던 거라서 일단은 (교회를 안다니는 사람도)다같이...’

‘종교는 너 무조건 세례 받아 이렇게 강요는 안하는 데요. 일단 공동체잖아요 미사 같은 거 드려야 하는 건 드리고, 그리고 구일 기도라고 해가지고 성탄절에 9일 동안 교회가서 그런 거 못 빠져요. 행사식으로 하는 건 못 빠져요.’

‘빠질 수가 없어요. 무조건 다가서 인원 체크하고 다 있는지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다른 종교를 믿으면)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선생님이 싫어하실 꺼예요. 싫어하시죠. 당근..’

또한, 아동은 교회에 가고 싶지만 시설과 교회 사이의 마찰로 인하여 종교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님이 ○○교회랑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 (교회를)못 다니고 있어요. 저희가 교회를 안 다니게 되고, 그 다음 달이 캠프였는데, 교회선생님들이 와서 허락을 맡았어요. 근데 결국은 못 갔어요. 안 되가지고, 허락을 안 해 주셔서...’

아동의 반응은 시설의 종교를 따르는 것에 거부감을 갖지 않는 아동과 시설의 종교를 따르고 있지만 시설퇴소 혹은 향후에는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반응, 그리고 기존의 자신의 종교와의 사이에서 혼란을 겪는 경우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여기 종교니까 여기서 교회에서 여기 뭐 해주고 다 해주니까 또 계속 기독교를 믿죠. 교회를 계속 다니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별로 뭐 교회를 믿을 것도 없고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 무교고, 집(시설을 의미)으로 따진다면 기독교... 선택 할 수 있다면 종교가 없을 꺼예요. 진짜 궁 할 때는 종교를 가지는데 궁하지 않을 때는..(말 흐림) (종

교가) 선택하는 것은 아니예요. 솔직히 교회에서 우리 다해주는데 불교를 믿으면 배신이죠. ’

‘나중에 나가는 애들 보면 교회 안 나가는 얘들도 많을 거 같아요.’
아 동: ‘(혼란이) 왔었어요.
질문자: 종교의 변화를 받아드릴 수 있었어?
아 동: 네.
질문자: 종교가 뭐예요? 하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
아 동: 저요? 모르겠어요..

아동양육시설 아동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시설 만족도는 「매우 만족」(40.3%)이 가장 높았으며, 「조금 만족」(22.4%), 「보통」(20.5%), 「매우 불만족」(8.7%), 「조금 불만족」(8.1%) 순으로 나타났다<표 4-22>.

<표 4-22> 아동양육시설 아동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시설 만족도

| 구 분 | 빈도(명) | 퍼센트(%) |
|---|---|---|
| 전체 | 853 | 100.0 |
|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시설 만족도 | | |
| 매우 불만족 | 74 | 8.7 |
| 조금 불만족 | 69 | 8.1 |
| 보통 | 175 | 20.5 |
| 조금 만족 | 191 | 22.4 |
| 매우 만족 | 344 | 40.3 |

6) 아동양육시설 아동의 인권 의식

아동양육시설 아동의 인권 의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동양육시설 아동의 아동인권(인권)에 대한 인지정도는 「잘 알고 있다」(48.5%)가 가장 높았으며, 「들어 본 적은 있지만 잘 알지 못 한다」(41.1%), 「전혀 알지 못 한다.」(10.3%)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인권 관련 정보 또는 교육 제공 여부는 「예」(62.5%)가 「아니오」(37.5%) 보

다 높게 나타났으며, <표 4-23>과 같다.

<표 4-23> 아동양육시설 아동의 인권 인지 및 교육제공 여부

| 구 분 | 빈도(명) | 퍼센트(%) |
|---|---|---|
| 전체 | 853 | 100.0 |
| 아동인권(아동인권)에 대한 인지정도 | | |
| 잘 알고 있다. | 414 | 48.5 |
|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알지 못한다. | 351 | 41.1 |
| 전혀 알지 못한다. | 88 | 10.3 |
| 아동인권관련 정보 또는 교육 제공여부 | | |
| 예 | 533 | 62.5 |
| 아니오 | 320 | 37.5 |

아동양육시설 아동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인권 중 1순위는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놀 인권」(39.5%), 2·3순위는 「친구들과 자유롭게 모임을 갖고 활동할 인권」(20.4%, 17.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4-24>.

<표 4-24> 아동양육시설 아동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인권

| 구분 |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
| | 빈도 (N) | 퍼센트 (%) | 빈도 (N) | 퍼센트 (%) | 빈도 (N) | 퍼센트 (%) |
|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놀 인권 | 337 | 39.5 | 153 | 17.9 | 127 | 14.9 |
| 내 의견이 존중받을 인권 | 93 | 10.9 | 146 | 17.1 | 108 | 12.7 |
| 친구들과 자유롭게 모임을 갖고 활동할 인권 | 126 | 14.8 | 174 | 20.4 | 149 | 17.5 |
| 폭력이나 욕설 등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을 인권 | 101 | 11.8 | 95 | 11.1 | 74 | 8.7 |
| 필요에 따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권 | 31 | 3.6 | 88 | 10.3 | 84 | 9.8 |
| 자신과 관련된 일에 참여할 인권 | 19 | 2.2 | 40 | 4.7 | 74 | 8.7 |
| 다른 사람과의 차이나 개성이 존중받을 인권 | 25 | 2.9 | 56 | 6.6 | 80 | 9.4 |
| 사생활이 침해받지 않을 인권 | 55 | 6.4 | 82 | 9.6 | 134 | 15.7 |
| 기 타 | 66 | 7.7 | 19 | 2.2 | 23 | 2.7 |

시설아동의 인권의식과 관련하여 심층면접을 통해, 시설아동들이 인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느낀 경험과 반대로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존중, 보호받고 있다고 느낀 경험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시설아동들이 느꼈던 부당한 대우, 인권침해의 경험들은 다음과 같이 기억된다.

**‘근데 여기는 공동체 생활을 하다보니깐 딱딱 규칙적으로 하는 건 좋긴 한데 그게 삶을 수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중략) 자기 주도적인 것 보다 뭔가 하라고 해서 지키는... 알아서 선택하는 폭도 넓고 많아야 하는데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무래도 가정에 비해 적잖아요. 그런 게 좀...’**

시설아동은 식사시간, 취침시간 등 시설의 스케줄에 따르며 일반가정의 아동보다 선택권과 자율성의 보장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제한은 단순히 아동의 자유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넘어, 타인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영역이 많이 제한된 환경의 생활에 익숙해진 아동이 성인되어서도 자신과 관련한 일의 결정

을 어려워하는 등, 주체적으로 삶을 이끌어 가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잠재위험성을 가지게 된다.

**‘(시설종사자들이) 종종 약간 무시하는 듯 한 그런 게 있긴 했어요. 너희가 우리보다 낮다 생각하고 말 툭툭 하시는 거...’**

**‘선생님들이 애를 안 좋게 보는거요. 애가 성격이 이러니까 얘는 원래 이런 애다 이렇게 보는 거? 성격가지고 그렇게 봐요. (중략)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아동들은 시설종사자가 자신들을 동등한 입장으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거나 무시하는 말투를 사용하는 것에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었으며, 일부 아동은 시설종사자들은 자신들이 시설에 들어와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격이 좋지 않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공동체니까 어쩔 수 없어, 부당하게 벌서야 할 때도 있고, 몇 명이 잘못한 것 때문에 단체로 벌설 때 그럴 때, 그런 경우.’**

또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부당하게 단체로 체벌을 받아야하는 점을 자신이 경험한 부당하고 불공평한 경험이라고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아동이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경험을 통하여 자신이 시설과 시설종사자들로부터 보호받고 있으며, 존중받고 있다고 느꼈던 경험을 묻는 질문에 다양한 형태의 응답결과가 나타났다. 먼저, 아동은 종사자가 자신의 학교생활에 관심을 가져주고 학교 및 외부에서 일어나는 문제나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주는 부분에서 스스로가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하여 부모와 가족과 같은 보호자의 역할을 제공해주는 것을 하나의 중요한 보호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학교생활을 할 때도 (시설)선생님들이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학교 다닐 때, 따돌림 당할 때 보호 받는 거 같아요.’**

**‘그 때 한 저희 집에 한 형이 그 때 학교에서 따돌림 비슷하게 받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설)선생님께서 어떻게 들었나 봐요. 알게 돼서 학교 가서 선생님이랑 막 (상담)하시다가 그 형 친구들. 그 따돌림 시킨 친구들을 불러서 뭐라 하시고, 집에 와서 그 형도 살짝 뭐라 좀 하시고 그 다음 부터는 그 형이 학교에서 잘 지냈죠.'

'무슨 일이 일어나거나 사건사고 있으면요, 다 어른들이 해결해 주고 외부에서 무슨 일 있더라도 해결을 다 해주는데...'

시설종사자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며,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은 심리·정서적인 경험과도 연관되어 나타났다. 시설종사자가 아동의 심리상태를 걱정하거나, 아동개인의 사소한 상황을 고려하여 관심을 가져주는 것, 이밖에 단체행동이 강한 시설의 생활에서 개별적으로 생일을 챙겨주는 등의 개별화된 관심에서 아동들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추석연휴 그럴 때 집에 가는 아이들도 있고, 못가는 애들도 있고, 그럴 때 (집에 못 가는 아이들을) 좀 더 챙겨 주시는 거, 마음으로.. '

'그냥 뭐.. 툭 내 뱉은 말 있잖아요. 지나가다가 "요즘 기분이 왜 안 좋아?" 선생님이 뭐라 그러세요. "아 요즘 진짜 살기 싫어요." 그 딱 한마디를 했거든요? 기숙사 선생님 한 분한테 말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계시는 모든 선생님들이 "뭐가 힘드니?" 그런 거...'

'단체생일 하다가 애들이 개인생일 챙기고 싶어하니까 설문조사 통해서 단체생일을 없애고요. 개인생일 챙기고 그러니까요. 개인생일날 되면 문화상품권 선물로 보내주고 케이크도 하나씩 다 올려주고...'

시설아동이 생각하는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아동은 인권을 지키는 방법으로 '상대방의 즉, 아동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누가 높고, 낮다는 개념을 버리고 '아동과 시설종사자를 동등하게 생각하는 것', 시설의 정해진 규칙에 무조건 따르기 보다는 유연하고 융통성있는 스케쥴 조정을 통하여 '아동의 자유를 조금 더 보장하는 것', '자신들의 의사표현을 공식적이고, 객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것' 등을 제시하였다.

‘그 사람(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 주는 거!’

‘우리를 선생님들 보다 낮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동등하게 생각해주고 우리가 잘 못했을 때는 훈계를 하는데 평소 때는 안 그랬으면 좋겠구요. 시선을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건 우리와 같은 시선과 비슷한 수급에서 봐주면 될 것 같아요. 이럴 수도 있지 하고 이해해 주는 거...’

‘자치회처럼 우리가 무시당한 것 같다는 것을 말할 수 있게끔 하는 거 있잖아요. (인권을)안 지키면 안 되죠. 사무실에서 공표를 하면 그걸 지키도록 해야겠죠. 이모들도 같이 해야 해요. 우리의 인권이 무시되는 것 같다 우리도 하고 이모들도 하고 사무실도 해야지요. 다 사람인데 하고 그것을 모아서 학생이랑 학생 3명이랑 사무실 사람들이랑 이모들이랑 합의를 봐서 그중에 몇 개를 뽑아서 진짜 안 지켜지는 거 제일 많이 나온 걸 뽑아서 아 이거는 우리 잘못한 것 같다 하는 걸 개선하는 거죠.’

아동 인권 침해 시 대처 행동 유형은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선생님께 말씀을 드린다」(58.1%)가 가장 높았으며, 「그냥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참는다」(31.4%), 「외부 어른들에게 말씀 드린다」(4.5%)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로는 「친구한테 이야기 하거나 같이 살고 있는 상급생에게 이야기 한다」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표 4-25>.

<표 4-25> 인권 침해 시 대처 행동 유형

| 구 분 | 빈도(명) | 퍼센트(%) |
|---|---|---|
| 전체 | 853 | 100.0 |
| 인권 침해 시 대처 행동 유형 | | |
|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선생님께 말씀 드린다. | 496 | 58.1 |
| 외부어른에게 말씀 드린다. | 38 | 4.5 |
| 인터넷이나 홈페이지 등에 올린다. | 24 | 2.8 |
| 그냥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참는다. | 268 | 31.4 |
| 기타 | 27 | 3.2 |

7) 아동양육시설 아동의 자아존중감

아동양육시설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표 4-26>과 같다. 아동양육시설 아동의 자아존중감 평균을 살펴보면 「나는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3.33)가 가장 높았으며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3.32),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 생각 한다」 (3.22),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3.22), 「나는 내 자신에 만족한다」(2.85),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한다」 (2,13),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 할 수가 있다」 (3.22), 「나는 내 자신에 만족한다」(2.76) 순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의 평균은 2.91로 높게 나타났으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 생각함', '좋은 성품을 가짐'과 같은 스스로에 대하여 긍정적인 이미지를 묻는 문항에 아동은 대체로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실패한 사람이라 생각함', '자랑할 것이 없음', '쓸모없는 사람이라 생각함', '좋지 않은 사람이라 생각함'과 같이 부정적인 내용이 높게 나타났다는 특징이 두드러졌다. 따라서 아동양육시설에서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향상 및 심리적 측면이 강조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는 동시에 시설아동이 스스로에게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접근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표 4-26> 아동양육시설 아동의 자아존중감

| 구 분 | | | | 평균(M) | 표준편차(SD) |
|---|---|---|---|---|---|
| 가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함 | | | | 2.81 | 1.04 |
| 좋은 성품을 가짐 | | | | 2.66 | .98 |
| 실패한 사람이라 생각함 | | | | 3.33 | .83 |
| 일을 잘 할 수 있음 | | | | 2.76 | 1.00 |
| 자랑할 것이 없음 | | | | 3.13 | .90 |
|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 | | | | 2.70 | .96 |
| 내 자신에 만족함 | | | | 2.85 | 1.03 |
| 내 자신을 더 존경하길 바람 | | | | 2.30 | .99 |
| 쓸모없는 사람이 생각함 | | | | 3.31 | .86 |
| 좋지 않은 사람이라 생각함 | | | | 3.22 | .91 |
| N | 853 | Mean | 2.91 | SD | .95 |

## 2.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의 인권 실태[10)]

### 1)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의 일반적인 특성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의 일반적인 특성을 <표 4-27>에서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자(6.1%) 보다 남자(93.9%)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지역별로는 대전(54.1%),서울(33.8%), 전남(12.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의 평균 나이는 17세로 18세(25.7%)가 가장 많았다. 17세(20.9%), 16세(19.6%), 19세(14.9%), 15세(10.8%)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중학교 3학년(23.0%)이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교 1학년(20.3%), 고등학

10) 본 장에서 다루고 있는 아동보호치료시설의 아동의 인권실태 분석에 나타난 심층면접의 내용은 앞서 제시된 아동양육시설아동의 심층면접 내용에 비하여 다소 적은 양의 인터뷰결과가 제시되었다. 이는 심층면접의 연구대상표집(총 표집아동 10명)이 모집단의 크기에 비례하여 2명으로 설정되어 8명을 심층면접한 아동양육시설과는 원자료의 차이를 가진다는 한계에 기인한다.

교 2학년(12.8%), 중학교 2학년(12.2%)로 나타났다. 이는 초·중·고등학생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초등학생(2.0%), 중학생(38.6%), 고등학생(38.5%)로 중학생이 가장 많았다. 입소연도는 1년 미만(87.2%), 1년 이상 3년 미만(8.8%) 순으로 1년 미만이 가장 많았다.

<표 4-27>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의 일반적인 특성

| 변수 | 구분 | 빈도 (명) | 퍼센트 (%) | 변수 | 구분 | 빈도 (명) | 퍼센트 (%) |
|---|---|---|---|---|---|---|---|
| 성별 | 남 | 139 | 93.9 | 학년 | 초6 | 3 | 2.0 |
| | 여 | 9 | 6.1 | | 중1 | 5 | 3.4 |
| 지역 | 서울 | 50 | 33.8 | | 중2 | 18 | 12.2 |
| | 대전 | 80 | 54.1 | | 중3 | 34 | 23.0 |
| | 전남 | 18 | 12.2 | | 고1 | 30 | 20.3 |
| 나이 | 13 | 2 | 1.4 | | 고2 | 19 | 12.8 |
| | 14 | 4 | 2.7 | | 고3 | 8 | 5.4 |
| | 15 | 16 | 10.8 | 입소 연도 | 1년 미만 | 129 | 87.2 |
| | 16 | 29 | 19.6 | | | | |
| | 17 | 31 | 20.9 | | | | |
| | 18 | 38 | 25.7 | | 1년 이상 3년 미만 | 13 | 8.8 |
| | 19 | 22 | 14.9 | | | | |
| | 20 | 6 | 4.1 | | | | |

주 : 각 항목별 무응답 제외

2)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의 생존권 실태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의 생존권 실태를 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식사 생활은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먹을 수 없다」(75.0%), 「정해진 시간이 지나도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다」(17.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4-28>.

<표 4-28>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의 식생활

| 구 분 | 빈도(명) | 퍼센트(%) |
|---|---|---|
| 전체 | 148 | 100.0 |
| 식생활 | | |
| 정해진 시간이 지나도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다. | 32 | 21.6 |
|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내가 직접 차려 먹는다. | 4 | 2.7 |
|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밥을 먹을 수 없다. | 111 | 75.0 |
| 아무 때나 내가 밥을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다. | 1 | .7 |

의류 선택에서는 「내가 원하는 옷을 전혀 고르거나 입을 수 없다」(41.2%), 「선생님과 의견이 다른 경우 선생님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39.9%), 「내 취향에 맞는 옷을 고르거나 입을 수 있다」(18.9%)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용품 사용과 관련된 항목에서는 「선생님께서 필요한 물건을 구입 또는 가져다주신다」(56.1%), 「내가 알아서 구입해야 한다」(26.4%), 「필요할 때 마다 자유롭게 구입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18.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4-29>.

<표 4-29>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의 의류 선택 및 개인용품 사용

| 구 분 | 빈도(명) | 퍼센트(%) |
|---|---|---|
| 전체 | 148 | 100.0 |
| 의류 | | |
| 내 취향에 맞는 옷을 고르거나 입을 수 있다. | 28 | 18.9 |
| 선생님과 의견이 다른 경우 선생님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 59 | 39.9 |
| 내가 원하는 옷을 전혀 고르거나 입을 수 없다. | 61 | 41.2 |
| 개인용품 | | |
| 필요할 때 마다 자유롭게 구입하거나 사용 할 수 있다. | 26 | 17.6 |
| 선생님께서 필요한 것을 사다(또는 가져다) 주신다. | 83 | 56.1 |
| 내가 알아서 구입해야 한다. | 39 | 26.4 |

방 온도 조절은 「정해진 온도가 있기 때문에 조절할 수 없다」(64.2%), 「생활하기에 적절한 온도로 조절할 수 있다」(35.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병원 이용은 「선생님과 함께 이용하는 편이다」(48.0%), 「심하게 아프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다」(32.4%), 「선생님은 이야기 하라고 하지만, 잘 말하지 않는다」(12.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기적인 치료 및 검사는 「병(장애)이 없다」(70.3%), 「아니오」(16.9%), 「예」(12.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4-30>.

방온도 조절과 관련된 항목에서 양육시설 아동의 경우 69.1%가 방온도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고 응답한 반면, 동일 항목에서 보호치료시설 아동의 경우 64.2%가 정해진 온도가 있기 때문에 조절할 수 없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의료 부분에서 병원이용여부에서도 양육시설 아동의 경우 3.4%만이 심하게 아프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다고 응답한 반면, 보호치료시설 아동의 경우 32.4%가 응답하였다. 보호치료아동에 대한 적절한 의료적 지원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표 4-30>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의 주거 및 의료적 지원

| 구 분 | 빈도(명) | 퍼센트(%) |
|---|---|---|
| 전체 | 148 | 100.0 |
| 주거 | | |
| 생활하기에 적절한 온도로 조절 할 수 있다. | 53 | 35.8 |
| 정해진 온도가 있기 때문에 조절 할 수 없다. | 95 | 64.2 |
| 의료 | | |
|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11 | 7.4 |
| 선생님은 아프면 이야기 하라고 하지만, 잘 말하지 않는다. | 18 | 12.2 |
| 심하게 아프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다. | 48 | 32.4 |
| 선생님과 함께 이용하는 편이다. | 71 | 48.0 |
| 정기적인 치료 제공 및 검사 | | |
| 예 | 19 | 12.8 |
| 아니오 | 25 | 16.9 |
| 병이 없다 | 104 | 70.3 |

3) 아동보호시설 아동의 보호권 실태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의 보호권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생활보호와 관련된 항목으로 편지나 소포 검사와 방 공개 여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편지와 소포 검사는 「우리의 의견을 묻지 않고 선생님이 마음대로 검사 하신다」(58.8%)가 가장 높았으며, 「우리의 의견을 묻고 선생님이 검사하신다」(27.7%), 「사생활보호를 위해 검사하지 않는다」(13.5%) 순으로 나타났다. 방 공개 여부는 「내 의견을 묻지도 않고 마음대로 보여주신다」(54.1%)가 가장 높았으며, 「내 의견을 물어보나, 결정은 선생님 또는 원장님이 하신다」(36.5%), 「내 의견을 물어보고, 원하지 않으면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9.5%) 순으로 나타났다<표 4-31>.

양육시설 아동의 경우 8.3%만 '우리의 의견을 묻지 않고 마음대로 검사 하신다'에 불과하지만, 동일 항목에서 보호치료시설 아동의 경우는 과반수 이상인 58.8%로 가장 높은 응답을 하였다.

<표 4-31>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의 사생활 보호

| 구 분 | 빈도(명) | 퍼센트(%) |
|---|---|---|
| 전체 | 148 | 100.0 |
| 사생활보호(편지나 소포 검사) | | |
| 우리의 의견을 묻지 않고 선생님이 마음대로 검사 하신다. | 87 | 58.8 |
| 우리의 의견을 묻고 선생님이 검사를 한다. | 41 | 27.7 |
| 사생활 보호를 위해 검사하지 않는다. | 20 | 13.5 |
| 사생활보호(방 공개) | | |
| 내 의견을 물어보고, 원하지 않으면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 | 14 | 9.5 |
| 내 의견을 물어보나, 결정은 선생님(또는 원장님)이 하신다. | 54 | 36.5 |
| 내 의견을 묻지도 않고 마음대로 보여주신다. | 80 | 54.1 |

또래 폭력과 선생님의 체벌 여부는 「아니오」(73.0%, 76.4%)가 「예」(27.0%, 23.6%)보다 높게 나타났다. 체벌 유형을 살펴본 결과 「손으로 얼굴이나 머리를 맞았다」(65.7%)가 가장 높았으며, 「회초리로 손바닥이나 종아리를 맞았다」, 「발로 차거나, 빗자루, 몽둥이로 맞았다」(14.3%)로 동등하게 나타났다<표 4-32>.

<표 4-32>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의 또래 폭력 및 체벌

| 구 분 | 빈도(명) | 퍼센트(%) |
|---|---|---|
| 전체 | 148 | 100.0 |
| 또래 폭력 | | |
| 예 | 40 | 27.0 |
| 아니오 | 108 | 73.0 |
| 체벌 | | |
| 예 | 35 | 23.6 |
| 아니오 | 113 | 76.4 |
| 체벌 유형 | | |
| 회초리로 손바닥이나 종아리를 맞았다. | 5 | 14.3 |
| 손으로 얼굴이나 머리를 맞았다. | 23 | 65.7 |
| 발로 차거나, 빗자루, 몽둥이로 맞았다. | 5 | 14.3 |
| 기타 | 2 | 5.7 |

성학대 여부는 「아니오」(91.2%)가 「예」(8.8%) 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나 성 학대의 경험은 매우 낮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성 학대를 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상담 여부를 알아본 결과 「아니오」(92.3%)가 「예」(7.7%) 보다 높게 나타나 대부분의 아동이 상담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33>.

<표 4-33>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의 성학대 및 상담 여부

| 구 분 | 빈도(명) | 퍼센트(%) |
|---|---|---|
| 전체 | 148 | 100.0 |
| 성학대 | | |
| 예 | 13 | 8.8 |
| 아니오 | 135 | 91.2 |
| 상담 | | |
| 예 | 1 | 7.7 |
| 아니오 | 12 | 92.3 |

집단 따돌림과 언어적 학대를 살펴본 결과 「아니오」(91.2%, 73.0%)가 「예」(8.8%, 27.0%) 보다 높게 나타났다. 시설 내 노동 여부에서는 「예」(66.9%)가 「아니오」(33.1%) 보다 높게 나타났다. 시설 내 노동 유형을 살펴보면 「자기방 청소」(43.7%)로 가장 높았으며 「자기방 외 공간 청소」(35.1%), 「정원 등 실외 공간」(7.9%), 「식사 준비 보조」(6.6%) 순으로 나타났다<표 4-34>.

<표 4-34>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의 따돌림 및 노동

| 구 분 | 빈도(명) | 퍼센트(%) |
|---|---|---|
| 전체 | 148 | 100.0 |
| 집단 따돌림 경험 여부 | | |
| 예 | 13 | 8.8 |
| 아니오 | 135 | 91.2 |
| 언어적 학대 경험 여부 | | |
| 예 | 40 | 27.0 |
| 아니오 | 108 | 73.0 |
| 시설 내 노동 | | |
| 예 | 99 | 66.9 |
| 아니오 | 49 | 33.1 |
| 시설 내 노동 유형* | | |
| 자기방 청소 | 66 | 43.7 |
| 자기방 외 공간 청소 | 53 | 35.1 |
| 정원 등 실외 공간 | 12 | 7.9 |
| 식사 준비 보조 | 10 | 6.6 |
| 농사일(채소심기, 텃밭관리) | 1 | .7 |
| 기타 | 9 | 6.0 |

*는 중복 체크 문항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매스컴 보도는 「아니오」(92.6%)가 「예」(7.4%)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고민 상담 여부는 「예」(56.8%)가 「아니오」(43.2%) 보다 높게 나타났다. 차별을 받은 경험에서는 「아니오」(89.2%)가 「예」(10.8%) 보다 높게 나타났다<표

4-35>.

<표 4-35>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의 매스컴 보도, 고민 상담 및 차별 경험

| 구 분 | 빈도(명) | 퍼센트(%) |
|---|---|---|
| 전체 | 148 | 100.0 |
| 매스컴 보도 | | |
| 예 | 11 | 7.4 |
| 아니오 | 137 | 92.6 |
| 고민 상담 여부 | | |
| 예 | 84 | 56.8 |
| 아니오 | 64 | 43.2 |
| 차별 | | |
| 예 | 16 | 10.8 |
| 아니오 | 132 | 89.2 |

*는 중복 체크 문항

4)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의 발달권 실태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의 발달권 실태에 대해 살펴 본 결과 다음과 같다. 학업지원은 「정해진 학습시간에 선생님으로부터 학습지도를 적절히 받고 있다」(56.8%)가 가장 높았으며, 「정해진 시간 내에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24.3%), 「학습할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16.2%), 「학습할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2.7%) 순으로 나타났다.

보호치료시설의 경우, 양육시설에 비해 제한이 많은 특성 때문에 아동의 학습권 또한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나타났다. 아동이 외부의 학원을 다니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어도 외출이 자유롭지 못하여 시설내부에서 대부분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교육기회, 교육범위, 교육내용 등의 한계를 가지게 된다.

'우리는 여기서 남아서 집처럼 사는건데 그 얘들이랑 같이 생활하니까 뭔가 막히는게 너무 많아요. 학원 같은데도 똑바로 못 다니고 평일 날 같은 경우는 거의.. '

'뭔가 학원도 다니고 싶고 뭔가 하고 싶은데 딱딱 막히는... 여기 스케줄에 딱 얽매여서...'

TV나 인터넷 사용은 「원하는 경우 적절한 수준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48.6)가 가장 높았으며, 「특별한 날 또는 정해진 시간에만 이용 할 수 있다」(47.3%), 「이용할 수 없다」(4.1%) 순으로 나타났다<표 4-36>.

<표 4-36>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의 학업지원, 문화 및 휴식

| 구 분 | 빈도(명) | 퍼센트(%) |
|---|---|---|
| 전체 | 148 | 100.0 |
| 학업지원 | | |
| 정해진 학습시간에 선생님들로부터 학습지도를 적절히 받고 있다. | 84 | 56.8 |
| 정해진 학습시간 내에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 36 | 24.3 |
| 학습할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 24 | 16.2 |
| 학습할 시간이 전혀 없다. | 4 | 2.7 |
| 보습학원 및 학원 등을 다닌다. | 0 | 0 |
| 문화 및 휴식 증진 | | |
| 원하는 경우 적절한 수준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72 | 48.6 |
| 특별한 날 또는 정해진 시간에만 이용할 수 있다. | 70 | 47.3 |
| 이용할 수 없다. | 6 | 4.1 |

가족이나 친척 등 방문 및 접촉은 「정해진 날짜만 연락 및 방문이 가능하다」(41.9%)가 가장 높았으며, 「선생님께 말씀 드리고 미리 허락을 받으면 자유로운 연락 및 방문이 가능하다」(25.7%), 「언제든지 자유로운 연락 및 방문이 가능하다」(23.0%), 「연락 및 방문을 할 수 없다」(9.5%) 순으로 나타났다<표 4-37>.

<표 4-37>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의 가족 방문 및 접촉

| 구 분 | 빈도(명) | 퍼센트(%) |
|---|---|---|
| 전체 | 148 | 100.0 |
| 가족·친척 등 방문 및 접촉 | | |
| 언제든지 자유로운 연락 및 방문이 가능하다 | 34 | 23.0 |
|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허락을 받으면 언제든지 자유로운 연락 및 방문이 가능 하다. | 38 | 25.7 |
| 정해진 날짜만 연락 및 방문이 가능하다. | 62 | 41.9 |
| 연락 및 방문을 할 수 없다. | 14 | 9.5 |

5)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의 참여권 및 시설만족도 실태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의 참여권 및 시설만족도 실태에 대해 살펴 본 결과 다음과 같다. 의사 결정 시 참여 여부는 「예」(65.5%)가 「아니오」(34.5%)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의사 결정 기회가 제공 될 시 참여 여부는 「그렇다」(54.9%)가 가장 높았으며, 「그저 그렇다」(25.5%), 「전혀 그렇지 않다」(19.6%) 순으로 나타났다<표 4-38>.

<표 4-38>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의 의사결정 참여 및 기회제공 시 참여 여부

| 구 분 | 빈도(명) | 퍼센트(%) |
|---|---|---|
| 전체 | 148 | 100.0 |
| 의사결정의 참여 | | |
| 예 | 97 | 65.5 |
| 아니오 | 51 | 34.5 |
| 의사결정 기회제공 시 참여 | | |
| 그렇다. | 28 | 54.9 |
| 그저 그렇다 | 13 | 25.5 |
| 전혀 그렇지 않다. | 10 | 19.6 |

건의 사항 표현 방법으로는 「선생님이나 원장님께 말씀 드린다」(59.5%)가 가장 높

았으며, 「건의사항을 말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말하지 않는다」(26.4%), 「홈페이지나 건의함에 쓸 수 있다」(14.2%)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사회 교류는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다」(74.3%)가 가장 높았으며, 「외부에 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12.8%),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는 내용과 할 수 없는 내용에 대한 지침이 있다」(12.2%) 순으로 나타났다<표 4-39>.

<표 4-39>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의 건의사항 표현 및 지역사회 교류

| 구 분 | 빈도(명) | 퍼센트(%) |
|---|---|---|
| 전체 | 148 | 100.0 |
| 건의 사항 표현 | | |
| 선생님이나 원장님께 직접 말씀드린다. | 88 | 59.5 |
| 홈페이지나 건의함에 의견을 쓸 수 있다. | 21 | 14.2 |
| 건의사항을 말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서 말하지 않는다 | 39 | 26.4 |
| 지역사회 교류 | | |
|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다. | 110 | 74.3 |
|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는 내용과 이야기 할 수 없는 내용에 대한 지침이 있다. | 18 | 12.2 |
| 외부에 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 19 | 12.8 |
| 기타 | 1 | .7 |

본인과 관련된 의사 결정은 「참석해서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이러한 의견은 결정에 반영 된다」(54.7%)가 가장 높았으며, 「참석할 수 있지만, 의견을 말하거나 반영되지 않는다」(27.0%), 「참석 할 수 없다」(18.2%) 순으로 나타났으며, <표 4-40>과 같다. 종교 활동은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행하는 종교행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74.3%)가 가장 높았으며, 「자유롭게 종교 활동을 선택할 수 있다」(14.9%), 「강요하지는 않지만,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종교 활동에 참여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다」(10.8%) 순으로 나타났다<표 4-40>.

<표 4-40>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의 본인일 의사 결정 및 종교의 선택

| 구 분 | 빈도(명) | 퍼센트(%) |
|---|---|---|
| 전체 | 148 | 100.0 |
| 본인일의 의사결정 | | |
| 참석해서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이러한 의견을 결정에 반영된다. | 81 | 54.7 |
| 참석을 할 수 있지만, 의견을 말하거나 반영되지는 않는다. | 40 | 27.0 |
| 참석 할 수 없다. | 27 | 18.2 |
| 종교의 선택 | | |
| 자유롭게 종교 활동을 선택할 수 있다. | 22 | 14.9 |
| 강요하지는 않지만,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종교 활동에 참여 하지 않으면 신경이 쓰이거나 불이익이 있다. | 16 | 10.8 |
|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행하는 종교행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 110 | 74.3 |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23.6%)이 가장 높았으며, 「보통」(23.0%), 「조금 만족」(20.3%), 「매우 만족」(16.9%), 「조금 불만족」(16.2%) 순으로 나타났다<표 4-41>.

<표 4-41>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시설 만족도

| 구 분 | 빈도(명) | 퍼센트(%) |
|---|---|---|
| 전체 | 148 | 100.0 |
|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만족도 | | |
| 매우 불만족 | 35 | 23.6 |
| 조금 불만족 | 24 | 16.2 |
| 보통 | 34 | 23.0 |
| 조금 만족 | 30 | 20.3 |
| 매우 만족 | 25 | 16.9 |

6)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의 인권 의식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의 인권 의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동의 아동인권(인권)에 대한 의식 정도는「들어 본적은 있지만 잘 알지 못 한다」(51.4%)가 가장 높았으며,「잘 알고 있다」(37.2%),「전혀 알지 못한다」(11.5%)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인권 관련 정보 또는 교육 제공 여부는「아니오」(76.4%)가「예」(23.6%) 보다 높게 나타났다<표 4-42>.

<표 4-42>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의 인권 인지 및 교육 제공 여부

| 구 분 | 빈도(명) | 퍼센트(%) |
|---|---|---|
| 전체 | 148 | 100.0 |
| 아동인권(아동인권)애 대한 인지 정도 | | |
| 잘 알고 있다. | 55 | 37.2 |
|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알지 못한다. | 76 | 51.4 |
| 전혀 알지 못한다. | 17 | 11.5 |
| 아동인권 관련 정보 또는 교육 제공 여부 | | |
| 예 | 35 | 23.6 |
| 아니오 | 113 | 76.4 |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인권 중 1순위는「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놀 인권」(56.8%), 2순위는「내 의견이 존중받을 인권」(20.9%), 3순위는「사생활이 침해받지 않은 인권」(2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4-43>.

<표 4-43>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인권

| 구분 |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
| | 빈도 (N) | 퍼센트 (%) | 빈도 (N) | 퍼센트 (%) | 빈도 (N) | 퍼센트 (%) |
|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놀 인권 | 84 | 56.8 | 17 | 11.5 | 13 | 8.8 |
| 내 의견이 존중받을 인권 | 10 | 6.8 | 31 | 20.9 | 14 | 9.5 |
| 친구들과 자유롭게 모임을 갖고 활동할 인권 | 3 | 2.0 | 30 | 20.3 | 23 | 15.5 |
| 폭력이나 욕설 등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을 인권 | 15 | 10.1 | 19 | 12.8 | 18 | 12.2 |
| 필요에 따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권 | 3 | 2.0 | 9 | 6.1 | 21 | 14.2 |
| 자신과 관련된 일에 참여할 인권 | 1 | .7 | 7 | 4.7 | 6 | 4.1 |
| 다른 사람과의 차이나 개성이 존중받을 인권 | 6 | 4.1 | 11 | 7.4 | 7 | 4.7 |
| 사생활이 침해받지 않을 인권 | 7 | 4.7 | 15 | 10.1 | 36 | 24.3 |
| 기 타 | 19 | 12.8 | 9 | 6.1 | 10 | 6.8 |

보호치료시설의 아동이 인권을 침해받는 경험을 심층면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양육시설과는 다르게 시설에서 생활하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보호치료시설의 경우, 아동은 시설 측에 주어진 보호치료기간의 연장권이나 처분변동권에 대하여 불만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보호치료시설에 주어지는 권한이 아동들에게는 다소 행동과 생활을 제약하는 기제로 작용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처분변동 시키고 연장시키고 하는 거... 만기가 5일 남았는데 선생님한테 한번 개겨가지고 처분변동 당하고... 연장하는 것도...’**

그러나 이와 같은 아동의 의견과는 다르게 보호치료종사자의 경우에는 연장권과 처분변동권을 실행하는 부분을 합리적인 판단과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설명하고 있어, 동일한 현상을 판단하는데 있어 아동과 시설종사자의 상반

된 관점을 확인할 수 있다.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체벌할 수 없게 시스템이 되었잖아요. 이 친구가 선생님께 대드는 바람에 저희는 만약에 어떤 체벌이 있었다면 그 친구를 안 보냈을 거예요. 따끔하게 혼을 내고 같이 더불어 가겠지만 지금은 체벌은 완전히 금지해 놓고 선생님들한테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바로 시말서를 쓰고 이런 식이 되니까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터치를 못하는데, 이놈들은 선생님들한테 대드는 것이죠. 만약에 그 친구를 안 보냈으면 제2, 제3의 다른 친구가 또 나올거예요.’**

아동 인권 침해 시 대처 행동 유형은 「그냥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참는다」(54.1%)가 가장 높았으며,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선생님께 말씀을 드린다」(31.8%), 「외부 어른들에게 말씀 드린다」(9.5%) 순으로 나타났다<표 4-44>.

<표 4-44> 권리 침해 시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의 대처 요령

| 구 분 | 빈도(명) | 퍼센트(%) |
|---|---|---|
| 전체 | 148 | 100.0 |
| 인권 침해 시 행동 | | |
|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선생님께 말씀 드린다. | 47 | 31.8 |
| 외부어른에게 말씀 드린다. | 14 | 9.5 |
| 인터넷이나 홈페이지 등에 올린다. | 4 | 2.7 |
| 그냥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참는다. | 80 | 54.1 |
| 기타 | 3 | 2.0 |

7)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의 자아존중감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표 4-45>와 같다. 보호치료시설 아동의 자아존중감 평균을 살펴보면 「나는 실패한 사람이라 생각한다」(3.19)가 가장 높았으며,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생각한다」(3.14), 「나는 좋지 않은 사람이라 생각 한다」(2.99)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의 자아존중감 평균은 2.83으로 아동양육시설 아동의 2.91

보다는 다소 낮지만 비교적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그러나 양육시설 아동과 마찬가지로 '실패한 사람이라 생각한다', '쓸모없는 사람이라 생각한다'와 같이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보호치료시설 역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심리적 지지나 상담체계의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표 4-45>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의 자아존중감

| 구 분 | 평균(M) | 표준편차(SD) |
|---|---|---|
| 가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함 | 2.83 | .97 |
| 좋은 성품을 가짐 | 2.55 | .96 |
| 실패한 사람이라 생각함 | 3.19 | .88 |
| 일을 잘 할 수 있음 | 2.82 | 1.02 |
| 자랑할 것이 없음 | 2.87 | .91 |
|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 | 2.70 | .92 |
| 내 자신에 만족함 | 2.80 | .93 |
| 내 자신을 더 존경하길 바람 | 2.29 | .98 |
| 쓸모없는 사람이 생각함 | 3.14 | .90 |
| 좋지 않은 사람이라 생각함 | 2.99 | .93 |

| N | 148 | Mean | 2.82 | SD | .94 |
|---|---|---|---|---|---|

## 3.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 의식 실태

### 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일반적인 특성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시설 유형으로는 양육시설(87.6%)이 보호치료시설(12.4%) 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12.4%) 보다 여자(87.6%)가 더 많았고, 연령별로는 20대(34.7%)가 가장 많았으며, 30대(28.9%), 40대(24.0%), 50대 이상(12.4%)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16.5%), 전남(14.0%), 대구・경기(8.3%), 대전・경남(7.4%), 전남(6.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4-46>.

<표 4-46>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일반적인 특성

| 변수 | 구분 | 빈도(명) | 퍼센트(%) | 변수 | 구분 | 빈도(명) | 퍼센트(%) |
|---|---|---|---|---|---|---|---|
| 시설 형태 | 양육시설 | 106 | 87.6 | 지역 | 서울 | 20 | 16.5 |
| | 보호치료시설 | 15 | 12.4 | | 부산 | 6 | 5.0 |
| 성별 | 남자 | 20 | 16.5 | | 대구 | 10 | 8.3 |
| | 여자 | 101 | 83.5 | | 인천 | 5 | 4.1 |
| 나이 | 20대 | 42 | 34.7 | | 광주 | 8 | 6.6 |
| | 30대 | 35 | 28.9 | | 대전 | 9 | 7.4 |
| | 40대 | 29 | 24.0 | | 경기 | 10 | 8.3 |
| | 50대 이상 | 15 | 12.4 | | 강원 | 5 | 4.1 |
| | | | | | 충북 | 5 | 4.1 |
| | | | | | 충남 | 5 | 4.1 |
| | | | | | 전북 | 6 | 5.0 |
| | | | | | 전남 | 17 | 14.0 |
| | | | | | 경북 | 6 | 5.0 |
| | | | | | 경남 | 9 | 7.4 |

주 : 각 항목별 무응답 제외

현 직장에서의 근무 경력은 1년 이상 3년 미만(27.3%)이 가장 많았으며, 3년 이상 5년 미만(20.7%), 7년 이상 9년 미만・9년 이상(14.9%), 1년 미만(11.6%), 5년 이상 7년 미만(10.7%) 순으로 나타났다<표 4-47>.

<표 4-47>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무 경력

| 구 분 | 빈도(명) | 퍼센트(%) |
|---|---|---|
| 전체 | 121 | 100.0 |
| 현 직장 근무 경력 | | |
| 1년 미만 | 14 | 11.6 |
| 1년 이상 3년 미만 | 33 | 27.3 |
| 3년 이상 5년 미만 | 25 | 20.7 |
| 5년 이상 7년 미만 | 13 | 10.7 |
| 7년 이상 9년 미만 | 18 | 14.9 |
| 9년 이상 | 18 | 14.9 |
| 전체 직장 근무 경력 | | |
| 1년 미만 | 11 | 9.1 |
| 1년 이상 3년 미만 | 24 | 19.8 |
| 3년 이상 5년 미만 | 23 | 19.0 |
| 5년 이상 7년 미만 | 16 | 13.2 |
| 7년 이상 9년 미만 | 15 | 12.4 |
| 9년 이상 | 32 | 26.4 |

최종학력은 전문대졸(38.8%)로 가장 많았으며, 대졸(37.2%), 석사졸업(8.3%)순으로 나타났다. 전공분야로는 사회복지학(66.1%)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16.5%), 아동(복지)학(11.6%)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4-48>. 기타 전공 분야에는 식품영양학, 간호학, 가정학 등이 있었다. 자격증 유형으로는 사회복지사 2급(35.6%)이 가장 많았으며, 기타(17.5%), 보육교사2급(16.9%), 사회복지사1급(16.5%)으로 나타났다. 기타 자격증으로는 영양사, 유치원정교사2급, 미술치료2급 등이 있다.

<표 4-48>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학력 및 전공 분야

| 구 분 | 빈도(명) | 퍼센트(%) |
|---|---|---|
| 전체 | 121 | 100.0 |
| 최종 학력 | | |
| 고졸 미만 | 7 | 5.8 |
| 고졸 | 8 | 6.6 |
| 대학 중퇴 | 4 | 3.3 |
| 전문대졸 | 47 | 38.8 |
| 대졸 | 45 | 37.2 |
| 석사 졸업 | 10 | 8.3 |
| 전공 분야 | | |
| 사회복지학 | 80 | 66.1 |
| 아동(복지)학 | 14 | 11.6 |
| 보육학 | 4 | 3.3 |
| 교육학 | 3 | 2.5 |
| 기타 | 20 | 16.5 |
| 자격증 유형* | | |
| 사회복지사1급 | 29 | 16.5 |
| 사회복지사2급 | 63 | 35.6 |
| 보육교사1급 | 24 | 13.6 |
| 보육교사2급 | 30 | 16.9 |
| 기타 | 31 | 17.5 |

* 는 복수 응답 문항

2)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무관련 특성 및 인권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무관련 특성 및 인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동 인권 교육은 「있다」(86.8%)가 「없다」(13.2%) 보다 높게 나타나 대다수의 시설에서 기본적으로 아동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아동권리협약 인지정도를

묻는 질문에 「제목과 내용에 대해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다」(61.2%)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제목과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28.1%), 「제목만 알고 있을 뿐 내용은 전혀 모른다」(7.4%) 순으로 나타났다<표 4-49>.

<표 4-49>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 교육 및 아동권리협약 인지정도

| 구 분 | 빈도(명) | 퍼센트(%) |
|---|---|---|
| 전체 | 121 | 100.0 |
| 아동 인권(인권) 교육 | | |
| 있다 | 105 | 86.8 |
| 없다 | 16 | 13.2 |
| 아동권리협약 인지 | | |
| 들어본 적 없다 | 4 | 3.3 |
| 제목만 알고 있을 뿐 내용은 전혀 모른다. | 9 | 7.4 |
| 제목과 내용에 대해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다. | 74 | 61.2 |
| 제목과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 | 34 | 28.1 |

인권교육의 필요성으로는 「꼭 필요하다」(43.0%)가 가장 높았으며, 「보통이다」(33.1%), 「조금 필요하다」(20.7%) 순으로 나타났다. 인권교육 기간으로는 「6개월에 한번」(46.3%)이 가장 높았으며, 「1년에 한번」(26.4%), 「3개월에 한번」(19.8%)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조력의 필요성으로는 「조금 필요하다」(31.4%)가 가장 높았으며, 「꼭 필요하다」(29.8%), 「보통이다」(27.3%), 「별로 필요 없다」(9.9%) 순으로 나타났다<표 4-50>.

<표 4-50>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교육 필요성 및 인권교육 기간

| 구 분 | 빈도(명) | 퍼센트(%) |
|---|---|---|
| 전체 | 121 | 100.0 |
| 인권교육 필요성 | | |
| 전혀 필요 없다 | 1 | .8 |
| 별로 필요 없다 | 3 | 2.5 |
| 보통이다 | 40 | 33.1 |
| 조금 필요하다 | 25 | 20.7 |
| 꼭 필요하다 | 52 | 43.0 |
| 인권교육 기간 | | |
| 1개월에 한번 | 9 | 7.4 |
| 3개월에 한번 | 24 | 19.8 |
| 6개월에 한번 | 56 | 46.3 |
| 1년에 한번 | 32 | 26.4 |
| 전문가 조력의 필요성 | | |
| 전혀 필요 없다 | 2 | 1.7 |
| 별로 필요 없다 | 12 | 9.9 |
| 보통이다 | 33 | 27.3 |
| 조금 필요하다 | 38 | 31.4 |
| 꼭 필요하다 | 36 | 29.8 |

종교의 자유로는 「예」(84.3%)가 「아니오」(15.7%) 보다 높게 나타났다. 직원 차별 경험 유무는 「아니오」(84.3%)가 「예」(15.7%) 보다 높게 나타났다. 아동의 폭력 및 직장 폭력으로는 「아니오」(75.2%, 90.9%)가 「예」(24.8%, 9.1%) 보다 높게 나타났다. 직장 상사의 개인적인 일을 한 경험으로는 「아니오」(85.1%)가 「예」(14.9%) 보다 높게 나타났다<표 4-51>.

<표 4-5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

| 구 분 | 빈도(명) | 퍼센트(%) |
|---|---|---|
| 전체 | 121 | 100.0 |
| 종교 자유 | | |
| 예 | 102 | 84.3 |
| 아니오 | 19 | 15.7 |
| 직원 차별 | | |
| 예 | 19 | 15.7 |
| 아니오 | 102 | 84.3 |
| 아동 폭력 | | |
| 예 | 30 | 24.8 |
| 아니오 | 91 | 75.2 |
| 직장 상사 폭력 | | |
| 예 | 11 | 9.1 |
| 아니오 | 110 | 90.9 |
| 개인적인 일 | | |
| 예 | 18 | 14.9 |
| 아니오 | 103 | 85.1 |

3) 아동 생존권에 대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 의식

아동 생존권에 대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 의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식사 생활은「정해진 시간이 지나도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다」(88.4%),「아동이 아무 때나 밥을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다」(6.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52>.

<표 4-52> 아동 생존권에 대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 의식

| 구 분 | 빈도(명) | 퍼센트(%) |
|---|---|---|
| 전체 | 121 | 100.0 |
| 식생활 | | |
| 정해진 시간이 지나도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 준다. | 107 | 88.4 |
|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아동이 직접 차려 먹는다. | 5 | 4.1 |
|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밥을 먹을 수 없다. | 1 | .8 |
| 아동이 아무 때나 밥을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다. | 8 | 6.6 |

「정해진 시간이 지나도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다」라는 응답이 88.4%로 높은 응답은 앞서, 같은 질문에 양육시설의 아동은 52.2%, 치료시설의 아동은 21.6%만이 「정해진 시간이 지나도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다」고 응답하였던 결과와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시설에서의 '식생활'과 관련한 심층면접에 따르면, 음식에 대하여 비교적 만족을 나타내고 있는 아동의 의견처럼, 시설종사자 역시 제공되는 음식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나아가 너무 풍족한 제공의 아동의 절약습관을 기르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먹는 부분이나 이렇게 너무 많이 풍족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나는, 저는 좀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쫌 너무 넘쳐나서 아이들이 절약하고 이런 것을 좀 모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실질적으로 느끼거든요.'**

반면, 아동들에게 더 풍족한 음식제공을 원하는 종사자의 의견도 확인되었다.

**'닭 한 마리씩 해서 삼계탕 우리 한 마리씩 해 달라 그런 것도 있었고, 솔직히 교사 입장에서나 해주고 싶은 마음은 많은데, 시설 지원 해 주시는 게 많이 없으니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안타깝고, 또 아이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동들의 식사와 관련하여 시설종사자들이 가장 뚜렷하게 불만을 표시하고, 개선

되기를 원하는 부분은 현실에 맞지 않는 예산지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로부터의 실비지원으로 제공되는 음식의 양과 질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은 물론 아이들의 식(食)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보호치료시설의 경우, 양육시설아동이 점심을 학교에서 제공받는 것과는 달리 하루 세 끼를 제공하여야하기 때문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성장기의 아동들이 충분한 영양을 제공받지 위하여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필요가 강조된다.

'지금 (1인당 식비가) 이천원이 되나 안 되나?'

'밥 먹는 것은 정말 한 끼에 1100원이라고 했나? 아무튼 저희 아이들이 한번 와서 보시면 한번 먹을 때 많이 먹는 친구는 이만큼을 떠 갖고 와서 먹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6개월 정도 되면 키 크는 게 보여요. 여기저기서 후원을 받고 이러니까 지금 저 정도의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음식 수준이 중상류 정도라고 생각해요.

'저희 후원이 들어오고 이런 비용이 아이들 먹는 쪽으로 많은 퍼센트를 차지할 거예요. 오늘 갈비탕이 나왔는데 이놈들은 맛있는 것 나오면 큰 냄비에 찰랑찰랑 해서 먹잖아요. 그렇게 먹이고 하니까 들어오는 후원금 중에 (예산이)많이 가는 것 같아요. (기본예산이)많이 부족한 거죠.'

의류 선택에서는 「아동 취향에 맞는 옷을 고르거나 입을 수 있다」(71.9%), 「선생님과 의견이 다른 경우 선생님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27.3%)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용품 사용과 관련된 항목에서는 「선생님께서 필요한 물건을 구입 또는 가져다 주신다」(54.5%), 「아동이 필요할 때 마다 자유롭게 구입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45.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4-53>.

<표 4-53> 아동 생존권에 대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 의식

| 구 분 | 빈도(명) | 퍼센트(%) |
|---|---|---|
| 전체 | 121 | 100.0 |
| 의류 | | |
| 아동의 취향에 맞는 옷을 선택하거나 마음대로 입을 수 있다. | 87 | 71.9 |
| 아동이 취향에 맞는 옷을 선택하거나 입을 수 있지만, 의견이 다른 경우 선생님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 33 | 27.3 |
| 아동이 원하는 옷을 전혀 고르거나 입을 수 없다. | 1 | .8 |
| 개인용품 | | |
| 아동이 필요할 때 마다 자유롭게 구입하거나 사용 할 수 있다. | 55 | 45.5 |
| 아동이 이야기 하면 선생님께서 필요한 것을 사다(또는 가져다) 주신다. | 66 | 54.5 |

심층면접에서 시설아동의 '의생활'과 관련하여, 행정처리를 담당하는 시설종사자의 경우에는 의류비 지원 역시 현실적으로 부족하다고 주장하였다.

'아이들마다 교통비, 문화체험비 해가지고 들어오고 1년에 3만 얼마씩 해서 의류비가 들어오기는 해요. 근데 (의류비) 32000원 정도 들어오는데 그걸로 바지하나 사면 없어요. 아주 저렴한 걸 사야지 큰 아이들은 3만원 금방 쓰거든요 4~5만원 하니깐 그래서 좀 충분치 못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왜만한 것은 아껴서 아껴서 하나 사주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남자 아이들은 많이 해지고 하니깐 더 자주 사야 되겠죠. 그런 것 같아요. 돈 쓰기가 좀 겁나요.'

'(피복비랑 식비가) 좀 더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남학생 같은 경우는 성장이 빠른 얘들은 빠르고, 늦은 얘들은 늦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려면 그런 부분도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몇 달 만에 신발 작다고, 그 신던 걸 다른 학생 주기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이들에 맞춰서 (예산이)좀 따라 와 주면 좋겠어요.'

또한 시설종사자는 자신이 생각하는 깔끔한 옷차림의 이미지와는 달리 아동이 자

신들의 스타일을 추구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으나, 아동의 의복선택권을 침해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즘 이놈들은 깔끔한 것을 원하지 않고 자기네들 스타일을 원해요. 옷 방에 가서 옷을 골라줘도 제가 보기에는 멀쩡하고 밖에 나갈 때 입기 좋은데, 이놈들은 싫데요. 이놈들은 츄리닝 같은 반바지, 흐들흐들한 것, 내복 같은 것, 집에서 잠옷으로 입어야 될 것 같은 것 찢어진 청바지 같은 것만 원하니까 여기서 정말 애들이 필요한 옷은 얼마든지 주는데... (중략) 근데 본인은 엄마나 가족한테 시켜 이상한바지 갖고 오게 만들고, 자기 스타일 찾으려고 또 달라는 친구도 있고...'**

방 온도 조절 여부는「아동이 생활하기에 적절한 온도로 조절 할 수 있다」(58.7%)가「기관에 정해진 온도가 있기 때문에 조절 할 수 없다」(41.3%) 보다 높게 나타났다. 병원 이용은「선생님과 함께 이용하는 편이다」(83.5%),「아동이 스스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15.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기적인 치료 및 검사는「예」(97.5%)가「아니오」(2.5%) 보다 높게 나타났다<표 4-54>.

<표 4-54> 아동 생존권에 대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 의식

| 구 분 | 빈도(명) | 퍼센트(%) |
|---|---|---|
| 전체 | 121 | 100.0 |
| 방온도 조절 | | |
| 아동이 생활하기에 적절한 온도로 조절 할 수 있다. | 71 | 58.7 |
| 기관에 정해진 온도가 있기 때문에 조절 할 수 없다. | 50 | 41.3 |
| 의료 | | |
| 아동이 스스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19 | 15.7 |
| 몸이 아프면 선생님께 이야기 하고 선생님과 함께 이용하는 편이다. | 101 | 83.5 |
| 심하게 아프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다. | 1 | .8 |
| 의료 | | |
| 예 | 118 | 97.5 |
| 아니오 | 3 | 2.5 |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기본적인 생활환경의 실태 이외의 주거생활과 관련한 시설종사자의 욕구는 심층면접을 통해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먼저, 충분한 공간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아이들의 제한된 생활공간은 책상과 같이 꼭 필요한 가구와 물품을 방 안에 구비하지 못하는 문제를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아동이 공부나 숙제를 하는 데 불편을 주어 간접적으로 아동의 발달권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는 책상은 없고 도서실에 가야...' ㅡ 시설종사자**

이밖에 앞서 언급되었던 바와 같이 아동과 마찬가지로 시설종사자 역시, 시설의 노후화로 인하여 아동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지금 생활하는 데 건물이 많이 낙후되어 있어요. 창피할 정도로요. 그렇다고 손을 댈 수 없는 게 곧 재건축이 이뤄지는 데 그것을 거기다 고쳐서 2년 정도를 쓰려고 몇 천 만원을 들여서 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이제 저 건물이 30년 정도 되가는 것이니까 그때는 정말 깔끔했던 건물인데, 지금은 이미 사용연한이 지나서 보수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안타깝죠.'**

시설종사자는 시설의 환경과 관련하여 생활위생사의 고용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는 아동의 생활, 환경의 위생과 의생활과 관련되는 부분과 연관된다.

**'생활위생사 티오도 없어요. 지금은 계약직으로 한 분이 오셔서... 그 전에 계셨던 분은 퇴사할 수밖에 없었고, 정말 이런 큰 시설에 위생사가 없다는 것이...**

**'2004년 전에는 티오가 있었는데 그런데 2004년 이후에 티오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지나 간 거예요. 저희는 당연히 있는 줄 알고 모시고 있다가 요번에 감사하니까 "여기는 위생사 티오가 없는데 어떻게 했느냐" 이래가지고 부득이하게 그분이 정리를 하셨고, 그렇다고 그 하던 분이 빨래도 하고 청소도 도와주시고 그런 것들을 하셨는데 그것을 없애자니 방법이 없어서 다른 부분에서 돈을 해서 이제 그냥 자체적으로 쓰고 계신 것이죠. 그런 부분이 생활면에서는 어려운 것이죠. 그것은 당연히 있어야 할 티오인데 그것이 없다는 것은 건의가 되어야 할 부분이죠.'**

**'저희 아이들이 24시간동안 하루에 실습하고 운동하고 나면 그 옷이 매일 80벌 이상**

이 나오는 상황인데, 그것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4) 아동 보호권에 대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 의식

아동 보호권에 대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 의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생활보호와 관련된 항목으로 편지나 소포 검사와 방 공개 여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편지와 소포 검사는 「사생활보호를 위해 검사하지 않는다」(62.8%)가 가장 높았으며, 「아동의 동의를 얻고 검사한다」(33.1%), 「아동의 관리 감독 차원에서 마음대로 검사 하신다」(4.1%) 순으로 나타났다. 방 공개 여부는 「아동의 의견을 물어보고, 원하지 않으면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62.8%)가 가장 높았으며, 「아동의 의견을 물어보지만, 결정은 선생님 또는 원장님이 하신다」(21.5%), 「아동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마음대로 보여 주신다」(15.7%) 순으로 나타났다<표 4-55>. 종사자의 경우 「아동의 의견을 물어보고, 원하지 않으면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응답이 62.8%로 높은 응답인 반면, 같은 질문에 양육시설의 아동은 41.7%, 치료시설의 아동은 54.1% 가 「나의 의견을 물어보지만, 결정은 선생님 또는 원장님이 하신다」라고 높은 응답을 하였다. 이는 종사자와 아동이 응답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55> 아동 보호권에 대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 의식

| 구 분 | 빈도(명) | 퍼센트(%) |
|---|---|---|
| 전체 | 121 | 100.0 |
| 사생활보호(편지나 소포 검사) | | |
| 아동의 관리 감독 차원에서 마음대로 검사 하신다. | 5 | 4.1 |
| 아동의 동의를 얻고 검사를 한다. | 40 | 33.1 |
| 사생활 보호를 위해 검사하지 않는다. | 76 | 62.8 |
| 사생활보호(방 공개) | | |
| 아동의 의견을 물어보고, 원하지 않는 경우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 | 76 | 62.8 |
| 아동의 의견을 물어보지만, 결정은 선생님(또는 원장님)이 한다. | 26 | 21.5 |
| 아동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마음대로 보여주신다. | 19 | 15.7 |

체벌은「아동에게 체벌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규정이 있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직원을 징계한다」(58.2%),「아동에게 체벌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이 실시되고 있지만, 심각한 체벌이 아닌 경우에는 경고에 그친다」(41.3%),「대규모로 아동을 보호하는 과정에서는 체벌은 불가피 한 일로 허용한다」(2.5%)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 간 폭력 시 대처로는「화해, 반성문 쓰기, 재발방지대책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한다」(87.6%),「벌을 서게 하여 반성의 기회를 준다」(12.4%) 순으로 나타났다<표 4-56>.

<표 4-56> 아동 보호권에 대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 의식

| 구 분 | 빈도(명) | 퍼센트(%) |
|---|---|---|
| 전체 | 121 | 100.0 |
| 체벌 | | |
| 아동에게 체벌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규정이 있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직원을 징계한다. | 68 | 58.2 |
| 아동에게 체벌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이 실시되고 있지만, 심각한 체벌이 아닌 경우에는 경고에 그친다. | 50 | 41.3 |
| 대규모로 아동을 보호하는 과정에서는 체벌은 불가피 한 일로 허용한다. | 3 | 2.5 |
| 아동 간 폭력 시 대처 요령 | | |
| 화해, 반성문쓰기, 재발방지대책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한다. | 106 | 87.6 |
| 벌을 서게 하여 반성의 기회를 준다. | 15 | 12.4 |

<표4-56>에 나타나듯이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동 간 폭력이 일어났을 때, 교사의 대처방법으로 '화해, 반성문쓰기, 재발방지대책 등의 체계적인 대응'이 87.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심층면접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아동들 사이에 갈등상황이나 폭력상황이 일어났을 때, 시설종사자가 어떻게 갈등을 해소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에 다툰 아동 당사자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 본다는 응답이 보편적이었고, 한 아동이 일방적으로 괴롭히는 경우, 시설종사자에게 이야기하면 괴롭히는 아동의 평소행동을 시설종사자가 유심히 관찰하고, 개입하는 사례도 있었다.

**'말하면 선생님들이 걔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집중을 하죠. 쟤가 애를 괴롭히나 부터 좀 더 자세히 보게 되고,'**

또한, '벌을 서게 한다.'는 설문조사의 결과와 같이 단순하게 조치하는 종사자의 유형도 나타났다.

**‘그냥 손들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때에는 그냥 가라고 해요. 둘이 사과하고 가라고 해요. 화해하고..’**

한편, 아동이 아동들 사이의 갈등상황을 시설종사자에게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하여도 시설종사자가 이를 신경을 쓰지 않고,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조치를 취해주기는 하지만, 시설종사자의 조치가 형식적이고 비효과적이라고 생각하여 이후에는 아예 말을 하지 않는 다는 아동들도 있어, 시설종사자 또한 아동의 또래갈등에 대한 민감성을 키우고, 갈등상황을 효과적으로 다루고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동생들이 개겨서 선생님한테 이야기해도) 특별하게 처분은 안 해줘요. 그냥 계속 개겨요. 그러면 “개기지 마라!” 하고 끝내요.’**

**‘조치를 취해 주기는 확실하게 주는데 그게 소용이 없어요. 뒤에 불러서 언니를 엄청 혼내요. 그 언니를 엄청 혼내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청소를 시킨다거나 용돈을 깐다거나 방을 옮긴다거나 그런데 소용이 없어요. 뒤에 가서 뭐라 그러죠. “니가 그랬지?”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애들이 말을 안 해요. 처음부터 말을 안 해요 그냥.’**

성추행 및 성폭력으로는 「상부기관에 바로 알리고, 법·행정적 조치를 취한다」(64.5%), 「기관 자체에서 조사하고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34.7%), 그냥 모른 척 하거나 관여하지 않는다」(0.8%)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동의 없이 얼굴이나 사진이 매스컴 보도되는지를 묻는 문항에는 「아니오」(80.2%)가 「예」(19.8%) 보다 높게 나타났다<표 4-57>.

<표 4-57> 아동 보호권에 대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 의식

| 구 분 | 빈도(명) | 퍼센트(%) |
|---|---|---|
| 전체 | 121 | 100.0 |
| 성추행 및 성폭력 | | |
| 상부기관에 바로 알리고 법·행정적 조치를 취한다. | 78 | 64.5 |
| 기관 자체에서 조사하고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42 | 34.7 |
| 그냥 모른 척 하거나 관여하지 않는다. | 1 | .8 |

| | | |
|---|---|---|
| 매스컴 보도 | | |
| 예 | 24 | 19.8 |
| 아니오 | 97 | 80.2 |

5) 아동 발달권에 대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 의식

아동 발달권에 대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 의식에 대해 살펴 본 결과 다음과 같다. 학업지원은 「정해진 학습시간에 선생님으로부터 학습지도를 적절히 받고 있다」(76.9%)가 가장 높았으며, 「정해진 시간 내에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학습할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10.7%) 순으로 나타났다. TV나 인터넷 사용은 「원하는 경우 적절한 수준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78.5%)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같은 문항에 대하여 아동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서는 양육시설아동은 55.6%, 치료시설아동은 48.6%가 자유롭게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 「특별한 날 또는 정해진 시간에만 이용 할 수 있다」고 응답한 종사자는 (21.5%)로 나타났다<표 4-58>.

<표 4-58> 아동 발달권에 대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 의식

| 구 분 | 빈도(명) | 퍼센트(%) |
|---|---|---|
| 전체 | 121 | 100.0 |
| 학업지원 | | |
| 정해진 학습시간에 선생님들로부터 학습지도를 적절히 받고 있다. | 93 | 76.9 |
| 정해진 학습시간 내에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 13 | 10.7 |
| 학습할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 2 | 1.7 |
| 보습학원 및 학원 등을 다닌다. | 13 | 10.7 |
| 문화 및 휴식 증진 | | |
| 원하는 경우 적절한 수준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95 | 78.5 |
| 특별한 날 또는 정해진 시간에만 이용할 수 있다. | 26 | 21.5 |

심층면접에 따르면, 시설종사자는 아동의 발달권(교육권)이 보장되지 않는 이유로

부족한 인력과 과중한 업무를 꼽았다. 대부분의 시설에서 시설종사자가 직접 아동의 학습지도를 실시하는 상황인데, 다른 업무들을 병행하면서 개별적으로 아동을 학습지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아동들의 학습을 지원하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이 있어도 매일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시설종사자가 24시간 아동과 생활하는 것과는 달리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이다. 또한 아동이 학원을 이용하더라도 시설종사자로부터의 학습지도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즉, 시설종사자 1인의 케어아동 수는 아동의 발달단계에 맞는 적절한 학습권을 제공받는 것과도 연관되어 보완되어야 할 부분으로 판단된다.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제공이)잘 안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구요. 아까 말한 거처럼 고등학교 선생님, 중학교 선생님 담당하는 게 아니고 통합적으로 선생님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교육을 중심으로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학습지도는 조금은 적절하게 제공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구요. 제 스스로도 아이들 수준에 맞게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시설 같은 경우는 사무실 업무를 보시는 선생님이 따로 있는 반면, 생활만 하는 선생님이 따로 계시는데, 저희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사무실 업무를 보다가도 생활관가서 다시 아이들 생활지도 해야 되고, 또 방도 더럽고, 오물 같은 것도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 일일이 한명씩 붙잡고, 공부하자고 하는 개 조금은 힘들어요.'

'저희가 생활도 하면서 공부도 가르쳐야 하는데 공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부터 받지 않으면 확 좋아지지 않잖아요. 일단은 1인당 케어 수 인원이 확 줄어야 그것이 가장 궁극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10명이 와서 공부할 때 여기서 앉아서 같이 하는데 막 진도도 못나가는 때도 많고...누가 한명 물어보면.. 다른 애들이 집중이 안 되고... 인원수가 많으니까 시야에 벗어나면 사고 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진짜 누가 그렇게 나와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1인당 8명으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업무를 겨우겨우...'

아동의 교육권이 제한되는 것을 넘어 침해되는 사례를 시설종사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설종사자에 따르면, 보호치료시설 아동의 경우 일선 학교에서 아동이 문제를 일으킬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전학을 꺼리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중학교에서는 시설아이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인 요인이 많으니깐 다들 거부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 시설에서 교육청으로 문의 했더니, 교육청에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기도 하고, 학교 측에서 너무 완강하니깐 아이를 검정고시를 보게끔 한번 해봐라 그런 식으로 답이 와서, 저희 선생님들이 되게 안타까워하고 지금 기다리고만 있는 실정이구요.'

이와 같이 아동의 교육권을 무시하는 학교와 교육청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시설과 시설종사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지보다는 학교행정에 맞서기 어려운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아동이 전학을 하지 못할 경우, 교육부나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낼 계획이나 의사를 묻는 질문에 시설종사자는 본 문제를 부각시키지 않고 싶어 하였다. 이러한 교육권의 침해 사례가 밖으로 이슈화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도 희박하고, 향후에 다른 학생들의 교육권의 제한 및 기회박탈의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시설 입장에서는 복잡한 걸 싫어하기 때문에 하다가 안 되면 학생을 검정고시를 시키지 않을까,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제 입장은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시작한다고 해서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거 같고, 계속 올라 올라가면 계속 점점 길어지니깐 학생입장에서도 점점 지치고, 시설 입장에서도 너무 이거 한 건으로만, 이 학생으로만 시간을 보낸다는 게 다른 학생들에게 그런 부분도 좀 있어서... 한다면 교육청, 도교육청 정도까지만 가서 해결되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해요.'

보호치료시설의 종사자들 역시, 양육시설에 비해 아이들에게 교육권의 제한이 있다는 한계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외부의 교육자원들을 활용하는 것이 아동들의 학습과 진로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실제로 공부를 매우 잘 했던 아동이 보호치료시설 내의 교육자원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을 통하여 외부의 학원을 다니고 대학에 입학한 케이스가 있었으나, 이는 매우 이례적인 케이스로 보여진다. 아동과 종사자 모두 교육권 확충의 필요성을 느끼는 만큼 보호치료시설이라 할지라도 다양한 교육권이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이 신중하게 고려되어 제시될 필요가 요구된다.

'일반 학교 다니는 학생들처럼 문화적인 혜택이나 자기 컴퓨터학원, 피아노 학원, 미용학원 다니고 싶다고 하면, 그런 것도 제공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저희도 발로 뛰면서 이런 학생이 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부분도 있어야 하는데, 지역사회 인식도 조금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 본인이 공부한다고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밀어주죠. 한 친구는 대학을 가기를 원해서 저희가 이 안에서 (교육기회가)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학원으로 보내서, 종합반에 보내서 공부를 시켜서 ○○대에 들어갔던 친구가 있었죠.'

외출은 「규칙만 지킨다면 외출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47.9%)가 가장 높았으며, 「미리 허락을 받아야 한다」(36.4%), 「외출의 횟수와 시간은 정해져 있다」(3.3%)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질문에 양육시설의 아동은 「외출은 미리 선생님께 허락을 받아야 한다」(61.7%)고 가장 높은 응답하였던 결과와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족이나 친척 등 방문 및 접촉은 「선생님께 말씀 드리고 미리 허락을 받으면 자유로운 연락 및 방문이 가능하다」(54.5%)가 가장 높았으며, 「언제든지 자유로운 연락 및 방문이 가능하다」(40.5%), 「정해진 날짜만 연락 및 방문이 가능하다」(5.0%) 순으로 나타났다. 용돈은 「선생님께서 용돈을 관리하고, 아동이 필요할 때 말하면 준다」(46.3%)가 가장 높았으며, 「아동이 용돈을 관리하며, 용돈기입장을 통해 지도를 해준다」(35.5%), 「아동이 용돈을 관리하나 지도를 해준 적이 없다」(5.8%) 순으로 나타났다<표 4-59>.

<표 4-59> 아동 발달권에 대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 의식

| 구 분 | 빈도(명) | 퍼센트(%) |
|---|---|---|
| 전체 | 121 | 100.0 |
| 외출* | | |
| 규칙(귀가시간 등)만 지킨다면 외출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 58 | 47.9 |
| 외출은 미리 선생님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44 | 36.4 |
| 외출의 횟수와 시간은 정해져 있다. | 4 | 3.3 |
| 가족·친척 등 방문 및 접촉 | | |
| 언제든지 자유로운 연락 및 방문이 가능하다 | 49 | 40.5 |
|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허락을 받으면 언제든지 자유로운 연락 및 방문이 가능 하다. | 66 | 54.5 |
| 정해진 날짜만 연락 및 방문이 가능하다. | 6 | 5.0 |
| 용돈* | | |
| 아동이 용돈을 관리하며, 용돈 기입장을 통해 지도를 해준다. | 41 | 35.5 |
| 아동이 용돈을 관리하나, 지도를 해준 적이 없다. | 7 | 5.8 |
| 선생님께서 용돈을 관리하고, 아동이 필요할 때 말하면 준다. | 56 | 46.3 |

* 문항은 보호치료 시설은 해당 되지 않음

6) 아동 참여권에 대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 의식

아동 참여권에 대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 의식에 대해 살펴 본 결과 다음과 같다. 의사 결정 시 아동의 참여 여부는 「예」(99.2%)가 「아니오」(.8%) 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지역사회 교류는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다」(95.0%)가 가장 높았으며,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는 내용과 할 수 없는 내용에 대한 지침이 있다」(3.3%), 「외부에 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1.7%) 순으로 나타났다. 본인과 관련된 의사 결정은 「참석해서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이러한 의견은 결정에 반영된다」(76.9%)가 가장 높았으며, 「참석할 수 있지만, 의견을 말하거나 반영되지 않는다」(5.8%), 「참석 할 수 없다」(5.0%) 순으로 나타났다<표 4-60>.

<표 4-60> 아동 참여권에 대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 의식

| 구 분 | 빈도(명) | 퍼센트(%) |
|---|---|---|
| 전체 | 121 | 100.0 |
| 의사결정시 아동의 참여 | | |
| 예 | 120 | 99.2 |
| 아니오 | 1 | .8 |
| 문화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 | | |
| 자유롭게 참여 할 수 있다. | 103 | 85.1 |
| 정해주는 외부활동에만 참여할 수 있다. | 18 | 14.9 |
| 지역사회 교류 | | |
|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다. | 115 | 95.0 |
|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는 내용과 이야기 할 수 없는 내용에 대한 지침이 있다. | 4 | 3.3 |
| 외부에 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 2 | 1.7 |
| 기타 | | |
| 본인일의 의사결정* | | |
| 참석해서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이러한 의견을 결정에 반영된다. | 93 | 76.9 |
| 참석을 할 수 있지만, 의견을 말하거나 반영되지는 않는다. | 7 | 5.8 |
| 참석 할 수 없다. | 6 | 5.0 |

* 문항은 보호치료 시설은 해당 되지 않음

종교 활동은「강요하지는 않지만,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종교 활동에 참여하도록 권유 함」(61.2%)이 가장 높았으며,「자유롭게 종교 활동을 선택할 수 있다」(22.3%),「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행하는 종교행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10.8%) 순으로 나타났다<표 4-61>. 그러나 같은 질문에 양육시설의 아동은 41.7%, 치료시설의 아동은 74.1%가「현재 살고 있는 종교행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가장 높은 응답하였던 결과와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61> 아동 참여권에 대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 의식

| 구 분 | 빈도(명) | 퍼센트(%) |
|---|---|---|
| 전체 | 121 | 100.0 |
| 종교의 선택 | | |
| 자유롭게 종교 활동을 선택할 수 있다. | 27 | 22.3 |
| 강요하지는 않지만,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종교 활동에 참여 하도록 권유한다. | 74 | 61.2 |
|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행하는 종교행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 20 | 16.5 |

심층면접을 통해, 시설종사자는 아동들이 어느 정도 의무적으로 종교 활동에 참석하여야 하는 것을 인정하였지만 종교 활동을 통해서 아동이 얻는 긍정적인 영향이 더욱 크다고도 생각하고 있었다.

**'지금은 그런 상황(의무적으로 종교에 참여해야하는 상황)인 것이죠. 일단은 어쨌든 종교의 자유를 보면 당연히 참석하고 싶은 사람만 하면 좋죠. 그런데 이면을 보면 저희 아이들을 보면 미사를 통해서 사실은 좋은 말씀을 듣잖아요.'**

한편, 시설(재단)의 종교를 강요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족한 인력으로 인하여 아동의 안전문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아동개인의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 또한 나타났다. 이는 시설종사자의 확충, 처우 및 업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보완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선생님들하고 선생님들은 주말이니까 근무하는 선생님이 한 분 밖에 안 계시면 (아이들)관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오전 예배에 다 가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면 갈 사람만 지원해서 가요.'**

7)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 및 아동인권상황에 대한 만족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 및 아동인권상황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아동에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인권 중 1·3순위는 「내 의견이 존중받을 인권」(28.1%, 19.0%), 2순위는 「필요에 따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권」(21.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4-62>.

<표 4-62>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아동에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인권

| 구분 |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
| | 빈도 (N) | 퍼센트 (%) | 빈도 (N) | 퍼센트 (%) | 빈도 (N) | 퍼센트 (%) |
|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놀 인권 | 8 | 6.6 | 11 | 9.1 | 15 | 12.4 |
| 내 의견이 존중받을 인권 | 34 | 28.1 | 16 | 13.2 | 23 | 19.0 |
| 친구들과 자유롭게 모임을 갖고 활동할 인권 | 3 | 2.5 | 9 | 7.4 | 8 | 6.6 |
| 폭력이나 욕설 등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을 인권 | 15 | 12.4 | 13 | 10.7 | 11 | 9.1 |
| 필요에 따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권 | 14 | 11.6 | 26 | 21.5 | 12 | 9.9 |
| 자신과 관련된 일에 참여할 인권 | 8 | 6.6 | 16 | 13.2 | 12 | 9.9 |
| 다른 사람과의 차이나 개성이 존중받을 인권 | 29 | 24.0 | 20 | 16.5 | 20 | 16.5 |
| 사생활이 침해받지 않을 인권 | 9 | 7.4 | 10 | 8.3 | 20 | 16.5 |
| 기 타 | 1 | .8 | 0 | .0 | 0 | .0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기관의 인권상황에 대한 만족도는 「조금 만족」(47.9%)로 가장 높았으며, 「매우 만족」(37.2%), 「보통」(9.1%), 「조금 불만족」(5.8%) 순으로 나타났다<표 4-63>.

<표 4-63>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아동인권상황 만족도

| 구 분 | 빈도(명) | 퍼센트(%) |
|---|---|---|
| 전체 | 121 | 100.0 |
| 아동인권상황 만족도 | | |
| 조금 불만족 | 7 | 5.8 |
| 보통 | 11 | 9.1 |
| 조금 만족 | 58 | 47.9 |
| 매우 만족 | 45 | 37.2 |

위의 <표 4-63>과 <표 4-64>의 응답결과들을 통해, 시설종사자의 아동의 인권에 대한 중요성 인지순위와 시설에서 아동인권이 지켜지고 있는 정도(만족도)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시설종사자와의 심층면접을 통해, 시설종사자가 스스로 아동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의식했던 경험과 아동인권을 침해하는 시설의 환경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았다.

먼저, 시설종사자의 사소한 부주의에 의해 아동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아동이 원하는 만큼의 정서적인 지지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은연중에 다른 아동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아이를 꾸중하는 등의 행동이 아동에게는 상처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을 시설종사자 스스로 인지하고 조심하여야 할 부분으로 지적하였다.

**‘우리가 또 하나의 폭력으로 생각하는 것이 언어폭력이라 생각해요. 언어폭력 중에서도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저희도 계속 교육을 받고 있지만 가끔 친구들이 바라는 어떤 따뜻한 말을 못해주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아이가 잘못을 했을 경우 순간적으로 야단을 치게 되잖아요. 아이를 방에 불러서 다른 아이들이 보지 않을 때 해야 하는데 순간적으로 아이들이 많이 있는 자리에서 말이 나갈 때, “아,, 조심했어야 하는데...” 이런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은연중에 다른 아이들 앞에서 야단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좀 수치스러웠겠다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죠.’**

또한, 시설아동의 인권영역 중 가장 대표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부분을 단체생활로 인하여 아동의 개별성이 존중되지 못하는 현실로 꼽았다. 시설의 규칙과 단체행동이 우선시되는 환경에서 개성이 강한 아동의 경우에는 여러 아동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어렵다는 시설종사자의 의견이 나타났다. 시설아동의 개별화가 존중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을 통하여 아동인권의 보호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가 늘 생각했던 것은 개별성이라는 것, 어쩔 수 없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기본적인 부분은 잘 되는 것 같은 데 아동의 개별적인 기호가 드러나는 아이들은 시설에 사는 것이 힘든 것 같아요.'**

**'웬만하면 (아이들의 개별 기호에 맞춰)주기는 하는데 저희가 못해주는 경우도 있죠. 저희 환경이 시간제약도 받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다보니까...'**

8) 시설종사자의 인권의식 및 의무 의식정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의무 의식정도를 살펴보면, <표 4-64>와 같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의무 의식을 평균을 살펴보면 「종사자들은 아동들을 절대 체벌해서 안 되며 아동과 일대일로 문제를 처리하지 않아야 한다」(3.72)가 가장 높았으며, 「아동을 돌보는 시설 종사자는 자주 바뀌지 말아야 한다」(3.71), 「시설 종사자는 시설 내 왕따, 저항, 갈등 등을 잘 다룰 수 있도록 충분히 훈련을 받아야 한다」(3.67), 「시설 종사자는 아동의 불만사항을 즉각적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3.66), 「아동은 자유롭게 연락할 수 있는 누군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3.36) 순으로 나타났다.

<표 4-64>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 의식 및 직무 의식 정도

| 구 분 | 평균(M) | 표준편차(SD) |
|---|---|---|
| 시설 종사자는 시설 내 왕따, 폭력, 저항, 갈등 등을 잘 다룰 수 있도록 충분히 훈련을 받아야 한다. | 3.67 | .62 |
| 시설 종사자는 아동의 불만사항을 즉각적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3.66 | .53 |
| 아동은 자유롭게 연락할 수 있는 누군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3.36 | .63 |
| 종사자들은 아동을 절대 체벌해서 안 되며 아동과 일대일로 문제를 처리하지 않아야 한다. | 3.72 | .78 |
| 아동을 돌보는 시설 종사자는 자주 바뀌지 않아야 한다. | 3.71 | .52 |

이상의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자세히 나타나지 않았으나, 심층면접을 통해 시설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무환경에 대한 목소리와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종사자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시설종사자의 업무조건 및 환경이 시설종사자의 인권뿐만 아니라, 어떻게 아동의 인권과 연결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시설종사자는 1인당 케어를 하여야 하는 아동의 수가 많아 과중한 업무의 부담을 느끼고 있어, 인력의 충원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의 연령이 낮을수록 시설종사가의 부담은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설종사자는 전반적인 케어의 역할 뿐만 아니라 행정업무와 서류작업도 수행하여야 하며, 주말에는 식사준비를 하여야 하는 등 업무의 부담이 높다.

**‘아이들이 적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죠. 작은 아이들일 경우 13명이면 많거든요. 다들 힘들어 하는 점들이 있고요.’**

**‘직원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일이지만 여자 숙소 방 당직하는 선생님이 2분밖에 안 계세요. 주말 같은 경우에는 여 선생님 혼자 있어요. 아까 주말에는 밥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밥도 하면서 얘들도 봐야 하고, 그런 부분이 좀 아동**

보호치료시설 같은 경우는 30인당 1명의 생활지도원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고요. 인력이 좀 딸리고, 그래서 많이 충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인원이 어느 정도 더 충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은)거의 뭐 맨투맨으로 만나도 부족할 지경이니까 어느 정도 인원이 충원이 되면 선생님들이 업무분담을 통해서 하루에 한 시간 정도는 자기 일을 보면서 일을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아이들에게 질 좋은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중간관리자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되겠죠.'

'서류정리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있어야하니까. 지금은 중간관리자들이 오면서 "저쪽은 일 등하는 데 우리는 맨날..." 이런 부분이 젊은 중간 관리자들은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서류는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되어서 사실은 아이들하고 있는 시간은 똑같이 변함은 없는데 서류정리 할 시간은 각자 알아서 해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힘든 것이죠. '

시설종사자에게 부과되는 과중한 업무량과 광범위한 업무영역에 따른 인력부족의 현상의 부정적인 영향은 비단 시설종사자의 소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 등의 형태로 시설종사자의 심리·정서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아동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양과 질에까지 영향을 주게 된다. 즉, 시설종사자와 계속적으로 접촉하는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저희가 아이들이 1~2명이면 충분히 공감을 해 주고 얘기도 들어주고 또 아이들이 얘기를 하다보면 한명이 얘기를 하고 있으면 애들이 뭐라고 뭐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큰 아이들은 둘이 얘기하고 있으면 뭐 이렇게 눈치 봐 가면서 끝나면 얘기 하던가 그렇게 하는데 또 어린아이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즉흥적으로 딱딱 얘기를 하잖아요. 본인도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럴 땐 그걸 끊고서 얘기도 못하고 이따가 얘기하자! 이거를 이제 보육사의 심리상태라든가 그런 상태에서 짜증을 낼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안한 감은 들죠! 아! 좀 이렇게 해 줄걸 근데 교사도 다 인간이기 때문에 짜증 낼 때는 내죠.'

'계속 생각해 보면서 근본적인 것 같아요. 저희가 워낙 케어하는 아이들 수가 많다

보니까 그게 본의 아니게 아동 간 아동 문제. 만약에 외적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따지자고 하면 계속 24시간 같이 안 있으면 그 사이에 아동이 아동한테 폭력을 쓰거나 하는 경우. 잠깐 부엌 정리하는 사이에도 자기네들 끼리 꼬집고 때리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게 보완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1인당 케어 수가 줄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경우가 종종 생기는 것이죠. 그게 가장 절실하고 문제인 것 같아요. 10~12명씩 진짜... 그냥 누구 말 따라 보육이 아니라 사육이죠. 그래서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아동케어수가 사실은 쪼금 힘들다는 생각이 있죠. 한 7-8명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이 항상 들어요. 예를 들어서 그걸 어떻게 느끼냐면, 제가 13-14명 정도 맡고 있거든요? 몇 명 빠져서 캠프에 서 너 명 없으면 밥 먹는 게 되게 편하고 오붓하고, 소리도 덜 지르게 되고,, 그것도 애들이 개개인으로 느끼기에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관심이 분산되는 게, 한 아이한테 더 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한테는 영향을 제일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나. 유연성 있는 업무시간활용에 대한 욕구*

아동양육시설의 시설종사자는 대부분 교대근무의 업무형태를 띄고 있었는데, 업무의 형태는 변화할 수 없는, 즉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였으나 동료와 업무시간을 바꾸는 등의 융통성이 주어지는 것을 원하고 있었다. 24시간 교대근무는 종사자가 정기적인 교육, 보수교육 등의 기회로부터 쉽게 배제될 수 있다.

'근무 같은 경우는 짝꿍이랑 날짜를  상의 하에 날짜를 바꾸거나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아직 그거는 안 되고 있어요. 그냥 하루 일하고 하루 쉬고 하루 일하고 하루 쉬니깐 그 쉬는 날에 맞춰서 계획을 짜기는 해요. 서로 쉬는 날에 상의 하에 쉬는 날 조정하는데 좋아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그건(교대근무시간을 의미) 당연하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가진지 오래됐고요. 어쩔 수 없으니까 좋은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저희 24시간 교대인데, 선택의 여지는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이랑 계속 있다 보면, 아이들에 대해서 조금씩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걸로.. 유연하게 근무 일수라든지, 근무여건

같은 걸...'

'저희가 갖고 있는 일들이 워낙 많다보니까 충원이 되고 그것의 분배를 통해서 그런 (개인/여유)시간이 생기고 자기계발을 해서 계발을 통한 아이들과의 만남이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아동시설에 근무하는 시설종사자는 아이들과 24시간 생활을 함께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 하루 중 자신의 업무와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확보에 대한 욕구를 파악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하루의 자기시간이나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만들어져야하는지는 생각해봐야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다. 임금인상의 욕구*

시설종사자들은 임금인상, 보너스제공 등의 임금인상에 대한 욕구를 표현하였다.

'직원들을 위해 음.. 보너스 같은 거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끼리 얘기하는 것은 "아이들 만나는 것 자체가 기부야, 따로 기부할 필요 없이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애들 만나" 이런 농담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사회복지가 박봉이잖아요. 이 돈으로 어떤 한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은... 어쨌든 다른 업종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죠. 이런 부분에도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봐요.'

*라. 고용의 안정성 확보에 대한 욕구*

아동시설에서 근무하는 시설종사자는 미혼이 많으며, 기혼의 경우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여 재취업한 경우가 많다. 미혼의 종사자가 결혼을 하거나,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 자연스럽게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것으로 의식되고 있었다. 시설종사자들이 결혼과 출산 등에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고용안

정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결혼을 하고 나면 이 일을 하기가)힘들겠죠.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선생님들도 결혼하면 나갈 상황이니깐 그렇게 거의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몇 사람만 저를 포함해서 몇 사람만은 어떡해서든 이 일을 좋아하고 또 적성에 맞으니깐 어떡해서든 하고 싶은데.. 어떡해서든 그 부분을 잘 배려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선생님 중에 한분이 아기 갖으신 분이 있고, 그분도 그만두실 것 같던데.. 요새 우리나라에서 아이들을 많이 낳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양육부분에 많은 변화가 있잖아요, 회사내에.. 보육시설이 있거나.. 우리 여기까지는 그런 부분이 많이 안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완전히 열악한 것 같아요.'

시설종사자의 안정적인 고용은 간접적으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시설종사자가 자주 바뀌게 되면 아동은 매번 시설종사자에 적응하여야 하는 어려움과 혼란을 겪을 수 있다.

'많이 바뀌면, 여러 명 선생님을 만나면 좋을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혼란스럽기도 해요.'

다음으로,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시설종사자에게 요구되는 사항들은 시설장과 원장, 중간관리자와 아동과 직접적으로 함께 생활하는 생활지도원, 사회복지사로 나누어 설명되어진다.

*가. 시설장·원장·중간관리자*

시설종사자들이 언급한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설장・원장・중간관리자가 특별히 신경써야하는 점을 살펴보면 크게 정서적인 부분, 원활한 의사소통, 아동과의 접촉기회 확충으로 정리할 수 있다.

원장님과 시설장이 시설종사자를 믿어주는 것과 심리상태를 잘 파악해주는 것, 가

능한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 등이 시설종사자의 정서적인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원장님이나 윗분 들이 필요하신 것은 저희들을 믿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아이가 잘못을 하면은 아이의 성향 일 수도 있고 충분히 자라나면서 생길 수 있는 갈등이나 표현들이 감정들을 표현하는 그런 것 들이 있잖아요? 그럴 수 도 있는데 이것을 저희 탓으로 생각을 하신다든가...'

'한 분은 외부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시 하고 한분은 그런 걸 잘 해주세요. 그 교사를 믿고 맡겨주시거든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고요. 저희들의 심리상태라든가 어떤 요구를 가지고 있는지 대화를 하다든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아동의 인권을 잘 지켜주기 위해서 저는 직원의 복지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직원의 마음도 편하게 모든 게 잘 돌아가게 뒷받침이 되어야 아이들한테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인권이나 인격이나 잘 존중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은 상호간에 협력이 잘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

시설종사자들은 중간관리자와의 의사소통을 기회를 늘려 활발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아동에 관한 이야기들을 밀도 있게 나눌 수 있는 통로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시설을 운영하시고, 직원들 아이들 관리하시는 총 책임자 분이시니깐 좀 뭐랄까? 아까도 말한 거처럼 배려를 하면 좋겠고요, 의사소통을 자주하면 좋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직원들이 다 자라 온 환경도 틀리고, 사회생활 환경도 틀리기 때문에 서로 가지고 있는 의식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교류, 의사소통도 많이 하고, 업무적인 부분도 많이 공유해서 우리 이렇게 한 번 해 봅시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자주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그게 자주 된다면, 좋을 거 같아요.'

'우리 지금 이런 시설에서는? 글쎄요.. 대화? 서로 더 자주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죠. 회의를 통해서 더 자주 직접적인 아동에 대해서 논하게 되지는 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물질적인 것이나 행사나 이런 것을 더 많이 논하게 되지만. 아동에게서 전해 받은

**바를 전달해주는 중간 역할,, 이런 것들을 더 긴밀하게 잘 되어야 할 것 같다.**

한편, 시설종사자들은 중간관리자들이 아동과 직접 접촉하는 기회가 적다고 생각하여,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여 아동을 만나고, 대화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로써 중간관리자 역시, 아동이 겪는 어려움과 아동이 가지고 있는 욕구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관리자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 보다는 조금은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 스스로도 거부감을, 거리감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선생님들 있을 때랑 시설장이나 관리자와 있을 때 조금 느낌이 틀리고, 대하는 것도 틀리니까... 좀, 자주 학생들이랑 프로그램 참여 할 때 같이 어울리셔서 웃으시면서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나. 사회복지사, 생활지도원 및 보육사*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들과 직접 생활하는 사회복지사와 생활지도원 스스로에게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은 '심리적인 안정', '자기발전의 노력 ', 그리고 '교육에 대한 욕구' 등으로 압축되었다.

시설종사자는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고, 아동에게 관심을 주기 위해서 시설종사자 스스로 마음의 여유와 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시설종사자의 심리상태가 안정되어있지 않으면 아동에게도 적절한 케어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애들이 무슨 행동을 해도 다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걸 넉넉하게 받아 드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정말 필요하거든요.'**

9) 아동복지시설 아동과 종사자의 인권 의식 비교

위와 같이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인권 의식과 종사자의 의식을 살펴본 결과 일상생활에서 의견을 말할 기회 여부, 종교선택의 여부, 아동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인권과 관련된 항목에서 아동과 종사자간의 주요한 차이점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생생활에서 의견을 말할 기회 여부에 대한 아동과 종사자의 인권의식 차이

일상생활에서 의견을 말할 기회 여부에 대한 아동과 종사자의 인권 의식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면 <표 4-65>와 같다. 아동과 종사자 모두 「일상생활(방규칙, 자치생활)에서 의견을 말할 기회가 제공 된다」(75.8%, 99.2%)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 즉, 「의견을 말할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아동이 24.2%에 비해 아동에게 의견을 말할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시설종사자는 .8%에 머물렀다 . 이와 같은 결과는 아동은 의사의 표현의 기회나 의사결정과정으로의 접근과 참여가 다소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반면 시설종사자는 시설에서 아동에게 충분히 참여할 권리가 충분히 주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표 4-65> 의견을 말할 기회여부에 대한 아동과 종사자의 인권의식 차이

| 구 분 | 아동 | 종사자 |
|---|---|---|
| 전체 | 1001 (100.0%) | 121 (100.0%) |
| 일상생활(방규칙, 자치생활)애서 의견을 말할 기회 여부 | | |
| 예 | 759 (75.8%) | 120 (99.2%) |
| 아니오 | 242 (24.2%) | 1 (.8%) |

(2) 종교 선택 여부에 대한 아동과 종사자의 인권의식 차이

종교 선택 여부에 대한 아동과 종사자의 인권 의식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면 <표 4-66>과 같다. 아동의 경우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행하는 종교 행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51.1%)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종사자의 경우 「강요하지는 않지만,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종교 활동에 참여하도록 권유한다」(61.2%)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종사자의 경우 종교 활동을 강요하지 않고, 권유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동의 입장에서는 권유가 아닌, 강요 혹은 강제를 하는 것으로 느껴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심층면접을 통해, 다수의 아동이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종교활동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시설종사자 역시, 종교의 선택에 대한 아동개별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시설 전체적인 고려와 변화 없이 시설종사자 개인의 차원에서는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또한 일부 시설종사자는 어린 아동의 경우, 교회에서의 활동 등이 흥미롭고, 재미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동들에게 긍정적인 기능을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내 종교기관에서 실시하는 활동들에 담긴 종교적 교육, 종교관 등의 내용을 배제한 채, 놀이 혹은 여가활동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표 4-66> 종교 선택 여부에 대한 아동과 종사자의 인권의식 차이

| 구 분 | 아동 | 종사자 |
|---|---|---|
| 전체 | 1001 (100.0%) | 121 (100.0%) |
| 종교의 선택 | | |
| 자유롭게 종교 활동을 선택할 수 있다. | 331 (33.1%) | 27 (22.3%) |
| 강요하지는 않지만,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종교 활동에 참여하도록 권유한다. | 158 (15.8%) | 74 (61.2%) |
|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행하는 종교행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 512 (51.1%) | 20 (16.5%) |

(3) 아동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인권에 대한 아동과 종사자의 인권의식 차이

아동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인권에 대한 아동과 종사자의 인권의식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면 <표 4-67>과 같다. 아동의 경우 1순위는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놀 인권」(42.1%)로 꼽아 아동의 4대 인권 중 발달권의 보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인권 2순위와 3순위는 모두 「친구들과 자유롭게 모임을 갖고 활동 할 인권」(20.4%), (17.2%)로 나타나, 시설아동들이 또래 및 지역사회체계에서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참여권에 대한 인권의식이 비교적 발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종사자의 경우 1순위와 3순위 모

두에서 「내 의견이 존중받을 인권」(28.1%), (19.0%)를 아동에게 가장 필요한 인권라고 보아 아동들이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들에 대한 표현과 발언의 존중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설종사자가 생각하는 아동에게 필요한 인권 2순위는 「필요에 따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권」(21.5%)로 나타나 아동의 욕구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는 것을 아동의 중요한 인권으로서 의식하고 있었다. 이처럼 아동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인권에 대해 아동 당사자와 종사자에 대한 인권의식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인권의식 차이는 아동의 욕구조사와 평가, 자치회 활동 등의 의사소통 체계마련 등의 방법을 통하여 서로의 의식의 차이에 대하여 의식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관점과 생각의 차이를 나눌 수 있고, 서로의 의식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아동과 시설종사자의 입장과 행동, 표현의 차이를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4-67> 아동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인권에 대한 아동과 종사자의 인권의식 차이

| 구분 |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
| | 아동 | 종사자 | 아동 | 종사자 | 아동 | 종사자 |
|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놀 인권 | **421 (42.1%)** | 8 (6.6%) | 170 (17.0%) | 11 (9.1%) | 140 (14.0%) | 15 (12.4%) |
| 내 의견이 존중받을 인권 | 103 (10.3%) | **34 (28.1%)** | 177 (17.7%) | 16 (13.2%) | 122 (12.2%) | **23 (19.0%)** |
| 친구들과 자유롭게 모임을 갖고 활동할 인권 | 129 (12.9%) | 3 (2.5%) | **204 (20.4%)** | 9 (7.4%) | **172 (17.2%)** | 8 (6.6%) |
| 폭력이나 욕설 등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을 인권 | 116 (11.6%) | 15 (12.4%) | 114 (11.4%) | 13 (10.7%) | 92 (9.2%) | 11 (9.1%) |
| 필요에 따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권 | 34 (3.4%) | 14 (11.6%) | 97 (9.7%) | **26 (21.5%)** | 105 (10.5%) | 12 (9.9%) |
| 자신과 관련된 일에 참여할 인권 | 20 (2.0%) | 8 (6.6%) | 47 (4.7%) | 16 (13.2%) | 80 (8.0%) | 12 (9.9%) |
| 다른 사람과의 차이나 개성이 존중받을 인권 | 31 (3.1%) | 29 (24.0%) | 67 (6.7%) | 20 (16.5%) | 87 (8.7%) | 20 (16.5%) |
| 사생활이 침해받지 않을 인권 | 62 (6.2%) | 9 (7.4%) | 97 (9.7%) | 10 (8.3%) | 170 (17.0%) | 20 (16.5%) |
| 기 타 | 85 (8.5%) | 1 (.8%) | 28 (2.8%) | 0 (.0%) | 33 (3.3%) | 0 (.0%) |

## 4.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아동인권 실태

‘아동양육시설’과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아동인권의 실태 및 인권의식 수준을 확인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차분석에 포함된 일반적 특성변인은 ‘아동의 성별’, ‘아동의 학년’, 그리고 아동복지시설이 ‘위치한 지역’이며 구체적으로 아동의 성별은 ‘남아’와 ‘여아’, 아동의 학년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시설의 위치는 ‘대도시’와 ‘중소도시’영역으로 각각 구분하였다.

### 1)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성별에 따른 아동인권 실태[11)]

#### (1)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성별에 따른 의복 선택 여부의 차이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성별에 따른 의복 선택 여부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55.625, p<.01). 남・여아 모두 「내 취향에 맞는 옷을 고르거나 입을 수 있다」는 경우로 나타났으나, 여아(75.7%)가 남아(60.6%)보다 취향에 맞는 옷을 고르거나 입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68>.

<표 4-68>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성별에 따른 의복 선택 여부의 차이

| 구 분 | 남 | 여 | 전체 |
|---|---|---|---|
| 내 취향에 맞는 옷을 고르거나 입을 수 있다 | 320 (60.6%) | 357 (75.7%) | 677 (67.6%) |
| 선생님과 의견이 다른 경우 선생님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 136 (25.8%) | 109 (23.0%) | 245 (24.5%) |
| 내가 원하는 옷을 전혀 고르거나 입을 수 없다. | 72 (13.6%) | 7 (1.5%) | 79 (7.9%) |
| 전 체 | 528 (100.0%) | 473 (100.0%) | 1001 (100.0%) |

$\chi^2$=55.625, p<.01

11) 시설 아동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아동인권 실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2)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성별에 따른 자유로운 개인 용품 사용 여부의 차이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성별에 따른 자유로운 개인용품 사용 여부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23.983 p<.01). 남・여아 모두 「개인용품이 필요한 경우 선생님께서 사다 주신다」는 경우로 나타났으나, 여아(32.3%)가 남아(21.8%)보다 더 자유롭게 구입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69>.

<표 4-69>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성별에 따른 자유로운 개인 용품 사용 여부의 차이

| 구 분 | 남 | 여 | 전체 |
|---|---|---|---|
| 필요시 자유롭게 구입하거나 사용 | 115<br>(21.8%) | 153<br>(32.3%) | 268<br>(26.8%) |
| 선생님께서 필요한 것을 사다(가져다) 주심 | 323<br>(61.2%) | 279<br>(59.0%) | 602<br>(60.1%) |
| 내가 알아서 구입 | 90<br>(17.0%) | 41<br>(8.7%) | 131<br>(13.1%) |
| 전 체 | 528<br>(100.0%) | 473<br>(100.0%) | 1001<br>(100.0%) |

$\chi^2$=23.983, p<.01

(3)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성별에 따른 편지나 소포 검사 여부의 차이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성별에 따른 편지나 소포 검사 여부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34.168, p<.01). 남・여아 모두 「사생활 보호를 위해 검사하지 않는다」는 경우로 나타났으나, 여아(60.5%)가 남아(51.3%)보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검사를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70>.

<표 4-70>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성별에 따른 편지나 소포 검사 여부의 차이

| 구 분 | 남 | 여 | 전체 |
|---|---|---|---|
| 우리의 의견을 묻지 않고 선생님이 마음대로 검사하신다. | 117 (22.2%) | 41 (8.7%) | 158 (15.8%) |
| 우리의 의견을 묻고 선생님이 검사를 한다. | 140 (26.5%) | 146 (30.9%) | 286 (28.6%) |
| 사생활 보호를 위해 검사하지 않는다. | 271 (51.3%) | 286 (60.5%) | 557 (55.6%) |
| 전 체 | 528 (100.0%) | 473 (100.0%) | 1001 (100.0%) |

$\chi^2$=34.168, p<.01

(4)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성별에 따른 방 공개 여부의 차이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성별에 따른 방 공개 여부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29.955, p<.01). 남·여아 모두 「내게 의견을 물어보기는 하지만, 결정은 선생님(또는 원장님)이 하신다」는 경우로 나타났고, 여아(35.3%)의 경우 남아(20.5%)보다 내 의견을 물어보고, 원하지 않으면 방을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71>.

<표 4-71>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성별에 따른 방 공개 여부의 차이

| 구 분 | 남 | 여 | 전체 |
|---|---|---|---|
| 먼저 내 의견을 물어보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 | 108 (20.5%) | 167 (35.3%) | 275 (27.5%) |
| 내게 의견을 물어보기는 하지만, 결정은 선생님(또는 원장님)이 하신다. | 227 (43.0%) | 183 (38.7%) | 410 (41.%) |
| 내 의견을 묻지 않고 마음대로 보여주신다. | 193 (36.6%) | 123 (26.0%) | 316 (31.6%) |
| 전 체 | 528 (100.0%) | 473 (100.0%) | 1001 (100.0%) |

$\chi^2$=29.955, p<.01

(5)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성별에 따른 건의사항 표현 여부의 차이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성별에 따른 건의사항 표현 여부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8.112, p<.01). 남·여아 모두 「선생님이나 원장님께 직접 말씀드린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남아(65.5%)가 여아(59.0%)보다 선생님이나 원장님께 직접 말씀 드리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72>.

<표 4-72>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성별에 따른 건의사항 표현 여부의 차이

| 구 분 | 남 | 여 | 전체 |
|---|---|---|---|
| 선생님이나 원장님께 직접 말씀드린다. | 346<br>(65.5%) | 279<br>(59.0%) | 625<br>(62.4%) |
| 홈페이지나 건의함에 의견을 쓸 수 있다. | 58<br>(11.0%) | 80<br>(16.9%) | 138<br>(13.8%) |
| 건의사항을 말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말하지 않는다. | 124<br>(23.5%) | 114<br>(24.1%) | 238<br>(23.8%) |
| 전 체 | 528<br>(100.0%) | 473<br>(100.0%) | 1001<br>(100.0%) |

$\chi^2$=8.112, p<.01

(6)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성별에 따른 자신의 일 결정 시 참여 여부의 차이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성별에 따른 자신의 일 결정 시 참여 여부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17.920, p<.05). 남·여아 모두 「참석해서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이러한 의견을 결정에 반영 한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남아(25.0%)가 여아(19.0%)보다 참석을 할 수 있지만, 의견을 말하거나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73>.

아동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인권의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인권의식의 차이는 여아의 경우 남아보다 생존권이나 보호권에 관련된 항목의 경우 보장을 받는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참여권과 관련된 항목에서는 남아가 더 보장을 받는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3>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성별에 따른 자신의 일 결정 시 참여 여부의 차이

| 구 분 | 남 | 여 | 전체 |
|---|---|---|---|
| 참석해서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이러한 의견을 결정에 반영된다. | 342 (64.8%) | 360 (76.1%) | 702 (70.1%) |
| 참석을 할 수 있지만, 의견을 말하거나 반영되지 않는다. | 132 (25.0%) | 90 (19.0%) | 222 (22.2%) |
| 참석할 수 없다. | 54 (10.2%) | 23 (4.9%) | 77 (7.7%) |
| 전 체 | 528 (100.0%) | 473 (100.0%) | 1001 (100.0%) |

$\chi^2$=17.920, p<.05

(7)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성별에 따른 아동인권 의식의 차이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성별에 따른 아동인권 의식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9.801, p<.05). 남아의 경우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알지 못한다(46.8%)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여아의 경우 잘 알고 있다(52.0%)가 가장 높게 나타나, 남아 보다 여아의 경우 아동인권 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74>.

<표 4-74>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성별에 따른 아동인권 의식의 차이

| 구 분 | 남 | 여 | 전체 |
|---|---|---|---|
| 잘 알고 있다. | 223 (42.2%) | 246 (52.0%) | 469 (46.9%) |
|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알지 못한다. | 247 (46.8%) | 180 (38.1%) | 427 (42.7%) |
| 전혀 알지 못한다. | 58 (11.0%) | 47 (9.9%) | 105 (10.5%) |
| 전 체 | 528 (100.0%) | 473 (100.0%) | 1001 (100.0%) |

$\chi^2$=9.801, p<.05

2)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학년에 따른 아동인권 실태

(1)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학년에 따른 의류 선택 여부의 차이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학년에 따른 의류 선택 여부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18.860 p<.01). 모든 학년이 「내 취향에 맞는 옷을 고르거나 입을 수 있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중학생(72.7%), 초등학생(68.6%), 고등학생(65.5%) 순으로 취향에 맞는 옷을 고르거나 입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75>.

<표 4-75>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학년에 따른 의복 선택 여부의 차이

| 구 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전체 |
|---|---|---|---|---|
| 내 취향에 맞는 옷을 고르거나 입을 수 있다. | 264 (68.6%) | 242 (72.7%) | 165 (65.5%) | 671 (69.2%) |
| 선생님과 의견이 다른 경우 선생님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 108 (28.1%) | 63 (18.95) | 62 (24.6%) | 233 (24.0%) |
| 내가 원하는 옷을 전혀 고르거나 입을 수 없다. | 13 (3.4%) | 28 (8.4%) | 25 (9.9%) | 66 (6.8%) |
| 전 체 | 385 (100.0%) | 333 (100.0%) | 252 (100.0%) | 970 (100.0%) |

$\chi^2$=18.860 p<.01

(2)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학년에 따른 자유로운 개인용품 사용 여부의 차이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학년에 따른 자유로운 개인용품 사용 여부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70.784, p<.01). 고등학생(40.5%)은 필요시 자유롭게 구입하거나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초등학생(75.1%)이나 중학생(53.5%)의 경우 선생님께서 필요한 것을 사다 주시는 경우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76>.

<표 4-76>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학년에 따른 자유로운 개인 용품 사용 여부의 차이

| 구 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전체 |
|---|---|---|---|---|
| 필요시 자유롭게 구입하거나 사용 | 55 (14.3%) | 108 (32.4%) | 102 (40.5%) | 265 (27.3%) |
| 선생님께서 필요한 것을 사다(가져다) 주심 | 289 (75.1%) | 178 (53.5%) | 115 (45.6%) | 582 (60.0%) |
| 내가 알아서 구입 | 41 (10.6%) | 47 (14.1%) | 35 (13.9%) | 123 (12.7%) |
| 전 체 | 385 (100.0%) | 333 (100.0%) | 252 (100.0%) | 970 (100.0%) |

$\chi^2$=70.784, p<.01

(3)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학년에 따른 편지나 소포 검사 여부의 차이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학년에 따른 편지나 소포 검사 여부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60.282 p<.01). 모든 학년이 「사생활 보호를 위해 검사하지 않는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중학생(63.1%), 초등학생(57.5%), 고등학생(51.2%) 사생활 보호를 위해 검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77>.

<표 4-77>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학년에 따른 편지나 소포 검사의 차이

| 구 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전체 |
|---|---|---|---|---|
| 우리의 의견을 묻지 않고 선생님이 마음대로 검사 하신다. | 32 (8.3%) | 61 (18.3%) | 53 (21.0%) | 146 (15.1%) |
| 우리의 의견을 묻고 선생님이 검사를 한다 | 156 (40.5%) | 62 (18.6%) | 54 (21.4%) | 272 (28.0%) |
| 사생활 보호를 위해 검사하지 않는다. | 197 (51.2%) | 210 (63.1%) | 145 (57.5%) | 552 (56.9%) |
| 전 체 | 385 (100.0%) | 333 (100.0%) | 252 (100.0%) | 970 (100.0%) |

$\chi^2$=60.282 p<.01

(4)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학년에 따른 방 공개 여부의 차이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학년에 따른 방 공개 여부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36.165, p<.01). 고등학생(36.1%)은 내 의견을 묻지도 않고 마음대로 보여 주신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초등학생(49.4%)이나 중학생(39.3%)은 내게 의견을 물어보기는 하지만, 결정은 선생님(또는 원장님)이 하신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4-78>.

<표 4-78>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학년에 따른 방 공개 여부의 차이

| 구 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전체 |
|---|---|---|---|---|
| 먼저 내 의견을 물어보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 | 111 (28.8%) | 77 (23.1%) | 84 (33.3%) | 272 (28.0%) |
| 내게 의견을 물어보기는 하지만, 결정은 선생님(또는 원장님)이 하신다. | 190 (49.4%) | 131 (39.3%) | 77 (30.6%) | 398 (41.0%) |
| 내 의견을 묻지도 않고 마음대로 보여 주신다. | 84 (21.8%) | 125 (37.5%) | 91 (36.1%) | 300 (30.9%) |
| 전 체 | 385 (100.0%) | 333 (100.0%) | 252 (100.0%) | 970 (100.0%) |

$\chi^2$=36.195 p<.01

(5)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학년에 따른 TV 시청 및 인터넷 사용 여부의 차이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학년에 따른 TV 시청 및 인터넷 사용 여부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49.390, p<.01). 중학생(67.3%)이나 고등학생(55.6%)은 원하는 경우 적절한 수준에서 자유로운 이용을 가능한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초등학생(50.1%)은 특별한 날 또는 정해진 시간에만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4-79>.

<표 4-79>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학년에 따른 TV 시청 및 인터넷 사용 여부의 차이

| 구 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전체 |
|---|---|---|---|---|
| 원하는 경우 적절한 수준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170 (44.2%) | 224 (67.3%) | 140 (55.6%) | 534 (55.1%) |
| 특별한 날 또는 정해진 시간에만 이용할 수 있다. | 193 (50.1%) | 107 (32.1%) | 108 (42.9%) | 408 (42.1%) |
| 이용할 수 없다. | 22 (5.7%) | 1 (.6%) | 4 (1.6%) | 28 (2.9%) |
| 전 체 | 385 (100.0%) | 333 (100.0%) | 252 (100.0%) | 970 (100.0%) |

$\chi^2$=49.390 p<.01

(6)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학년에 따른 건의사항 표현 여부의 차이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학년에 따른 건의사항 표현 여부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20.078, p<.01). 모든 학년이 선생님이나 원장님께 말씀 드리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초등학생(68.8%), 중등학생(59.2%), 고등학생(56.0%) 순으로 선생님이나 원장님께 말씀 드리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80>.

<표 4-80>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학년에 따른 건의사항 표현 여부의 차이

| 구 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전체 |
|---|---|---|---|---|
| 선생님이나 원장님께 말씀 드린다. | 265 (68.8%) | 197 (59.2%) | 141 (56.0%) | 603 (62.2%) |
| 홈페이지나 건의함에 의견을 쓸 수 있다. | 44 (11.4%) | 41 (12.3%) | 51 (20.2%) | 136 (14.0%) |
| 건의사항을 말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서 말하지 않는다. | 76 (19.7%) | 95 (28.5%) | 60 (23.8%) | 231 (23.8%) |
| 전 체 | 385 (100.0%) | 333 (100.0%) | 252 (100.0%) | 970 (100.0%) |

$\chi^2$=20.078, p<.01

(7)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학년에 따른 종교 선택 여부의 차이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학년에 따른 종교 선택 여부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26.710, p<.01). 모든 학년이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행하는 종교행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고등학생(60.7%), 중등학생(52.6%), 초등학생(40.8%) 순으로 나타났다<표 4-81>.

<표 4-81>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학년에 따른 종교 선택 여부의 차이

| 구 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전체 |
|---|---|---|---|---|
| 자유롭게 종교 활동을 선택할 수 있다. | 150 (39.0%) | 112 (33.6%) | 66 (26.2%) | 328 (33.8%) |
| 강요를 하지는 않지만,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종교활동을 하지 않으면 신경이 쓰이거나 불이익이 있다. | 78 (20.3%) | 46 (13.8%) | 33 (13.1%) | 157 (16.2%) |
|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행하는 종교행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 157 (40.8%) | 175 (52.6%) | 153 (60.7%) | 485 (50.0%) |
| 전 체 | 385 (100.0%) | 333 (100.0%) | 252 (100.0%) | 970 (100.0%) |

$\chi^2$=26.710, p<.01

(8)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학년에 따른 아동인권에 대한 의식의 차이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학년에 따른 아동인권에 대한 의식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32.032, p<.01). 고등학생(57.1%)이나 중학생(48.0%)은 아동인권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초등학생(44.2%)은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82>.

<표 4-82>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학년에 따른 아동인권 의식의 차이

| 구 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전체 |
|---|---|---|---|---|
| 잘 알고 있다. | 152 (39.5%) | 160 (48.0%) | 144 (57.1%) | 456 (47.0%) |
| 들어본 적은 없지만 잘 알지 못한다. | 170 (44.2%) | 148 (44.4%) | 92 (36.5%) | 410 (42.3%) |
| 전혀 알지 못한다. | 63 (16.4%) | 25 (7.5%) | 16 (6.3%) | 104 (10.7%) |
| 전 체 | 385 (100.0%) | 333 (100.0%) | 252 (100.0%) | 970 (100.0%) |

$\chi^2$=32.032 p<.01

3)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지역에 따른 아동인권 실태

(1)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지역에 따른 의복 선택 여부의 차이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지역에 따른 자유로운 의복 선택 여부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33.405, p<.01). 지역 모두 「내 취향에 맞는 옷을 고르거나 마음대로 입을 수 있다」는 경우로 나타났으나, 중소도시(75.2%)가 대도시[12](61.2%)보다 아동 취향에 맞는 옷을 고르거나 입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83>.

<표 4-83>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지역에 따른 의복 선택 여부의 차이

| 구 분 | 대도시 | 중소도시 | 전체 |
|---|---|---|---|
| 내 취향에 맞는 옷을 고르거나 마음대로 입을 수 있다. | 331 (61.2%) | 346 (75.2%) | 677 (67.6%) |
| 내 취향에 맞는 옷을 고르거나 입을 수 있지만, 선생님과 의견이 다른 경우 선생님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 146 (27.0%) | 99 (21.5%) | 245 (24.5%) |
| 내가 원하는 옷을 전혀 고르거나 입을 수 없다 | 64 (11.8%) | 15 (3.3%) | 79 (7.9%) |
| 전 체 | 541 (100.%) | 460 (100.0%) | 1001 (100.0%) |

$\chi^2$=33.405, p<.01

12) 여기서 의미하는 대도시는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를 의미하며, 중소도시는 그 외 기타 지역을 의미한다.

(2)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지역에 따른 자유로운 개인용품 사용 여부의 차이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지역에 따른 자유로운 개인용품 사용 여부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17.719, p<.01). 즉, 지역 모두 「필요시 자유롭게 구입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는 경우로 나타났으나, 대도시(32.0%)가 중소도시(20.7%)보다 필요시 자유롭게 구입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84>.

<표 4-84>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지역에 따른 자유로운 개인 용품 사용 여부의 차이

| 구 분 | 대도시 | 중소도시 | 전체 |
|---|---|---|---|
| 필요시 자유롭게 구입하거나 사용 | 173 (32.0%) | 95 (20.7%) | 268 (26.8%) |
| 선생님께서 필요한 것을 사다(가져다) 주심 | 296 (54.7%) | 306 (66.5%) | 602 (60.1%) |
| 내가 알아서 구입 | 72 (13.3%) | 59 (12.8%) | 131 (13.1%) |
| 전 체 | 541 (100.%) | 460 (100.0%) | 1001 (100.0%) |

$\chi^2$=17.719, p<.01

(3)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지역에 따른 편지나 소포 검사 여부의 차이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지역에 따른 편지나 소포 검사 여부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10.820, p<.01). 지역 모두 「사생활 보호를 위해 검사하지 않는다」는 경우로 나타났으나, 중소도시(60.7%)가 대도시(51.4%)보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검사를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85>.

<표 4-85>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지역에 따른 편지나 소포 검사 여부의 차이

| 구 분 | 대도시 | 중소도시 | 전체 |
|---|---|---|---|
| 우리의 의견을 묻지 않고 선생님이 마음대로 검사하신다. | 101 (18.7%) | 57 (12.4%) | 158 (15.8%) |
| 우리의 의견을 묻고 선생님이 검사를 한다. | 162 (29.9%) | 124 (27.0%) | 286 (28.6%) |
| 사생활 보호를 위해 검사하지 않는다. | 278 (51.4%) | 279 (60.7%) | 557 (55.6%) |
| 전 체 | 541 (100.0%) | 460 (100.0%) | 1001 (100.0%) |

$\chi^2$=10.820, p<.01

(4)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지역에 따른 방 공개 여부의 차이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지역에 따른 방 공개 여부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21.889, p<.01). 두 지역 모두 「아동의 의견을 물어보기는 하지만, 결정은 선생님(또는 원장님)이 하신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먼저 내 의견을 물어보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의 항목에서 대도시의 경우 33.5%가 응답한 반면, 중소도시(20.4%)만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86>.

<표 4-86>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지역에 따른 방 공개 여부의 차이

| 구 분 | 대도시 | 중소도시 | 전체 |
|---|---|---|---|
| 먼저 내 의견을 물어보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 | 181 (33.5%) | 94 (20.4%) | 275 (27.5%) |
| 내게 의견을 물어보기는 하지만, 결정은 선생님(또는 원장님)이 하신다. | 209 (38.6%) | 201 (43.7%) | 410 (41.0) |
| 내 의견을 묻지도 않고 마음대로 보여주신다. | 151 (27.9%) | 165 (35.9%) | 316 (31.6%) |
| 전 체 | 541 (100.0%) | 460 (100.0%) | 1001 (100.0%) |

$\chi^2$=21.889, p<.01

(5)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지역에 따른 TV시청 및 인터넷 사용 여부의 차이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지역에 따른 TV시청 및 인터넷 사용 여부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16.183, p<.01). 지역 모두 「원하는 경우 적절한 수준에서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경우로 나타났다. 그러나 「특별한 날 또는 정해진 시간에만 이용할 수 있다」는 대도시(48.2%)가 중소도시(35.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87>.

<표 4-87>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지역에 따른 TV시청 및 인터넷 사용 여부의 차이

| 구 분 | 대도시 | 중소도시 | 전체 |
|---|---|---|---|
| 원하는 경우 적절한 수준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266 (49.2%) | 280 (60.9%) | 546 (54.5%) |
| 특별한 날 또는 정해진 시간에만 이용할 수 있다. | 261 (48.2%) | 164 (35.7%) | 425 (42.5%) |
| 이용할 수 없다. | 14 (2.6%) | 16 (3.5%) | 30 (3.0%) |
| 전 체 | 541 (100.0%) | 460 (100.0%) | 1001 (100.0%) |

$\chi^2$=16.183, p<.01

(6)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지역에 따른 건의사항 표현 여부의 차이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지역에 따른 건의사항 표현 여부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14.340, p<.01). 지역 모두 「선생님이나 원장님께 직접 말씀 드린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중소도시(29.1%)가 대도시(19.2%)보다 건의사항을 말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말하지 않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표 4-88>.

<표 4-88>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지역에 따른 건의사항 표현 여부의 차이

| 구 분 | 대도시 | 중소도시 | 전체 |
|---|---|---|---|
| 선생님이나 원장님께 직접 말씀드린다. | 353 (65.2%) | 272 (59.1%) | 625 (62.4%) |
| 홈페이지나 건의함에 의견을 쓸 수 있다. | 84 (15.5%) | 54 (11.7%) | 138 (13.8%) |
| 건의사항을 말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말하지 않는다. | 104 (19.2%) | 134 (29.1%) | 238 (23.8%) |
| 전 체 | 541 (100.0%) | 460 (100.0%) | 1001 (100.0%) |

$\chi^2$=14.340, p<.01

(7)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지역에 따른 자신의 일 결정 시 참여 여부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지역에 따른 자신의 일 결정 시 참여 여부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10.680 p<.01). 지역 모두 「참석해서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이러한 의견을 결정에 반영 한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대도시(74.1%)가 중소도시(65.4%)보다 의견 결정에 반영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89>.

<표 4-89>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지역에 따른 자신의 일 결정 시 참여 여부의 차이

| 구 분 | 대도시 | 중소도시 | 전체 |
|---|---|---|---|
| 참석해서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이러한 의견을 결정에 반영된다. | 401 (74.1%) | 301 (65.4%) | 702 (70.1%) |
| 참석을 할 수 있지만, 의견을 말하거나 반영되지 않는다. | 99 (18.3%) | 123 (26.7%) | 222 (22.2%) |
| 참석할 수 없다. | 41 (7.6%) | 36 (7.8%) | 77 (7.7%) |
| 전 체 | 541 (100.0%) | 460 (100.0%) | 1001 (100.0%) |

$\chi^2$=10.680 p<.01

(8)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지역에 따른 아동인권 의식의 차이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지역에 따른 아동인권 의식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38.470, p<.01). 대도시의 경우 잘 알고 있다(55.5%)가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중소도시의 경우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알지 못한다(48.9%)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도시의 아동이 중소도시에 살고 있는 아동보다 아동인권 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90>.

<표 4-90> 지역에 따른 아동인권 의식의 차이

| 구 분 | 대도시 | 중소도시 | 전체 |
|---|---|---|---|
| 잘 알고 있다. | 300 (55.5%) | 169 (36.7%) | 469 (46.9%) |
|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알지 못한다. | 202 (37.3%) | 225 (48.9%) | 427 (42.7%) |
| 전혀 알지 못한다. | 39 (7.2%) | 66 (14.3%) | 105 (10.5%) |
| 전 체 | 541 (100.0%) | 460 (100.0%) | 1001 (100.0%) |

$\chi^2$=38.470, p<.01

대도시의 경우 자유로운 개인용품 구매, 발달권, 참여권, 아동인권 의식과 관련된 항목에서는 중소도시 보다 보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었다. 반면에 보호권과 여가생활과 관련된 항목에서는 대도시의 아동보다 중소도시의 아동이 보장받고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었다.

4) 아동복지시설아동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아동복지시설아동의 성별, 학년, 지역에 따른 자아존중감을 살펴본 결과 <표 4-91>와 같다.

첫째,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435, p<.05). 즉, 여아보다 남아가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년에 따른 자아존중감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량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5.026, P<.01). 집단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Scheffe을 실시한 결과 고등학생과 중학생의 자아존중감 차이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났다. 그러나,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자아존중감 차이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고등학생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역에 따른 자아존중감을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에 살고 있는 아동의 경우, 중소도시에 살고 있는 아동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제도로 인해 대도시와 중소도시간의 정부보조금 지원 격차, 시설 접근성 한계 등으로 상대적으로 다양한 문화생활 이나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다는 것을 심층면접을 통해서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가 지역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유발한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 결과 자아존중감이 낮은 경우 상대적으로 학업 성적이나 학교적응, 우울증 등 아동의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도소시에 대한 정부지원금 확대 및 중소도시의 시설 아동의 경우 자아존중감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91>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 변수 | 구분 | N | M | SD | t/F | p | 비고 (Scheffe) |
|---|---|---|---|---|---|---|---|
| 성별 | 남자 | 528 | 2.37 | .438 | .435 | .012 | - |
| | 여자 | 473 | 2.35 | .440 | | | |
| 학년 | 초등학생(A) | 385 | 2.35 | .491 | 5.026 | .007 | C>A,B |
| | 중학생(B) | 333 | 2.32 | .422 | | | |
| | 고등학생(C) | 252 | 2.43 | .363 | | | |
| 지역 | 대도시 | 541 | 2.45 | .423 | 7.253 | .000 | - |
| | 중소도시 | 460 | 2.25 | .430 | | | |

* p<.05, p<.01, p<.001

5)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기타 인권관련 경험

아동복지시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에 항목으로 포함되어 조사되지는 않았으나, 아동 및 시설종사자의 심층면접을 통해 학교체계와 관련하여 아동의 인권이 어떻게 경험되어지고 있는지 또한 아동이 인지하는 '시설에서의 삶의 평가는 어떠한가?' 등의 의미 있는 결과들을 추가로 제시하고자 한다.

(1)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학교관련 인권경험

먼저 아동이 학교에서 겪는 곤란한 경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설아동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외부활동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부모님이 신청서를 작성하는 부분이나 수업료, 급식비 등의 지원으로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친구들의 시선 등을 신경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교사가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할 때, 아이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다.

**'야영이나 그런 거 신청서나 돈 받을 때 그럴 때도 있고..'**

또한 학부모가 학교행사나 상담에 참석하여야 하는 경우, 대부분의 시설이 학부모

대신 시설종사자가 참석하고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대신 시설종사자가 참석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표현하는 아동은 없었으나, 교사가 아동에게 학부모의 참석을 요청하였을 때, 아동은 누구를 불러야하는가에 대하여 스스로 고민하는 과정을 거치며, 다소 혼란스러워 하는 아동 또한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리적으로 학부모가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아동의 보호자가 존재하는 경우, 의례히 시설종사자가 학교를 방문하는 것이 아닌, 아동의 의사를 반영하고, 보호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의사소통의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그냥 조금 곤란했던 거는 어. 뭐. 학교에서 가족신문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럼 이 많은 가족들을 다 써야 하나 뭐 그렇기도 하고, 학부모 총회 같은 게 있으면 누구를 불러야 하나 그런 거.'**

시설아동은 학교친구들과의 대화에서 가정 또는 가족, 특히 부모님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곤란함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에서의 생활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아동이라 할지라도, 또래와의 의사소통에 활발히 참여하지 못하고 제한을 가지는 경험은 아동의 심리·정서적인 위축을 가져오는 등의 문제를 유발의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아동이 대처하는 방법과 아동의 정서를 안정시킬 수 있는 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서 이러한 곤란함이나 위험성을 예방 또는 상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친구들은 일반 가정에 살잖아요. 걔네는 하루 있었던 일을 막 말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 살아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면 말이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좀 얘기를 하다보면 어쩌다 부모님 얘기가 나와요. 저는 아빠만 있고 엄마는 없단 말이예요. 여자애들이니까 엄마이야기를 맨날 해요. 시도 때도 없이 엄마 얘기를 해요. (저는)말하기가 그래요 그냥 말이 막혀요.'**

학교친구들과의 또래관계에서 곤란한 경험은 시설을 방문하는 것과도 연관된다. 친구의 집에 놀러 가고, 친구를 집에 초대하는 것은 또래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있어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설의 아동은 친구가 집을 방문하고 싶다고 하는 것을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단체생활을 하

는 시설에서 개인적으로 친구를 데려와 놀이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진다. 아동 스스로가 데려오기 싫은 마음이 있는 경우와 방을 함께 쓰는 동료 또는 선배의 눈치가 보여 데려오지 못하는 경우로 크게 나누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곤란한 경우는 친구가 우리 집에 같이 가자고, 너희 집 놀러가자고 할 때가 가장 곤란해요. 오면은요, 곤란해요. 여기서요, 놀 수가 없어요.**

**'친구가 "○○아 너희 집 가고 싶다"고 할 때 어떻게 그래요. "안돼 너 오면 아작 날 꺼야! 넌 못 와! 우리이모가 애들 오는 거 안 좋아해 우리 이모는 애들 안 좋아해서 내가 엄청 혼날꺼야! 그러니까 오지마!" 진짜는 아니고 혼나는 건 아닌데, 언니들이 별루 안 좋아해요. 같이 지내잖아요. 근데 친구 데리고 와 봐요. 같은 학교도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안돼요. 그래서 언니들을 이모로 돌렸어요. 언니라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걸 언니로 돌린 다음에 "이모가 싫어해 안돼!" 그래요. '**

한편, 시설장, 원장 등의 중간관리자의 결정에 따라 친구가 놀러 올 수 있고, 없고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 이전에는 친구의 시설방문이 가능하였으나 중간관리자가 바뀌면서 규칙과 분위기가 함께 변화하는 것으로 아동의 또래관계의 형성과 유지를 막는 부정적인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초등학교 친구들은 여기 사는 거 아니깐 여기서 저번에 한 번 논적 있었어요. ○○○님인가? 여기 그만 두신 분 있거든요? ○○○님 있을 때 온 적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불가능해요.'**

한편, 시설아동들은 학교선생님들과의 관계에서 긍정적/부정적인 경험을 모두 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시설아동이 인지하는 학교선생님들의 태도는 긍정과 부정으로 확실하게 나뉘었다. 긍정적인 경험을 이야기한 아동의 경우에는 자신이 시설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학교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오히려 더 잘 해 줘요.'**

**'오히려 시설에 사니까 혜택이 더 많은 거 같아요. 예를 들면, 급식비라든지 학교에 돈을 낸다던지 수련회라던지 돈이 많이 들잖아요. 활동을 해서 어디 가야 되는데 그런**

거..(그러한 돈을 지원받는 혜택을 의미함)'

'친구들한테 말하면 평소에 대하는 것처럼 잘 대해 줘요. 선생님들도 잘 대해 줘요. 별로 그런 거 없어요.'

아동의 경험과 마찬가지로 시설종사자 역시 학교선생님이 아동에게 더욱 관심을 주려고 노력한다는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학교와 시설과의 관계가 좋은 경우, 시설이 위치하는 지리적인 위치 또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도시에 위치한 시설의 경우 학교에 해당시설아동이 많이 재학함으로써 다른 아동과의 마찰이 축소될 수 있고, 시설아동에 대한 배려와 관심 또한 늘어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설에서 생활하는)아이라고 하면 뭐 먹으라고 더 주시던가, 일부러 심부름을 시켜서 인정을 받겠금하던가,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을 주신다던거나 그렇게 상담을 할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정말 저희가 학교랑 관계가 굉장히 좋아요. 교장선생님이 전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왜냐하면 학생이 많지 않아서 우리 아이들이 없으면 학교가 문을 닫으니까...(중략) 교장선생님이 많이 배려해주시고 그러거든요. 학교는 방과 후 활동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잘 해줬어요.'

일부 시설아동의 경우, 교사의 편견과 차별적이고 자신을 문제아로 생각하는 불편한 시선 등을 부정적인 경험으로 기억하였다. 이는 개별적인 교사의 태도와 성향에 많이 기인하지만, 양육시설에 비해 보호치료시설아동이 교사로부터의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표현하였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말하는 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선생님들이 막, 뭐라 할까? 시설에 사는 얘들을 싫어하는 거 같다고 자기들이 그렇게 느낀다고 말해요. 그 학교 선생님들한테 자기들이 차별을 받는 거 같다고 느끼는 거 같아요.'

'학교 선생님이나 잘 알던 어른들..(로부터 불편한 시선을 받아요.) 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졸업식에 갔었거든요. 출석이 인정 되가지고, 중학교를 졸업해 가지고 졸업식에 갔는데요. 뭔가, 좀 안 좋게 보는 시선 있잖아요? 쟤는 양아치다. 문제아다. 이런 식으로 보는... 말로는 표현안하던데, 그냥 안녕하세요? 그러면 무시하시는... 평소에 잘 아는 선생님들 인사하면 약간 피하는 듯한...'

구체적인 경험들을 이야기한 아동도 있는데, 교사가 같은 반 친구들이 모두 나누어 가지고 비상시에 연락하는 비상연락망에 아동이 시설의 주소를 자세히 적는 대신, 간단하게 시설명만을 적어 넣어 아동이 시설에서 생활한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오픈하게 되는 경험으로 교사와 충돌한 경험이었다. 이렇듯 아동은 교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도 상처를 받는 만큼 시설종사자와 학교선생님 사이의 긴밀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시설종사자는 학기 초 방문 등을 통하여 시설아동이 가지는 어려운 점들 또는 아동의 특성 등에 대하여 교사와 의논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가 주소가 두 개가 있어요 ○○○(시설명)으로 써도 되고 ○○시 ○○동 ○○통/반(주소명)으로 써도 되는데 정말 착한 선생님들은 자세하게 써줘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떤 언니는 담임선생님과 대판 싸우고 왔어요.'

시설종사자 또한 학교행사에 참석하거나 학교선생님과의 관계에서 불편함을 경험하고 있었다. 한 명의 시설종사자가 다수의 아동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방문에서 겪는 어려움과 시설에 대한 교사의 달갑지 않은 시선, 아동의 생활을 지도하면서 학교방문의 역할도 병행하여야 함에서 오는 부담감 등이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한 반에 저희 아이가 3명이 있으면 (학교에)가면 어렸을 때는 엄마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도 엄마라고 하고 저 아이도 엄마라고 하면 저는 괜찮지만 아이들은... (같은 반의 다른 친구들이 ) "어?(의아하다는 반응)" 이런 반응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 반에 한 명이 있으면 별로 티가 안 나겠는데 2~3명 있으면 그게 좀 곤란하더라고요.'

'아이 전학문제나 아이가 학교에서 절도를 해서 이렇게 담당 선생님이 학교를 가면 어려보이기도 하고, 학생이랑 나이차이도 안 나 보이기도 하고, 시설에서 왔다고 하니 시선이 달갑지는 않구요. 그리고, 선생님 대 선생님 1대 1로 하면 상관없는데, 학생도 옆에 있는 상태에서, 그런 말 하고 그러면 제가 학생한테 미안하기도 하고요. 학생 스스로도 잘못한 거 알고 있는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학부모 총회가시면 거의 어머니들이시래요. 그래서 남자선생님들 다녀오시면 되게 힘들기도 하고, 어머니들 입이 무섭잖아요. 입씨름 그런 것도 좀 있어서 조금은 곤란했다. 곤란하기도 하고 난처한 부분도 있었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지만, 꾸준히 할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학교만 책임을 지는 선생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2) 시설에서의 삶의 경험과 미래의 삶

"시설에서 생활한 경험이 향후 자신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아동은 긍정적인 영향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의 경험이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이고, 단체생활을 미리 경험하였기 때문에 사회생활 역시 무리 없이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였다.

*가. 긍정적인 영향*

시설에서 생활한 경험이 향후 자신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냐는 질문에 아동은 긍정적인 영향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의 경험이 미래에 도우이 될 것이고, 단체생활을 미리 경험하였기 때문에 사회생활 역시 무리 없이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였다.

'여기서도 자립 프로그램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좋은 거 같아요.'

'여기에서는 밖에서 보다 가정에서 쉽게 접하는 못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니까..., 여기는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일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회에 나간다고 하면, 전체 공동생활에 발을 내딛는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생활화 되어 있고, 이런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되고, 잘해야 된다던지 그런 행동이나 이런거를 많이 배웠고 느낄 수 있었던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단체 생활이니깐요. 그 만큼 이게 응집이 가해지니깐 결단력이 좋으니깐 회사같은 경우에 만약에 들어갔다면 적응력을 빠를 거 같아요. 그리고 적응력이 좀 좋아서요, 사람들이랑 금방 친해 질 수도 있고, 뭐.. 서로 좋은..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을 거라는 느낌이 들구요, 거기도(회사) 단체생활이니까요..'

*나. 부정적인 영향*

시설에서의 생활이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하여 아동은 근시안적으로 퇴소 후 자립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인간관계, 취업, 결혼 등 다양한 우려와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시설은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여 주는 것은 물론 자신을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퇴소 후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하고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것과 사회생활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였다. 이는 아동에게 퇴소 전 적절한 기간에 걸쳐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탄탄한 자립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제시하여 주는 것이다.

'여기서 먼 훗날 여기서 살다가 딱 나가서 살면 자기 힘으로 벌어야 되잖아요. 여기서는 뭐든 다해줬는데 여기서 밥 먹을 때도 다 해서 주고 "뭐 없어요!" 그러면 다 챙겨주고 그러는데 사회에서는 다시 적응을 해야 하잖아요. 사회에 서는 돈 관리도 따로 또 해야 하는 거고.'

'우리가 자립을 하잖아요. 혼자잖아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면 자기 혼자 해결하고 그러면 보호를 못 받는다고... 애들이 집에 있을 때가 좋다고... 나가고 나면 안다고.. 우리는 집나가면 개고생이라고... 사회나가면 대인관계가 더 많이 힘들다고...'

시설에서의 생활경험이 향후 대인관계를 가질 때, 상대방이 자신에게 편견을 가지

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만약에 친구를 사귀려고 했는데 알던 애가 아니라 처음 사귀는데 내가 어렸을 때 이랬다 하면 “어 애 어렸을 때 이런 사고 많이 쳤네.” 약간 안 좋게 보고 애 “또 그러는 거 아니야?” 하고 의심하고...’**

또한, 아동은 취업을 할 때,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을 걱정하였다. 특히 보호치료시설 아동의 경우, 정규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검정고시를 본 것을 취약점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시설에서의 생활경험은 공무원 등의 직업선택을 할 수 없어 직업군 선택의 제약을 가진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언급하였다.

**‘아직 회사에서도 막 애들 나가면 부모님 이름 적는 게 있데요. 그런 거 걸린데요.’**

**‘나중에 “어! 고등학교 않나오셨네요 검정고시 보셨네요? 왜 보셨어요?” 이러면 어떻게 해서 봤습니다. 말로 할 수 없잖아요. “사실대로 말하자면 ○○시설에서 살면서 검정고시 봤습니다.” 이런 방법 밖에 없잖아요.’**

**‘본적은 없는데 들은 적은 있어요. 여기에 와서는 경찰이나 국가 공무원 같은 거 못한다고 들었어요.’**

아동이 걱정하는 부분으로 결혼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우리사회가 많이 변화하였으나, 아직도 시설아동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은 변화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러 대중매체를 통해 시설에서 자란 아동은 자라서도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시설에서 자란 아동의 경우, 결혼을 할 때 극심한 반대와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며, 시설아동은 심리적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과정을 거치는 등의 내용이 고정화되어 드라마 등에 계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시설아동에게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와 구성원들에게도 알게 모르게 시설아동을 부정적으로 관념화시킬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 이에 대한 민감한 리뷰가 필요하다.

'결혼 할 때.. (반대하실까봐..)'

'만약 좋은 집안이란 결혼을 하게 되면 그런 거 막 따지면 그냥 드라마 때문인가 고정관념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아무래도 결혼 할 때는 양가집 부모님들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그런 부분이 곤란할 것 같아요.) 요즘에 선배들 애기 들어보면요. 숨기는 사람들 있지만요...'

'근데.. 나중에 뭐.. 결혼을 할 때나 그런 때는 양가부모님 만날 때는 조금 곤란하겠죠.'

'사회에 나가니까 혼자니까 가족이 없으니까 나중에 부모님 양가에 만나야 되는데 그런 부모들이 자기를 무시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 5. 아동복지시설 물리적 환경

아동복지시설의 관련문헌 및 물리적 환경에 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구성된 아동복지시설의 물리적 환경 체크리스트는 크게 '기존 시설 구조 및 설비', '생활 장비 및 물품', '시설 안전 및 위생 관리', '기타'의 네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응답 항목 기준은 '그렇다', '아니다', '없다'[13]라고 분리하여 체크하였다.

### 1) 아동복지시설 기존 구조 및 설비

아동복지시설 기존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4-92>와 같다. 아동복지시설의 기존 구조 및 설비들은 대체로 청결하고 위생적이며 잘 갖춰져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음식의 유효기간을 잘 지키는 등 음식보존 상태가 양호하며, 식단메뉴 중 인스턴트식품의 비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인권실태조사에서 제공되는 음식의 양과 질에 만족하고 있다는 시설아동들의 응답 및 양질의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시설 종사자들의 설문결과의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특이 체질 아동의 식단 메뉴 관리(60.9%)

13) 응답기준에서 '그렇다'는 기존 시설 구조 및 설비, 생활 장비 및 물품, 안전 및 위생관리, 기타 항목에서 관리가 잘 되어 있거나 구비되어 있으며, 제 기능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아니다'는 그렇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없다'는 구비되어 있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가 대부분의 시설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체질아동을 위한 메뉴관리는 아토피나 알레르기질환을 가진 아동의 경우, 아동을 케어하는 시설종사자가 음식을 가려서 먹이거나 간식의 경우, 다른 간식으로 상황에 맞춰 바꿔주는 것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수의 특이체질 아동이라고 할지라도 영양학적 부분이 고려된 전문가에 의한 개별적으로 식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식단 메뉴 관리가 필요하다.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상담실이 갖춰 있으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0.9%). 물리적 환경 조사 당시 상담실 문이 잠겨 있거나, 자원봉사 대기 장소나 입소 신청 시 상담 용도로만 제한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아동양육시설 아동의 경우가 44.8%, 보호치료시설 아동의 경우 43.2%가 고민이 있어도 상담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결과와 연관 지어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아동이 고민이 있을 때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대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시설 내 양호실이 없는 경우가 34.8%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설문조사 결과 아픈 경우에 병원을 이용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지만, 위급 사항 발생 시 1차적인 응급처지가 적절히 이루어 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회의실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기관은 약 26%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과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회의실의 운영에 대한 직접적인 설문문항은 없었지만 아동들이 자신에 대한 일을 결정할 때 그 자리에 참석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다는 의견이 아동양육시설 72.8%, 아동보호치료시설 54.7%로 나타났으며, 심층면접에서도 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물리적 환경체크리스트의 결과를 통해 나타난 낮은 회의실의 설치비율은 시설 내의 회의들이 회의실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이 생활하는 생활실 또는 식당 등의 별도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이밖에 아동의 휴식 공간 또한 없는 경우가 39.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동의 심층면접을 통해 거주환경과 관련하여 시설아동들은 개별적인 공간을 확보하고자하는 욕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의 하나로 휴식공간을 꼽을 수 있다. 물리적인 공간의 제한으로 인하여 생활실 내의 아동의 개인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라면 이에 비해, 아동들이 필요시에 자유롭고,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식공간의 확보는 비교적

현실성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휴식공간이 확보되어 활용되어지고 있는 시설의 비율은 약 30%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휴식공간의 필요성은 앞서 시설종사자의 심층면접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되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92> 아동복지시설 기존 구조 및 설비

| 구분 | 그렇다 | | 아니다 | | 없다 | |
|---|---|---|---|---|---|---|
| | 빈도 (N) | 퍼센트 (%) | 빈도 (N) | 퍼센트 (%) | 빈도 (N) | 퍼센트 (%) |
| 시설 전반 청결 | 16 | 69.6 | 7 | 30.4 | 0 | .0 |
| 침실 남녀 구분 및 위생상태 | 19 | 82.6 | 4 | 17.4 | 0 | .0 |
| 식단 메뉴의 인스턴트 비율이 높음 | 4 | 17.4 | 19 | 82.6 | 0 | .0 |
| 특이 체질 아동의 메뉴 관리 | 1 | 4.3 | 8 | 34.8 | 14 | 60.9 |
| 음식물의 유효기간 | 22 | 95.7 | 1 | 4.3 | 0 | .0 |
| 정수기, 냉장고 등 구비 | 16 | 69.6 | 7 | 30.4 | 0 | .0 |
| 식당 집기 청결 및 정기적인 소득 | 15 | 85.2 | 8 | 34.8 | 0 | .0 |
| 화장실 남녀 구분 및 위생상태 | 20 | 87.0 | 3 | 13.0 | 0 | .0 |
| 편리한 목욕시설 구비 및 24시간 온수 사용가능 여부 | 16 | 69.6 | 7 | 30.4 | 0 | .0 |
| 상담실 운영 및 활용정도 | 7 | 30.4 | 14 | 60.9 | 2 | 8.7 |
| 양호실 운영 및 활용정도 | 10 | 43.5 | 5 | 21.7 | 8 | 34.8 |
| 도서실 운영 및 활용정도 | 17 | 73.9 | 5 | 21.7 | 1 | 4.3 |
| 회의실 운영 및 활용정도 | 6 | 26.1 | 5 | 21.7 | 12 | 52.2 |
| 휴식공간 운영 및 활용정도 | 7 | 30.4 | 7 | 30.4 | 9 | 39.1 |
| 놀이터 및 놀이기구 안전 | 12 | 52.2 | 8 | 34.8 | 3 | 13.0 |
| 운동 및 야외활동이 가능한 실외 공간의 확보 | 16 | 69.6 | 4 | 17.4 | 3 | 13.0 |

2) 생활 장비 및 물품

생활 장비 및 물품에 대해서 살펴보면, <표 4-93>과 같다. 침구와 관련된 항목으로는 아동들이 침구를 개인별로 사용하고 있으며, 청결한 상태(78.3%, 91.3%)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사물함 구비(87.0%) 및 목욕용품 구비(78.3)도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인용 책상 구비(52.2%) 및 컴퓨터나 학용용품 등 공동용품 구비(56.5%)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조사원이 물리적 환경을 알아보기 위하여 시설을 방문하였을 때, 생활실 내에 아동의 개인용 책상이 구비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며, 한 생활실에 1-2대의 컴퓨터를 구비하고 있는 시설이 대부분이었다. 이 중 한 대는 시설종사자용 컴퓨터였으며, 아동들은 대부분 공동으로 이용하는 컴퓨터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아동의 건의 사항 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 몇 시간을 기다리거나, 숙제 용도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4-93> 아동복지시설 생활 장비 및 물품

| 구분 | 그렇다 | | 아니다 | | 없다 | |
|---|---|---|---|---|---|---|
| | 빈도 (N) | 퍼센트 (%) | 빈도 (N) | 퍼센트 (%) | 빈도 (N) | 퍼센트 (%) |
| 개인별 침구사용 여부 | 18 | 78.3 | 5 | 21.7 | 0 | .0 |
| 침구류 위생상태 | 21 | 91.3 | 2 | 8.7 | 0 | .0 |
| 개인용 책상 구비와 관리상태 | 8 | 34.8 | 12 | 52.2 | 3 | 13.0 |
| 개인사물함 구비 | 20 | 87.0 | 3 | 13.0 | 0 | .0 |
| 공동용품 구비 | 10 | 43.5 | 13 | 56.5 | 0 | .0 |
| 목욕용품 구비 | 18 | 78.3 | 5 | 21.7 | 0 | .0 |

3) 시설 안전 및 위생 관리

시설 안전 및 위생 관리에 대해 살펴보면, <표 4-94>와 같다. 위생교육(85.2%), 정기적인 소독(87.0%)과 같이 시설환경과 관련하여 많이 강조되어지는 위생관련 부분의 정비는 대부분의 시설에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상시 외부 연락 장치(52.2%)의 마련이나 창문 안전대 설치(56.5%), 안전관리 매뉴얼(83.9%) 및 화재예방기구 및 화재발생을 대비한 대처요령(65.2%)의 경우, 관련시설장비의 배치나 예방교육부분 모두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내 화재예방기구는 기본사항으로 모든 기관이 배치하고 있었으나, 안전관리 매뉴얼이나 화재예방기구 사용 방법,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에 대한 안내문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위급 상황 발생 시 아동이 적절히 대처 할 수 있도록 예방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표 4-94> 아동복지시설 안전 및 위생 관리

| 구분 | 그렇다 | | 아니다 | | 없다 | |
|---|---|---|---|---|---|---|
| | 빈도 (N) | 퍼센트 (%) | 빈도 (N) | 퍼센트 (%) | 빈도 (N) | 퍼센트 (%) |
| 창문 안전대 설치 | 10 | 43.5 | 7 | 30.4 | 6 | 26.1 |
| 안전 매뉴얼 배치 | 6 | 26.1 | 5 | 21.7 | 12 | 52.2 |
| 비상 시 외부 연락장치의 구비여부 | 12 | 52.2 | 4 | 17.4 | 7 | 30.4 |
| 화재예방기구 구비 및 대처요령법 배치 | 8 | 34.8 | 15 | 65.2 | 0 | .0 |
| 위생교육의 제공 및 위생관리매뉴얼 배치 | 15 | 85.2 | 4 | 17.4 | 4 | 17.4 |
| 정기적인 실내외 소득 | 20 | 87.0 | 3 | 13.0 | 0 | .0 |

4) 프로그램 및 진정함

아동복지시설이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들과 국가인권위 진정함

의 활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표 4-95>와 같다. 먼저, 퇴소 준비 프로그램의 경우, 대부분의 시설(85.2%)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아동이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경우 검정고시준비와 같은 학업을 보충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가 56.5%로 높게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 배치 및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살펴보면, 56.5%의 시설이 진정함을 배치하고 있었고, 배치여부가 불투명하거나 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시설이 43.4%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함의 의미와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시설은 52.2%로 절반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설문조사 결과, '아동인권에 대한 의미'를 잘 알지 못하거나 전혀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아동양육시설과 아동보호치료시설에서 각각 51.4%, 62.9%로 나타낸 부분과 '아동인권 관련 정보 또는 교육'을 제공받은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아동양육시설 37.5%, 아동보호치료시설 76.4%로 나타난 결과와 관련하여 설명될 수 있으며, 향후 아동의 인권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석된다.

<표 4-95> 아동복지시설 프로그램 및 진정함

| 구 분 | 그렇다 | | 아니다 | | 없다 | |
|---|---|---|---|---|---|---|
| | 빈도 (N) | 퍼센트 (%) | 빈도 (N) | 퍼센트 (%) | 빈도 (N) | 퍼센트 (%) |
| 학업보충 프로그램(정규교육을 받지않고 있는 아동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 6 | 26.1 | 4 | 17.4 | 13 | 56.5 |
| 퇴소준비 프로그램 | 15 | 85.2 | 6 | 26.1 | 2 | 8.7 |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 배치여부 | 13 | 56.5 | 7 | 30.4 | 3 | 13.0 |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 실시여부 | 12 | 52.2 | 8 | 34.8 | 3 | 13.0 |

이와 같이 아동복지시설의 물리적 환경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아동의 생존권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의식주와 관련한 시설 및 물품의 구비와 위생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어졌다. 다만, 특이체질 아동의 식단관리와 같은 개별화된 아동의 욕구부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안전과 관련 있는 보호권과 연관되어지는 물리적 환경을 살펴보면,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양호실의 운영은 기본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다치거나 아픈 경우 병원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양호실이 배치되어 있는 시설이 43.5%에 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성인에 비해 활동량이 많은 아동의 특성상 상처를 입거나 다치기 쉽다는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 시설은 아동의 개인공간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아동이 몸이 불편할 때,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기능하는 양호실의 설치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 안전매뉴얼의 미배치, 비상 시 외부와의 연락장치 미구비 등은 아동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지는 부분으로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

아동의 발달권과 관련하여 아동이 학습을 하거나 도서를 구비하고 있는 도서실은 73.9%의 비교적 높은 운영비율의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아쉬운 부분은 이와 같이 시설아동들이 단체로 활용할 수 있는 도서관은 적절히 기능하고 있으나, 아동의 개인용 책상(34.8%) 등의 개별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부분이 확충된다면 아동의 발달권을 더욱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정규교육을 받고 있지 않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업보충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시설이 26.1%로 낮은 비율을 나타내었는데,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조사원이 시설을 방문하였을 때, 시설관계자들은 시설 내에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동이 없거나 그 수가 매우 미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응답하였다.

아동복지시설의 물리적 환경 조사결과 중 아동의 참여권과 관련하여 낮은 비율의 상담실(30.4%) 및 회의실(26.1%)의 운영을 살펴볼 수 있으며 이는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인 상담실과 회의실이 활발하게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평소, 생활실이나 식당 등의 공간을 활용하여 가족회의, 자치회의를 진행하던 것을 회의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되면, 회의를 공식적인 시설 내의 활동으로 인지하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활성화 및 정례화에도 일정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 밖에 아동들의 동아리 등의 자체적인 모임활동에도 활용되어 질 수 있다.

# 제 5 장 논의 및 제언

## 제1절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시설아동의 인권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아동양육시설과 아동보호치료시설을 중심으로 아동인권의 실태 및 아동의 인권의식을 조사하였다. 또한 아동인권에 관한 국내외 법과 정책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아동, 특히 시설아동의 아동권리 확보와 증진을 위해 법과 정책적 개선방향을 제시하면서 시설아동에 대한 서비스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논의 및 제언에 앞서, 실태조사결과를 아동양육시설, 아동치료보호시설, 시설종사자, 물리적 환경으로 구분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아동양육시설

양육시설 아동의 생존권의 영역 중 의식주생활과 관련하여 ,「정해진 시간이 지나도 밥을 준비 해 주신다」(52.2%),「내 취향에 맞는 옷을 고르거나 선택할 수 있다」(76.1%),「생활하기에 적절한 온도로 조절할 수 있다」(69.1%) 등의 항목에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며 비교적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개인용품의 경우,「선생님께서 필요한 물건을 구입 또는 가져다 주신다」는 응답이 높은 것과 관련하여 물건이나 의복 등을 직접구입 하지 않고, 종사자를 통해 구입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 아동들은 절차의 불편함을 이야기하였다.

양육시설 아동의 보호권의 영역 중, 아동의 사생활과 관련하여 편지와 소포의 경우, 검사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외부인들에 방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아동의 의견을 묻거나 혹은 묻지 않고 보여주는 비율이 69.4%에 달하여 아동의 사생활침해가 우려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양육시설 아동의 43.0%가 또래폭력을 경험하였고, 37.9%의 아동이 선생님으로부터 체벌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시설 아동의 발달권의 영역 중 아동의 교육권과 관련하여 '정해진 학습시간에 선생님들로부터 학습지도를 적절히 받고 있다.'는 응답이 55.8%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아동의 학습권이 시설에 따라 다소 다르게 보장되고 있

다는 부분이 심층면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외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응답은 23.4%의 낮은 응답률을 보였는데, 심층면접에서도 외출의 자유가 조금 더 확보되기를 원하는 아동의 의견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양육시설 아동의 참여권과 관련하여 의사 결정 시 아동의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은 77.6%로 높았으나, 의사결정기회가 제공될 경우 참여하겠다는 아동은 41.4%에 머물렀다. 또한 정해주는 외부활동에만 참여 할 수 있다는 응답이 41.9%로 비교적 높은 응답률이 나타나 문화활동 및 지역사회로의 제한적 참여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의무적으로 종교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비율이 47.1%로 가장 높았고, 강요하지 않지만 참여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는다는 응답도 8.3%로 나타나 자유로운 종교선택의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양육시설 아동의 인권의식과 관련하여 아동권리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거나 전혀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51.4%로 높게 나타나 아동들의 낮은 인권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아동인권 관련 정보 또는 교육을 제공받은 경험이 있는 아동은 62.5%, 경험이 없는 아동은 37.5%로 나타났다. 한편, 아동양육시설 아동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권리 중 1순위는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놀 권리」(39.5%), 2・3순위는 「친구들과 자유롭게 모임을 갖고 활동할 권리」(20.4%, 17.5%)로 나타났다.

## 2. 아동보호치료시설

보호치료시설 아동의 생존권의 영역 중, 식생활과 관련하여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먹을 수 없다」(75.0%)는 응답과 의생활과 관련한 「내가 원하는 옷을 전혀 고르거나 입을 수 없다」(41.2%) 또는 「선생님과 의견이 다른 경우 선생님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39.9%)의 응답, 그리고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정해진 온도가 있기 때문에 조절할 수 없다」(64.2%)는 항목의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 양육시설에 비하여 아동의 생존권의 보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치료시설 아동의 보호권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먼저, 「우리의 의견을 묻지 않고 선생님이 마음대로 편지와 소포를 검사 하신다」(58.8%)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방 공개 여부 역시 「내 의견을 묻지도 않고 마음대로 보여주신다」(54.1%), 「내 의견을 물어보나, 결정은 선생님 또는 원장님이 하신다」(36.5%)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아동의 사생활이 침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또래 폭력을 경험한 아동은

27.0%, 선생님으로부터의 체벌을 경험한 아동은 23.6%이였으며, 성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8.8%로 나타났다. 특히 성학대를 경험한 아동 중 상담을 받지 않았다는 아동이 92.3%로 나타나 시설에서 성학대 경험이 있는 아동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시설 내 노동 여부에서는 「예」(66.9%)가 「아니오」(33.1%) 보다 높게 나타났다.

보호치료시설 아동의 발달권과 관련하여, 학업지원은 「정해진 학습시간에 선생님으로부터 학습지도를 적절히 받고 있다」(56.8%)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나 「정해진 시간 내에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24.3%), 또는 「학습할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16.2%)는 응답률도 40.5%에 달하였다. TV나 인터넷 사용을 「특별한 날 또는 정해진 시간에만 이용 할 수 있다」(47.3%), 또는 「이용할 수 없다」(4.1%)비율이 높게 나타나 아동의 인터넷 매체로의 낮은 접근성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가족이나 친척 등의 방문과 관련하여 「정해진 날짜만 연락 및 방문이 가능하다」(41.9%)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는데, 「연락 및 방문을 할 수 없다」의 비율도 9.5%로 나타난 것은 주목할 만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보호치료시설에서의 아동의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행하는 종교행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74.3%), 「강요하지는 않지만,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종교 활동에 참여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다」(10.8%) 등의 높은 응답결과는 아동양육시설 뿐만 아니라 아동보호치료시설 역시 자유로운 종교 활동이 보장되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보호치료시설 아동의 인권의식과 관련하여 아동의 권리에 대하여 「들어 본적은 있지만 잘 알지 못 한다」(51.4%), 「전혀 알지 못한다」(11.5%) 등의 응답을 보이며 낮은 인권의식수준을 나타내었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권리 중 1순위는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놀 권리」(56.8%), 2순위는 「내 의견이 존중받을 권리」(20.9%), 3순위는 「친구들과 자유롭게 모임을 갖고 활동할 권리」(15.5%)로 나타났다. 한편, 아동 인권 침해 시 대처 행동 유형은 「그냥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참는다」(54.1%)가 가장 높았고,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선생님께 말씀을 드린다」는 응답은 31.8%에 머물렀다.

아동보호치료의 특성상 아동양육시설과 단순비교를 하기는 어렵지만 아동보호치료시설에서 아동인권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시설아동의 인권상

황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3.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무관련 특성 및 인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동 권리 교육은 「있다」(86.8%)가 「없다」(13.2%) 보다 높게 나타났고, 아동권리협약 인지수준은 「제목과 내용에 대해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다」(61.2%)가 가장 높게 나타나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인지수준이 낮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인권교육의 필요성으로는 「꼭 필요하다」는 응답이 43.0%에 머물렀고, 아동인권과 관련하여 전문가 조력의 필요성 역시 「꼭 필요하다」는 응답이 29.8%에 그치고 있는 결과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권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아동의 생존권에 대한 아동복지 시설종사자의 인권의식 중 의생활과 관련하여 「정해진 시간이 지나도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다」라는 응답이 88.4%로 나타났는데, 같은 질문에 양육시설의 아동은 52.2%, 치료시설의 아동은 21.6%만이 「정해진 시간이 지나도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다」고 응답하여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의류 선택에서는 「아동 취향에 맞는 옷을 고르거나 입을 수 있다」(71.9%)고 응답하였으며, 방 온도 조절 여부는 「아동이 생활하기에 적절한 온도로 조절 할 수 있다」(58.7%)가 「기관에 정해진 온도가 있기 때문에 조절 할 수 없다」(41.3%)의 순으로 나타나 아동들의 응답에 시설종사자들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동 보호권에 대한 아동복지 시설종사자의 권리의식과 관련한 주요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편지와 소포 검사는 「사생활보호를 위해 검사하지 않는다」(62.8%)가 가장 높았으며, 방 공개 여부는 「아동의 의견을 물어보고, 원하지 않으면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62.8%)가 가장 높은 반면, 「아동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마음대로 보여 주신다」(15.7%)는 낮은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이는 같은 질문에 대하여 양육시설의 아동은 41.7%, 치료시설의 아동은 54.1% 가 「나의 의견을 물어보지만, 결정은 선생님 또는 원장님이 하신다」라는 응답을 나타낸 결과와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체벌과 관련하여 「아동에게 체벌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규정이 있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직원을 징계한다」(58.2%)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성추행 및 성폭력 발생 시에는 「상부기관에 바로 알리고, 법・행정적 조치를 취한다」(64.5%)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아동의 발달권과 관련하여 학업지원의 경우, 「정해진 학습시간에 선생님으로부터 학습지도를 적절히 받고 있다」(76.9%)가 가장 높았으며, TV나 인터넷 사용은 「원하는 경우 적절한 수준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78.5%)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동의 외출은 「규칙만 지킨다면 외출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47.9%)가 가장 높았으며, 「미리 허락을 받아야 한다」(36.4%), 「외출의 횟수와 시간은 정해져 있다」(3.3%)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참여권과 관련하여 아동복지 시설종사자의 인권의식을 살펴보면, 의사 결정 시 아동의 참여 여부는 「예」(99.2%)가 「아니오」(.8%) 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났고, 지역사회 교류는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다」(95.0%)가 가장 높았으며, 본인과 관련된 의사 결정의 경우, 「참석해서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이러한 의견은 결정에 반영된다」(76.9%)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한편, 종교 활동은 「강요하지는 않지만,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종교 활동에 참여하도록 권유 함」(61.2%)이 가장 높게 나타나 같은 질문에 양육시설의 아동의 41.7%, 치료시설의 아동의 74.1%가 「현재 살고 있는 종교행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던 결과와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아동권리 의식 및 아동권리상황에 대한 만족도 관련사항과 관련하여 종사자가 느끼기에 아동에게 필요한 권리는 1·3순위가 「내 의견이 존중받을 권리」(28.1%, 19.0%), 2순위가 「필요에 따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21.5%)로 나타났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기관의 인권상황에 대한 만족도는 「조금 만족」(47.9%)로 가장 높았으며, 「매우 만족」(37.2%), 「보통」(9.1%), 「조금 불만족」(5.8%)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 및 의무 의식정도에 관련하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의무 의식을 평균을 살펴보면 「종사자들은 아동들을 절대 체벌해서 안 되며 아동과 일대 일로 문제를 처리하지 않아야 한다」(3.72)가 가장 높았으며, 「아동을 돌보는 시설 종사자는 자주 바뀌지 말아야 한다」(3.71), 「시설 종사자는 시설 내 왕따, 저항, 갈등 등을 잘 다룰 수 있도록 충분히 훈련을 받아야 한다」(3.67), 「시설종사자는 아동의 불만사항을 즉각적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3.66), 「아동은 자유롭게 연락할 수 있는 누군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3.36)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종사자들의 응답은 아동의 응답과 많은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시설 종사자들이 아동인권교육이 있고, 아동권리협약에 대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낮은 의식을 보여주는 것과 같은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종사자들의 낮은 인권의식으로 인해 시설아동들은 아동권리에 대해 거의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밖에 아동의 성별, 학년, 시설의 위치 등 시설아동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아동인권의 실태 및 인권의식의 수준, 그리고 아동의 자아존중감수준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성별에 따라, 의복선택, 자유로운 개인용품 사용, 편지나 소포 검사, 방 공개, 건의사항의 표현, 자신의 일 결정 시 참여, 아동권리 의식 부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가 남아보다 자신의 취향에 맞는 옷을 선택하고, 필요시 자유롭게 개인용품을 구입하며, 방을 공개하거나 편지와 소포 등의 개인물품을 검사하는 등의 사생활부분에 있어 여아가 남아보다 더 보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의사항과 관련하여 남아는 선생님과 원장님께 말씀드리는 등의 직접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반면, 여아는 홈페이지나 건의함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일을 결정할 때 아동의 참여여부를 살펴보면, 여아가 남아에 비해 참석하여 의견을 말하고, 의견을 결정에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학년에 따라, 의류 선택, 자유로운 개인용품 사용, 편지나 소포 검사, 방 공개, TV 시청 및 인터넷 사용, 건의사항 표현, 종교 선택, 아동권리에 대한 의식의 부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이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에 비해 자신의 취향에 맞는 옷을 선택하여 입으며, 개인용품의 경우 고등학생이 중학생과 초등학생에 비해 자유롭게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생활보호와 관련하여 초등학생의 경우, 소포와 편지 등의 검사를 의사에 상관없이 선생님으로부터 받으며, 아동의 의견을 묻지 않고 방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중학생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한편, TV와 인터넷은 중학생이 가장 적절한 수준에서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었다. 건의사항의 경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순으로 선생님이나 원장님께 직접 이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에서의 종교의 선택에 있어 초등학생은 비교적 종교 활동을 선택할 수 있다고 의식하였으나, 반대로 고등학생의 경우, 시설의 종교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여야한다고 의식하고 있었다. 아동의 인권의식과 관련하여, 고등학생과 중학생은 아동인권, 아동권리에 대

하여 비교적 잘 알고 있었으나 초등학생의 경우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지역의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자유로운 의복 선택, 자유로운 개인용품 사용, 편지나 소포 검사, 방 공개, TV시청 및 인터넷 사용, 건의사항의 표현, 자신의 일 결정 시 참여, 아동권리 의식 부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도시의 경우 대도시에 비하여 아동이 자신의 취향에 맞는 옷을 선택하여 입으며, 개인용품의 구입은 대도시 아동이 중소도시 아동보다 자유롭게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생활 영역과 관련하여 소포와 편지 등의 검사와 아동의 의사와 상관없는 방 공개가 중소도시에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TV시청 및 인터넷의 사용은 중소도시가 대도시보다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었다. 건의사항과 관련하여 중소도시의 시설아동이 대도시 시설아동보다 건의사항을 말하는 것을 어렵다고 생각하여 말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자신의 일을 결정할 때 참석하여 의견을 반영하는 것 역시, 대도시 시설아동이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의 인권의식영역에서 대도시의 시설아동이 중소도시의 시설아동보다 아동인권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복지시설아동의 일반적 특성 중, 성별, 학년, 지역에 따른 자아존중감을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였다. 즉, 여아가 남아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으며, 고등학생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도시에 위치한 시설아동의 경우, 중소도시에 위치한 시설아동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4. 물리적 환경

본 연구에서 실시한 조사결과 나타난 아동복지시설의 물리적 환경은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아동복지시설의 기존 구조 및 설비들은 대체로 청결하고 위생적이며 잘 갖춰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의 유효기간을 잘 지키는 등 음식보존 상태가 양호하며, 식단메뉴 중 인스턴트식품의 비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특이 체질 아동의 식단 메뉴 관리가 대부분의 시설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시설 내 양호실이 없는 경우가 34.8%에 달하며, 회의실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기관은 약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아

동의 휴식 공간을 확보하지 않고 있는 시설의 비율이 39.1%로 높게 나타났다.

아동복지시설의 생활 장비 및 물품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아동들은 침구를 개인별로 사용하였고, 대체로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사물함 구비 및 목욕용품 구비도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인용 책상 구비 및 컴퓨터나 학용용품 등 공동용품 구비는 부족하였다.

아동복지시설의 시설 안전 및 위생 관리와 관련하여 시설 내, 위생교육과 정기적인 소독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상시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장치의 마련, 창문 안전대의 설치, 안전관리 매뉴얼 및 화재예방기구 및 화재발생을 대비한 대처요령 등 관련시설장비의 배치나 예방교육부분은 모두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설 내 화재예방기구는 기본사항으로 모든 기관이 배치하고 있었으나, 안전관리 매뉴얼과 화재예방기구 사용 방법,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에 대한 안내문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아동복지시설의 프로그램 및 진정함과 관련하여, 퇴소 준비 프로그램은 대부분의 시설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아동이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경우 검정고시준비와 같은 학업보충프로그램이 없는 경우가 과반수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56.5%의 시설이 국가인권위 진정함을 배치하고 있었고, 배치여부가 불투명하거나 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시설이 43.4%로 높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함의 의미와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시설은 52.2%로 절반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인권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대상 및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아동복지시설 간의 특성과 시설의 규모 등의 차이를 조사과정에 반영하지 못하여 조사결과를 모든 아동복지시설로 일반화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 제2절 논의 및 제언

앞에 나타난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시설아동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고 아동 및 시설종사자의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관련법과 정책의 개선을 위한 함의는 다음과 같다.

## 1. 시설아동 관련법 개정

### 1) 헌법 및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한 아동인권 보장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인권 향상을 위해서 외국의 일부 국가에서는 최고 법규범인 헌법 개정을 통해 아동인권에 관한 규정을 포함시키거나 검토 중에 있다. 유럽의 핀란드, 아이슬란드, 불가리아의 경우 1990년 초중반에 아동을 개인이자 성인으로 대등한 존재로 취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포함시키는 헌법 개정을 단행하였다. 또한 브라질은 1988년 당시 초안단계에 있던 아동권리협약의 취지를 헌법에 포함시켰다. 아시아에서도 네팔과 몽고의 경우 1990년 초반 아동권리 규정을 헌법에 포함시켰다. 이와 같이 여러 국가에서 아동인권을 실현시키기 위해 헌법 개정 뿐만 아니라, 자국의 아동권리협약 비중을 계기로 관련 법률을 검토하여 아동인권에 관한 포괄적인 입법조치를 취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시설아동뿐만 아니라 전체 아동의 인권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헌법 및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아동의 지위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아동인권 보장을 위한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법 규범의 이념을 구체화하고, 아동인권의 원칙 등을 법률 개정을 통해 제시해야 할 것이다. 아동관련법의 개정은 아동권리협약의 규정에 맞도록 해야 하며, 협약의 권리 내용이 한국적 상황에 맞게 재해석하여 실질적으로 아동의 인권이 증진될 수 있도록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아동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집단이므로 관련 법률적 개정을 우선적으로 하여 그들의 아동인권을 증진시켜야 할 것이다.

### 2) 아동보호와 관련된 독립적인 법안의 마련

많은 선진국들의 경우 아동보호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아동복지법과 함께, 학대 및 폭력 등의 위험상황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독립법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아동복지법상의 규정들이 아동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국가이념이나 정책의 기본방향 및 시책을 포괄하고 있다면, 아동에 대한 독립법안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아동문제와 관련하여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 및 사회의

책임성을 강조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이고 강력하게 아동을 보호하는 법으로써의 기능을 할 것이다. 최근 장애인복지계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장차법)시행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이러한 독립적인 법안의 마련을 통해 아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법의 시행과 책임소재 등에 대한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겠다.

3) 시설아동의 소규모화를 위한 법적 규정 강화

시설생활에서 오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시설에서의 생활이 불가피할 경우 시설의 소규모화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하겠다. 특히, 우리나라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해 아동생활시설의 소규모화에 대한 국제적 의무이행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본 실태조사를 통해서도 나타나듯이, 국내 대부분의 시설들이 50명 이상의 대규모시설이고, 100명이 넘는 대규모 시설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대규모 시설은 아동의 성장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욕구충족 및 지원을 어렵게 함으로써 시설병 등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향후 아동생활시설의 소규모화를 위한 법적 규정을 강화하고, 시설의 소규모화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물적, 인적 자원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2. 시설아동 관련 정책 개선

1) 위기상황 및 고위험군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위원회 운영의 의무화

본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아동들은 시설 내에서 고민이나 문제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이나 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시설아동들의 전반적인 생활지도가 생활지도교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으로, 위기상황이나 고위험군 아동에 대한 개입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고위험군 아동을 포함하여 전문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아동들에 대한 사례관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례관리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심각한 아동학대 사례가 발생할 경우 지역 내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례판정위원회를 통해서 피학대아동에 대한 효율적 개입을 위한 전문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시설아동의 경우도 위기상황을 경험하거나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에 대해 지역 내 전문가(의료, 사회복지, 교육, 경찰, 심리 등)들로 구성된 사례관리 위원회를 구성하고, 분기별로 해당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개입을 논의하는 것을 의무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성폭력 등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민감한 문제의 경우 시설내부에 있는 종사자들에 의한 개입은 아동의 입장에서 심리적으로 많은 부담을 가질 수 있으므로, 시설외부의 전문가 연계를 통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아동이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하는 연계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아동인권 조사 및 모니터링 제도 설치

아동인권조사 및 모니터링 제도의 필요성은 아동인권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고, 아동관련 법과 정책이 아동인권에 기반하여 개정되거나 개선되지 않기 때문이다. 본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종사자들과 아동들이 의식하는 인권수준은 차이를 보였다. 즉, 아동들은 시설 내에서 기본적인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 반면, 종사자들은 이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특히 시설 내 폭력과 체벌금지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 간 폭력과 체벌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성학대 경험이 있는 아동에 대한 사후대처가 거의 전무한 것은 시설 내 아동인권 보장을 위한 국가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시설 안에서 아동인권이 충분히 보장받기 위해서는 외부 기관에서 주기적으로 시설아동 인권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설아동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아동의 인권수준을 증진시키기 위해 아동인권을 지키고 아동인권침해 실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국가 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같은 아동인권 모니터링기관에서 주기적으로 아동인권실태를 파악하고 아동인권침해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시설아동 및 전체 아동들의 기본인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인권조사 및 모니터링 결과는 아동관련 법과 정책 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시설아동을 위한 표준화된 서비스 및 프로그램 개발

본 조사에서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평균입소기간은 평균 7-9년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부분의 시설아동들은 장기간의 시설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아동양육시설은 단순한 아동보호의 기능이 아니라, 아동들의 발달단계에 따른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발달단계에 따른 서비스 제공은 장기적으로 아동의 성장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만이 아니라, 아동들로 하여금 시설생활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유발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설의 규모 및 특성상 자체적으로 효과적인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제공할 여건이 되지 못하는 시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모든 아동양육시설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동발달에 따른 프로그램을 개발, 표준화 및 매뉴얼화 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표준화된 프로그램의 제공은 시설간의 서비스 수준의 격차를 감소시키고, 모든 시설아동들에게 최소한의 기본적 서비스 및 지원 제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시설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향후 보건복지가족부 등의 관련정부기관에서 시설아동을 위한 표준화된 서비스 및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4)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

본 연구를 통하여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시설종사자의 열악한 업무환경과 근무조건 등을 살펴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시설 내 아동의 인권실태와 인권의식의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과 필요성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시설종사자의 목소리를 통해 확인되는 시설종사자의 열악한 업무환경은 비단 시설종사자의 인권에만 국한되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시설아동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시설종사자는 24시간 아동들과 함께 생활하며, 아동의 의식주와 관련한 기본 생활을 포함함은 물론, 아동의 삶 전반에 걸쳐 케어를 담당한다. 또한 아동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 측면으로 볼 때, 최종적으로 이들 시설종사자를 통해 각종 서비스가 전달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과중한 업무량, 직원복지의 부족 등의 열악한 업무환

경의 반복으로 인한 스트레스의 축적은 시설종사자의 소진을 쉽게 일으키게 하고, 이는 개인의 소진에 그치는 것이 아닌, 시설종사자를 통하여 아동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예를 들어 시설종사자의 높은 이직률은 안정적이지 못한 시설의 고용과 낮은 임금, 열악한 업무조건에 기인하지만, 아동의 입장에서 종사자의 잦은 이직은 새로운 시설종사자에게 적응하여야 한다는 부담을 주게 되며, 정서적 안정감, 유대감 등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이와 같이 시설종사자의 업무환경과 아동의 인권영역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시설의 소규모화 정책에 부합하지 못하는 보호 아동수의 조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시설종사자의 1인당 케어 아동수를 현실에 맞게 줄여 줌으로써 개별아동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케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동안 시설이라는 집단생활의 한계와 특징으로 여겨져 깊이 있게 고려되지 못하였던 아동의 개별화의 욕구영역을 보완해 주어, 아동인권보장의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동의 개별화의 욕구는 본 연구에서 아동과 시설종사자 모두에게서 확인된 주요 욕구라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 3.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아동복지시설 개선

### 1) 생존권: 자유로운 식생활 및 시간외 식사 가능한 보조식당(메뉴) 확보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양육시설의 약 24%, 보호치료시설의 75%의 아동들은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밥을 먹을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양육시설(약 31%)과 보호치료시설(약 64%) 모두 정해진 온도가 있어서 방온도를 조절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이 식생활과 주거생활에서 아동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데, 아동의 기본적 인권보장 측면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특히 아동들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정해진 시간이 아니어도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종사자의 0.8%만이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아동이 밥을 먹을 수 없다고 응답한 점이다. 종사자들은 아동들의 기본적 식생활이 실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여 아동들이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

특히, 고학년 아동들의 경우 학교생활 및 학업으로 인해 시설의 정해진 식사시간에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식사는 아동의 생존권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기에 언제든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시설운영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대체할 방안이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생활하는 방에 보조주방을 설치하고, 식사를 하지 못한 아동들이 간단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일품요리(라면, 제빵류, 즉석요리 등)가 준비되어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의 마련도 필요할 것이다.

2) 보호권: 사생활 보호 강화 및 시설 내 또래 폭력/체벌 금지

① 사생활 보호 강화

사생활보호 측면에서 아동양육시설 아동들의 63%와 종사자들의 62.8%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편지나 소포 검사, 방공개 등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를 한 반면, 보호치료시설 아동의 58.8%는 사생활침해를 받았다고 보고하였다. 보호치료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아동의 편지나 소포, 방 공개 같은 사생활 침해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② 시설 내 또래 폭력 및 체벌 금지

가장 우려할 만한 아동인권 침해 사항은 또래폭력과 체벌인데, 아동양육시설의 43%, 보호치료시설 27%가 또래 폭력을 경험하였고, 양육시설의 37.9%, 보호치료시설 23.6%가 체벌을 보고하였다. 종사자들의 경우 심각한 체벌이 아닌 경우 경고에 그치고 있는 비율이 41.3%인 것을 보면 아동복지시설 안에서 체벌이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아동보호권 부분에서 사생활보호와 또래폭력 및 체벌을 금지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체벌에 의존하지 않는 대안적 생활지도 방안을 마련하여 체벌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발달권: 학업지원 프로그램 의무화 및 교육권 보장

① 학업지원 프로그램 의무화 및 교육권 보장

아동발달권과 관련하여 아동양육시설의 학업지원을 보면, 선생님들로부터 학습지도를 적절히 받는 아동의 비율이 55.8%에 그치고 있고 보습학원 및 학원을 다니는 아동도 11.3%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치료시설의 경우 TV나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아동의 비율이 48.6%로 절반정도의 아동들은 정보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종사자들의 76.9%는 아동들이 적절한 학습지도를 받고 있으며, 78.5%는 아동들이 적절한 수준에서 TV 및 인터넷 이용을 자유롭게 한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학령기에 있는 아동들의 경우 학업적 성취를 통해 자존감을 강화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목표를 세우게 되는데, 시설 내 학업지원의 부족은 이들로 하여금 학교생활의 부적응자 및 실패자의 경험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현재 보호치료시설 아동들의 경우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상황이라는 사실은 아동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시설아동들 학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시설 내 학업지원 프로그램 마련, 학습도우미 확보, 검정고시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과정 연계 등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보호치료아동의 경우 잠재적 비행청소년으로 인식되어 주변 학교로의 전학이 거부당하는 등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므로, 전학과정에서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고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② 외출과 가족면담 보장

본 연구의 조사결과 과반수 이상의 양육시설 아동의 외출과 보호치료시설 아동의 가족방문 및 접촉이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아동복지시설의 특성상 모든 아동들의 자유로운 외출과 가족면담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다. 그러나 아동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인권항목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놀 인권'이라고 응답한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에서 주말 또는 특별한 날을 정해서 외출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궁극적으로 원가정과의 관계단절이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보다

자유로운 가족면담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해야 할 것이다.

4) 참여권: 의사결정 참여 및 자유로운 종교 활동 보장

① 의사결정 참여

양육시설과 보호치료시설 아동의 과반수 이상이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양육시설아동의 22.4%와 보호치료시설 34.5% 아동들은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와 상반된 결과로 종사자들의 99.2%는 아동들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아동들은 시설 안에서 결정되는 사항에 대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참여과정이 충분히 보장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비율의 아동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아동들이 시설 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참여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② 자유로운 종교 활동 보장

종교의 선택과정에서 양육시설 아동의 47.1%, 보호치료시설 아동의 74.3%가 종교행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함을 보고하였는데, 종사자들의 16.5%만이 아동들이 종교행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아동들이 특정 종교행사에 의무적 참여를 강요받고 있는 실정이다. 종사자들은 아동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인권분야가 '내 의견이 존중받을 인권'이라고 응답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시설아동들이 선택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이 충분히 전달되고 의사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5) 인권의식: 아동인권교육 정례화

양육시설 아동의 51.4%, 보호치료시설 62.9%가 아동인권에 대해 잘/전혀 알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시설의 37.5%와 보호치료시설 76.4%는 아동인권관련 정보 및 교육이 제공되지 않고 있었다. 이는 종사자들의 86.8%가 아동인권 교육이 있다고 응답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아동권리협약에 대해 알고 있는 비율은

28.1%로 낮게 나타난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종사자들의 63.7%가 아동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처럼 아동들의 인권의식과 종사자들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설 안에서 아동인권 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기적으로 시설아동 및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교육 제공을 의무화하고, 이를 점검하는 명확한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겠다.

6) 물리적 환경

① 개별아동의 욕구 충족

아동복지시설의 구조 및 설비들은 대체로 청결하고 위생적이고 잘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60.9%의 시설에서 특이체질 아동의 식단메뉴가 없었고, 34.8%는 양호실이 없었다. 그밖에 52.2%는 회의실 운영을 하지 않았으며 39.1%는 아동 휴식공간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 아동들의 생활 장비 및 물품을 보면, 개인별 침구사용(78.3%)나 침구류 위생상태(91.3%), 개인사물함 구비(87%)는 잘 되어있었으나, 개인용 책상구비는 52.2%, 공동용품 구비는 56.5%가 되지 않았다. 심층면접 결과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아동은 사생활이 보장되는 개별적인 공간 확보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아동의 발달단계를 고려하고, 1인실 등 아동의 개별적 생활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② 아동 안전 강화

시설아동의 안전과 관련하여 아동복지시설 안전 및 위생관리는 철저하게 갖추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65.2%의 시설에서 화재예방에 관한 구비 및 대처요령을 배치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26.1%의 시설은 창문안전대가 없었으며 52.2%는 안전 매뉴얼이 배치되지 않았다. 30.4%의 시설은 비상시 외부 연락 장치를 구비하지 않아 시설아동의 안전이 매우 위협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가 및 지역사회차원에서 시설의 물리적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 아동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③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 설치 및 교육 의무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을 배치한 시설은 56.5%이며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

시한 시설도 52.2%로 나타나 많은 시설에서 아동들이 인권침해를 받을 경우 어떻게 알려야 하는가에 대한 교육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아동뿐 아니라 종사자들도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가장 우선적인 인권교육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 설치 및 사용교육 의무화일 것이다. 시설아동들이 시설 내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외부기관에 알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교육시킴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인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7) 시설의 공정한 인사관리 시스템을 통한 우수한 전문 인력 확보

아동시설의 경우 아동은 시설 내 생활의 대부분을 생활지도교사와 함께 하고 있으며, 생활지도교사는 아동의 생활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생활지도교사는 아동의 문제 및 욕구 등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통해 적절한 개입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시설들의 경우 생활지도교사들이 적절한 교육적, 전문적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으며, 이로 인해 아동들에 대한 이해가 매우 낮고, 문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심각한 심리사회적 문제 징후를 보이는 경우에도 이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아동시설 종사자에 대한 자격기준을 강화하도록 하는 규정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아동복지 및 사회복지 전문가에 대한 자격기준을 명확히 하고, 인사과정에서도 이러한 전문적, 인성적 능력을 가진 인력이 확보될 수 있는 투명한 인사관리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부시설들의 경우 시설장의 친인척들로 구성된 종사자들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전문적 인력의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정부 관련부처에서는 시설인력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전문가확보를 통한 효과적인 시설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강복정・이정덕(2000). 시설청소년을 위한 가족생활교육의 필요성연구-건강 가족적 관점. 한국가족관계학회지(5). 한국가족관계학회.

고동좌(1992). 시설아의 일상생활세계와 의식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고명석(2008).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의 인권 의식에 관한 연구. 서울기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고영란(2009). 집단미술치료가 시설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고옥경(2004). 집단미술치료가 시설아동의 부적응 감소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세진(2003). 초등학교에서 아동인권에 대한 아동과 교사의 인식.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정래(1999). 권위적 간섭주의와 아동의 참여권-아동의 참여권보장을 위한 정당화 논의, 아동인권연구 3(1). 한국아동인권학회.

김진희(2003). 원 가족 접촉에 따른 시설보호 아동의 행동 문제 비교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형욱(2009).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해. 아동・청소년 민간단체 실무자를 위한 아동・청소년인권교육. 한국아동단체협의회.

김형욱(2010). 아동권리협약의 지역사회 실천방안과 과제. 청소년전문가월드포럼 2010 발표자료집.

노현미(2009). 치료놀이를 병행한 인간중심적 집단미술치료가 시설보호아동의 정서・사회적 적응능력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대한민국정부(2008).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2008-2012).

대한민국정부(2009).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차 통합국가보고서.

노혜련(1997). 육아시설아동의 심리사회적 문제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34).

박동열(2008). 시설학생과 결손학생의 학교적응에 관한 비교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순영(2009). 게슈탈트 집단미술치료가 시설아동의 불안과 사회적응력에 미치는 효

과.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은선(2000). 육아시설아동의 학교부적응 문제해결을 위한 학교사회사업서비스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변용찬, 이상헌(1998). 아동복지 수용시설 실태조사 결과보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2009). 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부(2010). 2010년 아동・청소년사업 안내.
석주영(2004). 집단게임놀이치료가 시설보호아동의 정서지능과 자아존중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송규남(2009). 시설보호아동의 정서지능과 사회적 능력향상을 위한 독서치료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신소희(1984). 시설아동의 사회적 부적응문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신의정(1995). 중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자녀간 의사소통유형 및 성별이 중학생의 갈등표출과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신인숙(1989). 시설아동의 집단활동 프로그램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안경환(2007).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기본용어. 국가인권위원회.
안동현(1997). 아동의 인권-필요성, 역사성 및 과제. 아동인권연구 창간호. 한국아동인권학회.
양숙미(1994). 시설청소년에 대한 집단사회사업 실천개입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연진영 (1987). 아동의 공감발달 및 질병변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오동석(2010).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헌법학적 접근. 한국아동인권학회춘계학술대회 자료집.
오영현(2009). 분노조절프로그램이 시설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유광수(2000). 일반아동과 시설아동의 행동특성에 관한 비교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유미숙(1980). 보호시설아동과 일반가정아동의 성격특성의 비교.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유안진 외(2002). 시설아동의 자아정체감과 심리, 사회적 적용. 대한가정학회지 39(3).

이명홍 (1970). 신 사회사업개론. 서울: 한국사회복지연구소.

이순형 외(2002). 초중고교 교사가 지각한 시설아동과 일반아동의 사회심리적 적응 차이. 아동학회지 23(4).

이용교・천정웅・김경준(2010). 청소년인권과 참여. 서울: 양서원.

이용교・이명묵・안경순・정경은・정민기(2006). 아동복지시설 인권평가지표 개발연구. 청소년복지연구(8).

이재연(2007).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아동 최선의 이익. 아동과 인권. 서울: 창지사.

이재연・김효진(2008). 아동권리협약의 유보철회를 위한 과제. 아동과 인권. 한국아동인권학회.

이재연・황옥경・김효진(2009). 아동과 인권, 아동학회지 30(6). 한국아동학회.

이재연・박은미・김형모・이은주・강현아 공저(2008). 아동복지론. 서울: 학지사.

이현정(1997). 스트레스에 대한 아동의 대처행동과 사회적 적응・학업성취 및 행동문제.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혜원(2006). 아동인권과 아동복지. 서울: 집문당.

전규용(2003). 시설아동의 심리사회적 환경과 사회부적응 행동에 관한 연구.

정상은(2006). 집단치료놀이가 소숙사시설아동의 문제행동 감소에 미치는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선욱(2000). 시설보호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정해수(1999). 양육형태에 따른 청소년의 시설병적 특성 비교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주정일(1972). 아동복지학. 서울: 교문사.

한근희(2005). 시설보호 아동 및 청소년의 입소원인 지각 및 통제소재에 따른 문제행동 유형.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근희・김정민(2007). 시설보호 아동 및 청소년의 입소원인 지각과 통제소재에 따른 문제행동 유형,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지 5(2).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한정원 (1990). 시설아동의 내외통제성과 욕구좌절반응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허상환(2003). 양육시설아동의 심리적 환경과 학교부적응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홍수현(2006). 아동의 정서지능과 대인불안에 관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목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황옥경(2005), 지방자치정부의 아동인권조례 제정의 함의-부천시 사례를 중심으로, 아동인권연구 9(2). 한국아동인권학회.

日本教育法學會‧子どもの權利條約研究特別委員會（1998）. 子どもの權利基本法と條例、三省堂。

エリアナ‧リッジオ‧チョートリ（2004）、ユニセフと子どものやさしいまちづくり、子どもにやさしいまちづくり一自治体子ども施策の現在とこれから、日本評論社。

喜多明人外篇（2009). 逐條解說子どもの權利條約、日本評論社.

Bowlby, John(1965). Child care and the growth of love. Penguin Books.

Kadushin Alfred(1980). Child welfare services (3rd ed.), N. Y. :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Kadushin, A. & Martin, J. A. (1998). Child welfare service (4th ed.), N. Y. :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Leathers(2000). Behavioral disturbance among foster children: The role of detachment from caregivers and community institu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ecora, P. J. Whittaker, J. K., Maluccio, A. N., Barth, R. P., Plotnick, R. D. (2000). The child welfare challenge: Policy, practice, and research (2nd ed.). N. Y. : Aldine de Gruyter.

Vorria, et al.,(1998). A comparative study of Greek children in long-term residential group care and in two-parents family and Psychiatry : Social, emotional, and behavioral difference. *Journal of Children Psychology, 39(2), 225-236.*

W. Goldfarb(1945). Psychological privation in infancy and subsequent adjustment.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www.homepage2.nifty.com/childrights

www.child-friendlycities.org

# 부 록

1. 아동양육시설 아동용 설문지
2.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용 설문지
3.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용 설문지
4. 아동보호치료시설 종사자용 설문지
5. 아동복지시설 물리적 환경 체크리스트
6. 아동용 심층면접 질문지
7. 종사자용 심층면접 질문지

아동 작성용(아동용)설문지

- 양육시설용 -

| 조사일자 | | | | | | |
|---|---|---|---|---|---|---|
| 설문지No. | | | | | | |

* 이 설문은 초등학교 4 학년 이상만 응답하도록 해 주십시오.

# 설 문 지

안녕하세요?

본 설문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어떻게 생활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설문지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이야기해주길 부탁합니다. 본 설문조사의 결과는 여러분이 생활하고 있는 곳의 환경을 더욱 좋게 만들기 위해 활용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답변은 통계법에 의해 비밀 보호될 것이며, 조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응답해 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 가 인 권 위 원 회

♣ **설문지를 작성하기 전에 아래의 빈칸을 채워주세요.**

■ **성별:** _____

■ **나이:** _____ **세**

■ **학년: 초등학교**_____ **학년, 중학교**_____ **학년, 고등학교**_____ **학년**

■ **입소연도:** _____ **년** _____ **월**

**다음의 문항들은 여러분이 현재 생활하는 곳에서의 경험이나 느낌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느낌과 일치하는 문항에 ∨표를 하거나 빈칸을 채워주세요.**

1-1-1. 정해진 식사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식사를 하나요?

① 정해진 식사시간이 지나도 내가 원하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 준다.

②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내가 직접 밥을 차려 먹는다.

③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밥을 먹을 수 없다.

④ 아무 때나 내가 밥을 먹고 싶을 때 밥을 먹을 수 있다.

1-2-1. 옷은 어떻게 입나요?

① 내 취향에 맞는 옷을 고르거나 마음대로 입을 수 있다.

② 내 취향에 맞는 옷을 고르거나 입을 수는 있지만, 선생님과 의견이 다른 경우 선생님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③ 내가 원하는 옷을 전혀 고르거나 입을 수 없다.

1-2-2. 개인 용품(예: 면도기, 화장품, 속옷, 생리대 등)을 자유롭게 구입하거나 사용할 수 있나요?

① 내가 필요할 때 마다 언제든지 자유롭게 구입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선생님께 말씀드리면 필요한 것을 사다(또는 가져다) 주신다.

③ 내가 알아서 구입해야 한다.

1-3-1. 여름이나 겨울철에 방의 온도(냉방, 온방)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① 생활하기에 적절한 온도로 조절 할 수 있다.

② 정해진 온도가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다.

1-4-1. 아프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나요?

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② 선생님은 아프면 이야기 하라고 하지만, 잘 말하지 않는 편이다.

③ 심하게 아프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다.

④ 몸이 아프면 선생님께 이야기 하고 선생님과 함께 이용하는 편이다.

1-4-2. 본인의 병(장애)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사 및 치료가 제공되고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③ 병(장애)이 없다.

2-1-1.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는 선생님이 여러분의 이메일이나 편지, 소포 등을 검사하나요?

① 우리의 의견을 묻지 않고 선생님이 마음대로 검사 하신다.

② 우리의 의견을 묻고 선생님이 검사를 한다.

③ 사생활 보호를 위해 검사하지 않는다.

2-1-2. 외부에서 시설견학이나 방문을 할 때 방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나요?

① 먼저 내 의견을 물어보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

② 내게 의견을 물어보기는 하지만, 결정은 선생님(또는 원장님)이 하신다.

③ 내 의견을 묻지도 않고 마음대로 보여주신다.

2-2-1.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친구나 형(누나, 언니, 오빠)에게 맞은 적이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2-2-2.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어른들(선생님, 일하는 아저씨 등)에게 맞은 적이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2-2-2-1. **'예'라고 대답한 경우만 응답하세요**. 주로 어떻게 맞았나요?
① 회초리로 손바닥이나 종아리를 맞았다.
② 손으로 얼굴이나 머리를 맞았다.
③ 발로 차거나, 빗자루, 몽둥이 등으로 맞았다.
④ 기타 (  )

2-2-3.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친구, 형(누나, 언니, 오빠), 어른들(선생님, 일하는 아저씨 등)이 자신의 옷을 벗기거나 몸(가슴, 성기)등을 만진 적이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2-2-3-1. **'예'라고 대답한 경우만 응답하세요**. 이와 같은 일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거나 상담한 적이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2-2-4.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친구나 형(누나, 언니, 오빠)에게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2-2-5.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곳에서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유 없이 선생님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거나 수치감 또는 모욕감을 느낀 적이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2-3-1.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본인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공부나 숙제는 제외)이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2-3-1-1. **'예'라고 대답한 경우만 응답하세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① 자기 방 청소 ② 자기 방 외 공간 청소

③ 정원 등 실외 공간 청소 ④ 식사 준비 보조

⑤ 농사일(채소심기, 텃밭관리 등) ⑥ 기타 (  )

2-4-1. 본인에게 물어보지 않고 외부(예: 언론매체-방송, 신문, 홈피 등)에 얼굴이나 사진이 공개된 적이 있나요?

① 있다

② 없다.

2-5-1.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선생님과 여러 가지 고민(예: 폭력, 따돌림, 성폭력, 학교생활 등)에 대하여 마음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2-6-1.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선생님으로부터 성적이나 외모 등으로 차별을 받은 적이 있나요?

① 있다

② 없다.

3-1-1.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방과 후 학습지도(예: 숙제, 공부 등)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나요?

① 정해진 학습시간에 선생님들로부터 학습지도를 적절히 받고 있다.

② 정해진 학습시간 내에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③ 학습할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④ 학습할 시간이 전혀 없다.

⑤ 보습학원 및 학원 등을 다닌다.

3-2-1.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인터넷이나 TV를 시청할 수 있나요?

① 원하는 경우 적절한 수준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② 특별한 날 또는 정해진 시간에만 이용할 수 있다.

③ 이용할 수 없다.

3-3-1. 외출은 어떻게 하나요?

① 규칙(귀가시간 등)만 지킨다면 외출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② 외출은 미리 선생님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③ 외출의 횟수와 시간은 정해져 있다.

④ 학교에서 돌아온 이후에는 외출을 할 수 없다.

3-4-2. 외부 사람(예: 가족, 친척, 친구 등)들과 자유롭게 연락(예: 전화, 편지, 인터넷 등)을 하거나 외부사람들이 현재 살고 있는 곳을 방문할 수 있나요?

① 언제든지 자유로운 연락 및 방문이 가능하다.

②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허락을 받으면 언제든지 자유로운 연락 및 방문이 가능 하다.

③ 정해진 날짜만 연락 및 방문이 가능하다

④ 연락 및 방문을 할 수 없다.

3-5-1. 용돈은 어떻게 관리 하나요?

① 내가 용돈을 관리하며, 용돈 기입장을 통해 선생님의 지도를 받는다.

② 내가 용돈을 관리하고, 선생님의 지도를 받은 적이 없다.

③ 선생님께서 용돈을 관리하시고, 필요할 때 말씀드리면 주신다.

④ 용돈을 받지 않는다.

4-1-1. 여러분은 현재 사는 곳에서 일상생활(예: 방 규칙, 자치활동 등)과 관련하여 의견을 말할 기회가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 4-1-1-1. **'아니오'라고 대답한 경우만 응답하세요.** 만약에 일상생활에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다면 참여하고 싶나요?

① 그렇다. ② 그저 그렇다. ③ 전혀 그렇지 않다.

4-1-2. 학교나 지역에서 자신이 원하는 외부 활동(예: 동아리, 방과 후 프로그램, 자원봉사활동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나요?

①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② 정해주는 외부 활동(예: 동아리, 방과 후 프로그램, 자원봉사활동 등)에만 참여할 수 있다.

③ 참여할 수 없다.

4-1-3.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 어떻게 표현하나요?

① 선생님이나 원장님께 직접 말씀드린다.

② 홈페이지나 건의함에 의견을 쓸 수 있다.

③ 건의사항을 말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서 말하지 않는다.

4-2-1. 외부의 사람들(예: 친구, 선생님 등)에게 현재 살고 있는 곳에 대한 생각이나 의견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나요?

①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다.

②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는 내용과 이야기 할 수 없는 내용에 대한 지침(규칙)이 있다.

③ 현재 살고 있는 곳에 대한 이야기는 외부에 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④ 기타 (　　)

4-3-1. **본인과 관련된 일**을 결정할 때 본인의 의견을 말 할 수 있나요?

① 참석해서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이러한 의견은 결정에 반영된다.

② 참석은 할 수 있지만, 의견을 말하거나 반영되지는 않는다.

③ 참석할 수 없다.

4-4-1. 종교 활동 시 선택의 자유가 있나요?

① 본인의 뜻에 따라 자유롭게 종교 활동을 선택할 수 있다.

② 강요하지는 않지만,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종교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면 신경이 쓰이거나 불이익이 있다.

③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행하는 종교행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5-1-1. 현재 살고 있는 곳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만족도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을 줄 수 있나요?(10점 만점으로 빈칸에 점수를 적어주세요) _____ 점

**다음의 문항들은 일상생활에서 아동의 인권나 인권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일치하는 문항에 ∨표를 하거나 빈칸을 채워주세요.**

1-1-1. 아동인권 또는 아동인권이 무엇인지 아나요?

① 잘 알고 있다.

②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알지 못한다.

③ 전혀 알지 못한다.

1-1-2.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아동인권(또는 아동인권)에 대해 알 수 있는 책이나 자료를 보거나 교육을 받은 적이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1-1-3.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현재 가장 필요하고 있어야 할 인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래의 보기 문항에서 3가지만 순위로 정해서 빈칸에 해당 번호를 적어 주세요.)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①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놀 인권

② 내 의견이 존중받을 인권

③ 친구들과 자유롭게 모임을 갖고 활동할 인권

④ 폭력이나 욕설 등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을 인권

⑤ 필요에 따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권

⑥ 자신과 관련된 일에 참여할 인권

⑦ 다른 사람과의 차이나 개성이 존중받을 인권

⑧ 사생활이 침해받지 않을 인권

⑨ 기타 (  )

1-1-4. 현재 사는 곳에서 위의 보기 문항(1-1-3)과 관련된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하나요?

①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선생님께 말씀드린다.

② 외부의 어른들에게 말씀 드린다.

③ 인터넷이나 홈페이지 등에 올린다.

④ 그냥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참는다.

⑤ 기타 (  )

**다음의 문항들은 여러분이 자신에 대한 생각을 나타내는 문항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 되는 번호에 ∨해주세요.**

| | 내 용 | 대체로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대체로 그렇다 | 항상 그렇다 |
|---|---|---|---|---|---|
| 1 |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 | | |
| 2 |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 | | | |
| 3 | 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 | | | |
| 4 |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 할 수가 있다. | | | | |
| 5 |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 | | | |
| 6 |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 | | | |
| 7 |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 | | | |
| 8 | 나는 내 자신을 좀 더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 | | | | |
| 9 | 나는 가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 | | | |
| 10 |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 | | |

**응답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동 작성용(아동용)설문지

**- 보호치료시설용 -**

| 조사일자 | | | | | | |
|---|---|---|---|---|---|---|
| 설문지No. | | | | | | |

*** 이 설문은 초등학교 4 학년 이상만 응답하도록 해 주십시오.**

# 설 문 지

안녕하세요?

본 설문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어떻게 생활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설문지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이야기해주길 부탁합니다. 본 설문조사의 결과는 여러분이 생활하고 있는 곳의 환경을 더욱 좋게 만들기 위해 활용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답변은 통계법에 의해 비밀 보호될 것이며, 조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응답해 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국 가 인 권 위 원 회

♣ **설문지를 작성하기 전에 아래의 빈칸을 채워주세요.**

■ **성별:** _____

■ **나이:** _____ **세**

■ **학년: 초등학교**_____ **학년, 중학교**_____ **학년, 고등학교**_____ **학년**

■ **입소연도:** _____ **년** _____ **월**

**다음의 문항들은 여러분이 현재 생활하는 곳에서의 경험이나 느낌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느낌과 일치하는 문항에 ∨표를 하거나 빈칸을 채워주세요.**

1-1-1. 정해진 식사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식사를 하나요?

① 정해진 식사시간이 지나도 내가 원하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 준다.

②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내가 직접 밥을 차려 먹는다.

③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밥을 먹을 수 없다.

④ 아무 때나 내가 밥을 먹고 싶을 때 밥을 먹을 수 있다.

1-2-1. 옷은 어떻게 입나요?

① 내 취향에 맞는 옷을 고르거나 마음대로 입을 수 있다.

② 내 취향에 맞는 옷을 고르거나 입을 수는 있지만, 선생님과 의견이 다른 경우 선생님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③ 내가 원하는 옷을 전혀 고르거나 입을 수 없다.

1-2-2. 개인 용품(예: 면도기, 화장품, 속옷, 생리대 등)을 자유롭게 구입하거나 사용할 수 있나요?

① 내가 필요할 때 마다 언제든지 자유롭게 구입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선생님께 말씀드리면 필요한 것을 사다(또는 가져다) 주신다.

③ 내가 알아서 구입해야 한다.

1-3-1. 여름이나 겨울철에 방의 온도(냉방, 온방)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① 생활하기에 적절한 온도로 조절 할 수 있다.

② 정해진 온도가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다.

1-4-1. 아프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나요?

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② 선생님은 아프면 이야기 하라고 하지만, 잘 말하지 않는 편이다.

③ 심하게 아프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다.

④ 몸이 아프면 선생님께 이야기 하고 선생님과 함께 이용하는 편이다.

1-4-2. 본인의 병(장애)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사 및 치료가 제공되고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③ 병(장애)이 없다.

2-1-1.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는 선생님이 여러분의 이메일이나 편지, 소포 등을 어떻게 하나요?

① 우리의 의견을 묻지 않고 선생님이 마음대로 검사 하신다.

② 우리의 의견을 묻고 선생님이 검사를 한다.

③ 사생활 보호를 위해 검사하지 않는다.

2-1-2. 외부에서 시설견학이나 방문을 할 때 방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나요?

① 먼저 내 의견을 물어보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

② 내게 의견을 물어보기는 하지만, 결정은 선생님(또는 원잠님)이 하신다.

③ 내 의견을 묻지도 않고 마음대로 보여주신다.

2-2-1.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친구나 형(누나, 언니, 오빠)에게 맞은 적이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2-2-2.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어른들(선생님, 일하는 아저씨 등)에게 맞은 적이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2-2-2-1. **'예'라고 대답한 경우만 응답하세요**. 주로 어떻게 맞았나요?
① 회초리로 손바닥이나 종아리를 맞았다.
② 손으로 얼굴이나 머리를 맞았다.
③ 발로 차거나, 빗자루, 몽둥이 등으로 맞았다.
④ 기타 (  )

2-2-3.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친구, 형(누나, 언니, 오빠), 어른들(선생님, 일하는 아저씨 등)이 자신의 옷을 벗기거나 몸(가슴, 성기)등을 만진 적이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2-2-3-1. **'예'라고 대답한 경우만 응답하세요**. 이와 같은 일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거나 상담한 적이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2-2-4.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친구나 형(누나, 언니, 오빠)에게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2-2-5.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곳에서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유 없이 선생님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거나 수치감 또는 모욕감을 느낀 적이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2-3-1.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본인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공부나 숙제는 제외)이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2-3-1-1. **'예'라고 대답한 경우만 응답하세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① 자기 방 청소 ② 자기 방 외 공간 청소

③ 정원 등 실외 공간 청소 ④ 식사 준비 보조

⑤ 농사일(채소심기, 텃밭관리 등) ⑥ 기타 (  )

2-4-1. 본인에게 물어보지 않고 외부(예: 언론매체-방송, 신문, 홈피 등)에 얼굴이나 사진이 공개된 적이 있나요?

① 있다

② 없다.

2-5-1.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선생님과 여러 가지 고민(예: 폭력, 따돌림, 성폭력, 학교생활 등)에 대하여 마음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2-6-1.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선생님으로부터 성적이나 외모 등으로 차별을 받은 적이 있나요?

① 있다

② 없다.

3-1-1.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방과 후 학습지도(예: 숙제, 공부 등)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나요?

① 정해진 학습시간에 선생님들로부터 학습지도를 적절히 받고 있다.

② 정해진 학습시간 내에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③ 학습할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④ 학습할 시간이 전혀 없다.

⑤ 보습학원 및 학원 등을 다닌다.

3-2-1.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책(또는 참고 도서)을 보거나 TV를 시청할 수 있나요?

① 원하는 경우 적절한 수준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② 특별한 날 또는 정해진 시간에만 이용할 수 있다.

③ 이용할 수 없다.

3-3-1. 외부사람(예: 가족, 친척, 친구 등)이나 외부와 연락(예: 전화, 편지, 인터넷 등)을 어떻게 하나요?

① 언제든지 자유로운 연락 및 방문이 가능하다.

②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허락을 받으면 언제든지 자유로운 연락 및 방문 이 가능 하다.

③ 정해진 날짜만 연락 및 방문이 가능하다

④ 연락 및 방문을 할 수 없다.

4-1-1. 여러분은 현재 사는 곳에서 일상생활(예: 방 규칙, 자치활동 등)과 관련하여 의견을 말할 기회가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4-1-1-1. **'아니오'라고 대답한 경우만 응답하세요.** 만약에 일상생활에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다면 참여하고 싶나요?

① 그렇다. ② 그저 그렇다. ③ 전혀 그렇지 않다.

4-1-2.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 어떻게 표현하나요?

① 선생님이나 원장님께 직접 말씀드린다.

② 홈페이지나 건의함에 의견을 쓸 수 있다.

③ 건의사항을 말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서 말하지 않는다.

4-2-1. 외부의 사람들(예: 부모님, 가족, 친척, 친구 등)에게 현재 살고 있는 곳에 대한 생각이나 의견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나요?

①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다.

②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는 내용과 이야기 할 수 없는 내용에 대한 지침(규칙)이 있다.

③ 현재 살고 있는 곳에 대한 이야기는 외부에 말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④ 기타 (  )

4-3-1. **본인과 관련된 일**을 결정할 때 본인의 의견을 말 할 수 있나요?

① 참석해서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이러한 의견은 결정에 반영된다.

② 참석은 할 수 있지만, 의견을 말하거나 반영되지는 않는다.

③ 참석할 수 없다.

4-4-1. 종교 활동 시 선택의 자유가 있나요?

① 본인의 뜻에 따라 자유롭게 종교 활동을 선택할 수 있다.

② 강요하지는 않지만,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종교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면 신경이 쓰이거나 불이익이 있다.

③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행하는 종교행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5-1-1. 현재 살고 있는 곳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만족도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을 줄 수 있나요?(10점 만점으로 빈칸에 점수를 적어주세요) _____ 점

**다음의 문항들은 일상생활에서 아동의 인권과 인권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일치하는 문항에 ∨표를 하거나 빈칸을 채워주세요.**

1-1-1. 아동인권 또는 아동인권이 무엇인지 아나요?

① 잘 알고 있다.

②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알지 못한다.

③ 전혀 알지 못한다.

1-1-2.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아동인권(또는 아동인권)에 대해 알 수 있는 책이나 자료를 보거나 교육을 받은 적이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1-1-3.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현재 가장 필요하고 있어야 할 인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래의 보기 문항에서 3가지만 순위로 정해서 빈칸에 해당 번호를 적어 주세요.)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 |
|---|
| ①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놀 인권 |
| ② 내 의견이 존중받을 인권 |
| ③ 친구들과 자유롭게 모임을 갖고 활동할 인권 |
| ④ 폭력이나 욕설 등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을 인권 |
| ⑤ 필요에 따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권 |
| ⑥ 자신과 관련된 일에 참여할 인권 |
| ⑦ 다른 사람과의 차이나 개성이 존중받을 인권 |
| ⑧ 사생활이 침해받지 않을 인권 |
| ⑨ 기타 ( ) |

1-1-4. 현재 사는 곳에서 위의 보기 문항(1-1-3)과 관련된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하나요?

①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선생님께 말씀드린다.

② 외부의 어른들에게 말씀 드린다.

③ 인터넷이나 홈페이지 등에 올린다.

④ 그냥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참는다.

⑤ 기타 ( )

**다음의 문항들은 여러분이 자신에 대한 생각을 나타내는 문항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 되는 번호에 ∨해주세요.**

| | 내 용 | 대체로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대체로 그렇다 | 항상 그렇다 |
|---|---|---|---|---|---|
| 1 |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 | | |
| 2 |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 | | | |
| 3 | 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 | | | |
| 4 |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 할 수가 있다. | | | | |
| 5 |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 | | | |
| 6 |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 | | | |
| 7 |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 | | | |
| 8 | 나는 내 자신을 좀 더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 | | | | |
| 9 | 나는 가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 | | | |
| 10 |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 | | |

**응답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사자 작성용(종사자용) 설문지

**- 양육시설용 -**

| 조사일자 | | | | | | |
|---|---|---|---|---|---|---|
| 설문지No. | | | | | | |

#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조사는 아동복지시설에서의 아동인권 상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향후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본 설문지 문항에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법(통계법 제33조)에 연구 자료만 사용이 되며, 조사목적 이외에 다른 어떤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설문에 응답한 내용은 익명으로 전산 처리되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비밀 보장이 됩니다.

바쁘시겠지만 설문지 모든 설문문항에 빠짐없이 응답해 주길 바라며,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 가 인 권 위 원 회**

**다음은 설문에 응답해 주시는 귀하와 종사하고 있는 기관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 빈칸에 해당하는 내용을 적어주시거나 √표 해 주세요.**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연령은? 만 _____ 세

3. 귀하의 사회복지 분야 근무 경력은 얼마나 되십니까?

・현 직장 근무 경력 : _____ 년 _____ 개월

・전체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 _____ 년 _____ 개월

4.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고졸미만 ② 고졸 ③ 대학중퇴 ④ 전문대졸

⑤ 대졸 ⑥ 석사졸업 ⑦ 박사졸업

5. 귀하의 전공분야는 무엇입니까?

① 사회복지학 ② 아동(복지)학

③ 청소년(지도)학 ④ 보육학

⑤ 교육학 ⑥ 기타(구체적으로: )

6. 귀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어떤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해당되는 자격증에 표시를 하시고 구체적인 등급을 ( )안에 표기하여 주십시오.

① 사회복지사( )급 ② 청소년지도사( )급

③ 청소년상담사( )급 ④ 보육교사( )급

⑤ 기타(구체적으로: )

**다음은 설문에 응답해 주시는 귀하가 종사하고 있는 기관의 직무관련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 빈칸에 해당하는 내용을 적어 주시거나 √표 해 주세요.**

1. 귀하는 아동 인권(또는 아동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2. 귀하는 '아동권리협약'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① 들어본 적 없다.

② 제목만 알고 있을 뿐 내용은 전혀 모른다.

③ 제목과 내용에 대해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다.

④ 제목과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

3. 귀하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필요 없다 ② 별로 필요 없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필요하다

⑤ 꼭 필요하다

4. '인권교육'이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면 합니까?

① 한 달에 한번 ② 3개월에 한번

③ 6개월에 한번 ④ 1년에 한번

⑤ 기타 (구체적으로 : )

5. 귀하는 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직원 외의 다른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필요 없다 ② 별로 필요 없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필요하다

⑤ 꼭 필요하다

6. 귀하의 기관에는 종교에 대한 자유가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7. 귀하는 근무하는 기관 내에서 직원 차별을 겪어 본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8. 귀하는 아동들에게 언어적, 성적, 신체적 폭력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9. 귀하는 직장 상사나 직원으로부터 언어적, 성적, 신체적 폭력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0. 귀하는 직장 상사가 개인적인 일을 시킨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1. 귀하의 기관에서는 정해진 식사시간이 지나면 아동은 어떻게 식사를 합니까?

① 정해진 식사시간이 지나도 아동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 준다.

②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아동이 직접 밥을 차려 먹는다.

③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밥을 먹을 수 없다.

④ 아동이 아무 때나 밥을 먹고 싶을 때 밥을 먹을 수 있다.

12. 귀하의 기관에서는 아동이 옷을 어떻게 입습니까?

① 아동의 취향에 맞는 옷을 선택하거나 마음대로 입을 수 있다.

② 아동이 취향에 맞는 옷을 선택하거나 입을 수는 있지만, 의견이 다른 경우 선생님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③ 아동이 원하는 옷을 전혀 고르거나 입을 수 없다.

13. 귀하의 기관에서는 아동이 개인 용품(예: 면도기, 화장품, 속옷, 생리대 등)을 자유롭게 구입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까?

① 아동이 필요할 때 마다 언제든지 자유롭게 구입하거나 사용 할 수 있다.

② 아동이 이야기를 하면 선생님이 필요한 물품을 사다(또는 가져다) 주신다.

③ 아동이 알아서 구입해야 한다.

14. 귀하의 기관에서는 아동이 여름이나 겨울철에 방의 온도(냉방, 온방)를 조절할 수 있습니까?

① 아동이 생활하기에 적절한 온도로 조절 할 수 있다.

② 기관에 정해진 온도가 있기 때문에 아동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다.

15. 귀하의 기관에서는 아동이 아프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① 아동이 스스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② 몸이 아프면 선생님께 이야기 하고 선생님과 함께 이용하는 편이다.

③ 심하게 아프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다.

16. 귀하의 기관에서는 아동이 장애 및 질병이 있는 경우 정기적으로 검사 및 치료가 제공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7. 귀하의 기관에서는 아동의 이메일이나 편지, 소포 등을 검사합니까?
① 아동의 관리 감독 차원에서 마음대로 검사한다.
② 아동의 동의를 얻고 검사를 한다.
③ 사생활 보호를 위해 검사하지 않는다.

18. 외부에서 시설견학이나 방문 시 방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① 아동의 의견을 물어보고, 원하지 않는 경우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
② 아동의 의견을 물어보지만, 결정은 선생님(또는 원장님)이 한다.
③ 아동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마음대로 보여준다.

19. 귀하의 기관에서는 아동에게 체벌을 할 경우 어떻게 처리됩니까?
① 아동에게 체벌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규정이 있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직원을 징계한다.
② 아동에게 체벌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이 실시되고 있지만, 심각한 체벌이 아닌 경우에는 경고에 그친다.
③ 대규모로 아동을 보호하는 과정에서는 체벌은 불가피 한 일로, 허용 한다.

20. 귀하의 기관에서 아동 간의 신체적 폭력이 일어난 경우 어떻게 처리 하십니까?
① 폭력이 일어날 경우에는 화해, 반성문쓰기, 재발방지대책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한다.
② 폭력이 일어날 경우에는 벌을 서게 하여 반성의 기회를 준다.
③ 아동 간의 폭력은 사실상 불가피한 일이므로 묵인하거나 관여하지 않는다.

21. 만약에 귀하의 기관에서 직원이 아동에게 성추행 및 성폭력 등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① 상부기관에 바로 알리고 법・행정적 조치를 취한다.
② 기관 자체에서 조사하고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③ 그냥 모른 척 하거나 관여하지 않는다.

22. 귀하의 기관에서는 아동의 동의를 얻지 않고 외부(예: 언론매체-방송, 신문, 홈페이지 등)에 얼굴이나 사진이 공개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23. 귀하의 기관에서는 방과 후 학습지도(예: 숙제, 공부 등)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① 정해진 학습시간에 선생님들로부터 학습지도를 적절히 받고 있다.
② 정해진 학습시간 내에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③ 학습할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④ 학습할 시간이 전혀 없다.
⑤ 보습학원 및 학원 등을 다닌다.

24. 귀하의 기관에서는 아동이 인터넷이나 TV를 시청할 수 있습니까?
① 아동이 원하는 경우 적절한 수준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② 특별한 날 또는 정해진 시간에만 이용할 수 있다.
③ 이용할 수 없다.

25. 귀하의 기관에서는 아동이 외출을 할 수 있습니까?
① 규칙(귀가시간 등)만 지킨다면 외출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② 외출은 미리 선생님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③ 외출의 횟수와 시간은 정해져 있다.
④ 학교에서 돌아온 이후에는 외출을 할 수 없다.

26. 귀하의 기관에서는 아동이 외부 사람들과 자유롭게 연락(예: 전화, 편지, 인터넷 등)을 하거나 외부사람들이 귀하의 기관을 방문할 수 있습니까?
① 언제든지 자유로운 연락 및 방문이 가능하다.
②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허락을 받으면 언제든지 자유로운 연락 및 방문이 가능 하다.
③ 정해진 날짜만 연락 및 방문이 가능하다
④ 연락 및 방문을 할 수 없다.

27. 귀하의 기관에서는 아동의 용돈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① 아동이 용돈을 관리하며, 용돈 기입장을 통해 지도를 받는다.

② 아동이 용돈을 관리하나, 지도를 하지는 않는다.

③ 종사자가 용돈을 관리하나, 아동이 필요할 때 용돈을 준다.

④ 용돈을 주지 않는다.

28. 귀하의 기관에서는 아동이 일상생활(예: 방 규칙, 자치활동 등)과 관련하여 의견을 말할 기회가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9. 귀하의 기관에서는 아동이 학교나 지역에서 자신이 원하는 외부 활동(예: 동아리, 자원봉사활동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①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② 정해주는 외부 활동에만 참여할 수 있다.

③ 참여할 수 없다.

30. 귀하의 기관에서는 아동이 외부의 사람들(예: 친구, 선생님 등)에게 생각이나 의견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①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다.

②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는 내용과 이야기 할 수 없는 내용에 대한 지침(규칙)이 있다.

③ 현재 살고 있는 곳에 대한 이야기는 외부에 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④ 기타 (  )

31. 귀하의 기관에서는 아동과 관련된 일을 결정할 때 아동이 의견을 말 할 수 있습니까?

① 참석해서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이러한 의견은 결정에 반영된다.

② 참석은 할 수 있지만, 의견을 말하거나 반영되지는 않는다.

③ 참석할 수 없다.

32. 귀하의 기관에서는 아동이 종교 활동을 선택 할 수 있습니까?

① 아동의 뜻에 따라 자유롭게 종교 활동을 선택할 수 있다.

② 강요하지는 않지만, 현재 살고 있는 기관의 종교를 선택하도록 권유 한다.

③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행하는 종교행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33. 귀하는 현재 아동에게 가장 필요한 인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의 보기 문항에서 3가지만 순위로 정해서 빈칸에 해당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1순위 : _____ 2순위 : _____ 3순위 : _____

①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놀 인권
② 내 의견이 존중받을 인권
③ 친구들과 자유롭게 모임을 갖고 활동할 인권
④ 폭력이나 욕설 등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을 인권
⑤ 필요에 따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권
⑥ 자신과 관련된 일에 참여할 인권
⑦ 다른 사람과의 차이나 개성이 존중받을 인권
⑧ 사생활이 침해받지 않을 인권
⑨ 기타 (  )

34. 귀하는 기관에서 아동인권상황에 대한 만족점수를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10점 만점으로 빈칸에 점수를 적어주십시오) _____ 점

**귀하께서는 아래의 문항들이 시설 내에서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다음 해당 척도에 ∨표 해주시길 바랍니다.**

| | 내 용 | 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않다 | 조금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 시설 종사자는 시설 내 왕따, 폭력, 저항, 갈등 등을 잘 다룰 수 있도록 충분히 훈련을 받아야 한다. | | | | |
| 2 | 시설 종사자는 아동의 불만사항을 즉각적으로 접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 | |
| 3 | 아동은 자유롭게 연락할 수 있는 누군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 | |
| 4 | 시설 종사자는 아동을 대변해서 즉각적으로 대처행동을 해야 한다. | | | | |
| 5 | 종사자들은 아동을 절대 체벌해서 안 되며 아동과 일대일로 문제를 처리하지 않아야 한다. | | | | |
| 6 | 아동을 돌보는 시설 종사자는 자주 바뀌지 않아야 한다. | | | | |

**응답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사자 작성용(종사자용) 설문지

**- 보호치료시설용 -**

| 조사일자 | | | | | | |
|---|---|---|---|---|---|---|
| 설문지No. | | | | | | |

#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조사는 아동복지시설에서의 아동인권 상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향후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본 설문지 문항에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법(통계법 제33조)에 연구 자료만 사용이 되며, 조사목적 이외에 다른 어떤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설문에 응답한 내용은 익명으로 전산 처리되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비밀 보장이 됩니다.

바쁘시겠지만 설문지 모든 설문문항에 빠짐없이 응답해 주길 바라며,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 가 인 권 위 원 회**

**다음은 설문에 응답해 주시는 귀하와 종사하고 있는 기관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 빈칸에 해당하는 내용을 적어주시거나 √표 해 주세요.**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연령은? 만 _____ 세

3. 귀하의 사회복지 분야 근무 경력은 얼마나 되십니까?

・현 직장 근무 경력 : _____ 년 _____ 개월

・전체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 _____ 년 _____ 개월

4.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고졸미만 ② 고졸 ③ 대학중퇴 ④ 전문대졸

⑤ 대졸 ⑥ 석사졸업 ⑦ 박사졸업

5. 귀하의 전공분야는 무엇입니까?

① 사회복지학 ② 아동(복지)학

③ 청소년(지도)학 ④ 보육학

⑤ 교육학 ⑥ 기타(구체적으로: )

6. 귀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어떤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해당되는 자격증에 표시를 하시고 구체적인 등급을 ( )안에 표기하여 주십시오.

① 사회복지사( )급 ② 청소년지도사( )급

③ 청소년상담사( )급 ④ 보육교사( )급

⑤ 기타(구체적으로: )

**다음은 설문에 응답해 주시는 귀하가 종사하고 있는 기관의 직무관련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 빈칸에 해당하는 내용을 적어 주시거나 √표 해 주세요.**

1. 귀하는 아동 인권(또는 아동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2. 귀하는 '아동권리협약'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① 들어본 적 없다.

② 제목만 알고 있을 뿐 내용은 전혀 모른다.

③ 제목과 내용에 대해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다.

④ 제목과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

3. 귀하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필요 없다 ② 별로 필요 없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필요하다

⑤ 꼭 필요하다

4. '인권교육'이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면 합니까?

① 한 달에 한번 ② 3개월에 한번

③ 6개월에 한번 ④ 1년에 한번

⑤ 기타 (구체적으로 : )

5. 귀하는 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직원 외의 다른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필요 없다 ② 별로 필요 없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필요하다

⑤ 꼭 필요하다

6. 귀하의 기관에는 종교에 대한 자유가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7. 귀하는 근무하는 기관 내에서 직원 차별을 겪어 본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8. 귀하는 아동들에게 언어적, 성적, 신체적 폭력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9. 귀하는 직장 상사나 직원으로부터 언어적, 성적, 신체적 폭력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0. 귀하는 직장 상사가 개인적인 일을 시킨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1. 귀하의 기관에서는 정해진 식사시간이 지나면 아동은 어떻게 식사를 합니까?

① 정해진 식사시간이 지나도 아동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 준다.

②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아동이 직접 밥을 차려 먹는다.

③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밥을 먹을 수 없다.

④ 아동이 아무 때나 밥을 먹고 싶을 때 밥을 먹을 수 있다.

12. 귀하의 기관에서는 아동이 옷을 어떻게 입습니까?
① 아동의 취향에 맞는 옷을 선택하거나 마음대로 입을 수 있다.
② 아동이 취향에 맞는 옷을 선택하거나 입을 수는 있지만, 의견이 다른 경우 선생님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③ 아동이 원하는 옷을 전혀 고르거나 입을 수 없다.

13. 귀하의 기관에서는 아동이 개인 용품(예: 면도기, 화장품, 속옷, 생리대 등)을 자유롭게 구입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까?
① 아동이 필요할 때 마다 언제든지 자유롭게 구입하거나 사용 할 수 있다.
② 아동이 이야기를 하면 선생님이 필요한 물품을 사다(또는 가져다) 주신다.
③ 아동이 알아서 구입해야 한다.

14. 귀하의 기관에서는 아동이 여름이나 겨울철에 방의 온도(냉방, 온방)를 조절할 수 있습니까?
① 아동이 생활하기에 적절한 온도로 조절 할 수 있다.
② 기관에 정해진 온도가 있기 때문에 아동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다.

15. 귀하의 기관에서는 아동이 아프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① 아동이 스스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② 몸이 아프면 선생님께 이야기 하고 선생님과 함께 이용하는 편이다.
③ 심하게 아프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다.

16. 귀하의 기관에서는 아동이 장애 및 질병이 있는 경우 정기적으로 검사 및 치료가 제공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7. 귀하의 기관에서는 아동의 이메일이나 편지, 소포 등을 어떻게 합니까?
① 아동의 관리 감독 차원에서 마음대로 검사한다.
② 아동의 동의를 얻고 검사를 한다.
③ 사생활 보호를 위해 검사하지 않는다.

18. 외부에서 시설견학이나 방문 시 방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① 아동의 의견을 물어보고, 원하지 않는 경우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
② 아동의 의견을 물어보지만, 결정은 선생님(또는 원장님)이 한다.
③ 아동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마음대로 보여준다.

19. 귀하의 기관에서는 아동에게 체벌을 할 경우 어떻게 처리됩니까?
① 아동에게 체벌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규정이 있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직원을 징계한다.
② 아동에게 체벌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이 실시되고 있지만, 심각한 체벌이 아닌 경우에는 경고에 그친다.
③ 대규모로 아동을 보호하는 과정에서는 체벌은 불가피 한 일로, 허용한다.

20. 귀하의 기관에서 아동 간의 신체적 폭력이 일어난 경우 어떻게 처리 하십니까?
① 폭력이 일어날 경우에는 화해, 반성문쓰기, 재발방지대책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한다.
② 폭력이 일어날 경우에는 벌을 서게 하여 반성의 기회를 준다.
③ 아동 간의 폭력은 사실상 불가피한 일이므로 묵인하거나 관여하지 않는다.

21. 만약에 귀하의 기관에서 직원이 아동에게 성추행 및 성폭력 등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① 상부기관에 바로 알리고 법・행정적 조치를 취한다.
② 기관 자체에서 조사하고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③ 그냥 모른 척 하거나 관여하지 않는다.

22. 귀하의 기관에서는 아동의 동의를 얻지 않고 외부(예: 언론매체-방송, 신문, 홈페이지 등)에 얼굴이나 사진이 공개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23. 귀하의 기관에서는 방과 후 학습지도(예: 숙제, 공부 등)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① 정해진 학습시간에 선생님들로부터 학습지도를 적절히 받고 있다.

② 정해진 학습시간 내에 아동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③ 학습할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④ 학습할 시간이 전혀 없다.

⑤ 보습학원 및 학원 등을 다닌다.

24. 귀하의 기관에서는 아동이 책(또는 참고 도서)을 보거나 TV를 시청 할 수 있습니까?

① 아동이 원하는 경우 적절한 수준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② 특별한 날 또는 정해진 시간에만 이용할 수 있다.

③ 이용할 수 없다.

25. 귀하의 기관에서는 아동이 외부 사람(예, 가족, 친척, 친구 등)이나 외부와 연락(예: 전화, 편지, 인터넷 등)을 어떻게 합니까?

① 언제든지 자유로운 연락 및 방문이 가능하다.

②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허락을 받으면 언제든지 자유로운 연락 및 방문이 가능 하다.

③ 정해진 날짜만 연락 및 방문이 가능하다

④ 연락 및 방문을 할 수 없다.

26. 귀하의 기관에서는 아동이 일상생활(예: 방 규칙, 자치활동 등)과 관련하여 의견을 말할 기회가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7. 귀하의 기관에서는 아동이 외부의 사람들(예: 친구, 선생님 등)에게 생각이나 의견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①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다.

②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는 내용과 이야기 할 수 없는 내용에 대한 지침(규칙)이 있다.

③ 현재 살고 있는 곳에 대한 이야기는 외부에 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④ 기타 (  )

28. 귀하의 기관에서는 아동과 관련된 일을 결정할 때 아동이 의견을 말 할 수 있습니까?

① 참석해서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이러한 의견은 결정에 반영된다.

② 참석은 할 수 있지만, 의견을 말하거나 반영되지는 않는다.

③ 참석할 수 없다.

29. 귀하의 기관에서는 아동이 종교 활동을 선택 할 수 있습니까?

① 아동의 뜻에 따라 자유롭게 종교 활동을 선택할 수 있다.

② 강요하지는 않지만, 현재 살고 있는 기관의 종교를 선택하도록 권유 한다.

③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행하는 종교행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30. 귀하는 현재 아동에게 가장 필요한 인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의 보기 문항에서 3가지만 순위로 정해서 빈칸에 해당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1순위 : _____ 2순위 : _____ 3순위 : _____

①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놀 인권
② 내 의견이 존중받을 인권
③ 친구들과 자유롭게 모임을 갖고 활동할 인권
④ 폭력이나 욕설 등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을 인권
⑤ 필요에 따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권
⑥ 자신과 관련된 일에 참여할 인권
⑦ 다른 사람과의 차이나 개성이 존중받을 인권
⑧ 사생활이 침해받지 않을 인권
⑨ 기타 (  )

31. 귀하는 기관에서 아동인권상황에 대한 만족점수를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10점 만점으로 빈칸에 점수를 적어주십시오) _____ 점

**귀하께서는 아래의 문항들이 시설 내에서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다음 해당 척도에 ∨표 해주시길 바랍니다.**

| | 내 용 | 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않다 | 조금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 시설 종사자는 시설 내 왕따, 폭력, 저항, 갈등 등을 잘 다룰 수 있도록 충분히 훈련을 받아야 한다. | | | | |
| 2 | 시설 종사자는 아동의 불만사항을 즉각적으로 접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 | |
| 3 | 아동은 자유롭게 연락할 수 있는 누군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 | |
| 4 | 시설 종사자는 아동을 대변해서 즉각적으로 대처행동을 해야 한다. | | | | |
| 5 | 종사자들은 아동을 절대 체벌해서 안 되며 아동과 일대일로 문제를 처리하지 않아야 한다. | | | | |
| 6 | 아동을 돌보는 시설 종사자는 자주 바뀌지 않아야 한다. | | | | |

**응답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아동복지시설 인권상황 실태조사 물리적 환경 체크리스트

| 평가항목 | | 평 가 지 표 | 그렇다 | 아니다 | 없다 |
|---|---|---|---|---|---|
| 1. 기존 시설 구조 및 설비 | | | | | |
| ① | 시설 전반 |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의 창문, 바닥, 건물 벽 등이 깨끗하게 되어 있다. | | | |
| ② | 침실 | 침실은 여학생과 남학생이 구분 되어 있고,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 | | |
| ③ | 식당 | 식사 메뉴에서 인스턴트식품(소시지, 햄 등)의 비율이 높다. | | | |
| ④ | | 특이체질 아동에 대한 메뉴가 따로 관리되고 있다. | | | |
| ⑤ | | 냉장고(냉동고)에 보관되어 있는 음식은 유효기간에 따라 적절하게 보관되어 있다. | | | |
| ⑥ | | 식사 시간 이외에도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정수기, 냉장고, 전자레인지 등이 있다. | | | |
| ⑦ | | 식당 집기(그릇, 수저 등)에 대한 소독 및 청결상태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 | |
| ⑧ | 화장실 | 화장실은 여학생과 남학생의 구분이 되어 있고,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 | | |
| ⑨ | 목욕 시설 | 세면, 샤워시설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잘 갖추어져 있으며, 언제든지 온수 사용이 가능하다. | | | |
| ⑩ | 상담실 | 상담실이 있으며, 언제든지 아동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 | | | |
| ⑪ | 양호실 | 간단하게 응급처치를 하고 쉴 수 있는 양호실이 있다. | | | |
| ⑫ | 도서실 | 공부를 하거나 독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 | | |
| ⑬ | 회의실 | 자치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회의실)이 마련되어 있다. | | | |
| ⑭ | 휴식 공간 |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휴게실)이 마련되어 있다. | | | |
| ⑮ | 실외 공간 | 놀이터 및 놀이기구 상태는 잘 되어 있으며, 안전한 상태이다. | | | |
| ⑯ | | 운동이나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실외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 | | |
| 평가 항목 : 11항목 - 16문항 | | | | | |

| | | | | | |
|---|---|---|---|---|---|
| **2. 생활 장비 및 물품** | | | | | |
| ① | 침구 | 침구는 개인별로 사용하고 있다. | | | |
| ② | | 침구류(이불, 베개 등)는 청결하다 | | | |
| ③ | 책상 | 개인용 책상이 구비되어 있으며, 관리상태가 양호하다. | | | |
| ④ | 사물함 | 의류 등 개인소지품을 보관할 수 있는 개인 사물함이 비치되어 있다. | | | |
| ⑤ | 공동 물품 |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컴퓨터, 참고 도서, 학용품 등은 아동 수를 고려해서 구비되어 있다. | | | |
| ⑥ | 목욕 용품 | 목욕실에 필요한 물품(비누, 샴푸, 수건 등)은 잘 구비되어 있다. | | | |
| **평가 항목 : 5항목 - 6문항** | | | | | |
| **3. 시설 안전 및 위생 관리** | | | | | |
| ① | 안전 관리 | 아동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창문 안전대가 설치되어 있다. | | | |
| ② | | 안전관리 매뉴얼이 아동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어 있다. | | | |
| ③ | 비상 재해 | 비상 시 선생님이나 외부에 연락할 수 있는 장치(전화, 비상벨 등)가 마련되어 있다. | | | |
| ④ | | 화재 예방 기구(소화기 등)가 충분히 있으며, 화재 발생을 대비한 대처요령이 각 방에 붙어 있다. | | | |
| ⑤ | 위생 관리 | 위생 교육(예: 손 소득, 감기예방 등)은 정기적으로 교육 및 관리 하고 있으며, 위생관리 매뉴얼이 아동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붙어 있다. | | | |
| ⑥ | | 기관 전체에 대한 위생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실내외(방, 화장실, 실외 공간 등) 소독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 | | |
| **평가 항목 : 3항목 - 6문항** | | | | | |
| **4. 기타** | | | | | |
| ① | 프로 그램 | 아동이 학교를 다니지 않을 경우 학업을 보충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 | | | |
| ② | | 퇴소를 앞둔 아동에 대한 퇴소준비 프로그램이 있다. | | | |
| ③ | 진정함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은 아동이 이용하기 쉬운 곳에 배치되어 있다. | | | |
| ④ |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 이용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 | |
| **평가 항목 : 2항목 - 4문항** | | | | | |

# 아동용 심층면접 질문지

**[공통/포괄]**

1. (자신의 가정에서 생활하는 친구들과 비교해 볼 때)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가장 힘들거나 어려운 점, 또는 한계를 느끼는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본인이나 친구들의 생각을 말해 줄래요?

2. 평소 가족(또는 부모)이 가장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경우는 언제인지? 그 상황에서 가족(부모)의 필요성이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왜 그렇게 느꼈는지..)

3. 본인이 생각하기에 시설의 가장 큰 문제점과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생존권]**

1. 지금 살고 있는 곳의 환경(방, 식당, 휴게실, 놀이터 등)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의식주에 대한 의견)

2. 자신이 원하는 생활과 지금 생활하는 곳에서의 생활 사이에서의 격차 및 한계는 어떠한 가요?

**[보호권]**

1. 학교 다니면서 힘들거나 곤란한 적이 있었나요? 지금 살고 있는 곳의 친구이야기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차별이나 모욕감, 수치심 등을 느낀 적이 있나요? 어떤 이야기도 좋습니다.

2. 지금 살고 있는 곳이나 학교에서 선생님과 친구, 선후배 등의 사이에서 신체적·정신적으로 상처를 받은 일(고민거리 등)이 있을 때 본인이나 친구들은 시설선생님에게 잘 이야기하나요? 잘 이야기 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3.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자신이 존중되고 보호받는다고 느끼는 경우는 언제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언제인가요?

4.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불합리한(비인격적인) 경험이 있나요? 있다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설명해줄 수 있나요?

5. 시설에서 생활한다는 이유(시설아동이라는 이유)로 외부사람들 혹은 지금 살고 있는 곳의 선생님들로부터 차별이나 낙인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발달권]**

1. 시설에서의 성장경험이 나중에 자신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2. 자신의 삶의 목표, 꿈 등 미래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가요? 그 계획을 위해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 혹은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지원(도움)해 주는 부분이 있나요?

**[참여권]**

1. 지금 생활하는 곳에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자신의 의견이나 건의사항 등은 잘 반영이 되는 것 같나요?

2. 자유로운 1)종교선택과 종교 활동의 참여 또는 2)외부의 동아리 활동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인권영역]**

1. 시설의 종사자(원장. 선생님. 사회복지사 등)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지금 살고 있는 곳의 선생님이나 원장님이 우리들과 생활할 때 고쳤으면 하는 말과 행동에이 있나요?

2.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어떤 때 가장 행복했고 즐거웠나요?

3. 시설에서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마무리]**

1.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아동양육시설은 어떤 것인가요?

2. 시설에 아이를 보내려는 부모(어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3.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과 한 이야기 외에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부탁합니다.

# 종사자용 심층면접 질문지

**[아동인권영역]**

1. 아동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생각하셨던 경험, 장면들이 있으신지요? 있다면 어떠한 상황에서 그러한 생각을 하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 아동의 인권이 보장되는 시설환경을 만들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은 무엇입니까?

(1) 아동에게 필요한 것

(2) 종사자 스스로에게 필요한 것

(3) 관리자(원장, 부원장)에게 필요한 것

**[종사자인권영역]**

1. 아동의 인권상황 개선과 함께 종사자들의 근무환경(종사자의 인권)도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2. (앞의 문항과 관련하여)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종사자로서 어려운 부분(현실적, 물리적 한계 등)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생존권]**

1. 귀 시설에서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의,식,주의 수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발달권]**

1. 아동의 학교생활과 관련해서입니다. 아동의 학교생활에 대해 담임선생님과 상담하고, 학부모 참여의 행사가 있을 때 곤란한 점은 없었습니까?

2. 아이들에게 연령이나 학년(발단단계)에 맞는 교육권(학습지도, 문화 등)이 제공되어 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특정 분야에 소질이 있는 아이들(개별화)에게 적절한 교육기회가 제공되고 있나요?

**[보호권]**

1. 아동이 지금 생활하고 있는 곳이나 학교에서 교사와 친구, 선후배 등의 사이에서 신체적·정신적으로 상처를 받은 일을 이야기 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본인이나 시설 선생님들의 대처방법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은 없습니까?

2. (보호치료 종사자용) 아동이 근처 학교로 입학이나 전학을 할 경우에 학교로부터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3. 시설에서 아동이 말을 듣지 않고, 갈등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십니까?(긍정적 훈육에 대한 시설 선생님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함)

**[참여권]**

1. 아이들이 자신들의 의견이나 건의사항 등을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의사소통이 자유롭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의견이나 건의사항은 어떻게 반영이 되나요?

2. 아이들의 종교 활동이나 외부의 동아리활동 부분에 있어 자율성은 어느 정도가 보장되고 있나요?

**[마무리]**

1. 오늘 질문 외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 아동복지시설 아동인권상황 실태조사

| 인쇄일 | 2010년 9월 20일
| 발행일 | 2010년 9월 20일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 주 소 | 100-842 서울시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빌딩
http://www.humanrights.go.kr
| 문의전화 | 인권정책과 02)2125-9756
| F A X | 02)2125-9733
| E-mail | research@humanrights.go.kr
| 제작 | 한학문학사 (02)313-7593

ISBN : 978-89-6114-212-0 93330